

해외 의사조력자살 관련 법령 번역집

2024.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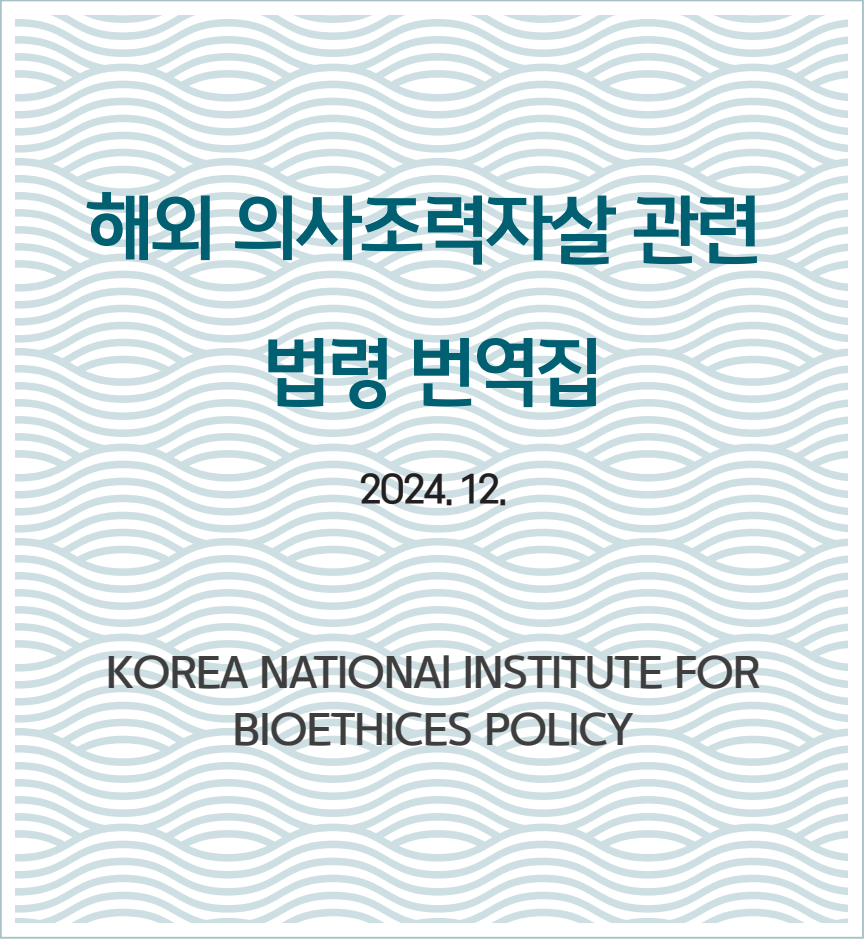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BIOETHICS POLICY



재단
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BIOETHICS POLICY



해외 의사조력자살 관련 법령 번역집

2024. 12.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BIOETHICS POLICY

CONTENTS

미국	I . 오리건 THE OREGON DEATH WITH DIGNITY ACT I .1
	II . 캘리포니아 End of Life Option Act II .1
	III. 컬럼비아 특별구 Death with Dignity Act of 2016 III.1
	IV. 뉴멕시코 Elizabeth Whitefield End of Life Options Act IV.1
V . 캐나다	Canada's medical assistance in dying (MAID) law V .1
호주	VI. 빅토리아 Voluntary Assisted Dying Act 2017 VI.1
	VII. 뉴사우스웨일스 Voluntary Assisted Dying Act 2022 VII.1
	VIII. 퀸즐랜드 Voluntary Assisted Dying Act 2021 VIII.1
IX. 뉴질랜드	End of Life Choice Act 2019 IX.1
X . 네덜란드	Wet toetsing levensbeëindiging op verzoek en hulp bij zelfdoding X .1
XI. 벨기에	Loi relative à l'euthanasie XI.1
XII. 룩셈부르크	Loi du 16 mars 2009 sur l'euthanasie et l'assistance au suicide XII.1
XIII. 스페인	Ley Orgánica 3/2021, de 24 de marzo, de regulación de la eutanasia XIII.1
XIV. 오스트리아	Bundesgesetz: Sterbeverfügungsgesetz sowie Änderung des Suchtmittelgesetzes und des Strafgesetzbuches XIV.1

미국 오리건주
THE OREGON
DEATH WITH DIGNITY ACT
(Oregon Revised Statutes)

2024.12.1. 기준 법령을 번역함

오리건주 존엄사법 개정법(ORS) 127.800 - 127.995

* 주: 127.800조 내지 127.890조, 127.895조와 127.897조의 장(division headings), 절(subdivision headings) 및 표제(leadlines)들은 1994년 국민 투표(Ballot Measure 16)에 의하여 제정되었고 입법부에 의하여 규정된 것이 아니다.

(일반 규정) (제1조)

127.800 §1.01. 정의.

ORS 127.800 내지 127.897에서 사용되는 단어 또는 구문은 다음의 의미와 같다.

- (1) “성인(Adult)”이란 18세 이상의 개인을 의미한다.
- (2) “담당의사(Attending physician)”란 환자에 대한 주된 치료 또는 말기질환 치료를 담당하는 의사를 의미한다.
- (3) “의사능력이 있는(Capable)”이란 법원이나 환자의 담당의사, 자문의사, 정신과의사 또는 심리학자의 견해로 볼 때 환자가 의료적 의사결정을 내리고 의료진에게 이를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을 말하며, 환자의 의사전달방식에 익숙한 사람을 통한 의사전달도 포함된다.
- (4) “자문의사(Consulting physician)”란 환자의 질병과 관련해 전문적 진단을 내리고 예후를 판단할 수 있는 전문성이나 경험을 토대로 자격을 갖춘 의사를 의미한다.
- (5) “상담(Counseling)”이란 환자가 의사능력이 있고, 판단장애를 유발하는 정신과적 및 심리학적 장애나 우울증을 앓지 않도록 오리건주에서 면허를 받은 정신과의사나 심리학자와 환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하는 한 차례 이상의 상담을 의미한다.
- (6) “의료진(Health care provider)”이란 오리건주 법률에 따라 허가, 면허, 기타 권한을 부여받아 일상적인 업무로 또는 전문직 수행의 일환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의약품을 조제하는 자를 의미하며, 의료시설도 포함된다.

(7) “신중한 결정(Informed decision)”이란 적격환자(qualified patient)가 관련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담당의사로부터 다음의 사항을 충분히 설명받은 후에 자신의 삶을 인간적이고 존엄한 방법으로 종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처방전을 요구하거나 얻고자 하는 결정을 의미한다.

- (a) 환자의 의학적 진단
- (b) 환자의 예후
- (c) 처방된 약물 투약과 관련된 잠재적 위험성
- (d) 처방된 약물 투약의 예상 결과
- (e) 실행 가능한 대안. 여기에는 임종돌봄(comfort care), 호스피스 의료, 통증완화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한다.

(8) “의학적 확진(Medically confirmed)”이란 담당의사가 내린 의학적 소견에 대해 자문의사가 적격환자 및 그에 대한 제반의료기록을 검토한 후 이를 확인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9) “환자(Patient)”란 의사의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10) “의사(Physician)”란 ORS 677 내지 677.228에 따라 의료행위 면허를 받은 의사를 의미한다.

(11) “적격환자(Qualified patient)”란 인간적이고 존엄한 방법으로 자신의 삶을 종결하기 위한 약물을 처방받기 위하여 ORS 127.800 내지 127.897의 요건을 충족하는 의사능력이 있는 성인을 의미한다.

(12) “말기질환(Terminal disease)”이란 치유가 불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것으로 확진받은 질환으로서, 합리적인 의학적 판단에 기초할 때 6개월 이내에 사망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질환을 의미한다. [1995 c.3 §1.01; 1999 c.423 §1; 2017 c.409 §3]

(인간적이고 존엄한 방식으로 삶을 종결시키는 처방전을 받기 위한 서면 요청) (제2조)

127.805 §2.01. 투약 서면 요청의 주체.

(1) 담당의사와 자문의사로부터 말기질환을 앓고 있다는 확인을 받고, 자의로 삶을 종결시키길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의사능력이 있는 성인은 ORS 127.800 내지 127.897의 규정에 따라 자신의 삶을 인간적이고 존엄한 방법으로 종결시키는 처방전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2) 연령이나 장애유무와 같은 사유만으로 ORS 127.800 내지 127.897의 규정을 충족시킬 수는 없다. [1995 c.3 §2.01; 1999 c.423 §2]

127.810 §2.02. 서면요청서 양식.

(1) ORS 127.800 내지 127.897의 규정에 따라 유효한 약물 요청서는 ORS 127.897에 명시된 양식을 사용해야 하고, 해당 서면에 환자의 서명과 날짜가 기재되어야 하며, 적어도 2명의 증인이 이를 목격해야 하고, 이 증인들은 환자가 입회한 자리에서 그들이 아는 바에 따르면 환자에게 의사능력이 있고 자발적으로 행동하며 요청서에 서명하도록 강요받지 않았음을 증언해야 한다.

(2) 증인 중 한 명은 다음에 해당해선 안 된다.

- (a) 환자와 혈연, 혼인 또는 입양관계에 있는 자
- (b) 서면요청서 서명 당시 환자의 유언이나 법률에 의하여 적격환자의 사망 이후 상속지분을 가지는 자
- (c) 적격환자가 치료를 받고 있거나 거주 중인 의료시설 소유자, 운영자 또는 직원.

(3) 요청서 서명 당시 환자의 담당의사는 증인이 될 수 없다.

(4) 서면요청이 이루어진 당시에 환자가 장기요양시설의 환자라면, 증인 중 한 명은 해당 시설에서 지명한 사람으로서 오리건주 건강보건국(Oregon Health Authority)에서 명시한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한다. [1995 c.3 §2.02]

(보호조항)

(제3조)

127.815 §3.01. 담당의사의 책임.

(1) 담당의사는 다음 각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 (a) 환자가 말기질환을 앓고 있는지, 의사능력이 있는지, 자발적인 요청을 하였는지 일차적 판단을 내린다.
- (b) 환자가 신중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환자에게 다음 사항을 설명해야 한다.
 - (A) 환자의 의학적 진단
 - (B) 환자의 예후
 - (C) 처방된 약물 투약과 관련된 잠재적 위험성
 - (D) 처방된 약물 투약의 예상 결과

- (E) 실행 가능한 대안. 여기에는 임종돌봄(comfort care), 호스피스 의료, 통증완화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한다.
- (c) 진단의 의학적 확인을 위해, 그리고 환자가 의사능력이 있고 자의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환자를 자문의사에게 진료의뢰를 한다.
- (d) ORS 127.825에 따라 적절한 경우 환자가 상담을 받도록 의뢰한다.
- (e) 환자에게는 친족에게 알릴 것을 권고한다.
- (f) 환자가 ORS 127.800 내지 127.897에 따라 처방된 약물을 복용할 때 제3자가 현장에 입회해야 하고, 공공장소에서 약물을 복용하지 말아야 하는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설명한다.
- (g) 환자는 언제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든 자신의 요청을 철회할 수 있음을 환자에게 통지하고, ORS 127.840에 따라 두 번째 구두 요청을 한 시점에 요청을 철회할 기회를 제공한다.
- (h) ORS 127.800 내지 127.897에 따라 약물 처방전을 쓰기 직전에 환자가 신중한 결정을 내리는지 확인해야 한다.
- (i) ORS 127.855의 의료기록 문서화 요건을 충족한다.
- (j) 적격환자가 인간적이고 존엄적인 방법으로 생명을 종결시킬 수 있도록 약물을 처방하기 전에 ORS 127.800 내지 127.897에 따라 모든 절차가 적절하게 이행되도록 보장한다.
- (k) (A) 환자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의도된 부수 약물을 포함해 약물을 직접 조제한다. 단, 담당의사는 의료위원회(Board of Examiners)에 조제의사로 등록되어 있고, 미국 마약단속국(DEA)의 자격증을 보유하며, 관련된 모든 행정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 (B) 환자의 서면 동의를 받은 후 다음 사항들을 이행한다.
- (i) 약사에게 연락하여 처방전을 알린다.
- (ii) 환자, 담당의사 또는 환자의 공식 대리인에게 약물을 조제해줄 약사에게 직접 처방전을 전달하거나 우편으로 송달한다.
- (2) 법률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담당의사는 환자의 사망증명서에 서명할 수 있다.
[1995 c.3 §3.01; 1999 c.423 §3; 2013 c.366 §62; 2019 c.624 §1]

127.820 §3.02. 자문의사의 확인.

환자가 ORS 127.800 내지 127.897에 따라 적격한 상태가 되기 전에 자문의사는 환자를 진찰하고 환자의 관련 의료기록을 검토하여 환자가 말기질환을 앓고 있다는

담당의사의 진단을 서면으로 확인하고, 환자에게 의사능력이 있고 자의적으로 행동하며 신중한 결정을 내렸음을 확인한다. [1995 c.3 §3.02]

127.825 §3.03. 상담의뢰.

담당의사나 자문의사의 소견으로 환자가 판단장애를 유발하는 정신과적 또는 심리학적 장애나 우울증을 겪고 있다고 판단한다면 환자가 상담을 받도록 의뢰해야 한다. 상담으로 환자가 판단장애를 유발하는 정신과적 및 심리학적 장애와 우울증을 앓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기 전까지는 인간적이고 존엄한 방법으로 생명을 종결하기 위한 약물을 처방할 수 없다. [1995 c.3 §3.03; 1999 c.423 §4]

127.830 §3.04. 신중한 결정.

ORS 127.800 (7)에 정의된 ‘신중한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누구도 인간적이고 존엄한 방식으로 생명을 종결하기 위한 약물을 처방받을 수 없다. ORS 127.800 내지 127.897에 따라 약물 처방전을 쓰기 직전에 담당의사는 환자가 신중한 결정을 내리는지 확인해야 한다. [1995 c.3 §3.04]

127.835 §3.05. 가족 통지.

담당의사는 ORS 127.800 내지 127.897에 따라 약물을 요청하였다는 사실을 친족에게 알릴 것을 권고한다. 환자가 친족에게 통지하기를 거부하거나 통지할 수 없는 상황에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환자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 [1995 c.3 §3.05; 1999 c.423 §6]

127.840 §3.06. 서면 및 구두 요청.

(1) 인간적이고 존엄하게 생명을 종결하기 위한 약물 처방을 받기 위해 적격환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요청해야 하고, 환자의 첫 구두 요청 후 15일 후에 환자의 담당의사에게 구두 요청을 반복해야 한다.

(2) 본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담당의사가 합리적인 의학적 판단에 기초할 때 본조에 따라 최초 구두 요청 이후 15일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확인하는 경우, 적격환자는 최초 구두 요청 이후 언제든지 담당의사에게 구두 요청을 반복할 수 있다.

(3) 적격환자가 두 번째 구두 요청을 할 때, 담당의사는 환자에게 그 요청을 철회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1995 c.3 §3.06; 2019 c.624 §2]

127.845 §3.07. 요청 철회권.

환자는 정신상태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자신의 요청을 철회할 수 있다. ORS 127.800 내지 127.897에 따라 담당의사는 적격환자에게 요청을 철회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는 약물을 처방할 수 없다. [1995 c.3 §3.07]

127.850 §3.08. 대기기간.

(1) ORS 127.800 내지 127.897에 따라 환자가 최초 구두 요청한 시점부터 처방전 발급까지는 최소 15일이 경과해야 한다. ORS 127.800 내지 127.897에 따라 환자가 서면 요청한 시점부터 처방전 발급까지는 최소 48시간이 경과해야 한다. [1995 c.3 §3.08]

(2) 본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담당의사가 합리적인 의학적 판단에 기초할 때 본조 제(1)항에 설명된 대기기간이 끝나기 전에 환자가 사망할 것으로 확인하는 경우, ORS 127.840에 따라 적격환자의 서면 요청 또는 두 번째 구두 요청 중에 늦은 시점으로부터 언제든지 ORS 127.800 내지 127.897에 따른 약물 처방을 내릴 수 있다. [1995 c.3 §3.08; 2019 c.624 §3]

127.855 §3.09. 의료기록 문서화 요건

환자의 의료기록에는 다음 사항을 문서화 및 보관해야 한다.

- (1) 인간적이고 존엄한 방법으로 생명을 종결하기 위한 약물에 대한 환자의 모든 구두 요청
- (2) 인간적이고 존엄한 방법으로 생명을 종결하기 위한 약물에 대한 환자의 모든 서면 요청
- (3) 담당의사의 진단과 예후, 환자의 의사능력, 자발적 행동여부, 신중한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한 판단
- (4) 자문의사의 진단과 예후, 환자의 의사능력, 자발적 행동여부, 신중한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한 확인
- (5) 상담이 진행된 경우, 상담기간 동안 결과와 판단에 대한 보고
- (6) 환자의 죽음이 임박하였다는 확인서
- (7) ORS 127.840에 따른 환자의 두 번째 구두 요청 시 환자에게 해당 요청의 철회 제안
- (8) ORS 127.800 내지 127.897에 따른 모든 요건을 충족하였고, 처방한 약물의 표기를 포함해 환자의 요청에 따른 필요 조치가 취해졌다는 자료 [1995 c.3 §3.09; 2019 c.624§4]

127.865 §3.11. 보고 요건.

- (1) (a) 오리건주 건강보전국은 ORS 127.800 내지 127.897에 따라 유지되는 기록 중 일부를 매년 검토해야 한다.
(b) 건강보전국은 ORS 127.800 내지 127.897에 따라 약물 투여를 실시한 의료진에게 투여 기록 사본을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2) 건강보전국은 ORS 127.800 내지 127.897의 준수와 관련해 정보 수집을 촉진하기 위한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법률상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 한, 수집된 정보는 공공 기록이 될 수 없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없다.
- (3) 건강보전국은 본조 제(2)항에 의거하여 수집한 정보에 대해 연간통계보고서를 발간하고 일반인에게 공개해야 한다. [1995 c.3 §3.11; 1999 c.423 §9; 2001 c.104 §40 ; 2009 c.595 §89]

127.870 §3.12. 유언, 계약, 법률 해석에 미치는 영향.

- (1) 계약, 유언, 서면 및 구두로 이루어진 기타 합의문의 조항이 인간적이고 존엄적인 방식으로 스스로 생명을 종결시키기 위한 약물의 요청 및 요청 철회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러한 조항은 효력이 없다.
- (2) 현존하는 어떠한 계약상 의무도 인간적이고 존엄적인 방식으로 생명을 종결시키는 약물을 요청하거나 철회하는 환자의 행위를 조건으로 할 수 없으며 그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1995 c.3 §3.12]

127.875 §3.13. 보험 또는 연금 정책.

생명보험, 건강보험, 상해보험 및 연금보험 약관의 판매, 조달 및 발행, 또는 모든 보험 약관에 부과되는 요율은 인간적이고 존엄하게 스스로 생명을 종결시키는 약물을 요청하거나 철회하는 환자의 행위를 조건으로 할 수 없으며 그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인간적이고 존엄하게 스스로 생명을 종결시키기 위해 약물을 복용하는 적격환자의 행위도 생명보험, 건강보험, 상해보험 및 연금보험 약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995 c.3 §3.13]

127.880 §3.14. 법률의 해석.

ORS 127.800 내지 127.897의 어떠한 조항도 의사나 제3자에게 치명적인 약물주사(lethal injection)나 안락사(mercy killing) 또는 적극적 안락시술을 통해

환자의 생명을 종결시키는 행위를 인가하지 아니한다. ORS 127.800 내지 127.897의 규정에 의거한 행위는 어떠한 목적이든 법률상 자살, 조력자살, 안락사 또는 살인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1995 c.3 §3.14]

(면책과 법적 책임)
(제4조)

127.885 §4.01. 면책; 의료진의 참여를 금지하는 근거; 통지; 허용된 제재.

ORS 127.890에 규정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1) ORS 127.800 내지 127.897의 규정 준수에 신의성실하게 참여한 자는 민형사상 책임이나 직무상 징계를 받지 아니한다. 적격환자가 인간적이고 존엄한 방법으로 스스로 생명을 종결하기 위한 처방약을 투여에 참여하는 자도 마찬가지다.

(2) 어떠한 전문가 조직이나 협회 또는 의료진도 ORS 127.800 내지 127.897 규정 준수에 신의성실하게 참여하거나 참여를 거부한 자에 대하여 견책, 징계, 자격정지, 자격 박탈, 특권 박탈, 회원자격 박탈 및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가할 수 없다.

(3) ORS 127.800 내지 127.897의 규정을 신의성실하게 준수한 환자의 약물 요청행위 또는 담당의사의 처방행위는 법률상 어떠한 목적으로도 과실(neglect) 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그러한 행위만으로 후견인이나 보호자를 선임해야 할 사유가 될 수 없다.

(4) 어떠한 계약, 법률, 기타 법적 요건도 의료진으로 하여금 적격환자에게 인간적이고 존엄한 방법으로 생명을 종결시키는 약물 처방에 참여하도록 의무를 지우지 아니한다. 의료진이 ORS 127.800 내지 127.897의 규정에 따라 환자의 요청을 이행할 수 없거나 이행을 원치 않아 환자가 다른 의료진에게 이송될 경우, 이전 의료진은 환자의 요청에 따라 새로운 의료진에게 환자와 관련된 의료기록 사본을 송부해야 한다.

(5) (a) 법률상 달리 규정한다 하더라도, 의료진은 ORS 127.800 내지 127.897에 참여와 관련된 방침을 다른 의료진에게 통지한 후 자신의 의료지역 내에서 다른 의료진을 상대로 ORS 127.800 내지 127.897에 참여를 금지시킬 수 있다.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ORS 127.800 내지 127.897에 규정된 행위 이외의 의료행위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b) 본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ORS 127.800 내지 127.897에 따라 참여하기 전에 제재 의료진이 피제재 의료진에게 ORS 127.800 내지 127.897에 따라 참여를 금지한다는 통보를 한 경우, 의료진은 다른 의료진에게 본 항에 명시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A) 피제재 의료진이 제재 의료진의 직원이고 ORS 442.015에 규정된 제재 의료진의 의료지역 내에서 ORS 127.800 내지 127.897에 참여한 경우, 제재 의료진의 내규, 방침, 절차에 따라 특권 박탈, 회원자격 박탈 및 기타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다만, 의사 또는 타 의료진의 개인진료소는 제재 대상이 아니다.

(B) 제재 의료진의 의료지역 내 또는 제재 의료진이 소유하거나 그의 직접적 지배권이 미치는 소유지 내에서 ORS 127.800 내지 127.897에 참여한 경우, 임대차 계약 또는 기타 소유지와 관련된 계약을 해지하거나 임대차 계약에 부수하는 비금전적 구제수단(nonmonetary remedies)을 박탈할 수 있으나, 의료 직원 특권이 상실 및 제한되거나 의료진 명단에서 배제되지는 아니한다.

(C) 제재 의료진의 피고용인 또는 독립적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업무수행 과정과 역량범위 내에서 ORS 127.800 내지 127.897에 참여한 경우, 계약을 종료하거나 계약상 보장되는 비금전적 구제수단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이 항은 다음의 행위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i) 의료진의 피고용인 또는 독립적인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업무수행 과정과 역량범위에서 벗어나 ORS 127.800 내지 127.897에 참여하는 행위;

(ii) 환자가 제재 의료진의 피고용인 또는 독립계약자로서 의료진의 역량범위에서 벗어나 행동하도록 담당의사 및 자문의사와 계약하는 행위.

(c) 본조 제(b)항에 따라 제재 의료진은 다른 의료진에게 가하는 제재와 관련하여 모든 적법 절차 및 기타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d) 본조에서 사용하는 아래의 용어는 다음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A) “통지(Notify)”란 ORS 127.800 내지 127.897에서 다루는 활동의 참여에 대해 제재 의료진의 방침을 ORS 127.800 내지 127.897에 참여하기 전에 의료진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행위를 의미한다.

(B) “ORS 127.800 내지 127.897에 참여”란 ORS 127.815에 의거해 담당의사의 의무를 수행하거나, ORS 127.820에 의거해 자문의사의 직능을 수행하거나, ORS 127.825에 의거해 상담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ORS 127.800 내지 127.897에 참여”에는 다음이 포함되지 않는다.

(i) 환자가 말기질환을 앓고 있다는 초기 진단(initial determination)을 내리고 진단 결과를 환자에게 알려주는 행위;

(ii) 환자가 요청 시 오리건주 존엄사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iii) 환자가 요청 시 환자를 다른 의사에게 의뢰(referral)하는 행위;

(iv) 환자가 제재 의료진의 피고용인 또는 독립계약자로서 의료진의 업무수행 과정과 역량범위에서 벗어나 행동하도록 담당의사 및 자문의사와 계약하는 행위.

(6) 본조 제(5)항에서 명시한 직원의 회원자격 또는 특권의 정지 및 박탈 사실은 ORS 441.820의 규정에 따라 보고할 수 없다. ORS 127.810, 127.815, 127.820 및 127.825의 규정에 따라 행동을 취했을 경우, ORS 677.415 (3)항, (4)항, (5)항 또는 (6)항에 규정된 비전문적 또는 불명예스러운 행위로 보고 사유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7) ORS 127.800 내지 127.897의 조항은 환자가 치료를 받는 지역사회 또는 비슷한 수준의 지역사회에서 환자에게 보다 낮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도 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아니한다. [1995 c.3 §4.01; 1999 c.423 §10 ; 2003 c.554 §3]

주: 제4.01조의 표제는 최초에 국민투표를 통해 “면책(Immunities)”으로 제정되었다. 표제의 나머지 부분은 편집과정에서 추가되었음을 밝힌다.

127.890 §4.02. 법적책임.

(1) 환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목적으로 처방요청서를 고의로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요청철회서를 은닉 또는 손괴한 자는 A급 중범죄에 해당한다.

(2)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목적으로 처방을 요청하도록 또는 요청철회서를 손괴하도록 강요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자는 A급 중범죄에 해당한다.

(3) ORS 127.800 내지 127.897의 규정은 제3자의 과실 또는 고의적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적 손해의 책임범위에 대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ORS 127.800 내지 127.897에 규정된 처벌은 ORS 127.800 내지 127.897의 조항과 상이한 다른 법률이 적용되는 형사처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995 c.3 §4.02]

127.892 발생 비용에 대한 정부기관의 청구

ORS 127.800 내지 127.897의 규정에 따라서 공공장소에서 생명을 종결시키는 자로 인하여 정부기관에 비용이 발생한 경우, 정부기관은 그러한 요청을 이행하는 데에 든 비용과 합리적인 변호사비용을 해당 환자의 상속재산에 대해 청구한다. [1999 c.423 §5a]

(일부실효)
(제5조)

127.895 §5.01. 분리조항.

ORS 127.800 내지 127.897의 규정 중 어떤 조항이 특정인이나 특정 상황에서 무효로 판단되었다 하더라도, 무효로 된 그 조항이나 행위가 없이 온전한 효력을 발휘하는 ORS

127.800 내지 127.897의 나머지 조항의 적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995 c.3 §5.01]

(요청서 양식) (제6조)

127.897 §6.01. 요청서 양식.

ORS 127.800 내지 127.897에 의하여 인정되는 투약의 요청은 다음의 양식을 따른다.

인간적이고 존엄한 방법으로 생명을 종결시키기 위한 처방요청서

본인 _____은/는 건전한 정신을 가진 성인이다.

본인은 _____를 앓고 있고, 담당의사로부터 말기질환 판정을 받았으며, 이에 대해 자문의사의 의학적 확진을 받았다.

본인은 진단내용과 예후, 처방될 약물의 특성 및 관련된 잠재적 위험성, 예상되는 결과, 임종돌봄(comfort care), 호스피스 의료, 통증완화 등 실행 가능한 대안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

본인은 담당의사에게 본인의 생명을 인간적이고 존엄하게 종결시킬 수 있는 의약품을 처방해줄 것을 요청한다.

해당사항 표시:

_____ 본인은 본인의 결정을 가족에게 알렸고 가족의 의견을 심사숙고하였다.

_____ 본인은 가족에게 본인의 결정을 알리지 않기로 하였다.

_____ 본인은 본인의 결정을 알릴 가족이 없다.

본인은 본 요청을 언제든지 철회할 권리가 있음을 알고 있다.

본인은 본 요청서의 전체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처방된 의약품 복용 시 사망에 이를 것을 예상한다. 본인은 대부분의 사망이 처방된 의약품 복용 후 3시간 이내에 발생하지만, 본인의 경우 더 오래 걸릴 수 있으며 담당의사가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 이미 고지하였음을 이해한다.

본인은 자의적으로 망설임 없이 본 요청서를 제공하는 바이며, 본인의 행동에 모든 도덕적 책임을 받아들인다.

서명: _____

날짜: _____

증인 선서

우리는 증인으로서 본 요청서에 서명한 자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선언한다.

- (a)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거나 신분증명을 제공하였다.
- (b) 우리의 입회하에 본 요청서에 서명하였다.
- (c) 건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으로서 강압, 기만 또는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았다.
- (d) 우리가 담당의사로 담당하는 환자가 아니다.

_____ 증인 1/날짜

_____ 증인 2/날짜

주의사항: 증인 중 적어도 1명은 본 요청서에 서명한 자의 친척(혈연, 결혼, 입양에 의한 친척관계), 환자의 사망시 환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 환자가 치료를 받거나 거주하고 있는 의료시설의 소유자, 운영자 또는 피고용인이 아니어야 한다. 환자가 의료기관에 수용된 환자인 경우, 증인 중 1명은 해당 시설에서 지명한 사람이어야 한다.

[1995 c.3 §6.01; 1999 c.423 §11]

(처벌)

127.990: [개정전 97.990의 부분; 1993 c.767 §29에 의해 폐지됨]

127.995 처벌.

(1) 당사자의 사망을 앞당길 의도로 생명연장치료의 보류 또는 중단을 유발하거나 인공적인 영양분 및 수분 공급을 중단 또는 제거할 의도로 당사자의 동의 없이 서면(instrument), 서면의 복원 및 취소, 그 외 당사자의 바람과 관심에 관한 증거나 서류를 위조, 변조, 은닉 및 손괴하는 자는 A급 중범죄에 해당한다.

(2) 본조 제(1)항에 언급된 경우를 제외하고, 의료결정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당사자의 동의 없이 서면(instrument), 서면의 복원 및 취소, 그 외 당사자의 바람과 관심에 관한 증거나 서류를 고의적으로 위조, 변조, 은닉 및 손괴하는 자는 A급 경범죄에 해당한다.

[개정전 127.585]

미국 캘리포니아주

End of Life Option Act

2024.12.1. 기준 법령을 번역함

보건안전법 - HSC(Health and Safety Code)**제1절. 공중위생국[135 - 1179.102]***(제1절. Stats. 1939, Ch. 60.에 의해 제정)***제1.85장. 임종선택법[443- 443.22]***(제1.85장. Stats. 2015, 2nd Ex. Sess., Ch. 1, Sec. 1.에 의해 추가)***443.**

이 법은 임종선택법으로 이해하고 약칭한다.

(Stats. 2015, 2nd Ex. Sess., Ch. 1, Sec. 1. (AB 15 2x) 에 의해 추가. 2016년 6월 9일부로 발효. 제443.215조에 따라 2031년 1월 1일부로 폐지.)

443.1.

이 법에서 사용되는 아래의 용어는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 (a) “성인(Adult)”이란 18세 이상의 개인을 의미한다.
- (b) “조력사망약물(Aid-in-dying drug)”이란 말기질환으로 인해 사망을 초래하도록 자가 투여를 선택할 수 있는 적격 대상에게 의사가 판단하여 처방한 약물을 의미한다.
- (c) “담당의사(Attending physician)”란 개인의 건강관리 치료 또는 개인의 말기질환 치료를 담당하는 의사를 의미한다.
- (d) “담당의사 체크리스트와 규정 준수 양식(Attending physician checklist and compliance form)”이란 제443.22조에 설명된 양식으로, 담당의사가 참여를 선택한 경우 본 조항에 따라 신의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는 모든 요구사항을 설명한다.
- (e) “의료 결정을 내리는 능력(Capacity to make medical decisions)”이란 상속법(Probate Code) 제4609조에 따라 개인의 담당의사, 자문의사, 정신과의사 또는 심리학자 소견으로 개인이 의료 결정의 특성과 결과를 이해하는 능력, 중요한 혜택과 위험성과 대안들을 이해하는 능력, 신중한 결정을 내리고 의료진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능력이 있음을 의미한다.
- (f) “자문의사(Consulting physician)”란 담당의사와 독립된 의사로서, 개인의 말기질환과 전문적 진단을 내리고 예후를 판단할 수 있는 전문성이나 경험을 토대로 자격을 갖춘 의사를 의미한다.

II.2

- (g) “부(Department)”란 주 보건부(State Department of Health)를 의미한다.
- (h) “의료진(Health care provider)” 또는 “의료제공자(provider of health care)”란 비즈니스 및 직업법(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제2절(제500조에서 시작)에 따라 면허를 취득하거나 인증된 자, 정골의학법(Osteopathic Initiative Act) 또는 척추교정의학법(Chiropractic Initiative Act)에 따라 면허를 취득한 자, 본 법률의 제2.5절(제1797조에서 시작)에 따라 인증된 자를 의미한다.
- (i) “의료기관(Health care entity)”이란 종합 병원, 병원, 양로원, 호스피스 시설을 포함해 제2절(제1200조에서 시작)에 따라 면허를 취득한 치료소, 건강 진료소 및 보건시설을 의미한다. 의료기관은 제(h)항에 설명된 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j) “신중한 결정(Informed decision)”이란 말기질환을 앓는 자가 관련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담당의사로부터 다음의 사항을 충분히 설명받은 후에 스스로 생명을 종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자가 투여할 수 있는 약물의 처방전을 요구하거나 얻고자 하는 결정을 의미한다.
- (1) 개인의 의학적 진단과 예후
 - (2) 처방된 약물 복용과 관련된 잠재적 위험성
 - (3) 처방된 약물 복용의 예상 결과
 - (4) 개인이 약물을 취득하지 않기로 선택하거나 약물을 취득 후 주입하지 않기로 결정할 가능성
 - (5) 실행 가능한 대안 및 추가 치료 기회. 여기에는 임종돌봄(comfort care), 호스피스 의료, 완화의료, 통증완화도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한다.
- (k) “의학적 확진(Medically confirmed)”이란 담당의사가 내린 의학적 진단과 예후에 대해 자문의사가 개인 및 그에 대한 제반의료기록을 검토한 후 이를 확인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 (l) “정신건강 전문가 평가(Mental health specialist assessment)”란 개인이 의료적 의사결정을 내릴 만한 역량을 갖추고 있고 정신장애로 인한 판단 저하가 없는지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과 정신건강 전문가 사이에 이루어져야 하는 한 차례 이상의 상담을 의미한다.
- (m) “정신건강 전문가(Mental health specialist)”란 정신과의사 또는 자격을 취득한 심리학자를 의미한다.
- (n) “의사(Physician)”란 캘리포니아 주에서 의료행위 면허를 받은 의학박사 또는 정골 의무 박사를 의미한다.
- (o) “공공장소(Public place)”란 도로, 골목, 공원, 공공 건물, 사업장 및 일반인에게

공개되거나 붐비는 집회장소, 그리고 일반인에게 공개되거나 접근하기 쉬운 모든 장소를 의미한다. “공공장소”는 의료기관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p) “적격한 개인(Qualified individual)”이란 의료적 의사결정을 내릴 능력이 있고,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며, 생명을 종결시키기 위한 약물 처방전을 얻기 위해 본 법률의 요건을 충족한 자를 의미한다.

(q) “자가 투여(Self-administer)”란 적격한 개인이 스스로 사망을 초래하도록 조력사망약물을 능동적이고 의식적이며 물리적으로 직접 투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r) “말기질환(Terminal disease)”이란 치유가 불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것으로 확진받은 질환으로서, 합리적인 의학적 판단에 기초할 때 6개월 이내에 사망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질환을 의미한다.

(Stats. 2021, Ch. 542, Sec. 1. (SB 380)에 의해 개정. 2022년 1월 1일 발효. 제443.215조에 따라 2031년 1월 1일부로 폐지.)

443.2.

(a) 의료적 의사결정을 내릴 능력이 있고 말기질환을 앓는 성인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 시 조력사망약물 처방전을 요청할 수 있다.

- (1) 개인의 담당의사가 개인에게 말기질환을 진단한 경우.
- (2) 개인이 조력사망약물 처방전을 받고 싶다는 의사를 자발적으로 표명한 경우.
- (3) 개인이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다음 수단을 통해 주소지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
 - (A) 캘리포니아 주 운전면허증 또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발급한 신분증 소지.
 - (B) 캘리포니아 유권자 등록 여부.
 - (C) 캘리포니아 내에 부동산을 소유 및 임대하고 있다는 입증자료.
 - (D) 최근 회계연도에 해당하는 캘리포니아 주 소득 신고서 기록.
- (4) 개인이 제443.3조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요청서를 서류로 입증한 경우.
- (5) 개인이 조력사망약물을 자가투여할 수 있는 정신 및 신체적 능력을 갖춘 경우.

(b) 연령이나 장애유무와 같은 사유만으로 본 법률의 조항에 따른 “적격한 개인”이 될 수는 없다.

(c) 본 법률에 따른 조력사망약물 처방은 말기질환 진단을 받은 자만이 직접 요청할 수 있고 누구도 환자를 대신하여 요청할 수 없으며, 위임장, 의료사전의향서, 법정후견인, 의료결정대리인, 대리 의사 결정권자, 기타 법적으로 인정되는 의료 의사결정자를 통한 방법도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한다.

(Stats. 2017, Ch. 561, Sec. 99. (AB 1516)에 의해 개정. 2018년 1월 1일 발효. 제443.215조에 따라 2031년 1월 1일부로 폐지.)

443.3.

(a) 본 법률에 따라 조력사망약물 처방전을 얻고자 하는 개인은 최소 48시간 간격을 두고 담당의사에게 두 차례 구두 요청을 한 후 한 차례 서면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담당의사는 본조의 규정에 따라 피지명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요청서를 받고, 요청서 날짜를 개인의 의료기록에 문서화해야 한다. 담당의사는 이전 담당의사가 구두 요청을 받았거나 이 과정에 본인이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의료기록에 문서화된 구두 요청을 무시할 수 없다.

(b) 제(a)항에서 조력사망약물에 대한 유효한 서면 요청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제443.11조에 설명된 양식으로 요청서를 작성한다.

(2) 조력사망약물을 원하는 개인은 2명의 증인이 입회한 자리에서 요청서에 서명하고 날짜를 기입해야 한다.

(3) 개인이 입회한 자리에서 최소 2명의 사람이 요청서를 목격해야 하고, 2명의 증인은 개인이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함을 증언해야 한다.

(A)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거나 신분증명을 제공하였다.

(B) 우리의 입회하에 본 요청서에 자발적으로 서명하였다.

(C) 건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으로서 강압, 기만 또는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았다.

(D) 우리가 담당의사, 자문의사, 정신건강 전문가로 진료하는 개인이 아니다.

(c) 서면 요청서에 서명할 당시 증인 중 1명만 다음에 해당할 수 있다.

(1) 적절한 개인과 혈연, 결혼, 등록된 동거 관계(registered domestic partnership), 입양에 의해 관계되어 있거나, 개인이 사망시 개인의 재산 일부를 상속받을 자.

(2) 개인이 치료를 받고 있거나 거주 중인 의료시설을 소유 및 운영하거나 동 시설에 고용된 자.

(d) 개인의 담당의사, 자문의사, 또는 정신건강 전문가는 제(b)항제(3)호에서 요구하는 증인이 될 수 없다.

(Stats. 2021, Ch. 542, Sec. 2. (SB 380)에 의해 개정. 2022년 1월 1일 발효. 제443.215조에 따라 2031년 1월 1일부로 폐지.)

443.4.

- (a) 개인은 정신 상태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조력사망약물 요청을 취소 및 철회하거나 조력사망약물을 복용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다.
- (b) 본 법률에 따라 제공되는 조력사망약물 처방전은 개인에게 요청을 취소 및 철회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담당의사 없이 작성할 수 없고 피지명자를 통해 작성할 수도 없다.
- (c) 개인이 다른 의사에게 진료 이송을 결정하는 경우, 개인의 요청 시 의사는 조력사망약물 처방전을 원하는 개인의 구두 및 서면 요청 날짜를 포함한 모든 서면 서류를 비롯해 관련된 의료기록을 전부 송부해야 한다.

(Stats. 2021, Ch. 542, Sec. 3. (SB 380)에 의해 개정. 2022년 1월 1일 발효. 제443.215조에 따라 2031년 1월 1일부로 폐지.)

443.5.

- (a) 담당의사는 조력사망약물을 처방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모두 이행해야 한다.

- (1) 다음 사항을 모두 판단한다.

- (A) (i) 요청하는 성인이 의료적 의사결정을 내릴 능력이 있는지 여부.
- (ii) 정신장애의 징후가 있다면 의사는 정신건강 전문가 평가를 의뢰해야 한다.
- (iii) 정신건강 전문가에게 의뢰를 할 경우, 정신건강 전문가가 개인이 의료적 의사결정을 내릴 능력이 있고 정신장애로 인한 판단 저하가 없는지 판단할 때까지 조력사망약물을 처방하지 아니한다.
- (B) 요청하는 성인이 말기질환을 앓고 있는지 여부.
- (C) 요청하는 성인이 제443.2조와 제443.3조에 따라 조력사망약물을 자발적으로 요청하였는지 여부.
- (D) 요청하는 성인이 제443.1조제(q)항에 따라 적절한 개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개인이 다음 사항을 모두 함께 논의함으로써 신중한 결정을 내리는지 확인한다.

- (A) 개인의 의학적 진단과 예후.
- (B) 요청한 조력사망약물 복용과 관련된 잠재적 위험성.
- (C) 조력사망약물을 복용 시 발생할 수 있는 결과.
- (D) 조력사망약물을 취득 후 복용하지 않기로 선택할 가능성.
- (E) 실행 가능한 대안 및 추가 치료 기회. 여기에는 임종돌봄(comfort care), 호스피스 의료, 완화의료, 통증완화도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한다.

II.6

- (3) 진단과 예후에 대한 의학적 확인을 받고, 개인이 의료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본 법률의 조항을 준수하였음을 결정하도록 자문의사에게 개인의 진료를 의뢰한다.
 - (4) 본 법률에 따라 요구하는 통역사를 제외하고 제3자 없이 적절한 개인이 제3자로부터 강요받거나 부당한 영향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지 대화를 통해 적절한 개인의 요청이 강압이나 부당한 영향력으로 인해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한다.
 - (5) 적절한 개인과 다음 사항의 중요성에 대해 상담한다.
 - (A) 본 법률에 따라 처방된 조력사망약물을 복용 시 제3자가 입회할 것.
 - (B) 조력사망약물은 공공장소에서 복용하지 말 것.
 - (C) 조력사망약물 요청에 대해 친족에게 통지하는 것. 적절한 개인이 친족에게 통지하기를 거부하거나 통지할 수 없는 상황에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개인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
 - (D) 호스피스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
 - (E) 적절한 개인이 조력사망약물을 복용할 때까지 약물을 안전한 장소에 보관할 것.
 - (6) 개인에게 어떠한 방법으로든 조력사망약물 요청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음을 통지한다.
 - (7) 개인에게 조력사망약물을 처방하기 전에 조력사망약물 요청을 취소 또는 철회할 기회를 제공한다.
 - (8) 조력사망약물을 처방하기 직전에 적절한 개인이 신중한 결정을 내리는지 확인한다.
 - (9) 조력사망약물을 처방하기 전에 본 법률에 따라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모든 적절한 단계를 이행하는지 확인한다.
 - (10) 제443.8조와 제443.19에서 요하는 기록 문서화를 이행한다.
 - (11) 제443.22조에 설명된 바와 같이 담당의사 체크리스트와 규정 준수 양식을 작성하고 자문의사 준수 양식을 작성하여 개인의 의료기록에 포함시킨 후 주 보건부에 제출한다.
- (b) 상기 전술한 제(a)항의 조건을 충족 시, 담당의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조력사망약물을 전달할 수 있다.
- (1) 적절한 개인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의도된 부수 약물을 포함해 조력사망약물을 직접 조제한다. 단, 담당의사는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A) 캘리포니아 법률에 따라 약물을 조제하도록 허가를 받았다.
 - (B) 미국 마약단속국(DEA)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C) 관련된 모든 행정규칙 및 규정을 준수한다.

(2) 적절한 개인의 서면 동의 하에 약사에게 연락해 처방전을 알리고, 개인, 담당의사 또는 서면이나 구두로 약사에게 전달된 적절한 개인의 대리인에게 약물을 조제해줄 약사에게 직접 처방전을 전달하거나 우편으로 송달한다.

(c) 조제된 약물을 적절한 개인, 담당의사 또는 적절한 개인이 지정한 대리인에게 전달할 때는 직접 전달하거나 송달 시 필요한 서명을 한 후 UPS(유나이티드 파셀 서비스), 미국우정공사(United States Postal Service), 페덱스(FedEx), 또는 메신저 서비스(messenger service)를 통해 송달한다.

(Amended by Stats. 2021, Ch. 542, Sec. 4. (SB 380) 2022년 1월 1일 발효. 제443.215조에 따라 2031년 1월 1일부로 폐지.)

443.6.

적격한 개인이 담당의사에게서 조력사망약물을 얻기 전에 자문의사는 다음 사항을 모두 이행해야 한다.

(a) 개인을 진찰하고 개인의 관련 의료기록을 검토한다.

(b) 담당의사의 진단과 예후를 서면으로 확인한다.

(c) 개인이 의료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고, 자발적으로 행동하며, 신중한 결정을 내렸음을 확인한다.

(d) 정신장애의 징후가 있다면 정신건강 전문가 평가를 의뢰해야 한다.

(e) 본 법률에서 요하는 기록 문서화를 이행한다.

(f) 담당의사에게 준수 양식을 제출한다.

(Stats. 2015, 2nd Ex. Sess., Ch. 1, Sec. 1. (AB 15 2x)에 의해 추가. 2016년 6월 9일부로 발효. 제443.215조에 따라 2031년 1월 1일부로 폐지.)

443.7.

본 법률에 따라 담당의사 또는 자문의사의 의뢰를 받은 정신건강 전문가는 다음을 이행해야 한다.

(a) 적절한 개인을 진찰하고 개인의 관련 의료기록을 검토한다.

(b) 개인이 의료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고, 자발적으로 행동하며, 신중한 결정을 내리는지 확인한다.

(c) 개인이 정신장애로 인한 판단 저하가 없는지 판단한다.

(d) 본 법률에서 요하는 기록 문서화 요건을 이행한다.

(Stats. 2015, 2nd Ex. Sess., Ch. 1, Sec. 1. (AB 15 2x)에 의해 추가. 2016년 6월 9일부로 발효. 제443.215조에 따라 2031년 1월 1일부로 폐지.)

443.8.

개인의 의료기록에는 다음 사항이 모두 문서화되어야 한다.

(a) 조력사망약물에 대한 모든 구두 요청.

(b) 조력사망약물에 대한 모든 서면 요청.

(c) 담당의사의 진단과 예후, 적절한 개인이 의료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고 자발적으로 행동하며 신중한 결정을 내렸다는 판단, 또는 개인이 적절한 개인이 아니라는 담당의사의 판단.

(d) 자문의사의 진단과 예후, 적절한 개인이 의료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고 자발적으로 행동하며 신중한 결정을 내렸다는 확인, 또는 개인이 적절한 개인이 아니라는 자문의사의 판단.

(e) 정신건강 전문가 평가가 진행된 경우, 평가 기간 동안 결과와 판단에 대한 보고서.

(f) 적절한 개인의 두 번째 구두 요청 시 언제든지 자신의 요청을 취소 및 철회할 수 있다는 담당의사의 제안 사실.

(g) 제443.5조와 제443.6조에 따른 모든 요건을 충족하였고, 처방한 조력사망약물의 표기를 포함해 요청을 이행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나타내는 담당의사의 기록.

(Stats. 2015, 2nd Ex. Sess., Ch. 1, Sec. 1. (AB 15 2x)에 의해 추가. 2016년 6월 9일부로 발효. 제443.215조에 따라 2031년 1월 1일부로 폐지.)

443.9.

(a) 담당의사는 조력사망약물 처방전을 작성하고 30일 이내에 적격 환자의 서면 요청서 사본, 담당의사의 체크리스트와 규정 준수 양식, 자문의사 준수 양식을 주 보건부에 제출해야 한다.

(b) 30일 이내에 조력사망약물 복용 또는 기타 사유로 적절한 개인이 사망하고 나면 담당의사는 주 보건부에 담당의사 후속조치 양식을 제출해야 한다.

(Stats. 2015, 2nd Ex. Sess., Ch. 1, Sec. 1. (AB 15 2x)에 의해 추가. 2016년 6월 9일부로 발효. 제443.215조에 따라 2031년 1월 1일부로 폐지.)

443.10.

적격한 개인은 신중한 결정을 내리지 않는 한 본 법률에 따라 조력사망약물 처방전을 수령하지 못한다. 본 법률에 따라 조력사망약물 처방전을 쓰기 직전에 담당의사는 개인이 신중한 결정을 내리는지 확인해야 한다.

(Stats. 2015, 2nd Ex. Sess., Ch. 1, Sec. 1. (AB 15 2x)에 의해 추가. 2016년 6월 9일부로 발효. 제443.215조에 따라 2031년 1월 1일부로 폐지.)

443.11.

(a) 본 법률에서 허가하는 조력사망약물 요청서는 다음의 양식을 따른다.

인간적이고 존엄적인 방법으로 생명을 종결시키기 위한 조력사망약물 요청서

본인 은 건전한 정신을 가진 성인으로
캘리포니아 주에 거주하고 있다.

본인은 를 앓고 있고, 담당의사로부터 말기질환 판정을 받았으며, 이에 대해
의학적 확진을 받았다.

본인은 진단내용과 예후, 처방될 조력사망약물의 특성 및 관련된 잠재적 위험성, 예상되는
결과, 임종돌봄(comfort care), 호스피스 의료, 완화의료, 통증완화를 포함해 실행 가능한
대체치료 및 추가 치료법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

본인은 인간적이고 존엄적인 방법으로 스스로 삶을 종결시킬 조력사망약물을 처방해줄
것을 담당의사에게 요청하는 바이며, 담당의사가 본인의 요청에 대해 약사에게 연락하는
것을 승인하는 바이다.

해당사항 표시:

..... 본인은 본인의 결정을 1명 이상의 가족에게 알렸고 가족의 의견을 심사숙고하였다.

..... 본인은 가족에게 본인의 결정을 알리지 않기로 하였다.

..... 본인은 본인의 결정을 알릴 가족이 없다.

본인은 본 요청을 언제든지 철회할 권리가 있음을 알고 있다.

본인은 본 요청서의 전체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처방된 조력사망약물을 복용 시 사망에 이를 것을 예상한다. 본인의 담당의사는 약물을 복용하는 즉시 사망에 이르지 않을 수 있음을 조언하였다.

본인은 망설임이나 어떠한 강요도 없이 자의적으로 요청한다.

서명:.....

날짜:.....

증인 선서

우리는 증인으로서 본 요청서에 서명한 자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선언한다.

- (a)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거나 신분증명을 제공하였다.
- (b) 우리의 입회하에 본 요청서에 자발적으로 서명하였다.
- (c) 건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으로서 강압, 기만 또는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았다.
- (d) 우리 중 누구도 개인의 담당의사, 자문의사, 정신건강 전문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인 1/날짜

.....증인 2/날짜

주의사항: 증인 중 적어도 1명은 본 요청서에 서명하는 자의 친척(혈연, 결혼, 등록된 동거 관계, 또는 입양에 의한 친척관계), 개인의 사망 시 개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가 아니어야 한다. 증인 중 적어도 1명은 개인이 환자로 있거나 거주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소유주, 운영자, 직원이 아니어야 한다.

- (b) (1) 서면 요청서 언어는 환자와 담당의사 및 자문의사 간에 이루어진 대화나 상담 또는 통역된 대화나 상담과 동일한 언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 (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면 요청서 영문 양식에 위증에 대한 불이익을 감수하고 서명한 통역사의 진술이 첨부되어 있는 경우, 영어 외 언어로 대화나 상담 또는 통역된 대화나 상담을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서면 요청서를 영문으로 작성할 수 있다. 통역사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작성한다.

본인 (통역사 이름 기입)은/는 영어와 (목표어)를 유창하게 구사한다.

본인은 (날짜) 의 (시간) 무렵에 “생명을 종결시키기 위한 조력사망약물 요청서”를 (목표어)로 (개인/환자 성명)에게 읽어주었다.

Mr./Ms./Mx. (환자/적격한 개인 성명)는 본 양식의 내용을 온전히 이해하였음을 본인에게 확인하였고, 자력으로 본 양식에 서명하겠음을 밝혔으며, 양식에 서명 요청 이후 담당의사 및 자문의사와 상담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본인은 영어와 (목표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고, 위증에 대한 불이익을 감수하고 상기 내용이 정확한 사실임을 선언하는 바이다.

(연)(월)(일)에 (시, 군, 구)에서 작성함.

X_____ 통역사 서명

X_____ 통역사 자필 성명

X_____ 통역사 주소

(3) 제(2)호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역사는 적격한 개인과 혈연, 결혼, 등록된 동거 관계, 입양에 의해 관계되어 있거나, 개인이 사망시 개인의 재산 일부를 상속받을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2)호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역사는 캘리포니아 의료통역협회(California Healthcare Interpreting Association) 또는 국가의료통역위원회(National Council on Interpreting in Health Care)에서 공포한 기준 또는 캘리포니아 보건부(department for health care providers)에서 허용 가능하다고 간주하는 기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Stats. 2021, Ch. 542, Sec. 5. (SB 380)에 의해 개정. 2022년 1월 1일 발효. 제443.215조에 따라 2031년 1월 1일부로 폐지.)

443.12.

(a) 2016년 1월 1일부로 작성된 서면 및 구두 계약서, 유언장 및 기타 약정서의 조항이 조력사망약물에 대한 개인의 요청, 취소 및 철회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경우 해당 조항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b) 2016년 1월 1일부로 작성된 계약서로 인해 발생하는 의무는 적격한 개인이 조력사망약물을 요청, 취소 및 철회하는 행위를 조건으로 할 수 없으며 그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Stats. 2015, 2nd Ex. Sess., Ch. 1, Sec. 1. (AB 15 2x)에 의해 추가. 2016년 6월 9일부로 발효. 제443.215조에 따라 2031년 1월 1일부로 폐지.)

443.13.

(a) (1) 생명보험, 건강보험 및 연금보험 약관, 의료서비스 계약 및 의료보험의 판매, 조달 및 발행, 또는 모든 보험 약관이나 보험 계약에 부과되는 요율은 조력사망약물을 요청하거나 철회하는 개인의 행위를 조건으로 할 수 없으며 그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2) 제443.18조에 따라 조력사망약물의 자가 투여로 인한 사망은 자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토대로 하여 의료 및 건강보험 혜택을 면제받을 수 없다.

(b) 다른 법률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개인이 조력사망약물을 자가 투여하는 행위는 기저질환으로 인한 자연사 이외에 생명보험, 건강보험 및 연금보험 약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c) 보험사는 개인과의 소통 중에 개인의 요청 또는 개인의 지시에 따라 담당의사의 요청이 없이는 조력사망약물의 이용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어떠한 소통에서도 조력사망약물 보장의 이용 가능성과 관련된 정보 및 치료 거부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본 항에서 사용되는 “보험사(insurance carrier)”란 본 법률의 제1345조에 정의된 의료서비스 계약 또는 보험법(Insurance Code) 제106조에 정의된 건강보험업자를 의미한다.

(Stats. 2015, 2nd Ex. Sess., Ch. 1, Sec. 1. (AB 15 2x)에 의해 추가. 2016년 6월 9일부로 발효. 제443.215조에 따라 2031년 1월 1일부로 폐지.)

443.14.

(a) 다른 법률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개인이 처방된 조력사망약물을 자가 투여할 때 입회하였다는 이유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민형사상 책임이 없이 입회한 자는 적절한 개인이 조력사망약물을 복용하는 것을 돕지 않는 한 조력사망약물을 준비하여 적절한 개인을 지원할 수 있다.

(b) 의료진, 의료기관 및 전문가 조직이나 협회는 제(e)항에 따라 본 법률 준수에 신의성실하게 참여하거나 참여를 거부한 자에 대하여 견책, 징계, 자격정지, 자격 박탈, 특권 박탈, 회원자격 박탈 및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가할 수 없다.

(c) 다른 법률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진 및 의료기관은 본 법률에 따라 참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민사, 형사, 행정, 징계, 채용, 자격 수여, 전문적 훈련, 계약 책임, 의료

직원 조치, 제재, 처벌 및 기타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본항은 제443.15조, 제443.16조, 제443.17조의 적용을 제한하거나 면책하지 아니한다.

(d) (1) 적절한 개인이 신의성실하게 본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여 조력사망약물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하는 행위만으로는 법정후견인이나 성년후견인을 지명해야 할 사유가 될 수 없다.

(2) 본 법률에 의거한 행위는 어떠한 법률적 목적이든 방치 또는 노인 학대 주장의 근거를 구성하거나 제시하지 아니한다.

(e) (1) 본 법률에 따른 참여는 자발적이어야 한다. 제442조 내지 제442.7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양심, 도덕성 또는 윤리를 이유로 참여하지 않기로 선택한 개인 및 기관은 본 법률에 따라 참여하도록 요구되지 아니한다. 본 항은 본 항의 제(2)호, 제(4)호, 제(5)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443.15조의 제(b)항, 제(i)항 또는 제(j)항의 적용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동 조항의 미준수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2) 양심, 도덕성 및 윤리를 사유로 본 법률에 따라 참여를 반대하는 의료진에게 참여를 요구할 수 없다. 의료진이 제443.15조제(f)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본 법률에 따라 참여를 할 수 없거나 참여를 원하지 않는 경우, 의료제공자는 임종선택법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개인에게 통지하고, 개인의 요청일과 개인에게 보낸 참여 거부 의사 통지를 개인의 의료기록에 문서화한 후 개인이 요청 시 관련된 의료기록을 송부한다.

(3) 의료진 및 의료기관은 제443.15조제(f)항제(2)호에 정의된 바와 같이 본 법률에 따라 참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민사, 형사, 행정, 징계, 채용, 자격 수여, 전문적 훈련, 계약 책임, 의료 직원 조치, 제재, 처벌 및 기타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4) 의료진이 본 법률에 따라 적절한 개인의 요청을 이행할 수 없거나 이행을 원치 않아 적절한 개인이 다른 의료진에게 이송될 경우, 개인의 관련 의료기록을 개인에게 제공해야 하고, 법률에 따라 개인이 요청 시 개인의 조력사망약물 처방 요청일이 문서화된 의료기록과 함께 적시에 송부해야 한다.

(5) 의료진 또는 의료기관은 본 법률에 따라 개인에게 자격을 부여하거나 적절한 개인에게 처방전을 제공하려는 의향과 관련해 거짓이거나(false)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misleading) 기만적인(deceptive) 의료관행에 관여해서는 아니된다.

(Stats. 2021, Ch. 542, Sec. 6. (SB 380)에 의해 개정. 2022년 1월 1일 발효. 제443.215조에 따라 2031년 1월 1일부로 폐지.)

443.15.

(a) 제(b)항을 전제로 할 때, 법률상 달리 규정한다 하더라도, 의료기관은 자신이 소유하거나, 경영 또는 직접 관리하거나, 고용 및 계약 과정과 범위 내에서 행위하는 경우, 자체 의료진을 포함해 그 직원, 독립 계약자, 제3자 및 제3기관이 자신의 의료지역 내에서 본 법률에 따라 참여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b) 의료기관은 고용 시 또는 다른 소속에게 최초 통지를 하고 나면 매년 본 법률과 관련된 방침을 개인 및 단체에게 통지해야 한다. 본 항의 규정을 준수하여 개인 및 단체에게 통지를 하지 못하는 기관은 해당 개인 및 단체에게 그러한 방침을 이행할 자격이 없다. 본 항의 목적을 위해, 조력사망약물과 관련된 기관의 현 방침을 기관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공개하는 것은 매년 통지 요건을 충족한다.

(c) 제(b)항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료기관은 본 방침을 위반하는 개인 및 기관에게 경우에 따라 다음 사항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특권 박탈, 회원자격 박탈 및 의료직원에 대한 내규나 규칙 및 규정에서 허가하는 기타 조치.

(2) 자격정지, 고용손실 및 의료기관 방침과 관행에서 허가하는 기타 조치.

(3) 의료기관과 방침을 위반한 개인 및 기관 간에 임대 또는 다른 계약의 종료.

(4) 의료기관과 방침을 위반한 개인 및 기관 간에 체결된 임대 또는 다른 계약에 부수하는 비금전적 구제수단(nonmonetary remedies) 중단.

(d) 본조의 내용은 의료진, 직원, 독립 계약자, 제3자 및 제3기관에게 다음 사항을 금지하거나 허용하지 아니한다.

(1) 의료기관이 소유하거나 경영 또는 직접 관리하지 않는 의료지역 내에서 또는 의료기관의 직원 및 독립 계약자로서 참가자의 업무수행 과정과 범위에서 벗어나 본 법률에 따라 참여하거나 참여하기로 계약하는 행위.

(2) 의료기관이 소유하거나 경영 또는 직접 관리하지 않는 의료지역 내에서 담당의사 또는 자문의사로서 본 법률에 따라 참여하거나 참여하기로 계약하는 행위.

(e) 제(c)항에 따라 조치를 취함에 있어 의료기관은 내규, 방침 및 절차, 해당하는 경우 방침을 위반한 개인 및 기관과의 계약에서 요구하는 모든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f) 본 법률의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통지(Notice)”란 본 법률에 따른 참여와 관련해 의료기관 방침을 서면으로 권고하는 별도의 진술이다.

(2) “본 법률에 따라 참여하거나 참여하기로 계약하는 것(Participating, or entering into an agreement to participate, under this part)”이란 다음 사항 중 하나 이상을 이행하거나 이행하기로 계약하는 것을 의미한다.

- (A) 제443.5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담당의사의 의무를 이행하는 행위.
- (B) 제443.6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자문의사의 의무를 이행하는 행위.
- (C) 한 정신건강 전문가에게 의뢰한 상황에서 그 의무를 이행하는 행위.
- (D) 제443.5조제(b)항제(2)호와 제443.2조제(c)항에 따라 조력사망약물 처방전을 전달하거나, 조제하거나, 조제된 약물을 전달하는 행위.
- (E) 적절한 개인이 본 법률에 따라 처방된 조력사망약물을 복용할 때 입회하는 행위.

(3) “본 법률에 따라 참여하거나 참여하기로 계약하는 것”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거나 이행하기로 계약하는 것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A) 환자가 말기질환을 앓고 있는지 진단하거나, 의학적 예후를 환자에게 통지하거나, 환자가 의료 의사결정을 내릴 능력이 있는지 판단하는 행위.
- (B) 본 법률에 대한 정보를 환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C) 환자의 요청 시 본 법률에 따른 참여를 목적으로 하여 다른 의료진에게 환자를 의뢰하는 행위.

(g) 본조에 따라 의료기관이 행하는 조치는 비즈니스 및 직업법(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제800조 내지 제809.9조에 의거하여 보고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의료진이 본 법률에 따라 참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비즈니스 및 직업법 제800조 내지 제809.9조에 의거하여 비전문적인 또는 불명예스러운 행위로 항의 및 보고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h) 본 법은 의료진이 본 법률에 따라 참여를 구성하지 않는 의료서비스를 개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하지 아니한다.

(i) 각 의료기관은 조력사망약물과 관련된 기관의 현 방침을 기관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공개해야 한다.

(j) 의료기관은 임종 돌봄 서비스에 대한 기관 방침과 관련해 거짓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기만적인 관행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본 법률에 따라 강압적이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한다.

(Stats. 2021, Ch. 542, Sec. 7. (SB 380)에 의해 개정. 2022년 1월 1일 발효. 제443.215조에 따라 2031년 1월 1일부로 폐지.)

443.16.

(a) 의료진은 다음을 사유로 제재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1) 진료 표준에 따라 개인이 말기질환을 앓고 있다는 초기 진단을 내리고 의학적 예후를 환자에게 알리는 행위.
- (2) 개인이 요청 시 캘리포니아 임종선택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3) 개인이 요청 시 다른 의사에게 의뢰하는 행위.

(b) 제443.15조에 따라 본 법률에 의거한 활동을 금지하는 의료진은 개인 의료제공자가 제재 의료진의 직원 또는 독립 계약자로서 업무수행 과정과 범위에서 벗어나 행동하는 경우, 본 법률에서 허가하는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적절한 개인과 계약한 개인 의료제공자에게 제재를 가할 수 없다.

(c) 본조에서 달리 규정한다 하더라도, 의료진의 제재에 대한 면책과 금지조항은 본 법률에 따라 이행한 의료진의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본 법률에서 달리 규정한다 하더라도, 의료진은 본 법을 신의성실하게 준수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해 비전문적인 행위를 구성하는 행동 및 행위에 대해 자격관리위원회 및 단체로부터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Stats. 2015, 2nd Ex. Sess., Ch. 1, Sec. 1. (AB 15 2x)에 의해 추가. 2016년 6월 9일부로 발효. 제443.215조에 따라 2031년 1월 1일부로 폐지.)

443.17.

(a) 개인의 사망을 초래하려는 의도나 목적으로 개인의 허락 없이 개인의 생명을 종결시키기 위해 조력사망약물 요청서를 고의로 변경 또는 위조하거나 조력사망약물 요청서의 취소 및 철회를 파기하는 행위는 중죄 처벌 대상이 된다.

(b) 개인의 생명을 종결시키려는 목적으로 조력사망약물을 요청 또는 복용하거나, 요청서를 취소 및 철회하거나, 개인에게 고지하지 않고 허가 없이 개인에게 조력사망약물을 투여하도록 고의로 강압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중죄 처벌 대상이 된다.

(c) 본조의 목적을 위해, “고의로(knowingly)”란 형법전(Penal Code) 제7조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d) 담당의사, 자문의사 또는 정신건강 전문가는 개인과 혈연, 결혼, 등록된 동거 관계, 입양에 의해 관계되어 있거나, 개인이 사망시 개인의 재산 일부를 상속받을 자가 아니어야 한다.

(e) 본조의 내용은 본 법률에서 별도로 허가하는 개인, 의료진 및 의료기관의 행위를 이행하면서 태만 행위 또는 고의적 위법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민사적 책임이나 피해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f) 본조에 규정된 처벌은 본 법률의 조항들과 일치하지 않는 행동에 대해 다른 법률에 의거하여 적용되는 형사처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Stats. 2021, Ch. 542, Sec. 8. (SB 380)에 의해 개정. 2022년 1월 1일 발효. 제443.215조에 따라 2031년 1월 1일부로 폐지.)

443.18.

본 법률의 어떠한 조항도 의사나 제3자에게 치명적인 약물주사(lethal injection)나 안락사(mercy killing) 또는 적극적 안락시술을 통해 개인의 생명을 종결시키는 행위를 인가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아니한다. 본 법률에 의거한 행위는 어떠한 목적이든 법률상 자살, 조력자살, 살인 또는 노인 학대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Stats. 2015, 2nd Ex. Sess., Ch. 1, Sec. 1. (AB 15 2x)에 의해 추가. 2016년 6월 9일부로 발효. 제443.215조에 따라 2031년 1월 1일부로 폐지.)

443.19.

(a) 주 보건부는 제443.9조에 따라 제출된 정보를 수집 및 검토해야 한다. 수집한 정보는 기밀로 유지하고 환자와 가족, 본 법률의 조항에 따라 환자와 관계가 있는 의료 제공자 또는 약사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수집해야 한다. 해당 정보는 민사, 형사, 행정 및 기타 소송에서 공개되거나 발견되거나 생산을 강요받지 아니한다.

(b) 보건부는 2017년 7월까지, 이후로는 매년 전년도에 수집한 정보를 기반으로 담당의사 후속조치 양식으로부터 수집한 정보로 보고서를 생성하여 보건부 인터넷 웹사이트에 실어야 한다. 보고서는 보건부에 제공된 정보와 보건부의 주요 통계자료 접근성에 관한 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다음 사항을 모두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한다.

- (1) 조력사망약물 처방이 작성된 사람의 수.
- (2) 조력사망약물 처방전을 작성하여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는 연간 개인의 수와 각 개인의 사망 원인.
- (3) 2016년 1월 1일부터 전년도까지 작성된 조력사망약물 누적 처방전 수, 조력사망약물 사용으로 사망한 누적 인원, 사망 당시 호스피스 또는 기타 완화의료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사망한 누적 인원.

(4) 캘리포니아에서 사망자 10,000명당 조력사망약물을 이용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사망자 수.

(5) 조력사망약물 처방전을 작성한 의사 수.

(6) 조력사망약물 사용으로 사망한 사람들 중 다음 특성별로 구성된 인구 통계학적 비율.

(A) 사망 시 연령.

(B) 교육 수준.

(C) 인종.

(D) 성별.

(E) 보험 가입 유무를 비롯해 보험 종류.

(F) 기저질환.

(c) 주 보건부는 제443.22조에 설명된 바와 같이 담당의사 체크리스트와 규정 준수 양식, 자문의사 규정 준수 양식, 담당의사 후속조치 양식을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재하여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Stats. 2015, 2nd Ex. Sess., Ch. 1, Sec. 1. (AB 15 2x)에 의해 추가. 2016년 6월 9일부로 발효. 제443.215조에 따라 2031년 1월 1일부로 폐지.)

443.20.

환자의 사망 이후 본 법률에 따라 처방된 미사용 통제물질법을 소지 또는 관리하는 자는 미사용 조력사망약물 파기를 위해 가장 가까운 곳에서 통제물질을 적절하게 파기하는 적절한 시설로 개인적으로 전달해야 하고, 그러한 시설이 없는 경우 캘리포니아 주 약사 협회(California State Board of Pharmacy)에서 공포한 지침서 또는 미 연방 마약단속국에서 승인한 처방약 회수 프로그램(take-back program)에 따라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 파기해야 한다.

(Stats. 2015, 2nd Ex. Sess., Ch. 1, Sec. 1. (AB 15 2x)에 의해 추가. 2016년 6월 9일부로 발효. 제443.215조에 따라 2031년 1월 1일부로 폐지.)

443.21.

본 법률의 조항에 따라서 공공장소에서 생명을 종결시키는 자로 인하여 정부기관에 비용이 발생한 경우, 정부기관은 그러한 요청을 이행하는 데에 든 비용과 합리적인

변호사비용을 해당 환자의 상속재산에 대해 청구한다.

(Stats. 2015, 2nd Ex. Sess., Ch. 1, Sec. 1. (AB 15 2x)에 의해 추가. 2016년 6월 9일부로 발효. 제443.215조에 따라 2031년 1월 1일부로 폐지.)

443.215.

본 법은 2031년 1월 1일까지만 효력이 발생하고 해당일로부터 폐지된다.

(Stats. 2021, Ch. 542, Sec. 10. (SB 380)에 의해 폐지 및 추가. 2022년 1월 1일 발효. 2031년 1월 1일부로 폐지됨. 주: 이러한 폐지는 제443조 내지 제443.22조로 구성된 제1.85장에 영향을 미친다.)

443.22.

(a) 캘리포니아 의료이사회는 제(b)항에서 제공하는 바에 따라 담당의사 체크리스트와 규정 준수 양식, 자문의사 규정 준수 양식, 담당의사 후속조치 양식을 업데이트할 수 있다. 완료 시 주 보건부는 업데이트된 양식을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재해야 한다.

(b) 본 조에 따라 캘리포니아 의료이사회가 업데이트할 때까지 담당의사 체크리스트와 규정 준수 양식, 자문의사 규정 준수 양식, 담당의사 후속조치 양식은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불완전한 내용에 대한 주의사항:

의사 규정 준수 및 후속조치 양식은 발행된 법(chaptered bill)에 수록되어 있다. See Sec. 1 of Chapter 1 (pp. 18-25), 2nd Ex. Session, Statutes of 2015.

(Stats. 2015, 2nd Ex. Sess., Ch. 1, Sec. 1. (AB 15 2x)에 의해 추가. 2016년 6월 9일부로 발효. 제443.215조에 따라 2031년 1월 1일부로 폐지됨. 주: 조항의 전체 내용은 발행된 법안을 참조한다. 의사의 규정 준수 양식은 제1장의 18-25 페이지에 표시된다(2nd Ex.).)

미국 컬럼비아 특별구

Death with Dignity Act of 2016

2024.12.1. 기준 법령을 번역함

컬럼비아 특별구 의회

통지

D.C. 법령 21-182 “2016 존엄사법”

컬럼비아 특별구 자치법 제412조(a), P.L. 93-198 (현장)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컬럼비아 특별구 의회는 2016년 11월 1일에 제1독회, 2016년 11월 15일에 제2독회를 진행하여 법안 21-38을 채택하였다. 현장 제404조(e)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19일 시장의 서명 이후 법안은 법률 21-577이 되었고, D.C. 등록부(Register)의 2016년 12월 23일 개정판에 발간되었다(제63권 15697 페이지). 법률 21-577은 자치법(Home Rule Act)의 제602조(c)(1)에 따라 30일 간 검토를 위해 2017년 1월 6일 의회로 전달되었다.

컬럼비아 특별구 의회는 30일 의회 검토 기간이 종료되었고, 법률 21-577은 2017년 2월 18일부로 발효되어 현재 D.C. 법령 21-182에 해당함을 알리는 바이다.

의회장 Phil Mendelson Chairman

법률

D.C. 법령 21-577

컬럼비아 특별구 의회

2016년 12월 19일

인간적이고 평화롭게 죽기를 원하는 적격환자에게 대상 의약품의 요청 및 조제에 관한 절차와 요구사항을 제공하고, 담당의사와 자문의사의 의무를 정의하고, 환자에게 상담과 가족에게 통지를 제공하고, 신중한 결정과 대기기간을 요구하고, 보건부로부터 보고를 요구하고, 계약, 유언장, 보험 및 연금 정책에 법률이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면책과 법적 책임과 예외를 설명하고, 의료진을 위한 배제 조항을 제공하고, 적격환자가 공공장소에서 대상 의약품을 투여할 경우 적격환자의 재산을 상대로 특별구 정부에 발생하는 비용의 청구에 대해 설명하며, 형사 처벌을 규정한다.

컬럼비아 특별구 의회에서 제정하는 이 법은 “2016 존엄사법”으로 칭한다.

제2조. 정의

본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사용된다.

(1) “담당의사(Attending physician)”란 1982년 2월 25일부로 발효된 1981 자연사법(D.C. Law 4-69; D.C. Official Code § 7-621(1))제2조(1)에 제공된 바와 같은 의미를 지닌다. 다만, 담당의사의 진료는 대상 의약품의 요청하는 환자를 주 대상으로 하거나 그러한 환자로서만 구성되어서는 아니 된다.

(2) “의사능력이 있는(Capable)”이란 법원이나 환자의 담당의사, 자문의사, 정신과의사 또는 심리학자의 견해로 볼 때 환자가 의료서비스와 관련된 결정을 내리고 의료제공자에게 본인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의미한다.

(3) “자문의사(Consulting physician)”란 환자의 질병과 관련해 전문적 진단을 내리고 예후를 판단할 수 있는 전문성이나 경험을 토대로 자격을 갖추고 있고, 본 법안에 따라 적격환자에 대해 대상 의약품 제공에 참여할 의지가 있는 의사를 의미한다.

(4) “상담(Counseling)”이란 환자가 의사능력이 있고, 판단장애를 유발하는

III.2

정신과적 및 심리학적 장애나 우울증을 앓지 않는지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컬럼비아 특별구에서 면허를 받은 정신과의사나 심리학자와 환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하는 한 차례 이상의 상담을 의미한다.

(5) “대상 의약품(Covered medication)”이란 인간적이고 평화로운 방식으로 개인의 생명을 종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본 법에 따라 규정한 의약품을 의미한다.

(6) “부(Department)”란 보건부를 의미한다.

(7) “요양시설(Health care facility)”이란 병원 또는 장기요양시설을 의미한다.

(8) “의료진(Health care provider)”이란 컬럼비아 특별구 법률에 따라 허가, 면허, 기타 권한을 부여받아 일상적인 업무로 또는 전문직 수행의 일환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의약품을 조제하는 사람, 조합, 법인, 시설 및 기관을 의미한다.

(9) “병원(Hospital)”이란 1984년 2월 24일부로 발효된 1983 의료와 지역거주시설, 호스피스 및 재택 간호 면허법(Health-Care and Community Residence Facility, Hospice and Home Care Licensure Act of 1983)의 제2조(1)에 정의된 바와 같다((D.C. Law 5-48; D.C. Official Code § 44-501(1)).

(10) “신중한 결정(Informed decision)”이란 적격환자가 관련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담당의사로부터 다음의 사항을 충분히 설명받은 후에 대상 의약품에 대한 처방을 요청하여 얻고자 하는 결정을 의미한다.

(A) 환자의 의학적 진단

(B) 환자의 예후

(C) 대상 의약품 복용과 관련된 잠재적 위험성

(D) 대상 의약품 복용의 예상 결과

(E) 임종돌봄(comfort care), 호스피스 의료, 통증완화를 포함하여 대상 의약품 대신 복용하는 실행 가능한 대안.

(11) “장기요양시설(Long-term care facility)”이란 1984년 2월 24일부로 발효된 의료와 지역거주시설, 호스피스 및 재택 간호 면허법의 제2조(3) 내지 (4)에 각각 정의된 요양원 및 지역 거주 시설(D.C. Law 5-48), 또는 2000년 6월 24일부로 발효된 Assisted Living Residence Regulatory Act의 제201조(4)에 정의된 생활 지원 거주지를 말한다(D.C. Law 13-127; D.C. Official Code § 44-102.01(4)).

(12) “의학적 확진(Medically confirmed)”이란 담당의사가 내린 의학적 소견에 대해 자문의사가 환자 및 그에 대한 제반의료기록을 검토한 후 이를 확인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13) “환자(Patient)”란 컬럼비아 특별구에 거주하며 의사의 진료를 받는 18세

이상의 사람을 의미한다.

(14) “의사(Physician)”란 1982년 2월 25일부로 발효된 1981 자연사법 제2조(4)에 제공된 바와 같은 의미를 지닌다(D.C. Law 4-69; D.C. Official Code § 7-621(4)).

(15) “적격환자(Qualified patient)”란 다음의 환자를 의미한다.

(A) 의사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B) 대상 의약품 처방을 얻기 위해 본 법의 요건을 충족한다.

(16) “말기질환(Terminal disease)”이란 치유가 불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것으로 확진받은 질환으로서, 합리적인 의학적 판단에 기초할 때 6개월 이내에 사망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질환을 의미한다.

제3조. 대상 의약품 요청

(a) 환자는 다음과 같이 대상 의약품을 요청한다.

(1) 담당의사에게 15일 이상 간격을 두고 2회의 구두 요청을 한다.

(2) 환자가 2번째 구두 요청을 하기 전에, 그리고 대상 의약품을 처방 및 조제하기 최소 48시간 전까지 환자는 서명하고 날짜를 기입한 서면 요청서를 담당의사에게 제출한다.

(b) (1) 본조 제(a)항(2)에 따라 작성된 서면 요청서는 환자가 입회한 자리에서 최소 2명의 사람이 목격해야 하고, 두 사람의 증인이 알고 믿고 있는 내에서 환자에게 의사능력이 있고, 자발적으로 행동하며, 요청서에 서명하도록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한다.

(2) 본조 제(a)항(2)에 따라 서면 요청이 이루어진 시점에 환자가 장기요양시설의 환자라면, 증인 중 1명은 보건부 규정에 명시된 자격을 갖춘 시설에서 지정한 개인이어야 한다.

(3) 증인 중 한 명은 다음에 해당해서는 안 된다.

(A) 혈연, 결혼 또는 입양으로 인한 환자의 친척

(B) 요청서 서명 당시 환자의 유언이나 법의 집행에 따라 적격환자의 사망 상속지분을 가지는 자

(C) 적격환자가 치료를 받고 있거나 거주 중인 의료시설 소유자, 운영자 또는 직원

(4) 요청 당시 환자의 담당의사는 증인이 될 수 없다.

(c) 본조 제(a)항(2)에 따라 작성된 서면 요청은 실질적으로 다음 형식을 지닌다.

인간적이고 평화롭게 생명을 종결시키기 위한 의약품 요청서

본인 _____ 은/는 건전한 정신을 가진 성인이다.

본인은 _____ 를 앓고 있고, 담당의사로부터 말기질환 판정을 받았으며, 이에 대해 자문의사의 의학적 확진을 받았다.

본인은 진단내용, 처방될 약물의 특성 및 관련된 잠재적 위험성, 예상되는 결과, 임종돌봄(comfort care), 호스피스 의료, 통증완화 등의 실행 가능한 대안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

본인은 담당의사에게 본인의 생명을 인간적이고 평화롭게 종결시킬 수 있는 의약품을 처방해줄 것을 요청한다.

해당사항 표시:

[] 본인은 본인의 결정을 가족에게 알렸고 가족의 의견을 심사숙고하였다.

[] 본인은 가족에게 본인의 결정을 알리지 않기로 하였다.

[] 본인은 본인의 결정을 알릴 가족이 없다.

본인은 본 요청을 언제든지 철회할 권리가 있음을 알고 있다.

본인은 본 요청서의 전체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처방된 의약품을 복용 시 사망에 이를 것을 예상한다. 본인은 대부분의 사망이 처방된 의약품 복용 후 3시간 이내에 발생하지만, 본인의 경우 더 오래 걸릴 수 있으며 담당의사가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 이미 조언하였음을 이해한다.

본인은 자의적으로 망설임 없이 본 요청서를 제출하는 바이며, 본인의 행동에 모든 도덕적 책임을 받아들인다.

서명:

날짜:

증인 선언:

우리는 증인으로서 본 요청서에 서명한 자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선언한다.

- (a)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거나 신분증명을 제공하였다.
- (b) 우리의 입회하에 본 요청서에 서명하였다.
- (c) 건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으로서 강압, 기만 또는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았다.
- (d) 우리가 담당의사로 담당하는 환자가 아니다.

날짜:

증인 1:

주소:

증인 1 서명:

날짜:

증인 2:

주소:

증인 2 서명:

주의사항: 증인 중 적어도 1명은 본 요청서에 서명한 자의 친척(혈연, 결혼, 입양에 의한 친척관계), 환자의 사망시 환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 환자가 치료를 받거나 거주하고 있는 의료시설의 소유자, 운영자 또는 직원이 아니어야 한다. 환자가 장기요양시설의 환자인 경우, 증인 중 1명은 해당 시설에서 지명한 사람이어야 한다.

제4조. 담당의사의 책임

(a) 제3조(a)(2)에 따라 대상 의약품에 대한 서면 요청을 수령 시 담당의사는 다음을 이행한다.

- (1) 환자가 다음에 해당함을 결정한다.
 - (A) 만기질환을 앓고 있다.
 - (B) 의사능력이 있다.
 - (C) 자발적으로 요청을 하였다.
 - (D) 컬럼비아 특별구의 거주자이다.
- (2) 환자에게 다음 사항을 알린다.
 - (A) 환자의 의학적 진단
 - (B) 환자의 예후
 - (C) 대상 의약품 복용과 관련된 잠재적 위험성
 - (D) 대상 의약품 복용의 예상 결과
 - (E) 임종돌봄(comfort care), 호스피스 의료, 통증완화를 포함하여 대상 의약품 복용을 대신하는 실행 가능한 대안
- (3) 환자를 자문의사에게 의뢰한다.
- (4) 제5조에 따라 적절한 경우 환자가 상담을 받도록 의뢰한다.

III.6

(5) 환자에게 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 정서적 스트레스를 다루기 위한 상담 지원이 제공될 수 있음을 알려준다.

(6) 해당되는 경우 환자가 친족, 친구 및 영적 조언자에게 대상 의약품을 요청하기로 한 결정을 알리도록 권고한다.

(7) 환자가 대상 의약품 복용할 때 제3자가 현장에 입회하고 공공장소에서 대상 의약품 복용하지 말아야 하는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설명한다.

(8) 환자에게 대상 의약품에 대한 요청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든 철회할 기회가 있음을 알린다.

(9) 대상 의약품에 대한 처방을 내리기 직전에 환자가 신중한 결정을 내리고 있는지 확인한다.

(10) 제7조의 의료기록 문서화 요건을 충족한다.

(b) 자문의사가 본조 제(a)(3)항에 따라 담당의사로부터 환자를 의뢰받은 경우, 자문의사는 다음을 이행한다.

(1) 환자를 진찰하고 환자의 관련 의료기록을 검토하여 해당 환자가 말기질환을 앓고 있다는 담당의사의 진단을 서면으로 확인한다.

(2) 담당의사에게 서면으로 환자가 다음 사항에 해당함을 확인한다.

(A) 의사능력이 있고,

(B) 자발적으로 행동하고 있고,

(C) 신중한 결정을 내렸다.

(3) 제5조에 따라 적절한 경우 환자가 상담을 받도록 의뢰한다.

제5조. 상담의뢰

(a) 담당의사나 자문의사의 소견으로 환자가 판단장애를 유발하는 정신과적 또는 심리학적 장애나 우울증을 겪고 있다고 판단한다면 환자가 상담을 받도록 의뢰해야 한다.

(b) 환자가 상담을 받고 상담을 하는 정신과의사나 심리학자가 환자가 판단장애를 유발하는 정신과적 및 심리학적 장애나 우울증을 앓고 있지 않다고 판단할 때까지 대상 의약품은 처방하지 아니한다.

제6조. 대상 의약품 조제 및 보고 요건

(a) 담당의사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상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조제할 수 없다.

- (1) 환자가 제3조 및 제5조(해당되는 경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2) 담당의사가 제4조 및 제5조(해당되는 경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3) 담당의사가 대상 의약품의 처방하거나 조제하기 직전에 환자에게 대상 의약품에 대한 요청을 취소할 기회를 제공한 경우.

(b) 담당의사는 본조의 제(a)항에 제공된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확인하고 나면 다음을 수행할 수 있다.

(1) 환자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조 약물을 포함하여 대상 의약품을 적격환자에게 직접 조제한다. 다만, 담당의사는 1981년 8월 5일부로 발효된 1981 컬럼비아 특별구 통합통제물질법(Uniform Controlled Substances Act)에 따라 그러한 권한이 있고, 미국연방규정집 제21편 제1301.35조에 따라 발행된 현행 마약단속국 인증서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2) 또는 적격환자가 제3조(c)에 규정된 양식을 작성한 후 담당의사는 다음을 수행한다.

(A) 약사에게 연락하여 대상 의약품의 처방을 알린다

(B) 대상 의약품에 대한 서면 처방전을 약사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전화, 팩스 또는 전자 방식으로 전달한다.

(c) 본조 제(b)항(2)에 따라 담당의사로부터 대상 의약품에 대한 서면 처방전을 수령한 약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상 의약품을 제조할 수 있다.

(A) 환자 당사자

(B) 환자의 담당의사

(C) 또는 적격환자가 지정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지정하여 약사에게 전달한 신원이 명확히 확인된 대리인.

(d) 약사는 본조 제(c)항에 따라 대상 의약품을 조제하는 즉시 담당의사에게 대상 의약품이 조제되었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e) 의료진이 대상 의약품을 조제한 후 30일 이내에 담당의사는 제7조에서 요구하는 정보의 사본을 보건부에서 작성한 양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f) 환자가 대상 의약품을 복용한 후 30일 이내 또는 의료진이 대상 의약품 복용으로 인해 환자의 사망을 인지하고 가능한 한 빨리 해당 환자의 사망을 보건부에 고지해야 한다.

(g) 법률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담당의사는 환자의 사망증명서에 서명할 수 있다.

(h)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 원인은 적격환자가 대상 의약품을 복용했다는 사실과 상관없이 국제질병분류에 따라 해당 환자의 기저질환을 확인해야 한다.

(i) (1) 수석법의관실은 대상 의약품을 복용하는 적격환자와 관련된 사망을 각각

III.8

검토하고, 검토 결과 정당한 것으로 나타날 경우 조사를 수행한다.

(2) 본항 제(1)호에서 요구되는 검토는 1981년 10월 8일부로 발효된 1981 주요 기록법(Vital Records Act)의 제12조의 목적을 위한 조사를 구성하지 아니한다(D.C. Law 4-34; D.C. Official Code§ 7-211). 단, 본항 제(1)호에서 승인된 조사는 1981년 10월 8일부로 발효된 1981 주요 기록법(Vital Records Act)의 목적을 위한 문의로 이루어진다(D.C. Law 4-34; D.C. Official Code§ 7-211).

제7조. 의료기록 문서화 요건

(a) 담당의사는 대상 의약품에 요청하는 환자의 의료기록을 다음과 같이 문서화하고 제출해야 한다.

- (1) 대상 의약품에 대한 환자의 모든 구두 요청
- (2) 대상 의약품에 대한 환자의 모든 서면 요청
- (3) 담당의사의 다음과 같은 자료
 - (A) 환자의 진단 및 예후
 - (B) 환자가 컬럼비아 특별구에 거주하고, 의사능력이 있으며, 자발적으로 행동하고, 대상 의약품에 요청 시 신중한 결정을 내렸다는 판단
 - (C) 환자가 두 번째 구두 요청을 하기 전에 환자에게 대상 의약품에 대한 요청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언
 - (D) 본 법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표기
 - (E) 처방된 대상 의약품의 표기를 포함하여 대상 의약품에 대한 환자의 요청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모든 단계에 관한 표기
- (4) 자문의사의 다음과 같은 자료
 - (A) 환자의 진단 및 예후
 - (B) 환자가 의사능력이 있고, 자발적으로 행동하며, 대상 의약품에 요청 시 신중한 결정을 내렸다는 확인
- (5) 제5조에 따라 환자의 상담을 의뢰한 경우, 정신과의사 또는 심리학자가 상담 도중 내린 결정 및 결과에 대한 보고서.

제8조. 보고 요건

(a) 본 법의 발효일로부터 1년 이후에 시작하여 매년 보건부는 데이터 수집 및 본 법의 준수를 목적으로 제7조 규정에 따라 유지되는 기록을 검토해야 한다.

(b) 보건부는 본조 제(a)항에 의거하여 수집한 정보에 대해 연간통계보고서를 작성하고 일반인에게 공개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 (1) 대상 의약품 처방이 작성된 적격환자의 수
- (2) 대상 의약품 처방전을 작성하여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는 연간 적격환자 사망자 수와 각 환자의 사망 원인
- (3) 특별구에서 대상 의약품을 이용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사망자 수
- (4) 대상 의약품 처방전을 작성한 의사 수
- (5) 대상 의약품의 사용으로 사망한 적격환자 중 다음 특성별로 구성된 인구 통계학적 비율
 - (A) 사망 연령
 - (B) 교육 수준(알고 있는 경우)
 - (C) 인종
 - (D) 성별
 - (E) 보험 가입 여부를 포함한 보험 유형(알고 있는 경우)
 - (F) 말기질환

제9조. 유언장 및 계약서 해석에 미치는 영향

(a) 본 법안의 발효일로부터 작성된 서면 및 구두 계약서, 유언장 및 기타 약정서의 조항이 개인의 대상 의약품을 요청 또는 철회할 것인지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경우 해당 조항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b) 본 법안의 발효일로부터 작성된 서면 및 구두 계약서, 유언장 및 기타 약정서에 따른 의무는 대상 의약품을 요청 또는 철회하는 자의 행위를 조건으로 할 수 없으며 그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10조. 보험 및 연금보험 약관

(a) 생명보험, 건강보험, 상해보험 및 연금보험 약관의 판매, 조달 및 발행, 고용 혜택, 또는 모든 약관에 부과되는 요율은 대상 의약품을 요청하거나 철회하는 적격환자의 행위를 조건으로 할 수 없다.

(b) 적격환자가 대상 의약품을 복용하는 행위는 생명보험, 건강보험, 상해보험 및 연금보험 약관, 또는 고용혜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c) 본조의 어떠한 내용도 사망수당 청구를 조사하는 보험회사나 연금회사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의료진 참여, 통지, 허용가능한 제재

(a) 어떠한 의료진도 본 법안, 계약서 또는 기타 방식으로 적격환자에게 대상 의약품을 제공하는 행위에 참여해야 할 의무는 없다.

(b) 의료진이 본 법안에 따라 대상 의약품에 대한 환자의 요청을 이행할 수 없거나 이행을 원치 않아 환자가 다른 의료진에게 이송될 경우, 이전 의료진은 환자의 요청에 따라 새로운 의료진에게 환자와 관련된 의료기록 사본을 송부해야 한다.

(c) 의료진은 자신이 고용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다른 의료진이 자신의 의료지역 내에서 본 법안에 따라 대상 의약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다만, 이를 금지하는 의료진은 직원 또는 계약자가 대상 의약품을 제공하기 전에 이러한 방침을 의료진에게 통지해야 한다.

(d) 제12조에도 불구하고, 대상 의약품이 제공되기 전에 제재(prohibiting) 의료진이 피제재(prohibited)의료진에게 본 법안에 따라 대상 의약품 제공을 금지한다고 고지하는 경우, 제재 의료진은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할 수 있다.

(1) 피제재 의료진이 제재 의료진의 직원이고 제재 의료진의 의료지역 내에서 본 법안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제재 의료진의 내규, 방침, 절차에 따라 특권 박탈, 회원자격 박탈 및 기타 제재를 가할 수 있다.

(2) 피제재 의료진이 제재 의료진의 요양시설이나 제재 의료진이 소유하거나 그의 직접적 지배권이 미치는 소유지 내에서 본 법안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 또는 기타 소유지와 관련된 계약을 해지하거나 임대차 계약에 부수하는 비금전적 구제수단(nonmonetary remedies)을 박탈할 수 있으나, 의료 직원 특권이 상실 및 제한되거나 의료진 명단에서 배제되지는 아니한다.

(3) 제재 의료진의 피고용인 또는 독립적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피제재 의료진의 업무수행 과정과 역량범위 내에서 본 법안에 따라 참여한 경우, 고용 계약을 종료하거나 계약상 보장되는 기타 비금전적 구제수단을 중단할 수 있다.

(4) 금지 의료진의 방침 및 관행에 따른 그 밖의 제재 및 처벌. 다만, 관련 조항 및 처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본 호에 따라 제재 또는 처벌이 부과되지 아니한다.

(e) 본조의 어떠한 내용도 다음 사항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아니한다.

(1) 의료진이 제재 의료진의 피고용인 또는 독립적인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업무수행 과정과 의무범위에서 벗어나 본 법안에 따라 참여하는 행위

(2) 환자가 제재 의료진의 피고용인 또는 독립 계약자로서 해당 의료진의 업무수행 과정과 의무 범위를 벗어나 행동하도록 담당의사 및 자문의사와 계약하는 행위

(3) 의료진이 환자가 말기질환을 앓고 있다는 초기 진단(initial determination)을 내리고 진단 결과를 환자에게 알려주는 행위;

(4) 의료진이 환자의 요청에 따라 본 법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5) 의료진이 환자의 요청에 따라 환자를 다른 의료진에게 의뢰하는 행위

(f) 1986년 3월 25일부로 발효된 1985 컬럼비아 특별구 보건직업 개정법(Health Occupations Revision Act) 제513조(a)(4)(c)에 따라 본조의 (d)항에 의거해 부과되는 제재는 보고할 수 없다.

제12조. 면책, 법적책임 및 예외

(a) 제11조에 언급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민형사상 책임이나 직무상 징계를 받지 아니한다.

(1) 본 법안의 준수에 신의성실하게 참여한 자

(2) 본 법안에 따라 대상 의약품을 제공하는 데에 참여하기를 거절한 자

또는

(3) 적격환자가 대상 의약품을 복용할 때 입회한 자.

(b) 본 법안의 어떠한 내용도 담당의사, 자문의사, 정신과의사, 심리학자 및 본 법안에 참여하는 기타 의료진에게 적용되는 의료 서비스 수준을 낮추는 것으로 해석하지 아니한다.

(c) 환자가 신의성실하게 본 법안의 규정을 준수하여 대상 의약품을 요청하였다는 행위만으로는 법정후견인이나 성년후견인을 지명해야 할 사유가 될 수 없다.

제13조. 발생 비용에 대한 컬럼비아 특별구 정부의 청구

공공 장소에서 본 법안에 따라 대상 의약품을 복용한 적격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컬럼비아 특별구 정부에 비용이 발생한 경우, 컬럼비아 특별구 정부는 요청을 집행하는 데에 든 비용과 합리적인 변호사비용을 해당 환자의 상속재산에 대해 청구한다.

제14조. 처벌

(a) 환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목적으로 대상 의약품 요청을 고의로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대상 의약품 요청철회서를 은닉 또는 손괴한 자는 A급 중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b) 환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목적으로 환자가 대상 의약품 처방을 요청하도록 또는 요청철회서를 손괴하도록 강요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자는 A급 중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제15조. 규칙

(a) 시장은 1968년 10월 21일 승인된 컬럼비아 특별구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 제1편(Title I)에 따라(82 Stat. 1204; D.C. Official Code § 2-501 *et seq.*) 다음을 위한 규칙을 제정해야 한다.

- (1) 제7조에서 요구하는 의료기록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양식을 개발하는 것
- (2) 제7조에서 요구하는 의료기록 정보 수집을 용이하게 하는 것
- (3) 미사용 대상 의약품의 반환 및 안전한 파기를 대비하는 것

(b) 시장은 1968년 10월 21일 승인된 컬럼비아 특별구 행정절차법 제1편에 따라(82 Stat. 1204; D.C. Official Code §2-501 *et seq.*) 다음 규칙을 포함해 본 법안의 조항들을 이행하기 위한 규칙을 제정해야 한다.

(1) 적격환자가 원할 경우 응급의료요원에게 대상 의약품의 복용 의사를 고지할 때 권장하는 방법을 명시한다.

(2) 대상 의약품 처방에 대한 모범관행을 포함하여 인간적이고 평화로운 방식으로 생명을 종결하길 희망하는 적격환자의 대상 의약품 사용에 대해 의학계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마련한다.

제16조. 해석

(a) 본 장의 어떠한 조항도 의사나 제3자에게 치명적인 약물주사(lethal injection)나 안락사(mercy killing), 적극적 안락사술 또는 본 법에서 승인하지 않은 기타 방법이나 약물로 환자의 생명을 종결시키는 행위를 승인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아니한다.

(b) 본 법에 따라 이행한 행위는 자살, 조력자살, 안락사 또는 살인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c) 본 법의 어떠한 조항도 적격환자가 공공장소에서 대상 의약품을 복용하는 행위를 승인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아니한다.

제17조. 정보자유법 면제

본 법안에 따라 보건부에서 수집한 정보는 공공 기록이 될 수 없고, 1977년 3월 25일 발효된 1976 정보자유법(D.C. Law 1-96; D.C. Official Code § 2-531 *et seq.*) 또는 기타 법률에 의거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없다.

제18조. 적용가능성

(a) 본 법안은 승인된 예산 및 재정 계획에 재정 효과를 포함시킨 날짜부터 적용된다.

(b) 재무 책임자는 승인된 예산 및 재정 계획에 재정 효과를 포함시킨 날짜를 인증하고, 의회의 예산 책임자에게 인증을 고지해야 한다.

(c) (1) 예산 책임자는 컬럼비아 특별구 등록부(District of Columbia Register)에 인증 통지를 발간해야 한다.

(2) 인증 고지 발행일은 본 법안의 적용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8조. 재정 영향 성명서

의회는 2006년 10월 6일 승인된 1975 일반 입법 절차법(General Legislative Procedures Act)의 제4a조에서 요하는 재정 영향 성명서로서 위원회 보고서에 재정 성명서를 채택한다(120 Stat. 2038; D.C. Official Code § 1-301.47a).

제19조. 발효일

본 법안은 시장의 승인 이후 발효되고(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거부권을 기각하는 의회의 조치 이후), 1973년 12월 24일 승인된 컬럼비아 특별구 자치법 제602조(c)(1)에 제공된 바와 같이 30일 간의 의회 검토를 시행하고 813; D.C. Official Code § 1-206.02(c)(1)), 컬럼비아 특별구 등록부(District of Columbia Register)에 발행해야 한다.

뉴멕시코

The Legislature of the New Mexico CHAPTER 132 End-of-Life Options Act or Elizabeth Whitefield End-of-Life Options Act

뉴멕시코 입법부, 55차 입법부, 1차 회의

2021 법률

132 장

법안 47, 개정

2024.12.1. 기준 법령을 번역함



발의자

대표 DEBORAH A. ARMSTRONG

대표 DAYAN HOCHMAN-VIGIL

상원 의원 ELIZABETH "LIZ" STEFANICS

상원 의원 BILL B. O'NEILL

대표 PATRICIA ROYBAL CABALLERO

의료 관련 법; 엘리자베스 화이트필드(Elizabeth Whitefield)의 임종선택법 제정; 조력사망약물과 관련된 권리, 절차 및 보호 조항을 정립하기 위해 NMSA 1978 제30장, 제2조 조항 개정; 보고 요건 정립; 엘리자베스 화이트필드 임종선택법에 따라 조력을 입증해야 할 형사적 책임 제거.

뉴멕시코주 입법부에서 제정

제1조. 약칭 -- 본 법률의 제1조 내지 제8조를 “임종선택법(End-of-Life Options Act)” 또는 “엘리자베스 화이트필드 임종선택법(Elizabeth Whitefield End-of-Life Options Act)”이라 칭한다.

제2조. 정의 -- 임종선택법에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의 의미로 사용된다.

- A. “성인(adult)”이란 뉴멕시코주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개인을 의미한다.
- B. “능력(capacity)”이란 개인이 중요한 혜택과 위험을 포함해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 선택권을 이해 및 인식하고, 신중하게 의료 결정을 내리고 전달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능력은 전문적 간호 표준과 NMSA 1978의 제24-7A-11조 조항에 따라서 판단해야 한다.
- C. “의료기관(health care entity)”이란, 멕시코시티주에서 어떠한 형태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면허를 받은 개인 외 기관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병원, 치료소, 호스피스 기관, 가정 보건 기관, 장기요양기관, 약국, 그룹 의료 기관, 메디컬 홈(medical home) 및 유사 단체가 포함된다.
- D. “의료진(health care provider)”이란 조력사망약물에 사용할 약물을 처방하도록 뉴멕시코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법에 따라 허가된 다음 개인들을 의미한다.
 - (1) 의료행위법(Medical Practice Act)에 따라 면허를 취득한 의사
 - (2) 정골의학법(Osteopathic Medicine Act)에 따라 면허를 취득한 정골의사
 - (3) 간호법(Nursing Practice Act)에 따라 고급 실무에 면허를 취득한 간호사, 또는
 - (4) 의사보조사법(Physician Assistant Act) 또는 정골의학법에 따라 면허를 취득한 의사
- E. “의료적 조력자살(medical aid in dying)”이란 의료진이 평화로운 사망을 초래하는 약물을 자가 투여할 수 있는 적절한 개인에게 약물을 처방하는 의료행위를 의미한다.

IV.2

F. “정신건강전문가(mental health professional)”란 멕시코시티주에서 허가한 정신과 의사, 석사급 사회복지사, 정신과 전담 간호사 또는 전문 임상 정신건강 상담사를 의미한다.

G. “처방 의료진(prescribing health care provider)”이란 조력사망약물을 처방하는 의료제공자를 의미한다.

H. “적격한 개인(qualified individual)”이란 임종선택법 제3조 요건을 충족한 개인을 의미한다.

I. “자가투여(self-administer)”란 약물을 능동적이고 의식적이며 자발적으로 복용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J. “말기질환(terminal illness)”이란 치유가 불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것으로 확진받은 질환으로서, 합리적인 의학적 판단에 기초할 때 6개월 이내에 사망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질환을 의미한다.

제3조. 조력사망약물 -- 처방 의료진의 판단 -- 양식. 처방 의료진은 다음 사항을 모두 이행한 후에만 개인에게 조력사망약물 처방전을 제공할 수 있다.

A. 개인이 다음 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 (1) 능력
- (2) 말기질환
- (3) 조력사망약물을 자발적으로 요청
- (4) 자가투여 능력

B. 허용되는 의학적 간호 표준에 따라 개인에게 의료를 제공한 경우

C. 개인과 다음 사항에 대해 논의 후 개인이 신중한 결정을 내린다고 판단한 경우

- (1) 개인의 의학적 진단과 예후
- (2) 개인이 의료진에게 처방을 요청한 조력사망약물을 자가 투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
- (3) 처방할 조력사망약물의 자가 투여로 발생할 수 있는 결과
- (4) 개인이 조력사망약물을 선택한 후 이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선택권
- (5) 실행가능한 대안, 동시 또는 추가적 치료 기회. 여기에는 증상 완화와 고통 감소에 집중한 호스피스 의료와 완화의료도 포함된다.

D. 개인의 요청이 타인의 강압이나 부당한 영향력으로 인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경우

E. 개인의 의료기록에서 개인에게 조력사망약물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처방 의료진의 판단을 확인한 경우

F. 개인의 의료기록에서 의료행위법 또는 정골의학법에 따라 면허를 취득한 의사 또는 정골의사 1명 이상이 개인을 적절하게 진료한 이후 개인에게 능력이 있고 말기질환을 앓고 있으며 조력사망약물을 자가 투여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의사는 본조의 조항에 따라 처방 의료진, 호스피스 의료제공자, 또는 본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의사가 될 수 있다.

G. 개인이 다음 사항을 충족함을 확인하였다.

- (1) 메디케어 인증 호스피스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거나,
- (2) 처방 의료진이 기저질환이 만성질환으로 발전한 환자를 진료한 경험이 있는 자문 의료진에게 개인을 의뢰한 후에 의료적 조력자살에 적격함을 확인하였고, 자문 의료진이 다음 사항을 이행하였다.
 - (a) 개인을 진찰하였다
 - (b) 개인과 관련된 의료기록을 검토하였다
 - (c) 개인이 만성질환으로 고통받는다라는 처방 의료진의 예후를 서면으로 확인하였다

H. 개인에게 실질적으로 다음 양식을 제공하고, 필요한 서명과 이니셜을 모두 기입하여 양식을 작성하고 나면 개인의 의료기록에 추가한다.

“평화롭게 생명을 종결시키기 위한 의약품 요청서”

본인 _____은/는 건전한 정신을 가진 성인이다.

본인은 치유가 불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다고 확진받은 말기질환, 합리적인 의학적 판단에 기초할 때 6개월 이내에 사망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질환 또는 상태로 고통 받고 있다. 본인의 의료진은 해당 질환이 말기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_____ (환자 이니셜)

본인 _____은/는 진단내용과 예후, 처방될 조력사망약물의 특성 및 관련된 잠재적 위험성, 예상되는 결과, 임종 돌봄(comfort care), 증상 완화와 통증 감소에 집중한 호스피스 의료 및 완화의료를 포함해 실행 가능한 대안적, 동시적 및 추가적인 치료 기회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

_____ (환자 이니셜)

본인은 자가 투여를 선택할 경우 평화롭게 스스로 생명을 종결시킬 약물을

처방하도록 의료진에게 요청하였고, 의료진이 이러한 요청을 이행할 의지가 있는 약사에게 연락하도록 허가하였다. _____ (환자 이니셜)

본인은 본 요청을 언제든지 철회할 권리가 있음을 알고 있다. _____ (환자 이니셜)

본인은 본 요청서의 전체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처방된 조력사망약물을 자가 투여 시 사망에 이를 것을 예상한다. 본인은 대부분의 사망이 처방된 의약품 복용 후 3시간 이내에 발생하지만, 본인의 경우 더 오래 걸릴 수 있음을 이해한다. 의료진은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 이미 조언하였다. _____ (환자 이니셜)

본인은 망설임 없이 자의적으로 이와 같이 요청한다.

서명: _____

날짜: _____ 시간: _____

증인 선서:

우리는 증인으로서 본 요청서에 서명한 자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선언한다.

1.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거나 신분증명을 제공하였다.
2. 우리의 입회하에 본 요청서에 서명하였다.
3. 건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으로서 강압, 기만 또는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았다.
4. 우리가 의료진으로 담당하는 환자가 아니다.

증인 1: _____ 증인 2: _____

서명: _____

자필 서명: _____

환자와의 관계: _____

날짜: _____

주의사항: 증인 중 적어도 1명은 본 요청서에 서명한 자와 혈연, 결혼 또는 입양 관계에 있지 않아야 한다. 증인 중 적어도 1명은 본 요청서에 서명한 자가 치료를 받거나 거주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소유주, 운영자 또는 직원이 아니어야 한다.

제4조. 결정 능력 -- 개인에게 최근에 생을 종결시키는 결정과 관련된 판단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정신장애 또는 지적장애 병력이 있거나, 처방 의료진 또는 자문 의료진 소견으로 현재 개인에게 생을 종결시키는 결정과 관련된 판단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정신장애 또는 지적장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시점까지 개인에게는 생을 종결시키는 결정을 내릴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 A. 의료진이 그러한 질환이나 장애가 있는 자를 평가하도록 훈련 받고 전문성을 겸비한 정신건강전문가에게 개인의 평가를 의뢰한다
- B. 정신건강전문가가 한 차례 이상 방문을 통해 개인을 평가한 이후 생을 종결시키는 결정을 내릴 능력이 있다고 판단한다

제5조. 대기기간 -- 조력사망약물 처방전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A. 조력사망약물이 처방된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약물을 조제할 수 없다. 다만, 적절한 개인의 처방 의료진이 합리적인 의학적 판단에 기초할 때 본 법률에 확인된 대기기간이 끝나기 전에 적절한 개인이 사망할 것이라고 의학적 확신을 내리는 경우, 처방 의료진은 임종선택법 제3조에 따라 모든 요건을 충족함을 확인하면 처방전을 작성할 수 있다.
- B. 조력사망약물 처방전의 작성 날짜와 시간을 명시하고, 동 약물을 처음으로 조제할 수 있는 날짜와 시간을 명시한다.

제6조. 의료적 조력자살 -- 알 권리. -- 의료진은 임종 간호에 대한 의료 표준을 충족하는 말기질환자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관련된 모든 합리적인 선택권에 대해 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7조. 면책 -- 양심에 기초한 결정.

- A. 개인은 다음 사항에 대해 면책된다.

다음 사항에 대한 법적 책임, 면허 제재, 또는 기타 직업적 징계 행위:

- (1) 임종선택법 조항을 신의성실하게 준수하여 의료적 조력자살에 참여하거나 참여 거부하는 행위, 또는
- (2) 임종선택법 조항에 따라 적격환자의 생명을 종결시키기 위해 처방된 조력사망약물을 적격환자가 자가 투여할 때 입회하는 행위.
- B. 의료기관, 전문가 조직 및 협회, 건강보험회사, 관리의료기관 또는 의료제공자는 임종선택법 조항을 신의성실하게 준수하여 의료적 조력자살에 참여하거나 참여를 거부한 것에 대하여 견책, 징계, 자격정지, 자격 박탈, 또는 면허증, 자격증, 특권, 회원자격의 거부, 또는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C. 양심의 이유로 의료적 조력자살에 참여를 반대하는 의료진은 어떤 경우에도 의료적 조력자살에 참여하도록 요구되지 아니한다. 의료진이 임종선택법에 따라 개인의 요청을

IV.6

이행할 수 없거나 이행을 원치 않을 경우, 해당 의료진은 그 사실을 개인에게 통지하고, 개인의 요청을 이행할 수 있고 이행할 의지가 있는 의료진 또는 요청하는 개인의 의료적 조력자살을 지원해줄 다른 개인 및 기관에게 개인을 의뢰해야 한다. 의료진이 새로운 의료진에게 개인의 돌봄을 이전할 경우, 이전 의료진은 요청에 따라 새로운 의료진에게 개인과 관련된 의료기록 사본을 송부해야 한다.

D. 의료기관의 의료지역 밖에서 임종선택법에 따라 조력사망약물을 제공하는 의료진이나, 의료기관과 고용 관계에 있는 의료진이 일반적인 업무수행 과정과 범위 내에서 행위하지 않을 경우, 이를 금지하거나 제재를 가하지 아니한다.

E. 의료기관은 의료적 조력자살에 참여를 금지하는 기관의 서면 방침을 의료진에게 서면 통지하고 의료진이 의료적 조력자살에 참여할 때만 제재 의료기관의 의료지역 내에서 의료적 조력자살에 참여한 의료진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다.

(1) 의료기관의 의료지역 내에서, 또는

(2)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진의 업무수행 과정과 범위 내에서.

F. 본조의 어떠한 내용도 다음 사항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아니한다.

(1) 의료진이 의료기관의 의료지역에서 벗어나거나 피고용인으로서 역량 과정과 범위에서 벗어나 행동하면서 의료적 조력자살에 참여하는 행위,

(2) 의료적 조력자살을 원하는 개인이 제재 의료기관에 소속된 자신의 처방 의료진 또는 자문 의료진의 업무수행 과정과 범위에서 벗어나 행동하도록 처방 의료진 또는 자문 의료진과 계약하는 행위.

G. 임종선택법에 따라 의료진에게 제재를 가하는 의료기관은 사실상 절차적으로 합리적인 행동을 취해야 하고, 독단적으로 또는 예측 불가하게 제재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H. 의료적 조력자살에 참여하는 행위만으로는 비전문적인 행위로 보고 의무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I. 의료적 조력자살을 금하는 의료기관은 기관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와 환자에게 제공되는 자료에서 적절한 위치에 이러한 정보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설명해야 하고, 의료기관은 기관에서 결정하는 용어로 환자에게 의료를 제공한다.

제8조. 금지 행위. 임종선택법의 어떠한 내용도 의사나 제3자에게 치명적인 약물주사(lethal injection)나 안락사(mercy killing) 또는 안락시술을 통해 개인의 생명을 종결시키는 행위를 인가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아니한다. 임종선택법 에 의거한

행위는 어떠한 목적이든 법률상 자살, 조력자살, 안락시술, 안락사, 살인 또는 노인 학대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제9조. 공중보건법(Public Health Act)의 새로운 조(section)는 다음과 같이 제정된다.

“보고--의료적 조력자살.--

A. 임종선택법 조항에 따라 적절한 개인에게 조력사망약물을 처방하는 의료진은 보건부 규칙에 따라 의료진 참여에 대한 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보건부는 본조에 따라 보고 시기와 양식을 정립하는 규칙을 채택 및 공포하고, 조력사망약물 처방전을 받은 적절한 개인과 관련된 자료 보고를 다음 사항으로 제한해야 한다.

- (1) 적절한 개인의 사망 시 연령
- (2) 적절한 개인의 인종과 민족성
- (3) 적절한 개인의 성별
- (4) 적절한 개인이 사망 시 호스피스에 등록되었는지 유무
- (5) 적절한 개인의 기저질환
- (6) 적절한 개인이 조력사망약물을 자가 투여하였는지 유무, 자가투여한 경우 자가투여 날짜.

B. 보건부는 당해 주에서 발급된 조력사망약물 처방 수와 조력사망약물 처방전을 발급한 의료진 수에 대해 본조의 제A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에 관해 종합 자료를 포함한 연간 통계 보고서를 공포해야 한다. 본항에 따라 보고된 자료에는 개인 건강 정보가 포함되어선 안 되며, 공공기록물검사법에 따라 공개가 면제된다.

C. 본조에 사용되는 아래의 용어는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 (1) “의료진(health care provider)”이란 조력사망약물을 처방하도록 임종선택법에 따라 허가된 개인을 의미한다.
- (2) “의료적 조력자살(medical aid in dying)”이란 의료진이 임종선택법 조항에 따라 평화로운 사망을 초래하는 약물을 자가 투여할 수 있는 적절한 개인에게 약물을 처방하는 의료행위를 의미한다.
- (3) “적절한 개인(qualified individual)”이란 임종선택법 조항에 따라 의료적 조력자살 요건을 충족한 개인을 의미한다.

IV.8

제10조. NMSA 1978의 제 30-2조(1963년 법률, 제303장, 제2-5조)가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30-2-4. 조력자살.--

A. 조력자살은 스스로 생명을 종결시키려는 자를 고의로 조력하는 것으로, 단, 스스로 생명을 종결시키려는 자를 조력하는 자가 임종선택법 조항에 따라 행위하는 자인 경우는 제외된다.

B. 조력자살을 행하는 자에게는 4급 범죄가 적용된다."

제11조. 분리조항.--

임종선택법의 일부 조항이 무효한 경우 나머지 조항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임종선택법의 일부 적용이 무효한 경우 다른 상황이나 사람에 대한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캐나다

Canada's medical assistance in dying (MAID) law

2024.12.1. 기준 법령을 번역함

캐나다 의료 조력 사망법 (MAID)

제8장

개인과 평판에 대한 범죄 (계속)

살인, 고살, 영아살해 (계속)

영아살해

233 한 여성이 고의적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해 신생아 자녀를 살해할 당시 자녀를 출산한 영향으로 인해 또는 자녀의 출산 이후 수유기 영향에서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여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에서 영아살해를 저지르는 경우 영아살해죄에 해당한다.

- R.S., c. C-34, s. 216

각주:고살

234 살인이나 영아살해에 해당하지 않는 과실 치사를 고살이라 한다.

- R.S., c. C-34, s. 217

각주: 살인에 대한 처벌

- 235(1) 1급 살인 또는 2급 살인을 저지르는 자는 중범죄가 성립되어 무기징역에 처한다.

- 각주:최소 형벌

(2) 제13장의 목적을 위해, 본절에서 규정하는 무기징역은 최소 형벌이다.

- R.S., c. C-34, s. 218
- 1973-74, c. 38, s. 3
- 1974-75-76, c. 105, s. 5

각주:고살

236 고살을 저지르는 자에게는 중범죄가 성립되어 다음과 같은 형에 처한다.

- (a) 범죄에 총기를 사용한 경우, 무기징역과 최소 4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 (b) 그 외의 경우, 무기징역에 처한다.
- R.S., 1985, c. C-46, s. 236
- 1995, c. 39, s. 142

각주:영아살해에 대한 처벌

237 영아살해를 저지르는 모든 여성은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

- (a) 중범죄가 성립되어 5년 이내의 징역에 처하거나,
- (b) 약식기소로 처분되는 범죄가 성립된다.
- R.S., 1985, c. C-46, s. 237
- [2019, c. 25, s. 79^{1\)}](#)

[기존 버전^{2\)}](#)

각주: 임신 중 태아 살해

- 238 (1) 출산 후에 영아를 살해하면 살인죄가 성립되고, 출산 전에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중범죄가 성립되어 무기징역에 처한다.
- 각주:구조
(2) 본절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산모의 생명을 구조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행한 행위로 인해 신생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R.S., c. C-34, s. 221

각주:살인 미수

- 239 (1) 어떤 방법으로든 살인을 시도한 자는 중범죄가 성립되어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
 - (a) 범죄에 제한된 총기 또는 금지된 총기를 사용하거나, 범죄조직에 유리하게 또는 유리한 방향으로 또는 범죄조직과 관련하여 저지른 범죄에 총기를 사용한 경우 무기징역에 처하고, 최소 형벌로 다음과 같은 징역에 처한다.
 - (i) 초범인 경우 징역 5년
 - (ii) 재범은 징역 7년
 - (a.1) 범죄에 총기를 사용한 경우, 무기징역과 최소 4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 (b) 그 외의 경우, 무기징역에 처한다.

1) <https://laws-lois.justice.gc.ca/eng/acts/C-46/page-36.html#1146611-1202012>

2) <https://laws-lois.justice.gc.ca/eng/acts/C-46/section-237-20030101.html>

- **각주:재범**

(2) 제(1)(a)호의 목적을 위해, 유죄 판결을 받은 자가 재범인지 판단하는 데에 있어 이전에 다음 사항 중 하나라도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면 해당 범죄는 이전 범죄(earlier offence)로 간주한다.

- (a) 본조에 의거한 범죄
- (b) 제85(1)항 또는 (2)항 또는 제244조 또는 제244.2조에 의거한 범죄, 또는
- (c) 범죄에 총기가 사용된 경우 제220조, 제236조, 제272조 내지 제273조, 제279(1)항 또는 제279.1조, 제344조 또는 제346조에 의거한 범죄.

하지만 해당하는 자가 구류 기간을 제외하고 이전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유죄 판결로 형을 선고 받은 날까지 10년이 경과한 경우 이전 범죄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 **각주:유죄 선고 순서**

(3) 제(2)항의 목적을 위해, 유일하게 고려해야 할 질문은 유죄 선고의 순서이며, 범죄를 저지른 순서 또는 범죄가 유죄 판결 전후 중 언제 발생하였는지는 고려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R.S., 1985, c. C-46, s. 239
- 1995, c. 39, s. 143
- 2008, c. 6, s. 16
- 2009, c. 22, s. 6

[기존 버전^{3\)}](#)

각주:살인 방조

240 살인을 방조한 자는 중범죄가 성립되어 무기징역에 처한다.

- R.S., c. C-34, s. 223

인신매매

각주:동의 없이 적출

3) <https://laws-lois.justice.gc.ca/eng/acts/C-46/section-239-20080501.html>

- 240.1 (1)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범죄가 성립된다.
 - (a) 장기가 적출된 자 또는 그를 대신해 승인하도록 합법적으로 인가된 자가 장기 적출에 적절한 설명 없이 동의하였거나 그러한 동의서 제공 여부와 관련해 무모하였음을 인지하면서도 자신 또는 타인의 신체에 이식할 장기를 취득한 자.
 - (b) 장기가 적출된 자 또는 그를 대신해 승인하도록 합법적으로 인가된 자가 장기 적출에 적절한 설명 없이 동의하였거나 그러한 동의서 제공 여부와 관련해 무모하였음을 인지하면서도 타인에게서 장기를 적출하거나, 이에 가담하거나, 이를 도모한 자, 또는
 - (c) 장기가 적출된 자 또는 그를 대신해 승인하도록 합법적으로 인가된 자가 장기 적출에 적절한 설명 없이 동의하였거나 그러한 동의서 제공 여부와 관련해 무모하였음을 인지하면서도 장기 적출자를 대신해 또는 장기 적출자의 지시로 또는 장기 적출자와 공동으로 타인의 신체로부터 장기 적출에 가담한 자.
- 각주:금융 거래

(2) 대가를 목적으로 취득하였거나 대가를 목적으로 취득한 것인지와 관련해 무모하였음을 인지하면서도 자신 또는 타인의 신체에 장기를 이식할 목적으로 타인의 신체에서 장기를 적출하거나, 이에 가담하거나, 이를 도모한 자는 모두 범죄가 성립된다.
- 각주:처벌

(3)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범죄가 성립되는 자는 모두 중범죄가 적용되어 최대 14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 [2022, c. 18, s. 2^{4\)}](#)

자살

각주:자살 상담 또는 조력

- 241 (1) 자살로 이어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중범죄가 성립되어 최대 14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 (a) 개인에게 자살로 사망하도록 상담하거나 자살로 사망하도록

4) <https://laws-lois.justice.gc.ca/eng/acts/C-46/page-36.html#1383242-1385697>

교사하는 경우, 또는

○ (b) 개인이 자살로 사망하도록 조력하는 경우.

• **각주:조력사망 면책**

(2) 어떠한 의사 또는 전담 간호사도 제241.2조에 따라 조력사망을 지원할 경우 제(1)호(b)에 따른 범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 **각주:의사를 지원하는 자에 대한 면책**

(3) 제241.2조에 따라 개인에게 조력사망을 제공하는 데에 있어 의사 또는 전담 간호사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행위하는 자는 제(1)호(b)에 따라 범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 **각주:약사에 대한 면책**

(4) 의사 또는 전담 간호사 외에 개인에게 약물을 조제하는 약사는 제241.2조에 따라 조력사망을 제공하는 데에 있어 의사의 서면 처방전에 따라 약물을 조제하는 경우 제(1)호(b)에 따라 범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 **각주:환자를 지원하는 자에 대한 면책**

(5) 제241.2조에 따라 조력사망에 대한 지원의 일환으로 개인에게 처방된 약물을 자가 투여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의 명시적인 요청에 따라 행위하는 자는 제(1)호(b)에 따라 범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 **각주:명료화**

(5.1) 명확성을 위해, 사회복지사, 심리학자, 정신과 의사, 치료사, 의사, 전담 간호사 및 기타 의료전문가는 합법적으로 개인에게 조력사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 범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 **각주:합리적이지만 잘못된 믿음**

(6) 명확성을 위해,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된 면책 조항은 면책 조항을 적용하는 자가 면책 요소에 대해 합리적이지만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을 때에도 적용된다.

• **각주:정의**

(7) 본조에서 **조력사망**, **의사**, **전담 간호사** 및 **약사**는 제241.1조의 의미와 동일하게 사용된다.

• R.S., 1985, c. C-46, s. 241

• R.S., 1985, c. 27 (1st Supp.), s. 7

- 2016, c. 3, s. 3

[기존 버전^{5\)}](#)

조력사망

각주:정의

241.1 본조와 제241.2조 내지 제241.4조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의가 적용된다.

조력사망(*medical assistance in dying*)이란 다음을 의미한다.

- (a) 의사 또는 전담 간호사가 개인의 요청에 따라 개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약물을 투여하는 행위, 또는
- (b) 의사 또는 전담 간호사가 개인의 요청에 따라 개인이 약물을 투여하여 사망에 이르도록 약물을 처방 또는 제공하는 행위. (*aide médicale à mourir*)

의사(*medical practitioner*)란 해당 지역법에 따라 의료 활동을 하도록 자격이 부여된 자를 의미한다. (*médecin*)

전담 간호사(*nurse practitioner*)란 지역법에 따라 전담 간호사 또는 그와 동등한 명칭으로 의료 활동을 하고, 독자적으로 진단을 내리고, 진단 검사를 지시 및 해석하고, 의약품을 처방하며, 환자를 치료하도록 자격이 부여된 자를 의미한다. (*infirmier praticien*)

약사(*pharmacist*)란 지역법에 따라 약물을 조제하도록 자격이 부여된 자를 의미한다. (*pharmacien*)

- 2016, c. 3, s. 3

각주:조력사망 적격성

- 241.2 (1) 개인은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 시 조력사망을 지원 받을 수 있다.
 - (a) 캐나다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보건 서비스에 적절한 경우, 또는 최소 거주 기간 또는 대기기간 동안 적절한 경우.
 - (b) 건강과 관련해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18세 이상 성인.
 - (c) 치유할 수 없는 극심한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 (d) 특히 외부 영향을 받지 않고 조력사망을 자발적으로 요청한 경우.
 - (e) 완화의료를 포함해 고통을 완화시킬 수 있는 수단에 대해 통지받은

5) <https://laws-lois.justice.gc.ca/eng/acts/C-46/page-36.html#1383242-1385697>

후에 정보를 바탕으로 조력사망을 지원 받기로 동의한 경우.

- **각주:치유할 수 없는 극심한 질병**

(2) 개인은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 시 치유할 수 없는 극심한 질병을 앓는 것으로 간주된다.

- (a) 치유할 수 없는 심각한 질환, 질병 또는 장애를 앓는 경우.
- (b) 신체적 능력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저하된 상태에 있는 경우.
- (c) 그러한 질병, 질환 및 장애나 그러한 신체적 능력의 저하로 인해 감내할 수 없는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고통을 야기하여 허용 가능한 상태에서 완화될 수 없는 경우.
- (d) [폐지됨, 2021, c. 2, s. 1]

- **각주:제외 조항**

(2.1) 제(2)호(a)의 목적을 위해, 정신질환은 질환, 질병 또는 장애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 **각주:보호조항 — 예측할 수 있는 자연사**

(3) 제(3.2)항을 전제로 하여, 의사 또는 전담 간호사가 타당하게 자연사가 예측되는 자에게 조력사망을 지원하기 전에 의사 또는 전담 간호사는 환자에게 남은 시간과 관련해 어떠한 예후도 없이 의학적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 다음을 이행해야 한다.

- (a) 개인이 제(1)항에 규정된 모든 기준을 충족한다는 소견을 보여야 한다.
- (b) 조력사망에 대한 개인의 요청이 다음을 충족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 (i) 개인 또는 제(4)항에 따라 타인이 서면 작성하고 서명한 후 날짜를 기입해야 한다.
 - (ii) 의사 또는 전담 간호사가 개인이 치유할 수 없는 극심한 질병을 앓고 있음을 개인에게 통지한 후 서명하고 날짜를 기입해야 한다.
- (c) 개인 또는 제(4)항에 따라 타인이 독립적 목격자의 입회 하에 요청서에 서명하고 날짜를 기입한 후 독립적 목격자가 요청서에 서명하고 날짜를 기입해야 한다.
- (d) 개인이 언제든지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의 요청을 취소할 수 있음을

통지 받도록 보장해야 한다.

- (e) 다른 의사 또는 전담 간호사가 개인이 제(1)항에 규정된 기준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하는 서면 소견서를 제공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 (f) 자신과 제(e)호에 언급된 다른 의사 또는 전담 간호사는 독립적이어야 한다.
- (g) 개인이 소통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들에게 제공되는 정보를 이해하고 자신의 결정을 전달하는 신뢰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 (h) 조력사망을 지원하기 직전에 개인에게 자신의 요청을 취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개인이 조력사망을 원한다는 동의를 표현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 (i) [폐지됨, 2021, c. 2, s. 1]

• 각주:보호조항 — 예측할 수 없는 자연사

(3.1) 의사 또는 전담 간호사가 자연사가 타당하게 예측되는 자에게 조력사망을 지원하기 전에 의사 또는 전담 간호사는 자신의 의학적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 다음을 이행해야 한다.

- (a) 개인이 제(1)항에 규정된 모든 기준을 충족한다는 소견을 보여야 한다.
- (b) 조력사망에 대한 개인의 요청이 다음을 충족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 (i) 개인 또는 제(4)항에 따라 타인이 서면 작성하고 서명한 후 날짜를 기입해야 한다.
 - (ii) 의사 또는 전담 간호사가 개인이 치유할 수 없는 극심한 질병을 앓고 있음을 개인에게 통지한 후 서명하고 날짜를 기입해야 한다.
- (c) 개인 또는 제(4)항에 따라 타인이 독립적 목격자의 입회 하에 요청서에 서명하고 날짜를 기입한 후 독립적 목격자가 요청서에 서명하고 날짜를 기입해야 한다.
- (d) 개인이 언제든지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의 요청을 취소할 수 있음을 통지 받도록 보장해야 한다.
- (e) 다른 의사 또는 전담 간호사가 개인이 제(1)항에 규정된 기준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하는 서면 소견서를 제공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 (e.1) 두 사람 모두 또는 제(e)호에서 언급하는 다른 의사 또는 전담 간호사가 개인의 고통을 야기하는 질병에 전문 지식이 없는 경우, 그들 또는 제(e)호에서 언급하는 다른 의사 또는 전담 간호사는 전문 지식을 가진 의사 또는 전담 간호사와 상담하여 그 결과를 공유해야 한다.
- (f) 자신과 제(e)호에 언급된 다른 의사 또는 전담 간호사는 독립적이어야 한다.
- (g) 개인에게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수단에 대해 통지해야 한다. 여기에는 상담 서비스, 정신건강 및 장애 지원 서비스, 완화의료 포함되고, 그러한 서비스 또는 돌봄을 제공하는 적절한 전문가와의 상담이 제공되어야 한다.
- (h) 그들과 제(e)호에서 언급한 의사 또는 전담 간호사가 개인의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단에 대해 개인과 의논하고, 그들과 제(e)호에서 언급한 의사 또는 전담 간호사가 개인이 그러한 수단을 진지하게 고려하였음을 동의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 (i) 본항에 따라 개인이 제(1)항에 규정된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최초 평가 시작일부터 그들에게 조력사망 지원이 제공된 날까지 최소 90일 간격을 두거나, 평가가 완료되고 그들과 제(e)호에 언급된 의사 또는 전담 간호사가 모두 개인이 조력사망에 동의할 수 있는 능력을 곧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을 보이는 경우, 최초 의사 또는 전담 간호사가 해당 상황에서 더 짧더라도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간을 두도록 보장한다.
- (j) 개인이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들에게 제공되는 정보를 이해하고 자신의 결정을 전달하는 신뢰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 (k) 조력사망을 지원하기 직전에 개인에게 자신의 요청을 취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개인이 조력사망을 받길 원한다는 동의를 표현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 각주:최종 동의 — 권리 포기

(3.2) 제(3)항의 목적을 위해, 의사 또는 전담 간호사는 제(3)호(h)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개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약물을 투여할 수 있다. 단,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a) 개인이 조력사망 지원에 동의할 능력을 상실하기 전에,
 - (i) 제(1)항에 규정된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제(3)항에 규정된 기타 모든 보호조항을 충족하고,
 - (ii) 의사 또는 전담 간호사가 명시된 날짜에 개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약물을 투여할 것이라고 의사 또는 전담 간호사와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 (iii) 의사 또는 전담 간호사에게서 합의서에 명시된 날짜 이전에 조력사망에 동의할 능력을 상실할 위험성에 대해 통지 받았고,
 - (iv) 합의서에 명시된 날짜 이전에 조력사망에 동의하는 능력을 상실할 경우 명시된 날짜 또는 그 전에 개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약물을 의사 또는 전담 간호사가 투여하기로 서면 합의서에서 동의한 경우.
- (b) 개인이 조력사망 지원에 동의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
- (c) 개인이 언어, 소리 또는 몸짓을 통해 약물 투여에 대한 거부 또는 저항을 보이지 않는 경우.
- (d) 합의서 조건에 따라 개인에게 약물을 투여하는 경우.
- 각주:확실성을 위해

(3.3) 확실성을 위해, 접촉에 대한 비자발적 언어, 소리 및 몸짓으로 이루어지는 응답은 제(3.2)호(c)의 목적에 합당한 거부 및 저항 표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각주:무효화된 사전 동의

(3.4) 개인이 제(3.2)항에 따라 언어, 소리 및 몸짓으로 약물 투여를 거절하거나 투여에 저항을 표현하는 경우, 조력사망은 제(3.2)항(a)(iv)에 따라 그들에게 제공된 동의를 근거로 하여 그들에게 더 이상 조력사망을 제공할 수 없다.
- 각주:사전 동의 — 자가투여

(3.5) 본조에 따라 사망에 이르도록 그들에게 제공된 약물의 자가투여 이후 개인이 조력사망에 동의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 의사 또는 전담 간호사는 다음 사항을 충족 시 해당 개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약물을 투여할 수 있다.

 - (a) 개인이 조력사망 지원에 동의할 능력을 상실하기 전에 그들과 의사 또는 전담 간호사가 서면 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단, 의사 또는 전담 간호사는 다음을 이행해야 한다.

- (i) 개인이 1차 약물을 자가 투여하는 시점에 입회해야 한다.
 - (ii) 1차 약물을 자가투여 후 개인이 조력사망에 동의할 능력을 상실하고 명시된 시간 이내에 사망하지 않을 경우 개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2차 약물을 투여해야 한다.
 - (b) 개인이 1차 약물을 자가투여 하였으나 합의서에 명시된 시간 이내에 사망하지 아니하고 조력사망에 동의할 능력을 상실하는 경우.
 - (c) 합의서 조건에 따라 개인에게 2차 약물을 투여하는 경우.
- **각주:서명 불능**
- (4) 조력사망 요청자가 요청서에 서명 및 날짜 기입을 하지 못하는 경우, 조력사망 요청의 특성을 이해하고 요청자의 유언에 따라 유산 수령인이거나 개인의 사망으로 인해 재정적 또는 기타 물질적 혜택을 수령하는 자가 아니라고 알고 있거나 믿는 18세 이상 성인이 개인을 대신해 개인의 서면 지시에 따라 개인의 입회 하에 요청서에 서명 및 날짜를 기입할 수 있다.
- **각주:독립적 목격자**
- (5) 조력사망약물 요청의 특징을 이해하는 18세 이상의 성인은 독립적 목격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단, 다음의 경우는 제외된다.
- (a) 요청자의 유언에 따라 유산 수령인 또는 개인의 사망으로 인해 어떠한 방식으로든 재정적 또는 기타 물질적 혜택을 수령하는 자임을 알고 있거나 믿는 경우,
 - (b) 요청자가 치료를 받는 의료시설 또는 거주 중인 시설의 소유주 또는 운영자인 경우,
 - (c) 요청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직접 관여하는 경우, 또는
 - (d) 요청자에게 직접 개인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
- **각주:예외**
- (5.1) 제(5)호(c)와 (d)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주요 직업으로 의료서비스 또는 개인 돌봄을 제공하고 조력사망 요청자에게 돌봄을 제공하도록 급여를 받는 자는 독립적 목격자 역할을 하도록 허용된다. 단, 다음의 경우는 제외된다.
- (a) 요청자에게 조력사망을 지원하게 될 의사 또는 전담 간호사,
 - (b) 경우에 따라 요청자와 관련해 제(3)호(e) 또는 제(3.1)호(e)에 따라 의견을 제공한 의사 또는 전담 간호사.

• 각주:독립성 — 의사 및 전담 간호사

(6) 조력사망을 제공하는 의사 또는 전담 간호사와 제(3)호(e) 또는 제(3.1)호(e)에 언급한 의견을 제공하는 의사 또는 전담 간호사는 다음 조건을 충족 시 독립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 (a) 다른 의사의 멘토가 아니고, 다른 의사의 업무를 감독해야 할 책임이 없는 경우,
- (b) 요청자의 유언에 따라 유산 수령인 또는 개인의 사망으로 인해 어떠한 방식으로든 요청과 관련된 서비스에 대해 표준 보상 이외에 재정적 또는 기타 물질적 혜택을 수령하는 자가 아니라고 알고 있거나 믿는 경우,
- (c) 다른 의사와 연관되어 있거나 그들의 객관성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요청자와 연관되어 있다고 알고 있거나 믿는 경우.

• 각주:타당한 지식, 돌봄 및 기술

(7) 조력사망에는 타당한 지식, 돌봄 및 기술이 제공되어야 하고, 현행 지방법, 규칙 및 기준에 따라야 한다.

• 각주:약사에게 통지

(8) 조력사망을 제공하는 데에 있어 조력사망 약물을 처방하거나 취득하는 의사 또는 전담 간호사는 약사가 약물을 조제하기 전에 해당 약물이 조력사망 목적으로 사용됨을 통지해야 한다.

• 각주:명료화

(9) 확실성을 위해, 본조의 어떠한 내용도 개인에게 조력사망을 제공하거나 지원하도록 강요하지 아니한다.

- 2016, c. 3, s. 3
- [2021, c. 2, s. 1^{6\)}](#)

[기존 버전^{7\)}](#)

6) <https://laws-lois.justice.gc.ca/eng/acts/C-46/page-36.html#1288122-1288471>

7) <https://laws-lois.justice.gc.ca/eng/acts/C-46/section-241.2-20160617.html>

호주 빅토리아주

Voluntary Assisted Dying Act 2017

2024.12.1. 기준 법령을 번역함

승인된 버전 No. 006 2017 자발적 조력사망법 No. 61 of 2017

2023년 9월 1일부로 개정판을 포함한 승인된 버전

빅토리아 의회는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장—예비

1. 목적

본 법률의 주 목적은 다음과 같다.

- (a) 자발적 조력사망 지원을 제공하고 규제하는 것
- (b) 자발적 조력사망 심사위원회를 설립하는 것
- (c) 1996 출생, 사망, 결혼 등록법, 2008 검시관법, 1981 의약품, 독극물 및 규제 약물법 및 기타 법률에 결과적 개정을 제출하는 것.

2. 개시

- (1) 제(2)항의 내용을 전제로 하여, 본 법률은 공포일 또는 수일 이내에 시행된다.
- (2) 본 법률 조항이 2019년 6월 19일 이전에 시행되지 않을 경우, 해당 일자에 시행된다.

3. 정의

- (1) 본 법률에 사용된 용어는 다음의 의미로 사용된다.

투여 요청(administration request)이란 제64조에 따라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의 투여 신청을 의미한다.

승인된 평가 교육(approved assessment training)이란 제114조에 따라 차관이 승인한 교육을 의미한다.

호주 의료종사자등록기관(Australian Health Practitioner Regulation Agency)이란 의료종사자규정국내법(Health Practitioner Regulation National Law)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호주 의료종사자등록기관을 의미한다.

위원회(Board)란 제92조에 따라 설립된 자발적 조력사망 심사위원회(Voluntary

Assisted Dying Review Board)를 의미한다.

경찰국장(Chief Commissioner of Police)이란 2013 빅토리아 경찰법에 사용된 경찰국장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

상담 평가(consulting assessment)란 상담의사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3장제4절에 따라 실시한 평가를 의미한다.

상담 평가 보고서 양식(consulting assessment report form)이란 제30조에 따라 별지 1의 양식 2에 맞춰 작성된 양식을 의미한다.

개인의 상담의사(consulting medical practitioner)란 개인에 대한 상담 평가 의뢰를 수락한 등록 의사(registered medical practitioner)를 의미한다.

담당자(contact person)란 제39조에 따라 지명된 자를 의미한다.

담당자 지명서 양식(contact person appointment form)이란 제40조에 따라 별지 1의 양식 4에 맞춰 작성된 양식을 의미한다.

개인에 대한 조정의사(co-ordinating medical practitioner)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a) 개인의 1차 요청을 수락한 등록 의사, 또는

(b) 제33조에 의거해 개인을 위해 조정의사 역할 이전을 수락한 상담의사

조정 의료인 투여 양식(co-ordinating medical practitioner administration form)이란 증인이 제65조에 따라, 그리고 조정의사가 제66조에 따라 별지 1의 양식 8에 맞춰 작성한 양식을 의미한다.

의사결정능력(decision-making capacity)이란 제4조에 규정된 의미로 사용된다.

개인 정보 또는 건강 정보와 관련해 **개인 정보가 제거된(de-identified)**이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개인 또는 합리적으로 파악 가능한 개인과 더 이상 관련되지 않은 개인 정보 및 건강 정보를 의미한다.

조제 약국(dispensing pharmacy)이란 약사가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을 판매 또는 공급하는 약국, 약국 사업체 또는 약제부를 의미한다.

개인의 동거 파트너(domestic partner)란 다음을 의미한다.

(a) 개인과 관계가 등록된 자, 또는

(b) 개인과 혼인관계에 있지 않으나, 같은 주거지에 거주 여부 및 성별과 상관 없이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의 물질적 이익을 위해 사적 또는 재정적 헌신과 가사적인 성격의 지원을 제공하는 커플 관계에 있는 자. 단, 개인에게 가사적 지원과 개인적 돌봄을 제공하는 자가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는 제외된다.

(i) 수수료 또는 보상을 위해 제공하는 자, 또는

- (ii) 타인을 대신하는 자, 또는 조직(정부, 정부기관, 법인, 자선 및 구호 조직).
- 의존 약물(drug of dependence)**이란 1981 의약품, 독극물 및 규제 약물법 제4조에 규정된 의미로 사용된다.
- 적격성 기준(eligibility criteria)**이란 제9조에 규정된 기준을 의미한다.
- 개인의 가족 구성원(family member)**이란 개인의 배우자 또는 동거 파트너, 부모, 형제, 자녀 및 손주를 의미한다.
- 최종 요청(final request)**이란 개인이 자신을 위해 조정의사에게 제37조에 의거하여 자발적 조력사망을 요청함을 의미한다.
- 최종 검토(final review)**란 조정의사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41조에 따라 실시하는 검토를 의미한다.
- 최종 검토 양식(final review form)**이란 제41조에 따라 별지 1의 양식 5에 맞춰 작성된 양식을 의미한다.
- 1차 평가(first assessment)**란 개인을 위해 조정의사가 제3장제3절에 따라 개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를 의미한다.
- 1차 평가 보고서 양식(first assessment report form)**이란 제21조에 따라 별지 1의 양식 1에 맞춰 작성된 양식을 의미한다.
- 1차 요청(first request)**이란 개인이 자신을 위해 등록 의사에게 제11조에 의거하여 자발적 조력사망을 요청함을 의미한다.
- 보건시설(health facility)**이란 2016 사전의료계획과 결정에 관한 법에 규정된 의미로 사용된다.
- 건강 정보(health information)**란 2001 건강기록법(Health Records Act)에 규정된 의미로 사용된다.
- 의료서비스(health service)**란 2016 건강 민원법(Health Complaints Act)에 규정된 의미로 사용된다.
- 식별 정보(identifying information)**란 신분이 명확하거나 타당하게 확인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건강 정보 및 개인 정보를 의미한다.
- 부적격 증인(ineligible witness)**이란 제35조(2)에 제공된 의미로 사용된다.
- 라벨링 표시(labelling statement)**란 제59조(1)에서 용기에 부착하도록 요하는 표시를 의미한다.
- 정신질환(mental illness)**이란 2022 정신건강웰빙법(Mental Health and Wellbeing Act)에 규정된 의미로 사용된다.

제3조(1)의 정신/질환 정의는
No.39/2002 제882조에 의해 개정

완화의료(palliative care)란 2016 사전의료계획과 결정에 관한 법에 규정된 의미로 사용된다.

개인 정보(personal information)란 2014 개인정보보호법(Privacy and Data Protection Act)에 규정된 의미로 사용된다.

약사(pharmacist)란 의료종사자규정국내법에 따라 약학 직업에서 일하도록 등록된 자를 의미하나, 단, 학생은 제외된다.

약국(pharmacy)이란 2010 약국규제법(Pharmacy Regulation Act)에 규정된 의미로 사용된다.

약국 사업체(pharmacy business)란 2010 약국규제법에 규정된 의미로 사용된다.

약제부(pharmacy department)란 2010 약국규제법에 규정된 의미로 사용된다.

독극물 및 규제약물(poisons or controlled substance)이란 1981 의약품, 독극물 및 규제 약물법 제4조에 규정된 의미로 사용된다.

독극물 규정(Poisons Code)이란 1981 의약품, 독극물 및 규제 약물법 제4조에 규정된 의미로 사용된다.

의료인 투여 허가증(practitioner administration permit)이란 제49조(2)(a)(ii)에 따라 발급된 허가증을 의미한다.

전문적 돌봄 서비스(professional care services)란 고용계약 또는 서비스 계약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되는 다음 사항을 의미한다.

- (a) 지원 또는 원조,
- (b) 특별 또는 개인적 돌봄,
- (c) 2006 장애법에 규정된 의미 내에서 장애 서비스,
- (d) 커먼웰스의 2013 국가장애보험제도(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 Act)의 의미 내에서 등록된 NDIS 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제3조(1)의 전문적 돌봄 서비스 정의는 No.19/2019 제275조에 의해 개정

정신과 의사(psychiatrist)란 의료종사자규정국내법에 의거해 정신과를 전문으로 한 의사로 등록된 자를 의미하나, 단, 학생은 제외된다.

등록된 의료종사자(registered health practitioner)란 보건 직종에 종사하도록 의료종사자규정국내법에 의거해 등록된 자를 의미하나, 단, 학생은 제외된다.

등록 담당자(Registrar)란 1996 출생, 사망, 결혼 등록법에 규정된 의미로 사용된다.

요청 및 평가 과정(request and assessment process)이란 제3장에 따라 개인에 대해 다음 사항을 이행함을 의미한다.

- (a) 1차 요청
- (b) 1차 평가
- (c) 상담 평가
- (d) 서면 선언서
- (e) 최종 요청
- (f) 담당자 지명
- (g) 최종 검토

차관(Secretary)이라 함은 보건인적서비스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의 2004 행정법(Public Administration Act)의 의미 내에서 부처 책임자를 의미한다.

자가 투여 허가증(self-administration permit)이란 제49조(2)(a)(i)에 따라 발급된 허가증을 의미한다.

특수 또는 개인 돌봄(special or personal care)이란 다음을 의미한다.

- (a)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지원
 - (i) 목욕, 샤워 또는 개인위생
 - (ii) 배변
 - (iii) 착탈의
 - (iv) 식사, 또는
- (b) 이동 문제가 있는 사람에 대한 지원, 또는
- (c) 이동 가능하나 어느 정도의 감독이나 지원이 필요한 자를 위한 지원, 또는
- (d) 의약품 복용 시 지원 또는 감독, 또는
- (e) 상당한 정서적 지원 제공

개인의 **배우자(spouse)**란 개인과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

공급(supply)이란 1981 의약품, 독극물 및 규제 약물법 제4조에 규정된 의미로 사용된다.

직업적으로 등록된 일반의(vocationally registered general practitioner)란 커먼웰스 1973 보건보험법에 규정된 의미로 사용된다.

자발적 조력사망(voluntary assisted dying)이란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의 투여를 의미하고, 그러한 투여와 합리적으로 관련된 단계를 포함한다.

자발적 조력사망 허가증(voluntary assisted dying permit)이란 다음 사항을 의미한다.

(a) 자가 투여 허가증, 또는

(b) 의료인 투여 허가증

자발적 조력사망약물(*voluntary assisted dying substance*)이란 개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자발적 조력사망 허가증에 명시된 독극물, 규제 약물 및 의존 약물을 의미한다.

자발적 조력사망약물 조제 양식(*voluntary assisted dying substance dispensing form*)이란 약사가 제60조에 따라 별지 1의 양식 6에 맞춰 작성한 양식을 의미한다.

자발적 조력사망약물 폐기 양식(*voluntary assisted dying substance disposal form*)이란 약사가 제66조에 따라 별지 1의 양식 7에 맞춰 작성한 양식을 의미한다.

서면 선언서(*written declaration*)란 제34조에 따라 별지 1의 양식 3에 맞춰 작성한 선언서를 의미한다.

(2) 제(1)항의 동거 파트너(*domestic partner*) 정의의 목적상,

(a) 등록된 관계(*registered relationship*)는 2008 관계법(*Relationships Act*)에 규정된 의미로 사용된다.

(b) 등록된 관계에 있지 않은 개인들이 서로의 동거 파트너에 해당하는지 유무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 관계의 모든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여기에는 경우에 따라 2008 관계법 제35조(2)에서 언급하는 사안도 하나 이상 포함한다.

(c) 개인과 같은 집에 산다고 해서 동거 파트너 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4. 의사결정능력의 의미

(1) 개인은 다음 사항을 충족 시 자발적 조력사망과 관련해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a) 자발적 조력사망 이용과 관련된 결정에 적절한 정보와 그러한 결정의 결과를 이해할 수 있다.

(b) 의사 결정에 필요한 범위까지 정보를 유지할 수 있다.

(c) 의사결정과정의 일환으로 그러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따져볼 수 있다.

(d) 언어, 몸짓 또는 기타 수단을 포함해 어떠한 방식으로든 개인의 결정과 그에 대한 개인의 관점 및 요구를 전달할 수 있다.

(2) 제(1)항의 목적상 개인은 이에 반하는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한 의사결정능력을 가진 것으로 가정한다.

(3) 제(1)항(a)의 목적상 개인은 수정된 언어(*modified language*), 시각 보조 자료(*visual aids*) 및 기타 수단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적절하게 제공된 정보의 설명을 이해할 경우, 결정과 관련된 정보를 이해한 것으로 간주한다.

- (4) 개인에게 의사결정능력이 있는지를 판단 시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a) 개인이 일부 결정은 내릴 수 있으나 그 외의 결정은 내리지 못할 수 있다.
 - (b) 개인에게 특정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영구적이 아니라 일시적일 수 있다.
 - (c) 다음 사항은 개인에게 의사결정능력이 없다는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 (i) 개인의 외모, 또는
 - (ii) 타인이 보기에 현명하지 못한 결정을 내렸다는 이유
 - (d) 개인이 실용적이고 적절한 지원을 받으면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경우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것이다.

예시

실용적이고 적절한 지원이란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a) 개인의 특별한 요구에 맞춤형 정보 또는 양식을 이용하는 것
 - (b) 개인이 자신의 결정을 전달하거나 전달하도록 지원하는 것
 - (c) 개인에게 추가 시간을 제공하고 개인과 문제를 논의하는 것
 - (d) 개인의 장애가 미치는 영향을 완화시키는 기술을 이용하는 것.
- (5) 개인이 본 법률의 목적에 맞는 의사결정능력이 있는지 평가하는 자는 개인의 의사결정능력을 최대한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시간과 환경에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합리적인 단계를 취해야 한다.

5. 원칙

- (1) 본 법률에 의거한 권한을 행사하거나 기능 또는 의무를 수행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
- (a) 모든 인간은 생명의 가치가 동일하다.
 - (b)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
 - (c) 개인은 자신의 의료에 대해 신중한 결정을 내리도록 지원 받을 권리가 있고, 임종 돌봄 및 완화의료를 비롯해 의료에 대한 정보를 개인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제공받아야 한다.
 - (d) 임종을 앞둔 모든 개인은 고통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을 극대화하기 위해 양질의 돌봄을 제공 받아야 한다.
 - (e) 개인과 개인의 의료종사자 간의 치료적 관계는 최대한 지원하고 유지해야 한다.
 - (f) 개인은 죽음과 사망에 대해 마음을 터놓고 의논하도록 장려되어야 하고, 개인의 선호도와 가치도 장려 및 증진시켜야 한다.

- (g) 개인은 의료종사자, 가족, 간병인 및 지역사회와 치료와 돌봄 선호도에 대해 지원받아야 한다.
 - (h) 개인은 치료와 돌봄에 대해 진심으로 선택할 자격이 있다.
 - (i) 학대 대상이 될 수 있는 개인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
 - (j) 의료종사자를 포함해 모든 개인은 자신의 문화, 신념, 가치 및 개인적 특성을 존중 받을 권리가 있다.
- (2) 제(1)항에서 본 법률에 의거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기능 또는 의무를 이행하는 자에는 VCAT가 포함된다.

6. 개인은 언제 자발적 조력사망 대상자가 될 수 있는가?

개인은 다음 사항을 충족 시 자발적 조력사망 대상자가 될 수 있다.

- (a) 개인이 1차 요청을 완료하였고,
- (b) 개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도움을 받아 자발적 조력사망 대상자로 적격하다고 평가되었고,
 - (i) 개인의 조정의사
 - (ii) 개인의 상담의사
- (c) 개인이 서면 선언서를 작성하였고,
- (d) 개인이 조정의사에게 최종 요청을 하였고,
- (e) 개인이 담당자를 지명하였고,
- (f) 조정의사가 본 법률에 따라 요청 및 평가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최종 검토 양식에 인증하였으며,
- (g) 개인이 자발적 조력사망의 대상이다.

7. 등록된 의료종사자의 양심적 반대

자발적 조력사망에 양심적으로 반대하는 등록된 의료종사자는 다음 사항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 (a) 자발적 조력사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b) 요청 및 평가 절차에 참여하는 행위
- (c) 자발적 조력사망 허가증을 신청하는 행위
- (d)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을 공급, 처방 및 투여하는 행위
- (e)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의 투여 시 입회하는 행위
- (f) 처방된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을 조제하는 행위.

8. 자발적 조력사망은 등록된 의료종사자가 시작해선 안 된다

- (1) 개인에게 의료서비스 또는 전문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록된 의료종사자는 개인에게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다음을 이행해선 안 된다.
 - (a) 사실상 자발적 조력사망에 대해 개인과 의논을 시작하는 행위, 또는
 - (b) 사실상 해당 개인에게 자발적 조력사망을 제안하는 행위.
- (2) 제(1)항의 어떠한 내용도 등록된 의료종사자가 개인의 요청에 따라 자발적 조력사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하지 아니한다.
- (3) 제(1)항에 위배되는 행위는 의료종사자규정국내법의 의미와 목적에서 의료전문직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제2장—자발적 조력사망 대상자의 기준

9. 자발적 조력사망 대상자의 적격성 기준

- (1) 개인이 자발적 조력사망 대상자로 적격하기 위해서는,
 - (a) 18세 이상 성인이어야 하고,
 - (b)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 (i) 호주 시민 또는 호주 영주권 취득자이고,
 - (ii) 빅토리아에 거주해야 하고,
 - (iii) 1차 요청 시 최소 12개월 이상 빅토리아에 거주한 상태여야 한다.
 - (c) 자발적 조력사망과 관련해 의사결정능력이 있어야 하고,
 - (d) 질병, 질환 및 의학적 상태를 진단받아야 하고,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i) 치유할 수 없는 상태이고,
 - (ii) 진행 중인 상태로 사망에 이를 것이고,
 - (iii) 몇 주 또는 몇 개월 안에 사망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그 기한이 6개월을 넘지 아니하며,
 - (iv) 개인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완화될 수 없는 고통을 야기하고 있다.
- (2) 개인이 2022 정신건강웰빙법의 의미에서 정신질환을 진단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자발적 조력사망 대상자로 적격한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3) 개인이 2006 장애법 제3조(1)의 의미에서 장애를 진단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자발적 조력사망 대상자로 적절한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4) 제(1)항(d)(iii)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퇴행성 질병, 질환 및 의학적 상태를 진단 받은 경우, 그러한 질병, 질환 및 의학적 상태로 인해 몇 주 이내에 또는 12개월 이내에 사망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어야 한다.

제3장—자발적 조력사망 요청과 적격성 평가

제1절—조정 의사와 상담 의사의 최소 요건

10. 조정 의사와 상담 의사의 최소 요건

- (1) 각 조정 의사와 상담 의사는 다음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 (a) 전문 의과대학의 펠로우십을 유지해야 한다.
 - (b) 직업적으로 등록된 일반의여야 한다.
- (2) 조정 의사 또는 각 상담 의사는 전문 의과대학의 펠로우십을 마치거나 직업 등록을 완료하고 최소 5년 이상 등록 의사로 의료행위를 해온 자여야 한다(경우에 따라).
- (3) 조정 의사와 상담 의사 중 한 명은 평가 중인 개인의 사망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질병, 질환 및 의학적 상태에 적절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자여야 한다.

제2절—1차 요청

11. 개인은 등록 의사에게 1차 요청을 할 수 있다.

- (1) 개인은 등록 의사에게 자발적 조력사망을 요청할 수 있다.
- (2) 자발적 조력사망을 요청 시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a) 분명하고 명확하게 요청하고,
 - (b) 개인이 직접 요청한다.
- (3) 개인은 구두 또는 몸짓 또는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기타 수단을 통해 요청할 수 있다.

12.1차 요청 이후 계속해야 할 의무는 없다

- (1) 1차 요청을 한 자는 언제든지 요청 및 평가과정을 중단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 (2) 개인이 요청 및 평가과정을 중단하기로 결정할 경우 요청 및 평가과정이 종료된다.
- (3) 제(2)항에 따라 요청과 평가 절차가 종료되면, 개인은 다시 1차 요청을 함으로써 새로운 요청과 평가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13. 등록 의사는 요청을 수락하거나 거절해야 한다

- (1) 개인에게서 1차 요청을 받은 등록 의사는 7일 이내에 요청자에게 다음을 이행해야 한다.
 - (a) 1차 요청을 수락한다는 사실을 통지하거나,
 - (b) 의사가 다음 사유로 인해 1차 요청을 거절한다는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 (i) 자발적 조력사망에 대한 양심적 거부로 인해, 또는
 - (ii) 의사가 시간적 여유가 없어 조정의사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또는
 - (iii) 의사가 제(2)항에 따라 1차 요청을 거부하도록 요구되어.
- (2) 등록 의사는 다음 사항을 충족하지 않을 시 1차 요청을 수락해선 안 된다.
 - (a) 전문 의과대학의 펠로우십을 유지한다. 또는,
 - (b) 직업적으로 등록된 일반의에 해당한다.

14. 1차 요청을 수락하는 등록 의사는 1차 요청과 수락 여부를 기록해야 한다

- 등록 의사가 개인의 1차 요청을 수락할 경우, 의사는 다음을 이행해야 한다.
- (a) 개인의 의료 기록에 1차 요청을 수락한다는 결정을 기록한다.
 - (b) 개인의 의료 기록에 최종 요청을 기록한다.

15. 1차 요청을 수락하는 등록 의사는 조정의사가 된다

개인의 1차 요청을 수락함과 동시에 요청을 받은 등록 의사는 개인의 조정의사가 된다.

제3절—1차 평가**16. 1차 평가 실시**

개인의 조정의사가 되고 난 후에는 자발적 조력사망을 요청하는 자가 적격성 기준을 충족하는지 평가해야 한다.

주

개인은 자발적 조력사망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적격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제20조(1)(a)를 참고한다.

17. 승인된 평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조정의사는 1차 평가를 시행해선 안 된다

승인된 평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조정의사는 1차 평가를 시작해선 안 된다.

18. 전문가 소견을 위한 의뢰

(1) 조정의사가 개인의 과거 또는 현재 정신질환 등의 이유로 개인에게 자발적 조력사망과 관련된 적격성 기준에서 요하는 의사결정능력이 있는지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 조정의사는 정신질환의 경우 정신과 의사와 같이 적절한 기술과 교육을 이수한 등록된 의료종사자에게 개인을 의뢰해야 한다.

(2) 조정의사가 개인의 질병, 질환 및 의학적 상태가 적격성 기준의 요건에 충족하는지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 조정의사는 동 질병, 질환 및 의학적 상태에 적절한 기술과 교육을 이수한 전문 등록 의사에게 개인을 의뢰해야 한다.

(3) 조정의사가 개인을

(a)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의료종사자, 또는

(b) 제(2)항에 따라 전문 등록 의사에게 의뢰할 경우,

조정의사는 개인을 의뢰한 사안과 관련해 등록된 의료종사자 또는 전문 등록 의사(경우에 따라 필요한 대로)의 판단을 채택할 수 있다.

(4) 조정의사가 개인에게 제9조(4)에 따라

(a) 사망을 야기하고,

(b) 6-12개월 이내에 사망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퇴행성의 질병, 질환 및 의학적 상태가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조정의사는 제(2)항에 따라 의뢰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퇴행성의 질병, 질환 및 의학적 상태에 적절한 기술과 교육을 받은 전문 등록 의사에게 개인을 의뢰해야 한다.

(5) 제(4)항에서 언급한 전문 등록 의사는 다음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a) 개인에게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퇴행성의 질병, 질환 및 의학적 상태가 있는지 유무를 판단한다.

(i) 사망을 야기하고,

(ii) 6-12개월 이내에 사망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b) 전문 등록 의사의 판단을 설명하는 임상 보고서를 조정의사에게 제공한다.

(6) 제(4)항에 따라 조정의사가 전문 등록 의사에게 의뢰하는 경우, 조정의사는 개인을 의뢰한 사안과 관련해 전문 등록 의사의 판단을 채택해야 한다.

19. 조정의사가 개인이 적격성 기준을 충족한다고 평가할 경우 제공해야 할 정보

(1) 조정의사가 자발적 조력사망을 요청한 개인이 모든 적격성 기준을 충족하여 만족하는 경우, 조정의사는 다음 사안에 대해 개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a) 개인의 의학적 진단과 예후,
- (b)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치료 선택안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
- (c)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완화의료와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
- (d) 본 법률에 따라 개인의 사망을 야기하는 목적으로 처방될 수 있는 독극물, 규제 약물 및 의존 약물의 잠재적 위험,
- (e) 제(d)호에서 언급한 독극물, 규제 약물 및 의존 약물의 예상 결과는 사망이라는 점
- (f) 개인은 언제든지 요청 및 평가과정을 중단할 수 있다는 점
- (g) 개인이 조정의사가 아닌 등록 의사로부터 지속적으로 의료서비스를 받는 경우, 개인에게 개인의 자발적 조력사망 요청에 대해 등록 의사에게 통지하도록 장려된다는 것.

(2) 조정의사가 제(1)항에 따라 개인에게 통지해야 하는 사안에 더하여, 조정의사는 개인이 동의할 경우 개인의 가족 구성원에게 설명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 (a) 모든 관련된 임상 절차,
- (b)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의 자가 투여 계획.

(3) 본조의 어떠한 내용도 관습법 또는 기타 법률에 따른 등록 의사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0. 1차 평가 결과

(1) 조정의사는 다음 사항에 대해 만족하는 경우 개인이 자발적 조력사망 대상자로 적격하다고 평가해야 한다.

- (a) 개인이 자발적 조력사망을 위한 모든 적격성 기준을 충족하고,
- (b) 개인이 제19조(1)에 따라 제공하도록 요구되는 정보를 이해하고,
- (c) 개인이 자발적으로 어떠한 강압도 없이 행동하고,
- (d) 자발적 조력사망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2) 조정의사가 제(1)항의 사안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a) 자발적 조력사망을 요청한 개인은 자발적 조력사망 대상자로 부적격하다고 간주되고,
- (b) 요청 및 평가과정이 종료된다.

21. 1차 평가 결과의 기록 및 통지

- (1) 조정의사는 자발적 조력사망을 요청하는 자에게 1차 평가의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 (2) 조정의사는 1차 평가를 완료하고 7일 이내에 1차 평가 보고서 양식을 작성하여 위원회로 사본을 송달해야 한다.

22. 개인이 적격하다고 평가되는 경우 상담 평가

개인의 조정의사가 개인이 자발적 조력사망에 적격하다고 평가하는 경우, 조정의사는 다른 등록 의사에게 개인의 상담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4절—상담 평가

23. 등록 의사는 상담 평가 의뢰를 수락하거나 거절해야 한다

- (1) 조정의사에게서 제22조, 제31조, 제33조(3)(a) 또는 제73조(4)에 따라 개인의 상담 평가 의뢰를 수령한 등록 의사는 7일 이내에 개인과 조정의사에게 다음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 (a) 의뢰를 수락한다는 사실, 또는
 - (b) 의사가 다음 사유로 인해 의뢰를 거절한다는 사실.
 - (i) 자발적 조력사망에 대한 양심적 거부로 인해, 또는
 - (ii) 의사가 시간적으로 불가하여 조정의사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판단, 또는
 - (iii) 제(2)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의뢰를 거절하도록 요구되어서.
- (2) 등록 의사는 다음 사항을 충족하지 않을 시 의뢰를 수락해선 안 된다.
 - (a) 전문 의과대학의 펠로우십을 유지한다. 또는,
 - (b) 직업적으로 등록된 일반의에 해당한다.
- (3) 제(5)항을 전제로 하여, 등록 의사는 전문 의과대학의 펠로우십을 마치거나 직업 등록(경우에 따라)을 완료하고 최소 5년 이상 의사로 의료행위를 해오지 않았다면 의뢰를 거절해야 한다.

(4) 제(6)항을 전제로 하여, 등록 의사는 개인의 사망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질병, 질환 및 의학적 상태에 적절한 기술과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의뢰를 거절해야 한다.

(5) 조정의사가 전문 의과대학의 펠로우십을 마치거나 직업 등록(경우에 따라)을 완료하고 최소 5년 이상 등록 의사로 의료행위를 해왔다면 제(3)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6) 조정의사가 개인의 사망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질병, 질환 및 의학적 상태에 대해 적절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겸비할 경우 제(4)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24. 의뢰를 수락하는 등록 의사는 상담의사가 된다

개인의 상담 평가 의뢰를 수락함과 동시에 의뢰를 받은 등록 의사는 개인의 상담의사가 된다.

25. 상담 평가 실시

개인의 상담의사는 조력사망을 요청하는 자가 적격성 기준을 충족하는지 평가해야 한다.

주

개인은 자발적 조력사망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적격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제29조(1)(a)를 참고한다.

26. 승인된 평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상담의사는 상담 평가를 시행해선 안 된다.

승인된 평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상담의사는 상담 평가를 시행해선 안 된다.

27. 전문가 소견을 위한 의뢰

(1) 상담의사가 개인의 과거 또는 현재 정신질환 등의 이유로 개인에게 자발적 조력사망과 관련된 적격성 기준에서 요하는 의사결정능력이 있는지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 조정의사는 정신질환의 경우 정신과 의사와 같이 적절한 기술과 교육을 이수한 등록된 의료종사자에게 개인을 의뢰해야 한다.

(2) 상담의사가 개인의 질병, 질환 및 의학적 상태가 적격성 기준의 요건에 충족하는지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 상담의사는 동 질병, 질환 및 의학적 상태에 적절한 기술과 교육을 이수한 전문 등록 의사에게 개인을 의뢰해야 한다.

(3) 상담의사가 개인을

(a)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의료종사자, 또는

(b) 제(2)항에 따라 전문 등록 의사에게 의뢰할 경우,

상담의사는 개인을 의뢰한 사안과 관련해 등록된 의료종사자 또는 전문 등록 의사(경우에 따라 필요한 대로)의 판단을 채택할 수 있다.

28. 상담의사가 개인이 적격성 기준을 충족한다고 평가할 경우 제공해야 할 정보

- (1) 상담의사가 자발적 조력사망을 요청한 개인이 모든 적격성 기준을 충족하여 만족하는 경우, 상담의사는 다음 사안에 대해 개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a) 개인의 의학적 진단과 예후,
 - (b)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치료 선택안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
 - (c)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완화의료와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
 - (d) 본 법률에 따라 개인의 사망을 야기하는 목적으로 처방될 수 있는 독극물, 규제 약물 및 의존 약물의 잠재적 위험,
 - (e) 제(d)호에서 언급한 독극물, 규제 약물 및 의존 약물에 예상되는 결과는 사망이라는 것,
 - (f) 개인은 언제든지 요청 및 평가과정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것,
 - (g) 개인이 조정의사가 아닌 등록 의사로부터 지속적으로 의료서비스를 받는 경우, 개인에게 개인의 자발적 조력사망 요청에 대해 등록 의사에게 통지하도록 장려된다는 것.
- (2) 본조의 어떠한 내용도 관습법 또는 기타 법률에 따른 등록 의사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9. 상담 평가 결과

- (1) 상담의사는 다음 사항에 대해 만족하는 경우 개인이 자발적 조력사망 대상자로 적격하다고 평가해야 한다.
 - (a) 개인이 자발적 조력사망을 위한 모든 적격성 기준을 충족하고,
 - (b) 개인이 제28조(1)에 따라 제공하도록 요구되는 정보를 이해하고,
 - (c) 개인이 자발적으로 어떠한 강압도 없이 행동하며,
 - (d) 자발적 조력사망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 (2) 상담의사가 제(1)항의 사안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상담의사는 자발적 조력사망을 요청한 개인이 자발적 조력사망 대상자로 부적격하다고 평가해야 한다.

30. 상담 평가 결과의 기록 및 통지

- (1) 상담의사는 다음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 (a) 자발적 조력사망을 요청하는 자에게 상담 평가 결과를 통지한다.
 - (b) 상담 평가 보고서 양식을 작성하여 사본을 다음 대상에게 송달한다.

- (i) 위원회,
- (ii) 개인의 조정의사.

(2) 상담의사는 상담 평가를 완료하고 7일 이내에 상담 평가 보고서 양식을 작성하여 위원회로 사본을 송달해야 한다.

31. 조정의사는 부적격하게 평가된 개인을 추가 상담 평가에 의뢰할 수 있다

상담의사가 자발적 조력사망 요청자를 자발적 조력사망에 부적격한 대상으로 평가하는 경우, 개인의 조정의사는 다른 등록 의사에게 추가 상담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32. 조정의사는 조정의사로서 역할을 이전시킬 수 있다

개인의 조정의사는 제33조에 의거해 다음 조건을 충족 시 조정의사로서 역할을 이전시킬 수 있다.

- (a) 개인의 요청에 따라, 또는
- (b) 조정의사가 자발적으로.

33. 조정의사의 역할 이전 과정

(1) 개인의 조정의사는 다음 조건을 충족 시 조정의사로서 역할을 상담의사에게 이전시킬 수 있다.

- (a) 상담의사가 개인을 자발적 조력사망 대상으로 적격하다고 평가한 경우
- (b) 상담의사가 역할의 이전을 수락할 경우.

(2) 제(1)항에 따라 역할의 이전을 수락해달라는 조정의사의 요청으로부터 7일 이내에 상담의사는 역할 이전을 수락 또는 거부 의사를 조정의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3) 상담의사가 조정의사의 역할 이전을 거절할 경우, 개인의 조정의사는 다음과 같이 이행할 수 있다.

- (a) 다른 등록 의사에게 개인의 추가 상담 평가를 의뢰하고,
- (b) 등록 의사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등록 의사에게 조정의사의 역할을 이전할 수 있다.

- (i) 추가 상담 평가 의뢰를 수락하고,
- (ii) 개인이 자발적 조력사망에 적격하다고 평가하며,
- (iii) 역할의 이전을 수락하는 경우.

(4) 등록 의사가 추가 상담 평가 의뢰를 수락하는 경우, 이전에 개인이 자발적 조력사망에 적격하다고 평가한 상담 평가는 무효가 된다.

제5절—서면 선언서

34. 자발적 조력사망 대상자로 적격하다고 평가된 개인은 서면 선언서를 작성할 수 있다

(1) 다음 주체로부터 자발적 조력사망 대상자로 적격하다고 평가받은 개인은 자발적 조력사망을 요청하는 서면 선언서를 작성할 수 있다.

(a) 개인의 조정의사

(b) 개인의 상담의사

(2) 서면 선언서는,

(a) 개인이 다음 사항을 이행하였음을 명시해야 한다.

(i) 개인이 자발적으로 어떠한 강압도 없이 선언서를 작성한다.

(ii) 개인이 작성하는 선언서의 특성과 효과를 이해한다.

(b) 2명의 증인과 조정의사의 입회 하에 선언서를 작성한 본인이 서명하였다.

(3) 제(2)항(b)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은 선언서를 작성하는 개인의 지시에 따라 서면 선언서에 서명할 수 있다. 단,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a) 선언 작성자가 선언서에 서명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

(b) 선언서 서명자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i) 18세 이상의 성인이고,

(ii) 선언서 서명의 증인이 아니어야 한다.

(4) 선언서를 작성하는 개인을 대신해 서면 선언서에 서명하는 자는 개인의 입회 하에 서명해야 한다.

(5) 개인이 통역사의 도움으로 서면 선언서를 작성하는 경우, 통역사는 통역한 자료를 진실되고 정확하게 통역하였음을 선언서에 인증해야 한다.

주

자발적 조력사망 요청 또는 이용을 지원하는 통역사는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는 제115조를 참고한다.

35. 서면 선언 작성의 목적

(1) 개인은 다음 조건을 충족할 경우 서면 선언서의 작성을 목격하기에 적격하다.

(a) 18세 이상의 성인이고,

(b) 부적격한 증인이 아니다.

(2)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자는 서면 선언서의 목적에 **부적격한 증인**에 해당한다.

(a) 자신이 다음 사항에 하나라도 해당함을 알고 있거나 믿고 있는 경우,

- (i) 선언 작성자의 유언장에 따른 수혜자, 또는
 - (ii) 선언 작성자의 사망으로 재정적으로 또는 기타 물질적인 방식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 또는
 - (b) 다음과 같은 보건시설의 소유주 또는 운영자,
 - (i) 선언서 작성자가 치료를 받는 보건시설, 또는
 - (ii) 선언 작성자가 거주 중인 보건시설, 또는
 - (c) 선언 작성자에게 의료서비스 또는 전문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직접 관여하는 보건시설.
- (3) 증인 중 서면 선언을 하는 개인의 가족 구성원은 1명을 넘지 아니한다.

36. 서면 선언서 서명의 증인 증명서

- (1) 개인이 서면 선언서에 서명하는 것을 목격하는 증인은 다음을 이행해야 한다.
- (a) 선언서에 서면으로 다음 사항을 인증한다.
 - (i) 증인의 입회 하에 선언서 작성자가 방해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선언서에 서명하였다는 것,
 - (ii) 개인이 선언서에 서명할 당시
자발적 조력사망과 관련해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
 - (iii) 개인이 선언서에 서명할 당시 선언서의 성질과 그 결과를 이해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
 - (b) 증인은 고의로 부적격한 증인이 아님을 명시한다.
- (2) 개인을 대신해 타인이 서면 선언서에 서명하는 모습을 목격하는 증인은 다음을 이행해야 한다.
- (a) 선언서에 서면으로 다음 사항을 인증한다.
 - (i) 증인의 입회 하에 선언서 작성자는 방해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타인에게 선언서에 서명할 것을 지시하는 것처럼 보였고,
 - (ii) 선언서 작성자와 증인의 입회 하에 타인이 선언서에 서명하였고,
 - (iii) 타인이 선언서에 서명할 당시 선언서 작성자는 자발적 조력사망과 관련해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였고,
 - (iv) 타인이 선언서에 서명할 당시 선언서 작성자는 선언서의 성질과 그 결과를 이해하는 것처럼 보였다.
 - (b) 증인은 부적격한 증인으로 알고 있지 않음을 명시한다.
- (3)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증명서와 선언서는 조정의사의 입회 하에 그것을 작성하는 증인이 서명해야 한다.

제6절—조정의사의 최종 요청, 담당자 및 최종 검토

37. 개인은 최종 요청을 할 수 있다

- (1) 서면 선언을 한 개인은 자발적 조력사망을 최종 요청할 수 있다.
- (2) 최종 요청은 개인이 직접 조정의사에게 해야 한다.
- (3) 개인은 구두 또는 몸짓 또는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기타 수단을 통해 최종 요청할 수 있다.

38. 1차 요청과 상담 평가가 완료되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최종 요청

- (1) 개인의 최종 요청은,
 - (a) 제(2)항을 전제로 하여, 1차 요청일로부터 최소 9일이 지나야 하고,
 - (b) 어떤 경우든 개인이 자발적 조력사망에 적격하다고 평가된 상담 평가 완료일로부터 적어도 하루는 지나야 한다.

- (2) 제(1)항(a)는 다음의 경우 적용되지 아니한다.

개인의 조정의사가 본항에 명시된 기간이 끝나기 전에 개인이 사망할 것으로 간주하고, 이것이 상담 평가 보고서 양식에 기재된 상담의사의 예후와도 일관되는 경우.

39. 담당자

- (1) 최종 요청을 한 개인은 18세 이상 성인을 담당자로 지명해야 한다.
- (2) 다음과 같은 경우에 담당자는 최종 요청자에게 조제한 미사용 또는 잔여 약물을 조제 약국의 약사에게 반납해야 한다.
 - (a) 개인이 사망한 후에 담당자가 미사용 또는 잔여 약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사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또는
 - (b) 개인이 제53조에 따라 의료인 투여를 요청하기로 결정하거나 자가 투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 해당 개인이 요청 시.
- (3) 위원회는 담당자에게 연락해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40. 담당자 지명을 위한 공식 요건

- (1) 개인이 담당자 지명에 동의하지 않는 한 담당자로 지명받을 수 없다.
- (2) 담당자 지명은,
 - (a) 담당자 지명서 양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 (b) 18세 이상 성인이 별도로 입회하여 다음 대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 (i) 지명하는 자,
 - (ii) 지명을 받는 자.
- (3) 제(2)항(b)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은 지명하는 자의 지시에 따라 담당자 지명서 양식에 서명할 수 있다. 단,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a) 요청자가 요청서에 서명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 (b) 선언서 서명자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i) 18세 이상의 성인이고,
 - (ii) 양식 서명의 증인이 아니며,
 - (iii) 담당자로 지명될 자가 아니다.
- (4) 지명하는 자를 대신해 담당자 지명서 양식에 서명하는 자는 개인의 입회 하에 서명해야 한다.
- (5) 개인이 통역사의 도움으로 서면 선언서를 작성하는 경우, 통역사는 통역한 자료를 진실되고 정확하게 통역하였음을 담당자 지명서 양식에 인증해야 한다.
- 주 자발적 조력사망 요청 또는 이용을 지원하는 통역사는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는 제115조를 참고한다.

41. 최종 요청을 받은 조정의사의 최종 검토

- (1) 개인의 최종 요청서를 받은 개인의 조정의사는 다음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 (a) 본장에 의거해 작성하는 다음 양식을 검토한다.
 - (i) 1차 평가 보고서 양식
 - (ii) 모든 상담 평가 보고서 양식
 - (iii) 서면 선언서
 - (iv) 담당자 지명서 양식
 - (b) 개인과 관련해 최종 검토를 완료하고,
 - (c) 본 법률에서 요하는 요청 및 평가과정이 완료되었음을 인증한다.
- (2) 조정의사는 작성한 최종 검토 양식 사본과 제(1)항(a)에 언급된 모든 양식의 사본을 첨부하여 최종 검토 양식을 작성하고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공해야 한다.

42. 기술적 오류는 요청 및 평가과정을 무효화하지 않는다

최종 검토 양식 또는 제41조(1)(a)에 언급한 양식에서 발견되는 사소한 오류나 기술적 오류는 요청 및 평가과정의 타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3. 조정의사는 최종 검토에 대한 요청 및 평가과정 증명서에 자발적 조력사망 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 의사가 본 법률에서 요구하는 대로 요청 및 평가과정이 완료되었음을 최종 검토 양식에 인증하는 경우, 조정의사는 제47조 또는 제48조에 의거해 개인을 위해 자발적 조력사망 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다.

44. 개인은 최종 검토에서 요청 및 평가과정 증명 이후에도 계속해야 할 의무는 없다

최종 검토가 완료되고 인증된 개인은 언제든지 자발적 조력사망과 관련해 다음 단계를 중단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

제4장—자발적 조력사망 허가증

제1절—자발적 조력사망 허가증에 따른 권한

45. 자가 투여 허가증에서 어떠한 권한을 부여하는가?

허가증에 명시된 개인과 관련해 자가 투여 허가증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부여한다.

(a) 개인의 조정의사는 개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목적으로 허가증에 명시된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을 처방하고 개인에게 공급할 권한을 부여한다. 단, 개인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i) 자가 투여가 가능하고,

(ii) 사망을 야기하기에 충분한 투여량이며,

(b) 개인이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을 취득, 소지, 보관, 사용 및 자가 투여할 예정이고,

(c) 개인이 사망할 경우, 사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허가증에 명시된 담당자에게

(i) 미사용 및 잔여 약물을 조제 약국의 약사에게 반납할 목적으로 동 약물을 소지하고 보관하는 행위,

(ii) 미사용 및 잔여 약물을 조제 약국의 약사에게 반납할 목적으로 동 약물을 휴대하고 이동시키는 행위를 허가한다.

(d) 개인이 제53조에 따라 요청하기로 결정하거나 자가 투여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VCAT에서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을 조제 약국으로 반납할 것을 지시하는 경우, 허가증에 명시된 담당자에게

(i) 개인에게 조제된 자발적 조력사망약물(해당 시)을 소지하고 보관하는 행위,

- (ii)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을 휴대하고 조제 약국의 약사에게 이동시키는 행위를 허가한다.

46. 의료인 투여 허가증은 어떠한 권한을 부여하는가?

허가증에 명시된 개인과 관련해 의료인 투여 허가증은 개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목적으로 개인의 조정의사에게 다음 권한을 부여한다.

- (a) 허가증에 명시된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의 충분한 투여량을 처방하고 개인에게 공급하는 행위,
- (b) 증인의 입회 하에 투여 요청을 받는 행위,
- (c) 다음 조건을 충족 시, 증인의 입회 하에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을 소지, 사용 및 투여하는 행위,
 - (i) 개인이 신체적으로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을 자가 투여하거나 소화시킬 수 없는 상태이고,
 - (ii) 개인이 투여 요청을 할 당시 개인에게 자발적 조력사망과 관련해 의사결정능력이 있고,
 - (iii) 개인이 어떠한 강압 없이 자발적으로 자발적 조력사망을 요청하고,
 - (iv) 개인이 자발적 조력사망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며,
 - (v) 개인이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의 투여를 요청한 직후 약물이 투여되었다.

제2절—자발적 조력사망 허가증

47. 자가 투여 허가증 신청

(1) 제(3)항을 전제로 하여, 개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목적으로 허가증에 명시할 것을 제안한 독극물, 규제 약물 및 의존 약물을 개인이 신체적인 이유로 자가 투여하여 소화시킬 수 있다면, 개인의 조정의사는 개인의 자가 투여 허가증을 차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2) 자가 투여 허가증 신청서는,

- (a) 규정된 양식으로 작성되어야 하고,
- (b) 허가증을 요청하는 개인의 신원을 밝혀야 하고,
- (c) 신청자가 개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약물의 자가 투여를 목적으로 개인에게 충분한 투여량을 처방 및 공급하고자 하는 독극물, 규제 약물 및 의존 약물을 명시해야 하고,

- (d) 개인의 담당자를 명시해야 하고,
 - (e) 작성된 최종 검토 양식과 제41조(1)(a)에 언급한 전체 양식의 사본을 첨부해야 하고,
 - (f) 신청자가 제(3)항에 명시된 사안을 확신한다는 진술서를 첨부해야 한다.
- (3) 조정의사는 다음 사항을 확신하지 않는 한 자가 투여 허가증을 신청할 수 없다.
- (a) 개인에게 자발적 조력사망과 관련해 의사결정능력이 있고,
 - (b) 자발적 조력사망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48. 의료인 투여 허가증 신청

- (1) 제(3)항을 전제로 하여, 개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목적으로 조정의사가 허가증에 명시할 것을 제안한 독극물, 규제 약물 및 의존 약물을 공급 및 투여 받을 경우, 개인의 조정의사는 개인을 위해 차관에게 의료인 투여 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다.
- (2) 자가 투여 허가증 신청서는,
 - (a) 규정된 양식으로 작성되어야 하고,
 - (b) 허가증을 요청하는 개인의 신원을 밝혀야 하고,
 - (c) 신청자가 개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목적으로 개인에게 충분한 투여량을 처방 및 공급하고자 하는 독극물, 규제 약물 및 의존 약물을 명시해야 하고,
 - (d) 개인의 담당자를 명시해야 하고,
 - (e) 작성된 최종 검토 양식과 제41조(1)(a)에 언급한 전체 양식의 사본을 첨부해야 하고,
 - (f) 신청자가 제(3)항에 명시된 사안을 확신한다는 진술서를 첨부해야 하고,
 - (g) 허가증을 신청하는 개인이 제52조에 의거해 취소한 자가 투여 허가증의 대상인 경우, 차관이 만족할 만한 다음과 같은 증거를 첨부해야 한다.
 - (i) 그러한 자가 투여 허가증을 통해 조제하지 않은 처방전은 신청자가 폐기하였거나,
 - (ii) 그러한 자가 투여 허가증에 따라 공급된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을 조제 약국의 약사가 파기하였다는 증거.
- (3) 조정의사는 다음 사항을 확신하지 않는 한 의료인 투여 허가증을 신청할 수 없다.
 - (a) 개인이 신체적으로 적절한 독극물, 규제 약물 또는 의존 약물을 자가 투여하거나 소화시킬 수 없는 상태이고,
 - (b) 개인에게 자발적 조력사망과 관련해 의사결정능력이 있고,
 - (c) 자발적 조력사망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49. 차관은 자발적 조력사망 허가증 신청을 결정해야 한다

- (1) 차관은 개인의 조정의사가 제47조 또는 제48조에 의거해 신청한 자발적 조력사망 허가증 발급 여부를 규정된 기한 내에 결정해야 한다.
- (2) 차관은,
 - (a) 다음을 발급할 수 있다.
 - (i) 자가 투여 허가증, 또는
 - (ii) 의료인 투여 허가증, 또는
 - (b) 자발적 조력사망 허가증 발급을 거절할 수 있다.
- (3) 제(2)항을 제한함이 없이, 차관은 요청 및 평가과정이 본 법률에서 요하는 바와 같이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 자발적 조력사망 허가증 발급을 거절할 수 있다.
- (4) 신청서 결정을 하고 나면 차관은 다음을 이행해야 한다.
 - (a)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 (i) 제(2)항에 따라 결정을 서면으로 조정의사에게 통지하고,
 - (ii) 제(2)항에 따라 차관이 신청서를 거절하는 경우, 거절 사유를 제공하고,
 - (b) 제(2)항에 따라 결정을 서면으로 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 (5) 자발적 조력사망 허가증은 규정된 양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50. 자발적 조력사망 허가증 시행

자발적 조력사망 허가증은 허가증에 명시된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51. 차관은 자발적 조력사망 허가증을 수정할 수 있다

- (1) 차관은 허가증에 행정적 오류 또는 사소한 결함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발적 조력사망 허가증을 수정할 수 있다.
- (2) 차관은 다음의 경우, 제(1)항에 의거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 (a) 관련된 조정의사의 요청 시, 또는
 - (b) 차관의 재량으로.
- (3) 차관은 제(1)항에 따른 수정 내용을 관련된 조정의사와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52. 자가 투여 허가증 취소

다음과 같은 자가 투여 허가증은 취소된다.

- (a) 조제하지 않은 처방전을 파기하는 조정의사에 대해, 또는
- (b) 작성한 자발적 조력사망약물 폐기 양식의 사본을 위원회에 제공하는 약사에 대해.

제3절—자발적 조력사망 물질을 자가 투여하는 개인의 신체적 무능력

53. 개인은 조정의사에게 의료인 투여 허가증을 신청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개인은 자신의 조정의사에게 의료인 투여 허가증을 신청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데, 단,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a) 개인이 자가 투여 허가증의 대상이고,

(b) 개인이 허가증에 명시된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을 자가 투여하거나 소화시킬만한 신체적 능력을 상실한 경우.

(2) 개인이 반드시 직접 요청해야 한다.

(3) 개인은 구두 또는 몸짓 또는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기타 수단을 통해 요청할 수 있다.

54. 조정의사의 조제되지 않은 처방전 폐기

조정의사는 제53조에 따라 요청을 받으면 조제하지 않은 자가 투여 허가증의 처방전은 파기해야 한다.

55. 조제된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의 반납

제53조에 따라 요청하기 전에, 개인 또는 담당자는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이 공급된 경우 약물을 조제 약국의 약사에게 반납해야 한다.

56. 조정의사는 의료인 투여 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제52조에 의거해 자가 투여 허가증이 취소된 경우, 개인의 조정의사는 개인을 위해 의료인 투여 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제5장—자발적 조력사망 요청과 사망

제1절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의 처방, 공급 및 폐기

57.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의 처방 전에 제공해야 할 정보

개인의 조정의사는 자가 투여 허가증에 따라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을 처방하기 전에 개인에게 다음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 (a)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을 자가 투여하는 방법,
- (b) 개인은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을 취득해야 할 어떠한 의무도 없으며, 약물을 조제하지 않은 처방전은 언제든지 조정의사에게 반납할 수 있다는 것,
- (c)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은 규정된 설명서에 맞는 잠금 상자(locked box)에 보관해야 한다는 것,
- (d) 개인은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을 자가 투여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것,
- (e) 약물을 조제하지 않은 처방전은 제53조에 따른 요청 시 조정의사에게 반납해야 한다는 것,
- (f) 개인 또는 관련된 담당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조제된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을 폐기하기 위해 조제 약국의 약사에게 반납해야 한다는 것,
 - (i) 개인이 자가 투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 (ii) 개인이 제53조에 따라 요청하기 전에 자가 투여하지 않은 경우
- (g) 관련된 담당자는 개인이 사망한 후에 조제되었지만 자가 투여하지 않은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을 폐기하기 위해 조제 약국의 약사에게 반납해야 한다는 것.

58. 처방된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을 조제하는 약사가 제공할 정보

약사는 처방된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을 조제 시 조제 중인 약물을 공급할 개인에게 다음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 (a)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을 자가 투여하는 방법,
- (b)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은 규정된 설명서에 맞는 잠금 상자에 보관해야 한다는 것,
- (c) 개인은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을 자가 투여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것,
- (d) 개인 또는 관련된 담당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조제된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을 폐기하기 위해 조제 약국의 약사에게 반납해야 한다는 것,
 - (i) 개인이 자가 투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 (ii) 개인이 제53조에 따라 요청하기 전에 자가 투여하지 않은 경우
- (e) 관련된 담당자는 개인이 사망한 후에 조제되었지만 자가 투여하지 않은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을 폐기하기 위해 조제 약국의 약사에게 반납해야 한다는 것,

59.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의 라벨링 요건

(1) 독극물 규정 또는 1981 의약품, 독극물 및 규제 약물법에 따른 라벨링 요건에 따라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을 공급하는 약사는 관련된 패키지 또는 용기에 서면으로 라벨링 설명서를 첨부함으로써,

- (a)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의 투여량에 대한 목적을 경고하고,
 - (b)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을 자가 투여 시 위험성을 명시하고,
 - (c)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은 규정된 설명서에 맞는 잠금 상자에 보관해야 함을 명시하고,
 - (d) 미사용 또는 잔여 약물은 약물을 조제 받은 개인 또는 담당자가 조제 약국의 약사에게 반납해야 함을 명시해야 한다.
- (2) 라벨링 설명서는 규정된 양식을 따라야 한다.

60. 약사는 조제된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을 기록하고 통지한다

- (1)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을 조제하는 약사는 자발적 조력사망약물 조제 양식에 즉시 다음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 (a)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이 조제되었다는 것,
 - (b) 제58조와 제59조에 의거한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것.
- (2) 약사는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을 조제하고 7일 이내에 자발적 조력사망약물 조제 양식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61.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의 안전한 보관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을 조제 받은 자는 규정된 설명서를 충족하는 잠금 상자에 약물을 보관해야 한다.

62. 조제 약국의 약사는 반납된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을 폐기한다

자가 투여 허가증의 대상이 되는 개인 또는 허가증에 명시된 담당자가 조제된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을 조제 약국의 약사에게 반납하는 경우, 약사는 가능한 한 빨리 그러한 약물을 폐기해야 한다.

63. 조제 약국의 약사는 반납된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의 폐기를 기록하고 통지한다

- (1) 제62조에 따라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을 폐기하는 조제 약국의 약사는 자발적 조력사망약물 폐기 양식에 즉시 그러한 폐기 사실을 기록해야 한다.
- (2) 약사는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을 폐기하고 7일 이내에 자발적 조력사망약물 폐기 양식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제2절—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의 투여 요청 및 투여

64. 개인은 약물 투여를 요청할 수 있다

(1) 개인은 조정의사에게 의료인 투여 허가증에 명시된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을 개인에게 투여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나, 다만,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a) 개인이 자가 투여 허가증의 대상이고,
 - (b) 개인에게 자발적 조력사망과 관련해 의사결정능력이 있고,
 - (c) 개인이 자발적 조력사망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며,
 - (d) 개인이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의 투여를 요청한 직후 약물이 투여된다는 것을 이해한다.
- (2) 개인이 반드시 직접 요청해야 한다.
- (3) 개인은 구두 또는 몸짓 또는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기타 수단을 통해 요청할 수 있다.
- (4) 투여 요청은 증인의 입회 하에 이루어질 수 있다.
- (5) 조정의사가 제(1)항을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 개인의 투여 요청 수락을 거절할 수 있다.

65.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의 투여 요청 및 투여 증인

(1) 제46조(b)와 (c), 제64조(4)의 목적을 위해,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의 투여 요청 및 투여를 목격하는 자는,

- (a) 18세 이상의 성인이고,
 - (b)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을 투여하는 개인의 조정의사와 독립된 자다.
- (2) 개인이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의 투여를 요청하고 투여하는 모습을 목격하는 증인은 조정의사의 투여 양식에
- (a) 다음 내용을 서면으로 인증해야 한다.
 - (i) 개인이 약물 투여를 요청할 당시 자발적 조력사망과 관련해 의사결정능력이 있고,
 - (ii) 어떠한 강압 없이 자발적으로 자발적 조력사망을 요청하는 것으로 보였으며,
 - (iii) 개인이 지속적으로 자발적 조력사망을 요청하는 것으로 보였음을 인증한다.
 - (b) 조정의사가 개인에게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을 투여하였음을 진술해야 한다.

66.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의 투여 이후 조정의사의 인증

(1) 개인에게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을 투여한 조정의사는 관련된 증인이 작성한 것과 동일한 조정의사 투여 양식에 다음 사항을 확신함을 서면으로 인증해야 한다.

- (a) 개인이 신체적으로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을 자가 투여하거나 소화시킬 수 없는 상태였고,
 - (b) 개인이 투여 요청을 할 당시 개인에게 자발적 조력사망과 관련해 의사결정능력이 있었고,
 - (c) 개인이 어떠한 강압 없이 자발적으로 자발적 조력사망을 요청하였고,
 - (d) 개인이 자발적 조력사망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다.
- (2) 조정의사는 의료인 투여 허가증에 따라 개인에게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을 투여하고 7일 이내에 제(1)항에 의거해 작성한 조정의사 투여 양식의 사본을 위원회에 제공해야 한다.

제3절—사망 원인에 대한 통지

67. 등록 담당자와 검시관에게 개인의 질병, 질환 및 의학적 상태에 대한 통지

- (1) 1996 출생, 사망, 결혼 등록법의 제37조(1)에 더해 개인이 사망하기 직전에 개인의 의료를 책임지던 등록 의사, 또는 개인이 사망한 후 사망자 시신을 조사하고 사망자가 자발적 조력사망 허가증의 대상이라고 믿거나 인식하는 등록 의사는 등록 담당자에게 다음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 (a) 등록 의사가 개인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믿거나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
 - (i) 개인이 자발적 조력사망 허가증 대상이고, 개인이 허가증에 명시된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을 자가 투여하거나 제3자로부터 투여받지 않았다는 것, 또는
 - (ii) 개인이 자가 투여 허가증의 대상이었고, 허가증에 명시된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을 자가 투여함으로써 자발적 조력사망을 이용하였다는 것, 또는
 - (iii) 개인이 의료인 투여 허가증의 대상이었고, 허가증에 명시된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을 투여 받음으로써 자발적 조력사망을 이용하였다는 것,
 - (b) 개인이 자발적 조력사망을 이용한 근거에 해당하는 질병, 질환 및 의학적 상태.
- (2) 개인이 사망하기 직전에 개인의 의료를 책임지던 등록 의사, 또는 개인이 사망한 후 사망자 시신을 조사하고 사망자가 자발적 조력사망 허가증의 대상이라고 믿거나 인식하는 등록 의사는 등록 담당자에게 다음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 (a) 등록 의사가 개인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믿거나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

- (i) 개인이 자발적 조력사망 허가증 대상이고, 개인이 허가증에 명시된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을 자가 투여하거나 제3자로부터 투여받지 않았다는 것, 또는
- (ii) 개인이 자가 투여 허가증의 대상이었고, 허가증에 명시된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을 자가 투여함으로써 자발적 조력사망을 이용하였다는 것, 또는
- (iii) 개인이 의료인 투여 허가증의 대상이었고, 허가증에 명시된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을 투여 받음으로써 자발적 조력사망을 이용하였다는 것,
- (b) 개인이 자발적 조력사망을 이용한 근거에 해당하는 질병, 질환 및 의학적 상태.

제6장—VCAT의 검토

68. 특정 결정에 대한 VCAT의 검토 신청

- (1) 적격한 신청자는 VCAT에 다음과 같은 결정을 검토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 (a) 개인의 1차 평가에서 개인의 조정의사가 다음 사항과 관련해 내린 결정
 - (i) 개인이 빅토리아에 거주하는지, 또는
 - (ii) 개인이 1차 요청을 하기 직전에 최소 12개월 이상 빅토리아에 거주해왔는지, 또는
 - (iii) 자발적 조력사망과 관련해 의사결정능력이 있는지 여부.
 - (b) 개인의 상담 평가에서 개인의 상담의사가 다음 사항과 관련해 내린 결정
 - (i) 개인이 빅토리아에 거주하는지, 또는
 - (ii) 개인이 1차 요청을 하기 직전에 최소 12개월 이상 빅토리아에 거주해왔는지, 또는
 - (iii) 자발적 조력사망과 관련해 의사결정능력이 있는지 여부.
 - (c) 제47조(3)(a) 또는 제48조(3)(b)에 의거해 개인에게 자발적 조력사망과 관련해 의사결정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조정의사의 판단,
 - (d) 제64조(5)에 의거해 개인이 자발적 조력사망과 관련해 의사결정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
- (2) 본조에서,
적격한 신청자(*eligible applicant*)란,

- (a) 제(1)에 규정된 결정의 대상이 되는 개인, 또는
 - (b) 제(a)호에 규정된 개인의 대리인, 또는
 - (c) VCAT에서 제(a)호에 언급된 개인의 의료와 돌봄에 특별히 관심이 있다고 확신하는 자를 의미한다.
- (3) 1998 빅토리아 민사 및 행정재판소법(Victorian Civil and Administrative Tribunal Act 1998) 제59조(1)(b)(iv)을 목적으로 하여, 제(1)항에 언급된 판단의 검토를 신청하는 경우, 판단 대상자는 검토 신청자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판단 검토를 위한 법적 절차 당사자가 된다.

69. 통지 요건

제68조(1)에 의거해 개인과 관련된 판단 검토를 신청한 경우, VCAT의 주 등록 담당자는 신청 사실, 신청과 관련해 VCAT의 명령 또는 결정(어떠한 용어로 설명하든)을 다음 대상에게 통지해야 한다.

- (a) 개인의 조정의사,
- (b) 차관,
- (c) 위원회.

70. VCAT로 신청이 진행 시 자발적 조력사망 이용과 관련해 취해야 할 조치는 없다

제68조(1)에 의거해 VCAT에 개인과 관련된 판단 검토를 신청한 경우,

- (a) 개인과 관련된 요청 및 평가과정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신청이 진행되는 동안 요청 및 평가과정이 중단되고,
 - (b) 신청이 진행되는 동안 개인의 조정의사는 개인을 위해 자발적 조력사망 허가증을 신청해선 안 되고,
 - (c) 신청이 진행되는 동안 개인을 위한 자발적 조력사망 허가증 신청은 모두 유예되고,
 - (d) 개인이 대상인 자발적 조력사망 허가증은 신청이 진행되는 동안 모두 유예된다.
- 다만, 자가 투여 허가증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허가는 제외된다.
- (i) 제45조(b)에 의거해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을 소지 또는 보관하는 행위의 허가,
 - (ii) 제45조(c) 또는 (d)에 의거한 허가.

71. 특정 상황에서 취소된 것으로 간주되는 검토를 VCAT에 신청

제68조(1)에 의거한 결정의 검토 신청은 그러한 결정의 대상이 되는 개인이 사망한 경우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72. VCAT에서 결정을 내릴 권한

제68조(1)에 의거해 신청을 결정 시 VCAT는 다음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 (a) 개인이 빅토리아에 거주하는지, 또는
- (b) 개인이 빅토리아에 거주하지 않는지, 또는
- (c) 개인이 1차 요청을 하기 직전에 최소 12개월 이상 빅토리아에 거주해왔는지, 또는
- (d) 개인이 1차 요청을 하기 직전에 최소 12개월 이상 빅토리아에 거주해왔는지, 또는
- (e) 개인에게 자발적 조력사망과 관련해 의사결정능력이 있는지, 또는
- (f) 개인에게 자발적 조력사망과 관련해 의사결정능력이 없는지 여부.

73. 조정의사 또는 상담의사는 과정을 계속하길 거절할 수 있다

(1) 개인의 조정의사는 개인에 대한 1차 평가를 재개하길 거절하거나, 조정의사로서 역할을 계속하길 거절할 수 있다. 이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한다.

- (a) 제68조(1)에 의거해 개인이 자발적 조력사망과 관련해 의사결정능력이 없다는 조정의사의 판단 검토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b) VCAT에서 개인에게 의사결정능력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2) 개인의 상담의사는 신청 전에 개인에 대해 완료되지 않은 상담 평가를 재개하길 거절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을 전제로 한다.

- (a) 제68조(1)에 의거해 개인이 자발적 조력사망과 관련해 의사결정능력이 없다는 상담의사의 판단 검토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b) VCAT에서 개인에게 의사결정능력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3) 제(1)항에 따라 조정의사로서 역할을 계속하길 거절하는 조정의사는 제33조에 따라 조정의사 역할을 이전해야 한다.

(4) 상담의사가 제(2)항에 따라 상담 평가를 재개하길 거절하는 경우, 개인의 조정의사는 다른 등록 의사에게 추가 상담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74. 잠정 및 임시 명령

본 법률에 따른 신청에서 VCAT는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잠정 및 임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제7장—통지와 면책

제1절 호주 의료종사자등록기관에 통지

75. 등록된 의료종사자의 의무적 통지

(1) 등록된 의료종사자(제1 의료종사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합리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호주 의료종사자등록기관에 등록된 다른 의료종사자(제2 의료종사자)에게 최대한 빠르게 통지해야 한다.

- (a) 개인에게 의료서비스 또는 전문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2 의료종사자가,
 - (i) 사실상 본 법률에 저촉되거나 저촉될 가능성이 있는 자발적 조력사망에 대한 서비스를 개인에게 제공하거나, 의논을 시작 또는 시도하거나,
 - (ii) 사실상 본 법률에 저촉되거나 저촉될 가능성이 있는 개인에게 자발적 조력사망의 제안을 시작 또는 시도하는 경우.

(b) 제2 의료종사자가 본 법률에 저촉되도록 자발적 조력사망에 접근성을 제공 또는 시도하는 경우.

(2) 최초 의사가 제(1)항에 요하는 바와 같이 호주 의료종사자등록기관에 통지하지 못하는 경우, 의료종사자규정국내법에 규정된 의미와 목적에서 의료전문직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76. 고용인의 의무적 통지

(1) 등록된 의료종사자의 고용주는 다음과 같은 경우 합리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호주 의료종사자등록기관에 최대한 빠르게 통지해야 한다.

- (a) 개인에게 의료서비스 또는 전문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록된 의료종사자가,

- (i) 사실상 본 법률에 저촉되거나 저촉될 가능성이 있는 자발적 조력사망에 대한 서비스를 개인에게 제공하거나, 의논을 시작 또는 시도하거나,
- (ii) 사실상 본 법률에 저촉되거나 저촉될 가능성이 있는 개인에게 자발적 조력사망의 제안을 시작 또는 시도하는 경우.
- (b) 의료종사자가 본 법률에 저촉되도록 자발적 조력사망에 접근성을 제공 또는 시도하는 경우.

(2) 본조에서,

등록된 의료종사자의 고용주(employer of a registered health practitioner)란 고용 계약 또는 서비스 계약에 따라 등록된 의료종사자를 고용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77. 개인의 자발적 통지

개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 합리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호주 의료종사자등록기관에 최대한 빠르게 통지해야 한다.

- (a) 개인에게 의료서비스 또는 전문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록된 의료제공자가,
 - (i) 사실상 본 법률에 저촉되거나 저촉될 가능성이 있는 자발적 조력사망에 대한 서비스를 개인에게 제공하거나, 의논을 시작 또는 시도하거나,
 - (ii) 사실상 본 법률에 저촉되거나 저촉될 가능성이 있는 개인에게 자발적 조력사망의 제안을 시작 또는 시도하는 경우.
- (b) 등록된 의료제공자가 본 법률에 저촉되도록 자발적 조력사망에 접근성을 제공 또는 시도하는 경우.

78. 통지하는 자에 대한 법적 책임으로부터 보호

- (1) 본절에 의거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통지를 하는 자는 단순히 통지로 인해 타인에게 발생한 손실, 피해 및 부상에 대해 개인적으로 어떠한 책임도 없다.
- (2) 제(1)항을 제한함이 없이,
 - (a) 통지를 하거나 통지에 포함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만으로 전문가적 예의 또는 윤리 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허용되는 전문가적 행동 기준에서 벗어난 것으로 간주할 수 없고,
 - (b) 통지 또는 정보 제공으로 인해 개인이 초래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이 없다.

제2절 본 법률에 따라 지원, 촉진, 이행 및 미이행한 자에 대한 법적 책임으로부터 보호

79. 자발적 조력사망 요청 또는 이용을 지원하거나 촉진하는 자에 대한 형사적 책임으로부터 보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 (a) 타당한 근거를 기반으로 신뢰하는 타인이 본 법률에 따라 자발적 조력사망을 요청하거나 이용하도록 지원 또는 촉진하는 행위를 이행하거나 하지 못한 자,
- (b) 본조와 별도로 관습법 또는 기타 제정법에 의거해 위법 행위를 이행하거나 하지 못한 자는, 범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80. 본 법률에 따라 행위하는 등록된 의료종사자는 법적 책임이 없다

합리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본 법률에 따른 행동은 다음 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 믿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과실 없이 행동하는 등록된 의료종사자,

- (a) 유죄가 되는 위법 행위, 또는
- (b) 비전문적인 행동이나 의료전문직 부정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는 행위, 또는
- (c) 민사 소송에 책임이 있는 행위, 또는
- (d) 행동 강령의 위반 책임이 있는 행위.

81. 개인이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을 복용한 후에 입회한 등록된 의료종사자 또는 구급대원에게는 법적 책임이 없다

(1)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구명 또는 생명 유지 치료를 요청하지 않은 자에게 투여하지 않고

타당한 근거를 기반으로 본 법률에 따라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을 투여받거나 또는 자가 투여한 후 개인이 사망하고 있다고 믿는 자는 그러한 부작위와 관련해 다음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a) 유죄가 되는 위법 행위, 또는
- (b) 비전문적인 행동이나 의료전문직 부정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는 행위, 또는
- (c) 민사 소송에 책임이 있는 행위, 또는
- (d) 행동 강령의 위반 책임이 있는 행위.

(2) 본조는 등록된 의료종사자 또는 구급대원이 개인의 안위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료를 제공하는 것을 금하지 아니한다.

(3) 본조에서,

구급대원(ambulance paramedic)이란 1986 구급서비스법(Ambulance Services Act 1986)에 규정된 의미에서 구급서비스에서 고용하거나 관여한 자,

- (a) 구급대원 또는 집중치료 응급구조사로, 또는
- (b) 응급상황에서 환자에게 의료 또는 기타 지원을 제공하는 자로서.

82. 1958 형사법 제463B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958 형사법 제463B조는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개인이 본 법률에 따라 자발적 조력사망을 이용하고 있다고 이해하거나 믿는 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8장—위법 행위

83. 의료인 투여 허가증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위법 행위다

조정의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의료인 투여 허가증의 대상자에게 허가증에 명시된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을 투여해선 안 된다.

- (a) 조정의사가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을 투여함으로써 개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목적으로,
- (b) 동 허가증에 따라 동 허가증에서 승인하는 조력사망약물 이외에 약물을 고의로 투여하는 경우.

■처벌: 1급(Level 1) 무기징역형(종신형) 또는 법원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징역형.

주

의료인 투여 허가증에 의한 조정의사의 권한은 제46조를 참고한다.

84.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을 타인에게 투여하는 자의 위법 행위—자가 투여 허가증

개인은 자가 투여 허가증에 따라 조제된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을 타인에게 고의로 투여해선 안 된다.

■처벌: 1급(Level 1) 무기징역형(종신형) 또는 법원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징역형.

85. 타인에게 자발적 조력사망을 요청하도록 유도하는 위법 행위

(1) 개인은 타인에게 자발적 조력사망을 요청하거나 요청을 취소하도록 부정직하게 또는 강압적으로 유도해서는 안 된다.

■처벌: 자연인(natural person)의 경우, 6급 징역형(최대 5년) 또는 600 벌금 단위 또는 두 가지 모두,
법인의 경우, 2400 벌금 단위.

- (2) 본조에서,
요청(request)이란,
 (a) 1차 요청, 또는
 (b) 서면 선언서, 또는
 (c) 최종 요청, 또는
 (d) 투여 요청을 의미한다.

86.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의 투여를 유도하는 위법 행위

개인은 자가 투여 허가증에 따라 조제된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을 타인에게 부정직하게 또는 강압적으로 투여해선 안 된다.

■처벌: 자연인(natural person)의 경우, 6급 징역형(최대 5년) 또는 600 벌금 단위 또는 두 가지 모두,
 법인의 경우, 2400 벌금 단위.

87. 양식 또는 기록을 위조하는 위법 행위

(1) 개인은 본 법률에 의거해 작성하도록 요구되는 양식 또는 기록을 위조해선 안 된다.

■처벌: 자연인(natural person)의 경우, 6급 징역형(최대 5년) 또는 600 벌금 단위 또는 두 가지 모두,
 법인의 경우, 2400 벌금 단위.

- (2) 본조에서 **양식 또는 기록**이란,
 (a) 1차 평가 보고서 양식, 또는
 (b) 상담 평가 보고서 양식, 또는
 (c) 서면 선언서, 또는
 (d) 담당자 지명서 양식, 또는
 (e) 최종 검토 양식, 또는
 (f) 자발적 조력사망약물 조제 양식, 또는
 (g) 자발적 조력사망약물 폐기 양식, 또는
 (h) 조정의사 투여 양식을 의미한다.

88. 거짓 진술을 하는 위법 행위

(1) 개인은 특별 사항에서 잘못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내용을 자발적 조력사망을 요청하는 타인과 관련된 보고서 또는 양식에 고의로 진술해선 안 된다.

■처벌: 자연인(natural person)의 경우, 6급 징역형(최대 5년) 또는 600 벌금 단위 또는 두 가지 모두,
법인의 경우, 2400 벌금 단위.

(2) 본조에서 **보고서 또는 양식**이란,

- (a) 1차 평가 보고서 양식, 또는
- (b) 상담 평가 보고서 양식, 또는
- (c) 서면 선언서, 또는
- (d) 담당자 지명서 양식, 또는
- (e) 최종 검토 양식, 또는
- (f) 제47조에 따른 자가 투여 허가증 신청서, 또는
- (g) 제48조에 따른 의료인 투여 허가증 신청서, 또는
- (h) 제47조(2)(f)에 의거한 진술서, 또는
- (i) 제48조(2)(f)에 의거한 진술서, 또는
- (j) 자발적 조력사망약물 조제 양식, 또는
- (k) 자발적 조력사망약물 폐기 양식, 또는
- (l) 조정의사 투여 양식을 의미한다.

89. 자가 투여 허가증 대상의 사망 이후 담당자가 미사용 또는 잔여 약물을 반납하지 않는 위법 행위

자가 투여 허가증 대상의 담당자는 개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허가증에 명시되어 개인에게 조제된 자발적 조력사망약물 중에 본인이 아는 미사용 또는 잔여 약물을 조제 약국의 약사에게 반드시 반납해야 한다.

■처벌: 8급 징역형(최대 12개월) 또는 120 벌금 단위 또는 두 가지 모두.

90. 위원회에 양식 사본을 송달하지 않는 위법 행위

(1) 본 법률에 따라 양식의 사본을 위원회로 제공하도록 요구되는 자는 본 법률에 따라 위원회에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처벌: 60 벌금 단위.

(2) 본조에서 **양식**이란,

- (a) 1차 평가 보고서 양식, 또는
- (b) 상담 평가 보고서 양식, 또는
- (c) 최종 검토 양식, 또는
- (d) 자발적 조력사망약물 조제 양식, 또는

- (e) 자발적 조력사망약물 폐기 양식, 또는
- (f) 조정의사 투여 양식을 의미한다.

91. 법인 담당자의 형사적 책임—선관주의의무 미이행

(1) 법인이 제(2)항에 명시된 조항을 어기는 경우, 법인 담당자가 법인의 위법 행위를 막기 위해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면 법인 담당자는 동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2) 제(1)항의 목적을 위해, 다음 조항이 명시된다.

- (a) 제85조,
- (b) 제86조,
- (c) 제87조,
- (d) 제88조,
- (e) 제90조.

(3) 법인 담당자가 선관주의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는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법원은,

- (a) 법인의 위법 행위에 대해 담당자가 알고 있었거나 마땅히 알아야 하는 것을 참작하고,
- (b) 담당자가 당시 법인이 위법 행위와 관련해 법인에게 영향력을 미칠 만한 직급에 있었는지 참작하고,
- (c) 담당자가 법인의 위법 행위를 막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또는 합리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지를 참작하고,
- (d) 그 외 관련 사안을 참작해야 한다.

(4) 담당자에게 적용되는 기타 위법 행위를 제한함이 없이 법인 담당자는 자신이 혐의를 받는 위법 행위를 법인이 혐의를 받았다면 이용할 수 있는 변호에 의존할 수 있고, 이로써 담당자는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과 동일한 입증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5) 법인이 제(2)항에 명시된 조항을 위반하여 기소되든 유죄 판결을 받든 상관없이 법인 담당자는 제(2)항에 명시된 조항에 위반되는 위법 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

(6) 본조에서,

법인(body corporate)이란 기업법 제57A조에 규정된 의미로 사용된다.

법인 담당자(officer)란,

- (a) 법인의 담당자에 해당하는 자(기업법 제9조에 정의), 또는
- (b) 명칭과 상관없이 기업 경영에 관여하거나 참여하는 자(제(a)호에서 언급하는 자를 제외한 개인).

제9장—자발적 조력사망 심사위원회

제1절—설립

92. 자발적 조력사망 심사위원회 설립

자발적 조력사망 심사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제2절—기능과 권한

93. 위원회의 기능과 권한

(1)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다.

- (a) 자발적 조력사망과 관련된 사안을 감독하는 기능,
- (b) 본 법률에 의거한 기능 또는 권한의 행사를 검토하는 기능,
- (c) 국회의사당에 본 법률의 시행과 자발적 조력사망 개선을 위한 권고에 대한 보고서를 제공하는 기능,
- (d) 등록된 의료종사자와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자발적 조력사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본 법률의 요건을 준수하도록 도모하는 기능,
- (e) 자발적 조력사망과 관련해 다음 개인 및 단체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파악한 문제를 조사하는 기능,
 - (i) 경찰국장
 - (ii) 등록 담당자,
 - (iii) 차관,
 - (iv) 국가 검사관,
 - (v) 호주 의료종사자등록기관,
- (f) 본 법률에 따른 기능 또는 권한을 행사하는 자들에게 자발적 조력사망의 질과 안전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하는 기능,
- (g) 본 법률에 따라 위원회에 제공되는 정보 및 양식을 분석하고 연구를 실시하는 기능,
- (h) 자발적 조력사망, 그리고 위원회가 본 법률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면서 파악한 기타 사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
- (i)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 법률에 따라 제공되는 양식과 정보를 수집, 활용 및 공개하는 기능,

- (j) 다음에 해당하는 개인 및 집단과 자발적 조력사망에 대해 상담하고 관여하는 기능,
 - (i) 빅토리아 지역사회,
 - (ii) 관련된 집단 및 조직,
 - (iii) 정부 부서 및 기관,
 - (iv) 자발적 조력사망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록된 의료종사자,
 - (k) 본 법률의 시행과 관련해 장관 또는 차관에게 조언을 제공하는 행위,
 - (l) 요청한 바와 같이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장관 또는 차관에게 보고서를 제공하는 행위.
- (2) 위원회는 본 법률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거나 편리한 권한을 모두 갖고 있다.

제3절—회원 자격과 절차

94. 위원회 회원 자격

- (1) 위원회는 다음으로 구성된다.
 - (a) 회장,
 - (b) 부회장(해당 시),
 - (c) 제95조에 따라 지명된 회원.
- (2) 위원회 회원은 회원의 지명과 관련해 2004 공공행정부법(Public Administration Act 2004)(동 법률의 제5장 제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95. 위원회 회원 지명

- (1) 장관은 정부 관보에 게시된 순서로 적합한 개인을 위원회 회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 (2) 장관이 위원회의 업무와 기능을 모두 수행하기에 적절한 지식과 기술을 겸비하였다고 판단하는 개인은 위원회 회원으로 지명되기에 적격하다.

96. 회원 임기와 지명 조건

- (1) 위원회 회원은,
 - (a) 임명장에 명시된 기간 동안 직위를 맡고, 그 기간은 3년을 넘지 아니하며,
 - (b) 임명장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전일제(full-time) 또는 시간제(part-time)로 지명할 수 있고,
 - (c) 재지명을 받기에 적격하다.

- (2) 제(1)항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초기 회원은,
- (a) 임명장에 명시된 기간 동안 직위를 맡고, 그 기간은 6년을 넘지 아니하며,
 - (b) 임명장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전일제(full-time) 또는 시간제(part-time)로 지명할 수 있고,
 - (c) 임명장에 명시된 기간 재지명을 받기에 적격하고, 그 기간은 3년을 넘지 아니한다.
- (3) 본조에서,
- 위원회 초기 회원(initial member of the Board)**이란, 제9장을 시행하면서 구성된 최초 위원회의 회원으로, 제95조에 따라 지명된 자를 의미한다.

97. 사임과 해임

- (1) 위원회 회원은 회원이 자필로 서명하고 장관에게 전달한 회원 지위를 사임할 수 있다.
- (2) 장관은 언제든지 위원회 회원을 해임시킬 수 있다.
- (3) 위원회 회원이 사망, 사임 또는 해임되는 경우, 장관은 회원으로 지명하기에 적격한 자를 지명하여 공석을 채울 수 있다.

98. 회장과 부회장

- (1) 장관은 위원회 회원 중 한 명을 회장으로 지명해야 한다.
- (2) 장관은 위원회 회원 중 한 명을 부회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
- (3)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명된 자는 각자 임명장에 명시된 기간만큼 직위를 맡고 재지명을 받기에 적격하다.
- (4)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명된 자는 개인이 자필로 서명하여 장관에게 전달함으로써 직위를 사임할 수 있다.
- (5) 장관은 언제든지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거해 지명된 개인을 해임시킬 수 있다.
- (6)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명된 개인은 위원회 회원 자격을 상실하면 해당 직위도 해제된다.

99. 위원회 회원 급여

위원회 회원은 장관이 수시로 정하는 수수료와 수당을 지급 받을 권한이 있다.

100. 위원회에 대한 지원

- (1) 장관이 승인하는 경우, 위원회는 특정 사안에 대해 위원회를 지원할 수 있는 특별한 지식 또는 기술을 겸비한 자를 선임할 수 있다.

- (2) 위원회를 지원하도록 선임된 자는 선임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위원회 회원으로 간주한다.

101. 위원회 절차

- (1) 회장 또는 회원이 부재 시에는 부회장이 위원회 회의를 주재해야 한다.
 (2) 현재 위원회 회원의 과반수가 정족수이다.
 (3) 본 법률을 전제로 하여 위원회는 자체 법적 절차(proceeding)를 규제할 수 있다.

102. 소위원회(Subcommittees)

- (1) 위원회는 장관이 승인하는 경우 그 기능을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위원회를 지명할 수 있다.
 (2) 소위원회는 다음으로 구성될 수 있다.
 (a) 위원회가 결정하는 위원회 회원,
 (b) 위원회가 결정하는 개인.
 (3)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4절—위원회가 보유한 식별 정보 요청, 의뢰 및 통지

103. 위원회의 정보 요청

위원회는 위원회의 기능 수행에 있어 누구(담당자 포함)에게든 위원회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04. 타인에게 개인 정보 의뢰

- (1) 제(2)항을 전제로 하여 위원회는 사안을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원회의 기능을 이행하거나 권한을 행사하여 얻은 식별 정보를 활용하고 다음 상대방에게 공개할 수 있다.
 (a) 경찰국장
 (b) 등록 담당자,
 (c) 차관,
 (d) 국가 검시관,
 (e) 호주 의료종사자등록기관.
 (2) 위원회는 식별정보가 개인 또는 단체의 기능과 권한과 관련된 사안을 공개한다고 믿을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제(1)항에 따른 사안을 조사해선 안 된다.

105. 위원회는 특정 양식을 수령 시 등록 의사, 약사 또는 차관에게 통지한다

(1) 위원회는 등록 의사 또는 약사(경우에 따라 요하는 대로)로부터 다음 양식의 사본을 수령한 후 가능한 한 빨리 등록 의사 또는 약사에게 다음과 같은 문서의 사본을 수령하였음을 통지해야 한다.

- (a) 1차 평가 보고서 양식,
- (b) 상담 평가 보고서 양식,
- (c) 최종 검토 양식,
- (d) 자발적 조력사망약물 조제 양식,
- (e) 자발적 조력사망약물 폐기 양식,
- (f) 조정의사 투여 양식.

(2) 위원회는 작성한 자발적 조력사망약물 폐기 양식의 사본을 수령한 후 최대한 빨리 차관에게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106. 위원회는 개인의 사망을 통지 후 담당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위원회는 등록 담당자로부터 1996 출생, 사망, 결혼 등록법 제40A조에 따라 개인의 사망 등록을 통지 받고 7일 이내 개인의 담당자에게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a) 제45조(c)에 의거해 자발적 조력사망약물 중 미사용 및 잔여 약물을 조제 약국의 약사에게 반납해야 하는 요건을 규정하는 정보,
- (b) 담당자가 제(a)호에 규정된 요건의 이행을 지원하는 데에 이용할 수 있는 지원 서비스를 설명하는 정보.

제5절—보고서**107. 연례 보고서**

- (1) 위원회는 회계 연도가 종료되고 3개월 이내에 각 회계연도 동안 본 법률의 시행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 (2) 제(1)항에 따라 작성한 보고서는 보고 기간 동안 위원회가 파악한 전반적인 자발적 조력사망 문제에 대해 권고할 수 있다.
- (3) 제(1)항에 따른 1차 보고서는 본조의 시행일로부터 2년째에 시작해 다음 해 6월 30일에 종료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108. 의회로 연례 보고서 제공

- (1) 위원회는 국회의사당 서기에게 제107조에 따라 작성한 연례 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2) 각 국회의사당의 서기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일은 다음과 같다.

- (a) 보고서 수령일, 또는
- (b) 의회 다음 회기일

109. 장관 또는 차관의 요청에 따른 위원회 보고서

장관 또는 차관은 위원회에 그 기능과 관련된 문제를 고려하고 보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10조는 No. 61/2017 제112조(1)에 의해 폐지됨.

111. 보고서 내용

(1) 제(2)항을 전제로 하여 위원회는 관련된 보고 기간 동안 본 법률에 의거해 자발적 조력사망을 이용 또는 요청한 자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제107조에 의거한 보고서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111조(1)은 No. 61/2017 제112조(2)에 의해 개정됨.

(2) 위원회는 제107조에 의거한 보고서에는

다음과 관련해 편견을 심어줄 것으로 간주되는 다음과 같은 정보(비식별 정보 포함)는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 (a) 형사 소송 또는 위법 행위 수사, 또는
- (b) 민사 소송, 또는
- (c) 감시관
- (d) 법원에서의 소송.

제111조(2)는 No. 61/2017 제112조(2)에 의해 개정됨.

112. 위원회의 6개월 단위 보고서 폐지 및 관련 개정

(1) 제110조는 제110조가 시행되고 두 번째 해에 ~~폐지~~되었다.

(2) 제111조에서 “section 107 or 110(제107조 또는 제110조)”(두 번 발생)는 제110조가 시행되고 두 번째 해에 “section 107(제107조)”를 ~~대체~~한다.

제10장—일반 조항

113. 차관의 선언

차관은 법률 문서를 통해 제4장제2절에 의거해 자발적 조력사망 허가증 신청을 결정하거나 자발적 조력사망 허가증을 개정할 수 있는 차관의 권한을 2004 공공행정부 제3장에 의거해 고용된 개인 및 집단에게 위임할 수 있다.

114. 장관은 의사를 위한 교육을 승인할 수 있다

장관은 정부 관보에 공고문을 실어 다음 사안과 관련된 교육을 승인할 수 있다.

- (a) 조정의사와 상담의사의 기능을 포함해 본 법률에서 조정의사 및 상담의사와 관련된 요건,
- (b) 개인이 적격성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평가,
- (c) 학대 또는 강압에 대한 위험 요인의 파악과 평가.

115. 통역사

본 법률의 목적을 위해 개인의 자발적 조력사망 요청 및 이용을 지원하는 통역사는,

- (a) 규정된 기관으로부터 공인된 자여야 하고,
- (b) 다음에 해당해선 안 된다.
 - (i) 개인의 가족 구성원, 또는
 - (ii) 다음과 같이 믿거나 이해하는 것,
 - (A) 개인의 유언장에 따른 수혜자, 또는
 - (B) 개인의 사망으로 재정적으로 또는 기타 물질적인 수혜자, 또는
 - (iii) 개인이 치료를 받거나 거주하고 있는 보건의시설의 소유주 또는 경영자, 또는
 - (iv) 개인에게 의료서비스 또는 개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직접 관여하는 자.

116. 5개년 검토

- (1) 장관은 본 법률의 향후 시행을 검토해야 한다.
- (2) 검토는 법률을 시행하고 5년째에 실시해야 하고, 법률이 시행되고 처음 4년에 대한 검토여야 한다.
- (3) 검토를 완료한 장관은 각 국회의사당에 보고서 검토를 상정해야 한다.

117. 위원회는 통계 정보를 기록, 유지 및 마련한다

- (1) 위원회는 다음 대상에 관한 통계 정보를 기록하고 유지해야 한다.
 - (a) 자발적 조력사망 허가증이 발급된 개인,
 - (b) 본 법률에 따라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을 투여 받거나 자가 투여한 후 사망한 개인.
- (2) 다음 통계 정보는 제(1)항에 언급된 개인과 관련해 기록하고 유지해야 한다.
 - (a) 적격성 기준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의 질병, 질환 및 의학적 상태,

- (b) 개인이 본 법률에 따라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을 투여 받거나 자가 투여한 후 사망하는 경우, 개인이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나이.
- (3) 위원회는 통계 정보를 위원회가 관리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비식별 양식으로 기록하고 유지해야 한다.

118. 규정

- (1) 내각(Governor in Council)은 본 법률에서 요구하거나 허가하는 사안 및 사물과 관련된 규정 또는 본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을 만들 수 있다.
- (2) 본 법률에 의거해 만든 규정은,
 - (a) 일반 적용 또는 제한 적용될 수 있다.
 - (b) 시간, 장소 및 상황의 차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c) 규정의 조항으로부터 개인 또는 사물 또는 개인 부류 또는 사물 부류의 면제를 위해 명시된 사례 또는 사례 부류를 제공할 수 있다.
 - (i) 무조건적으로 또는 명시된 조건으로,
 - (ii) 전체적으로 또는 규정에 명시된 범위에 한해,
 - (d) 다음 조건과 상관없이 문서에 포함된 문제를 적용, 채택 또는 통합할 수 있다.
 - (i)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또는 규정에서 수정하는 바에 따라, 또는
 - (ii) 특정 시기에 시행되는 대로, 또는
 - (iii) 수시로 시행되는 대로.

Pt.
(조문 표제와 제119조 내지 제143조)은 No. 61/2017 제143조에 의해 폐지됨.

별지 1—양식

양식 1

제21조

1차 평가 보고서 양식

본 양식을 작성하기 위한 지침

본 양식은 자발적 조력사망의 1차 요청자의 조정의사가 작성한다. 조정의사는 2017 자발적 조력사망법에 따라 1차 요청자의 1차 평가를 실시하도록 요구된다.

본 양식은,

- (a) 개인이 1차 요청을 하였음을 위원회에 통지하고,
- (b) 개인의 1차 평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는 데에 사용한다.

전문 의과대학의 펠로우 또는 직업적으로 등록된 일반의에 해당하고 승인된 평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한 본 양식을 작성하지 않는다.

개인이 자발적 조력사망에 적절한 대상으로 평가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1차 평가를 완료하고 7일 이내에 위원회에 본 양식의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파트 A—평가 대상자 정보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파트 B—조정의사 정보

이름:

병원 주소:

병원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본인은

- ☐ 전문 의과대학의 펠로우로,
- ☐ 직업적으로 등록된 일반의이다

펠로우십* 수여/직업적 등록증 부여 연도:

승인된 평가 교육의 마지막 이수 날짜:

질병, 질환 및 의학적 상태(해당 시)와 관련해 조정의사의 관련 전문 지식 및 경험

[질병, 질환 및 의학적 상태에 관한 상세 정보를 삽입하고 명시한다]

파트 C—1차 요청

자발적 조력사망 요청자의 1차 요청일:

파트 D—1차 평가 보고서

>> 작성 지침

개인이 자발적 조력사망에 적절한 대상자로 평가하는 경우, 섹션 1만 작성한다.

개인이 자발적 조력사망에 부적격한 대상자로 평가하는 경우, 섹션 2만 작성한다.

섹션 1: 적절한 대상자로 평가되는 개인

본인, [조정의사 이름]은/는 [피평가자 이름]의 평가를 완료하였고, [피평가자 이름]을/를 대상으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 (a) 18세 이상의 성인이고,
- (b) 호주 시민 또는 영주권자이고, 현재 빅토리아에 거주하며,
1차 요청을 하기 직전에 최소 12개월 이상 빅토리아에 거주해왔고,
- (c) 자발적 조력사망과 관련해 의사결정능력이 있고,
- (d) 질병, 질환 및 의학적 상태를 다음과 같이 진단 받았다.
 - (i) 치유할 수 없는 상태이고,
 - (ii) 진행 중인 상태로 사망에 이를 것이고,
 - (iii) 몇 주 또는 6개월 이내에 사망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고, 퇴행성 질병,
질환 및 의학적 상태의 경우 12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며,
 - (iv) 개인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완화될 수 없는 고통을 야기하고 있다.

개인의 진단과 예후에 대한 상세 정보

[상세 정보 기입]

의사결정능력과 관련된 전문가 소견에 의뢰가 필요했는가?

☐ 그렇다

☐ 아니다

의뢰가 필요하다면 의뢰 상세 정보를 제공한다

[의뢰 상세 정보]

개인의 질병, 질환 및 의학적 상태와 관련해 전문가 소견에 의뢰가 필요하였는가?

☐ 그렇다

☐ 아니다

의뢰가 필요하다면 의뢰 상세 정보를 제공한다

[의뢰에 대한 상세 정보 기입]

개인의 질병, 질환 및 의학적 상태가 향후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사망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경퇴행성 질병, 질환 및 의학적 상태인지에 대한 전문가 소견이 필요한 의뢰였는가?

☐ 그렇다

☐ 아니다

의뢰가 필요한 경우, 의뢰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전문가로부터 받은 임상 보고서를 첨부한다.

본인은 피평가자에게 다음 정보를 제공하였고, 개인이 이러한 정보를 이해하였다고 확신한다.

- (a) 개인의 의학적 진단과 예후,
- (b)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치료 선택안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
- (c)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완화의료와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
- (d) 본 법률에 따라 개인의 사망을 야기하는 목적으로 처방될 수 있는 독극물, 규제 약물 및 의존 약물의 잠재적 위험,
- (e) 본 법률에 따라 처방되는 독극물, 규제 약물 및 의존 약물을 복용 시 예상 결과는 사망이라는 것,
- (f) 개인은 언제든지 요청 및 평가과정을 중단할 수 있다는 점

(g) 개인이 조정의사가 아닌 등록 의사로부터 지속적으로 의료서비스를 받는 경우, 개인에게 개인의 자발적 조력사망 요청에 대해 등록 의사에게 통지하도록 장려된다는 것.

본인이 아는 한 개인은 자발적 조력사망 요청에 대해 관련된 등록 의사에게 통지하였다.

☐ 그렇다

☐ 아니다

아니라면 이유는 무엇인가?

[이유를 명시한다]

본인은 개인의 동의 하에 개인의 가족 구성원에게 모든 관련된 임상 절차와 개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의 자가 투여 계획을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였다.

평가하는 대상이 자발적으로 어떠한 강압도 없이 행동하고 있고, 자발적 조력사망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확신한다.

[개인이 적격성 기준을 충족함을 입증하는 증거 자료를 첨부한다.]

서명됨

[조정의사 서명]

날짜

개인을 적절한 대상자로 평가하기 위한 조정의사의 지침

조정의사가 개인이 자발적 조력사망에 적격하다고 평가한 경우, 본인은 조정의사로서 다른 등록 의사에게 개인의 상담 평가를 의뢰해야 한다.

상담의사가 개인을 자발적 조력사망에 적절한 대상자로 평가하는 경우, 본인은 요청 및 평가과정과 관련해 조정의사의 남은 업무를 이행하도록 요구된다(2017 자발적 조력사망법 제3장제3절 내지 제6절 참고). 본인이 최종 검토를 완료하고 나면 요청 및 평가과정이 완료되었고, 조정의사로서 본인은 2017 자발적 조력사망법 제4장과 제5장에 규정된 바와 같이 자발적 조력사망 허가증을 신청하고 조정의사에게 요구되는 기타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섹션 2: 부적격한 대상으로 평가되는 개인

본인, [조정의사 이름]은/는 [피평가자 이름]의 평가를 완료하였고, [피평가자 이름]이/가 자발적 조력사망에 적격하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개인은 2017 자발적 조력사망법 제20조(1)의 다음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2017 자발적 조력사망법

[관련된 적격성 요건 또는 충족하지 않는 제20조(1)의 요건을 명시한다. 개인이 이러한 기준 또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증거 자료를 첨부한다.]

서명됨

조정의사 서명

날짜

*해당하지 않을 경우 삭제한다

양식 2

제30조

상담 평가 보고서 양식

본 양식을 작성하기 위한 지침

본 양식은 자발적 조력사망의 1차 요청자의 상담의사가 작성한다.

본 양식은 개인의 상담 평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는 데에 사용한다.

전문 의과대학의 펠로우 또는 직업적으로 등록된 일반의에 해당하고 승인된 평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한 본 양식을 작성하지 않는다.

개인이 자발적 조력사망에 적절한 대상으로 평가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상담 평가를 완료하고 7일 이내에 위원회에 본 양식의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본 양식의 사본을 조정의사에게 제공해야 한다.

파트 A—평가 대상자 정보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파트 B-상담의사 정보

이름:

병원 주소:

병원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본인은

- ☐ 전문 의과대학의 펠로우로,
- ☐ 직업적으로 등록된 일반의이다.

펠로우십* 수여/직업적 등록증 부여 연도:

승인된 평가 교육의 마지막 이수 날짜:

질병, 질환 및 의학적 상태(해당 시)와 관련해 상담의사의 관련 전문 지식 및 경험:

[질병, 질환 및 의학적 상태에 관한 상세 정보를 삽입하고 명시한다]

제C장—상담 평가 보고서

》작성 지침

개인이 자발적 조력사망에 적절한 대상자로 평가하는 경우, 섹션 1만 작성한다.

개인이 자발적 조력사망에 부적격한 대상자로 평가하는 경우, 섹션 2만 작성한다.

섹션 1: 적절한 대상자로 평가되는 개인

본인, [상담의사 이름]은/는 [피평가자 이름]의 평가를 완료하였고, [피평가자 이름]을/를 대상으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 (a) 18세 이상의 성인이고,
- (b) 호주 시민 또는 영주권자이고, 주로 빅토리아에 거주하고, 1차 요청 시 최소 12개월 이상 빅토리아에 거주하였고,
- (c) 자발적 조력사망과 관련해 의사결정능력이 있고,
- (d) 질병, 질환 및 의학적 상태를 다음과 같이 진단 받았다.
 - (i) 치유할 수 없는 상태이고,
 - (ii) 진행 중인 상태로 사망에 이를 것이고,
 - (iii) 몇 주 또는 6개월 이내에 사망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고, 퇴행성 질병, 질환 및 의학적 상태의 경우 12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며,
 - (iv) 개인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완화될 수 없는 고통을 야기하고 있다.

개인의 진단과 예후에 대한 상세 정보 [상세 정보 기입]

의사결정능력과 관련된 전문가 소견에 의뢰가 필요했는가?

☐ 그렇다

☐ 아니다

의뢰가 필요하다면 의뢰 상세 정보를 제공한다.

[의뢰 상세 정보]

개인의 질병, 질환 및 의학적 상태와 관련해 전문가 소견에 의뢰가 필요하였는가?

☐ 그렇다

☐ 아니다

의뢰가 필요하다면 의뢰 상세 정보를 제공한다.

[의뢰 상세 정보]

본인은 피평가자에게 다음 정보를 제공하였고, 개인이 이러한 정보를 이해하였다고 확신한다.

- (a) 개인의 의학적 진단과 예후,
- (b)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치료 선택안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
- (c)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완화의료와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
- (d) 본 법률에 따라 개인의 사망을 야기하는 목적으로 처방될 수 있는 독극물, 규제 약물 및 의존 약물의 잠재적 위험,
- (e) 본 법률에 따라 처방되는 독극물, 규제 약물 및 의존 약물을 복용 시 예상 결과는 사망이라는 것,
- (f) 개인은 언제든지 요청 및 평가과정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것,
- (g) 개인이 조정의사가 아닌 등록 의사로부터 지속적으로 의료서비스를 받는 경우, 개인에게 개인의 자발적 조력사망 요청에 대해 등록 의사에게 통지하도록 장려된다는 것.

본인이 아는 한 개인은 자발적 조력사망 요청에 대해 관련된 등록 의사에게 통지하였다.

☐ 그렇다

☐ 아니다

아니라면 이유는 무엇인가?

[이유를 명시한다]

평가하는 대상이 자발적으로 어떠한 강압도 없이 행동하고 있고, 자발적 조력사망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확신한다.

[개인이 적격성 기준을 충족함을 입증하는 증거 자료를 첨부한다.]

서명됨

상담의사 서명

날짜

섹션 2: 부적격한 대상으로 평가되는 개인

본인, [상담의사 이름]은/는 [피평가자 이름]의 평가를 완료하였고, [피평가자 이름]이/가 자발적 조력사망에 적격하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개인은 2017 자발적 조력사망법 제29조(1)의 다음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2017 자발적 조력사망법

[관련된 적격성 요건 또는 충족하지 않는 제29조(1)의 요건을 명시한다. 개인이 이러한 기준 또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증거 자료를 첨부한다.]

서명됨

상담의사 서명

날짜

*해당하지 않을 경우 삭제한다

양식 3

제34조

서면 선언서

본인, *[선언서 작성자 이름]*은/는
*[선언서 작성자 주소]*에 거주하고 있고,

2017 자발적 조력사망법에 의거해 자발적 조력사망을 요청하는 바이다. 본인은 본인의 조정의사와 상담의사로부터 자발적 조력사망에 적합한 대상자로 평가되었음을 통지받았다.

본인은 자발적으로 어떠한 강압도 없이 본 선언서를 작성한다.

본인은 본 선언서의 성질과 결과를 이해하므로 2017 자발적 조력사망법의 요건을 충족 시 본인이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을 투여할 것이며, 본인이 약물을 자가 투여하거나 투여 받을 시 사망할 것으로 예상하는 바이다.

본인이 신체적으로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을 자가 투여하거나 소화할 능력이 없다면 본인의 조정의사만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을 투여할 수 있다.

서명됨
선언서 작성자 또는 대리인의 서명

증인 1 서명

증인 2 서명

조정의사 서명

날짜

주—선언서 작성자 대리인의 서명

선언서 작성자가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개인의 지시에 따라 개인의 입회 하에 개인을 대신하여 타인이 지명서에 서명할 수 있다. 선언서에 서명하는 자는 18세 이상의 성인이어야 하고 선언서 증인이 아니어야 한다.

증인에 관한 주

증인 중에 선언서 작성자의 가족 구성원은 1명을 넘지 아니한다—2017 자발적 조력사망법 제35조(3)을 참고한다. 가족 구성원이란 선언서를 작성하는 배우자 또는 동거 파트너, 부모, 형제자매, 자녀 또는 손주를 의미한다.

증인 증명서—선언서 작성자가 선언서에 서명할 경우 본 섹션을 작성한다.

본인, [증인 1 이름]은/는

[증인 1 주소]에 거주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인증한다.

- (a) 본인의 입회 하에 선언서 작성자가 방해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선언서에 서명하였고,
- (b) 선언서 작성자가 선언서에 서명할 당시 자발적 조력사망과 관련해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였고,
- (c) 개인이 선언서에 서명할 당시 선언서의 성질과 그 결과를 이해하는 것처럼 보였고,
- (d) 본인은 18세 이상의 성인이고,
- (e) 본인이 아는 바로는 다음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i) 선언 작성자의 유언장에 따른 수혜자, 또는
 - (ii) 선언 작성자의 사망으로 재정적으로 또는 기타 물질적인 방식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 또는
 - (iii) 다음과 같은 보건시설의 소유주 또는 운영자,
 - (A) 선언서 작성자가 치료를 받는 보건시설, 또는
 - (B) 선언 작성자가 거주 중인 보건시설, 또는
 - (iv) 선언서 작성자에게 의료서비스 또는 전문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직접 관여하는 보건시설.

서명됨

증인 1 서명

본인, [증인 2 이름]은/는

[증인 2 주소]에 거주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인증한다.

- (a) 본인의 입회 하에 선언서 작성자가 방해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선언서에 서명하였고,
- (b) 선언서 작성자가 선언서에 서명할 당시 자발적 조력사망과 관련해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였고,
- (c) 개인이 선언서에 서명할 당시 선언서의 성질과 그 결과를 이해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
- (d) 본인은 18세 이상의 성인이고,
- (e) 본인이 아는 바로는 다음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i) 선언 작성자의 유언장에 따른 수혜자, 또는
 - (ii) 선언 작성자의 사망으로 재정적으로 또는 기타 물질적인 방식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 또는
 - (iii) 다음과 같은 보건시설의 소유주 또는 운영자,
 - (A) 선언서 작성자가 치료를 받는 보건시설, 또는
 - (B) 선언 작성자가 거주 중인 보건시설, 또는
 - (iv) 선언서 작성자에게 의료서비스 또는 전문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직접 관여하는 보건시설.

증인 2 서명

증인 증명서—타인이 작성자를 대신해 선언서에 서명한 경우에 본 섹션을 작성한다

본인, [증인 1 이름]은/는

[증인 주소1]에 거주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인증한다.

- (a) 선언서 작성자는 본인의 입회 하에 방해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타인에게 선언서에 서명할 것을 지시하는 것처럼 보였고,
- (b) 본인과 선언서 작성자의 입회 하에 타인이 선언서에 서명하였고,
- (c) 타인이 선언서에 서명할 당시 선언서 작성자는 자발적 조력사망과 관련해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였고,

- (d) 타인이 선언서에 서명할 당시 선언서 작성자는 선언서의 성질과 그 결과를 이해하는 것처럼 보였고,
- (e) 본인은 18세 이상의 성인이고,
- (f) 본인이 아는 바로는 다음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i) 선언 작성자의 유언장에 따른 수혜자, 또는
 - (ii) 선언 작성자의 사망으로 재정적으로 또는 기타 물질적인 방식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 또는
 - (iii) 다음과 같은 보건의시설의 소유주 또는 운영자,
 - (A) 선언서 작성자가 치료를 받는 보건의시설, 또는
 - (B) 선언서 작성자가 거주 중인 보건의시설, 또는
 - (iv) 선언서 작성자에게 의료서비스 또는 전문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직접 관여하는 보건의시설.

서명됨

증인 1 서명

본인, [증인 2 이름]은/는

[증인 주소2]에 거주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인증한다.

- (a) 선언서 작성자는 본인의 입회 하에 방해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타인에게 선언서에 서명할 것을 지시하는 것처럼 보였고,
- (b) 본인과 선언서 작성자의 입회 하에 타인이 선언서에 서명하였고,
- (c) 타인이 선언서에 서명할 당시 선언서 작성자는 자발적 조력사망과 관련해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였고,
- (d) 타인이 선언서에 서명할 당시 선언서 작성자는 선언서의 성질과 그 결과를 이해하는 것처럼 보였고,
- (e) 본인은 18세 이상의 성인이고,
- (f) 본인이 아는 바로는 다음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i) 선언 작성자의 유언장에 따른 수혜자, 또는
 - (ii) 선언 작성자의 사망으로 재정적으로 또는 기타 물질적인 방식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 또는

- (iii) 다음과 같은 보건시설의 소유주 또는 운영자,
 - (A) 선언서 작성자가 치료를 받는 보건시설, 또는
 - (B) 선언서 작성자가 거주 중인 보건시설, 또는
- (iv) 선언서 작성자에게 의료서비스 또는 전문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직접 관여하는 보건시설.

서명됨

증인 2 서명

통역사 증명서—통역사의 지원으로 선언서를 작성한 경우 본 섹션을 작성한다.

본인, [통역사 이름]은/는 다음과 같이 인증한다.

- (a) 본인은 통역한 자료를 진실되고 정확하게 통역하였고,
- (b) 본인은 [공인기관명]의 공인 통역사이고,
- (c) 선언서 작성자와 가족 구성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 (d) 본인이 아는 바로는 다음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i) 선언서 작성자의 유언장에 따른 수혜자, 또는
 - (ii) 선언서 작성자의 사망으로 재정적으로 또는 기타 물질적인 방식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 또는
 - (iii) 다음과 같은 보건시설의 소유주 또는 운영자,
 - (A) 선언서 작성자가 치료를 받는 보건시설, 또는
 - (B) 선언서 작성자가 거주 중인 보건시설, 또는
 - (iv) 선언서 작성자에게 의료서비스 또는 전문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직접 관여하는 보건시설.

서명됨

통역사 서명

양식 4

제40조

담당자 임명서 양식

본인, [지명인 이름]은/는 [지명인 주소]에 거주하고 있고, [담당자 주소]에 거주하는
[담당자 이름]을/를

2017 자발적 조력사망법의 목적을 위한 본인의 담당자로 지명하는 바이다.

서명됨

지명인 서명 또는 대리인 서명

날짜

주—지명인의 대리인 서명

지명인이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지명인의 지시에 따라 지명인의 입회 하에 지명인을 대신하여 타인이 지명서에 서명할 수 있다. 지명서에 서명하는 자는 18세 이상의 성인이어야 하고, 담당자 또는 지명서 증인이 아니어야 한다.

담당자의 지명 수락

본인, [담당자 이름]은/는 담당자로 지명된 것을 받아들이고, 이로 인해 지명인의 요청에 따라 또는 지명인이 사망하고 미사용 및 잔여 약물을 인지하게 되면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을 조제한 곳으로 미사용 및 잔여 약물을 반납해야 함을 이해한다. 본인은 개인의 사망으로부터 15일 이내에 미사용 및 잔여 약물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반납하지 않는 것은 위법 행위에 해당함을 이해한다.

본인은 자발적 조력사망 심사위원회에서 본인에게 정보를 요청할 수 있음을 이해한다.

서명됨

담당자 서명

증인 증명서—지명인이 임명서 양식에 서명할 경우 본 섹션을 작성한다.

본인, [증인 이름]은/는

[증인 주소]에 거주하고 있고, 본인의 입회 하에 지명인이 임명서 양식에 서명하였음을 인증하는 바이다.

서명됨

증인 증명서—타인이 작성자를 대신해 지명서에 서명한 경우에 본 섹션을 작성한다

본인, [증인 이름]은/는

[증인 주소]에 거주하고 있고, 본 지명서는 본인의 입회 하에 지명인의 지시에 따라 타인이 서명하였음을 인증하는 바이다.

서명됨

통역사 증명서—통역사의 지원으로 지명서를 작성한 경우 본 섹션을 작성한다.

본인, [통역사 이름]은/는 다음과 같이 인증한다.

- (a) 본인은 통역한 자료를 진실되고 정확하게 통역하였고,
- (b) 본인은 [공인기관명]의 공인 통역사이고,
- (b) 지명인의 가족 구성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 (c) 본인이 아는 바로는 다음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i) 지명인의 유언장에 따른 수혜자, 또는
 - (ii) 지명인의 사망으로 재정적으로 또는 기타 물질적인 방식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 또는
 - (iii) 다음과 같은 보건시설의 소유주 또는 운영자,
 - (A) 지명인이 치료를 받는 보건시설, 또는
 - (B) 지명인이 거주 중인 보건시설, 또는

(iv) 지명인에게 의료서비스 또는 전문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직접
관여하는 보건시설.

서명됨

통역사 서명

담당자 연락처 정보

연락처:

이메일 주소:

양식 5

제41조

최종 검토 양식

본 양식을 작성하기 위한 지침

본 양식은 최종 요청자의 조정의사가 작성한다.

본 양식을 이용해 요청 및 평가과정이 2017 자발적 조력사망법 요건에 따라 완료되었는지 검토하고 인증한다.

요청 및 평가과정이 2017 자발적 조력사망법 요건에 따라 완료되었는지 검토하고 인증하기 전에는 자발적 조력사망 허가증을 신청할 수 없다.

요청 및 평가과정이 2017 자발적 조력사망법에서 요하는 바와 같이 완료되었다는 인증 유무와 상관없이 본 양식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공해야 한다.

본 양식은 다음 서류의 사본에 모두 첨부해야 한다.

- (a) 최종 평가 보고서 양식,
- (b) 모든 상담 평가 보고서 양식,
- (c) 서면 선언서,
- (d) 담당자 임명서 양식.

본 양식을 작성하고 7일 이내에 본 양식의 사본과 필요한 모든 문서의 사본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자발적 조력사망을 요청한 최종 검토 대상의 정보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조정 의사 정보

이름:

병원 주소:

병원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파트 A—요청 및 평가과정 정보 1차 평가

1차 평가 완료일:

1차 평가에서 개인을 자발적 조력사망 대상자로 적격하다고 평가하는가?

☐ 그렇다

☐ 아니다—요청 및 평가과정을 인증하지 않는다.

1차 평가 보고서 양식을 첨부한다.

상담 평가

상담 평가에서 개인을 자발적 조력사망 대상자로 적격하다고 평가하는가?

☐ 그렇다

☐ 아니다—요청 및 평가과정을 인증하지 않는다.

상담 평가 보고서 양식을 첨부한다.

개인을 자발적 조력사망 대상자로 적격하다고 평가한 상담 의사의 이름:

병원 주소:

병원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상담 평가 완료일:

상담 평가를 1회 이상 실시한 경우, 모든 상담 평가 보고서 양식의 사본을 첨부한다.

개인을 자발적 조력사망에 적격한 대상으로 평가한 조정의사와 상담의사의 최소 요건

개인을 자발적 조력사망 대상으로 적격하다고 평가한 조정의사와 상담의사에 대해, 조정의사와 상담의사 모두 전문의 의과대학의 펠로우 또는 직업적으로 일반의인가?

- ☐ 그렇다 [각 의사가 소지한 자격증을 명시한다]
- ☐ 아니다—요청 및 평가과정을 인증하지 않는다.

조정의사와 상담의사 모두 관련 평가를 시행하기 전에 승인된 평가를 완료하였는가?

- ☐ 그렇다 [각 의사는 교육을 이수한 날짜를 명시한다]
- ☐ 아니다—요청 및 평가과정을 인증하지 않는다.

조정의사와 상담의사 중 한 명은 개인의 질병, 질환 및 의학적 상태에 적절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자인가?

- ☐ 그렇다, *조정의사/상담의사 [택1]
- ☐ 아니다, 조정의사와 상담의사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요청 및 평가과정을 인증하지 않는다.

조정의사 또는 상담의사는 최소 5년 이상 포스트 펠로우십(post fellowship) 또는 직업적으로 등록한 경험이 있는가?

- ☐ 그렇다, *조정의사/상담의사 [택1]
- ☐ 아니다, 조정의사와 상담의사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요청 및 평가과정을 인증하지 않는다.

서면 선언서

서면 선언일:

서면 선언서는 본 법률에 따라 개인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하였는가?

☐ 그렇다

☐ 아니다—요청 및 평가과정을 인증하지 않는다.

본 법률에 따라 2명의 증인이 선언서를 목격하였는가?

☐ 그렇다

☐ 아니다—요청 및 평가과정을 인증하지 않는다.

서면 선언서 사본을 첨부한다.

최종 요청

1차 요청일:

최종 요청일:

최종 요청은 상담 평가 완료일로부터 적어도 하루가 지나고 이루어졌는가?

☐ 그렇다

☐ 아니다—요청 및 평가과정을 인증하지 않는다.

☐ 최종 요청은 1차 요청일부터 최소 9일이 지나고 이루어졌다.

또는

☐ 최종 요청이 1차 요청일부터 9일 이내에 이루어졌고,

(a) 최종 요청 당시 개인의 사망이 9일 이내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고려하였고,

(b) 본 평가는 개인을 자발적 조력사망 대상으로 적격하다고 평가한 상담의사의
예후와 일치했다.

담당자

본 법률의 제39조와 제40조에 따라 담당자가 지명되었는가?

☐ 그렇다

☐ 아니다—요청 및 평가과정을 인증하지 않는다.

임명일:

담당자 임명서 양식이 본 법률에 따라 개인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하였는가?

☐ 그렇다

☐ 아니다—요청 및 평가과정을 인증하지 않는다.

담당자 임명서 양식을 담당자가 서명하였는가?

☐ 그렇다

☐ 아니다—요청 및 평가과정을 인증하지 않는다.

본 법률에 따라 1명의 증인이 담당자 임명장을 목격하였는가?

☐ 그렇다

☐ 아니다—요청 및 평가과정을 인증하지 않는다.

담당자 임명장 사본을 첨부한다.

상기 내용과 첨부된 양식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개인이 자발적 조력사망에 적격한 대상으로 평가되었고, 2017 자발적 조력사망법에서 요하는 바와 같이 요청 및 평가과정 요건이 모두 완료되었는가?

☐ 그렇다—파트 B의 증명서를 작성한다.

☐ 아니다—요청 및 평가과정을 인증하지 않는다. 파트 B의 증명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파트 B—조정의사의 증명서

본인, [조정의사 이름]은/는 [자발적 조력사망을 요청한 최종 검토 대상자 이름]와 관련해 요청 및 평가과정을 2017 자발적 조력사망법에서 요하는 바와 같이 완료하였음을 인증하는 바이다.

서명됨

조정의사 서명

날짜

양식 6

제60조

자발적 조력사망약물 조제 양식

본 양식을 작성하기 위한 지침

본 양식은 자가 투여 허가증 대상자를 위해 처방전에 따라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을 조제하였음(또한 해당 처방전의 정보를 제공하였고)을 기록하고, 약물을 조제 받은 개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였고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의 포장지 또는 용기에 라벨링 설명서를 부착하였음을 인정하는 데에 사용한다.

파트 A—약사 정보

이름:

조제 약국명:

조제 약국 전화번호:

조제 장소:

파트 B—개인이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을 조제하였다

처방전에 기입된 개인의 이름:

개인의 주소:

개인의 생년월일:

파트 C—처방 정보

처방 당국 번호(또는 그에 상응하는 기관):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의 조제일:

본인, [약사 이름]은/는 2017 자발적 조력사망법 제58조에 따라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을 조제한 개인에게 다음 사안에 대해 지시하였음을 확인한다.

- (a)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을 자가 투여하는 방법,
- (b)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은 규정된 설명서에 맞는 잠금 상자에 보관해야 한다는 것,
- (c) 개인은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을 자가 투여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것,

- (d) 개인 또는 관련된 담당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조제된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을 폐기하기 위해 조제 약국의 약사에게 반납해야 한다는 것,
- (i) 개인이 자가 투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는 것, 또는
 - (ii) 개인이 자가 투여하지 않았다는 것.

본인, [약사 이름]은/는 2017 자발적 조력사망법 제59조에 따라 규정된 양식으로 된 라벨을 자발적 조력사망약물 포장지 또는 용기에 부착하였음을 확인한다.

서명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을 조제하고 7일 이내에 본 양식의 사본을 위원회에 제공해야 한다.

양식 7

제63조

자발적 조력사망약물 폐기 양식

본 양식을 작성하기 위한 지침

본 양식은 자가 투여 허가증 대상자 또는 그 담당자가 조제 약국으로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을 반납하였고, 반납 이후 가능한 한 빠르게 폐기되었음을 기록하는 데에 사용한다.

파트 A—약사 정보

이름:

조제 약국명:

조제 약국 전화번호:

조제 장소:

파트 B—개인이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을 조제하였다

처방전에 기입된 개인의 이름:

개인의 주소:

개인의 생년월일:

파트 —개인 또는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을 반납한 담당자

이름:

개인의 주소:

연락처:

이메일 주소:

VI.74

파트 D—처방 정보

.....

처방 당국 번호(또는 그에 상응하는 기관):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의 조제일: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의 반납일:

반납된 자발적 조력사망약물과 수량:

본인, [약사 이름]은/는 [개인의 이름]에게 조제한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이 본인에게 반납되었고, 본 약물을 수령하는 즉시 2017 자발적 조력사망법 제62조에 따라 폐기하였음을 인증한다.

서명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을 폐기하고 7일 이내에 본 양식의 사본을 위원회에 제공해야 한다.

양식 8

제65조와 제66조

조정의사 투여 양식

본 양식을 작성하기 위한 지침

본 양식은 개인의 투여 요청을 기록하고, 개인이 투여를 요청 시 개인에게 자발적 조력사망과 관련된 의사결정능력이 있고, 개인이 자발적 조력사망을 자발적으로 어떠한 강압도 없이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며, 개인이 신체적으로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을 자가 투여하거나 소화할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데에 사용한다.

또한, 본 양식은 자발적 조력사망약물 투여의 증인이 개인의 조정의사가 개인에게 약물을 투여하였음을 진술하는 것이 목적이다.

개인의 조정의사만이 2017 자발적 조력사망법에 따라 개인에게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을 투여하도록 2017 자발적 조력사망법에서 허가된다.

파트 A—조정의사 정보

이름:

병원 주소:

병원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파트 B—투여 요청자의 상세 정보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파트 C—투여 요청 정보

본인, [조정의사 이름]은/는 [투여 요청일] [투여 요청 시간]에 [투여 요청자 이름]으로부터 2017 자발적 조력사망법 제64조에 따라 투여 요청을 받았다.

파트 D—조정의사의 증명서

작성 지침

개인의 투여 요청을 수락한 경우, 섹션 1만 작성한다.

개인의 투여 요청을 거절한 경우, 섹션 2만 작성한다.

섹션 1: 개인의 투여 요청이 수락됨

본인은 [개인의 이름]이/가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을 신체적으로 자가 투여하거나 소화시킬 능력이 없었음을 인증한다. 본인은 그들이 자발적으로 어떠한 강압도 없이 지속적으로 자발적 조력사망을 요청하였고, 투여 요청 당시 자발적 조력사망과 관련해 그들에게 의사결정능력이 있었음을 인증한다.

서명

개인이 신체적으로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을 자가 투여하거나 소화시킬 수 없었던 이유:

[세부 내용 삽입]

섹션 2: 개인의 투여 요청이 거절됨

본인은 [개인의 이름]이/가 투여를 요청할 당시 2017 자발적 조력사망법 제64조(1)에 따른 사안[충족하지 않은 사안에 대한 상세 정보]을 확신하지 못하였기에 투여 요청을 거절하였다.

서명

개인이 2017 자발적 조력사망법 제64조(1)에 따른 사안을 충족하지 못한 이유

[세부 내용 삽입]

파트 E—증인 증명서

작성 지침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의 투여 요청과 투여를 목격한 경우 본장을 완료한다.

본인, [증인 이름]은/는 개인이 투여를 요청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투여 요청 당시 개인은,

- (a) 자발적 조력사망과 관련해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였고,
- (b) 어떠한 강압 없이 자발적으로 자발적 조력사망을 요청하는 것으로 보였으며,
- (c) 지속적으로 자발적 조력사망을 요청하는 것으로 보였음을 인증하는 바이다.

서명됨

증인 서명

본인, [증인 이름]은/는 조정의사[조정의사 이름]가 개인에게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을 투여하였음을 진술하는 바이다.

서명됨

증인 서명

파트 F—투여 정보—조정의사가 작성해야 할 내용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의 투여일: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의 투여 경로:

무의식까지 소요된 시간:

사망까지 소요된 시간:

발생한 문제(해당 시):

개인에게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을 투여하고 7일 이내에 본 양식의 사본을 위원회에 제공한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Voluntary Assisted Dying Bill 2022

2024.12.1. 기준 법령을 번역함

2022 자발적 조력사망법

법률 번호, 2022

만성질환을 앓는 자에게 자발적 조력사망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이용을
규제하며, 기타 법률에 대한 결과적 개정을 마련하기 위한 법률.

본인은 본 법안을 검토하였고, 상하원 모두 통과하여 모든 면에서 부합함을 확인하였다.

입법부 부의장(Assistant Speaker).

뉴사우스웨일스 입법 기관은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장 예비 조항

제1절 예비 조항

1 법률명

본 법률은 2022 자발적 조력사망법이라 칭한다.

2 시행

본 법률은 승인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날 시행된다.

3 정부를 구속하는 법률

본 법률은 뉴사우스웨일스의 권한으로 정부를 구속하고, 뉴사우스웨일스 의회의
입법권이 허가하는 한, 정부의 모든 자격으로 정부에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제2절 원칙

4 원칙

(1) 본 법률에 의거한 권한을 행사하거나 기능을 수행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

(a) 모든 인간은 생명의 가치가 동일하다.

(b) 생명을 종결시키는 선택의 자율성을 포함해 개인의 자율성은 존중 받아야 한다.

- (c) 개인은 자신의 의료에 대해 신중한 결정을 내리도록 지원 받을 권리가 있고, 임종 돌봄, 완화의료 및 치료를 비롯해 의료에 대한 정보를 개인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제공받아야 한다.
 - (d) 임종을 앞둔 모든 개인은 고통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을 극대화하기 위해 완화의료와 치료를 비롯한 양질의 돌봄을 제공 받아야 한다.
 - (e) 개인과 개인의 의료종사자 간의 치료적 관계는 최대한 지원하고 유지해야 한다.
 - (f) 개인은 죽음과 사망에 대해 솔직하게 의논하도록 장려되어야 하고, 개인의 돌봄, 치료 및 임종에 대한 선호도나 가치를 장려하고 고취해야 한다.
 - (g) 개인은 의료종사자, 가족, 간병인 및 지역사회와의 대화를 통해 선호하는 돌봄과 치료에 대한 지원을 받아야 한다.
 - (h) 개인은 뉴사우스웨일스 내에서 거주하는 위치 또는 개인의 문화나 언어와 상관없이 자신의 돌봄, 치료 및 임종에 대해 진정한 선택권을 가질 권한이 있다.
 - (i) 지역 주민에 해당하는 자는 자발적 조력사망과 완화의료를 비롯한 양질의 돌봄 및 치료에 대해 대도시 지역에 사는 자와 동일한 수준의 접근성을 가질 권한이 있다.
 - (j) 압력 또는 협박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
주— [별지 1]의 정의에서 **압력 또는 협박(pressure or duress)**을 참고한다.
 - (k) 의료종사자를 포함해 모든 개인은 자신의 문화, 종교, 신념, 가치 및 개인적 특성을 존중 받을 권리가 있다.
- (2) 제(1)항에서, 본 법률에 의거한 기능을 행사하는 자에 대한 언급에는 본 법률에 따른 결정과 관련해 관할권을 행사하는 대법원도 포함된다.

제3절 해석

5 정의

별지 1의 용어는 본 법률에 사용되는 용어와 표현을 정의한다.

주— 1987 해석법(Interpretation Act 1987)은 본 법률의 해석과 적용에 영향을 미치는 정의와 기타 조항을 포함한다.

6 의사결정능력

- (1) 본 법률의 목적을 위해, 환자는 다음과 같은 능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자발적 조력사망과 관련해 **의사결정능력**이 있다고 본다.

- (a) 본 법률에 따라 환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되는 자발적 조력사망 결정에 대한 정보 또는 조언을 이해하고,
 - (b) 자발적 조력사망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데에 필요한 범위에 한해 제(a)호에 언급된 정보 또는 조언을 기억하고,
 - (c) 자발적 조력사망 결정에 수반되는 문제를 이해하고,
 - (d) 자발적 조력사망 결정의 결과를 이해하고,
 - (e) 자발적 조력사망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제(a)호, 제(c)호 및 제(d)호에 언급된 요인을 가늠하고,
 - (f) 어떠한 방식으로든 자발적 조력사망에 대한 결정을 전달한다.
- (2) 본 법률의 목적을 위해, 환자는,
- (a) 합리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하여 자신이 내린 결정의 결과에 대한 설명을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자발적 조력사망에 대한 정보 또는 조언을 이해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 (b) 개인에게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한 자발적 조력사망과 관련해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 (3) 본조에서,
- 자발적 조력사망에 대한 결정(voluntary assisted dying decision)*이란,
- (a) 자발적 조력사망의 요청, 또는
 - (b) 자발적 조력사망의 이용 결정을 의미한다.

7 자발적 조력사망약물

- (1) 보건부 차관은 개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목적으로 본 법률에 따라 별지 4의 독극물 또는 별지 8의 독극물 사용을 서면으로 승인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라 승인된 독극물은 *자발적 조력사망약물(voluntary assisted dying substance)*이라 부른다.
- (3) 보건부 차관은 자발적 조력사망약물 목록을 보관해야 한다.

8 요청 및 평가 과정이 완료되었을 때

본 법률의 목적을 위해,

환자의 조정의사가 다음을 이행할 경우 요청 및 평가 과정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 (a) 조정의사가 환자와 관련해 최종 검토를 완료하였고,
- (b) 조정의사가 본 법률에 따라 요청 및 평가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최종 검토 양식에 인증하였다.

제4절 기타 조항

9 등록된 의료종사자는 자발적 조력사망에 참여를 거절할 수 있다

- (1) 자발적 조력사망에 양심적으로 반대하는 등록된 의료종사자는 다음 사항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 (a) 요청 및 평가 과정에 참여하는 행위,
 - (b)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을 처방, 공급 및 투여하는 행위,
 - (c)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의 투여 시 입회하는 행위.
- (2) 제(1)항은 등록된 의료종사자가 본항에 언급된 사항을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10 의료종사자는 자발적 조력사망에 대한 의논을 시작해선 안 된다

- (1) 개인에게 의료서비스 또는 전문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종사자는 개인에게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다음을 이행해선 안 된다.
 - (a) 사실상 자발적 조력사망에 대해 개인과 의논을 시작하는 행위, 또는
 - (b) 사실상 해당 개인에게 자발적 조력사망을 제안하는 행위.

주—본 법률을 위반 시 범법 행위 여부와 상관없이 *의료종사자규정국내법*의 목적상 불만족스러운 전문가적 행위 또는 비전문가적인 행위 또는 의료전문직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 (2) 제(1)항(a) 또는 (b)에서 언급한 의논 또는 제안을 시작하던 의사가 개인에게 다음 사항에 대해서도 통지하는 경우에 한해 그러한 의논 또는 제안을 시작한 의사에게는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a) 개인이 진단 받은 질병, 질환 및 의학적 상태에 대해 표준 치료로 간주할 수 있는 이용 가능한 치료 선택안,
 - (b) 개인이 이용 가능한 치료 선택안의 가능한 결과,
 - (c) 개인이 이용 가능한 완화의료 및 치료 선택안,
 - (d) 완화의료와 치료 선택안의 가능한 결과.
- (3) 또한, 제(1)항(a) 또는 (b)에서 언급한 의논 또는 제안을 시작하던 당시 의사를 제외한 의료종사자가 개인에게 다음 사항에 대해서 통지하는 경우에 한해 그러한 의논 또는 제안을 시작한 의료종사자에게는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a)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완화의료와 치료 선택안이 있음을 알리고,
 - (b) 개인의 의사와 완화의료 및 치료 선택안에 의논할 것을 통지하는 경우.

(4) 명확성을 위해, 제(1)항은 개인의 요청에 따라 자발적 조력사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의료종사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5) 본조에서,

*의료종사자(health care worker)*란 다음을 의미한다.

(a) 등록된 의료종사자, 또는

(b) 의료서비스 또는 전문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타인.

11 등록된 의료종사자의 법률 위반

(1) 등록된 의료종사자가 본 법률의 조항을 위반 시 의료종사자규정국내법의 목적상 불만족스러운 전문가적 행위 또는 의료전문직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2) 제(1)항은 그러한 위반이 본 법률에 따라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된다.

12 자발적 조력사망은 자살이 아니다

(1) 국가 법률의 목적을 위해, 본 법률에 따라 처방된 약물의 투여 결과로 사망하는 자는 자살로 인한 사망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2) 자발적 조력사망은,

(a) 2007 정신건강법 제22조의 목적을 위해 개인에게 심각한 신체적 상해를 야기하려는 시도로 간주하지 아니하고,

(b) 경찰관이 제22조에 의거한 조치를 취해야 할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3) 본조에서,

*자발적 조력사망(voluntary assisted dying action)*이란 본 법률에 따라 이행하는 다음 행위를 의미한다.

(a) 자발적 조력사망의 요청,

(b) 자가 투여 결정 또는 의료인 투여 결정,

(c) 개인이 처방된 약물을 자가 투여,

(d) 처방된 약물을 약물투여 의사에게 투여 요청.

13 대법원의 고유 관할권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본 법률의 어떠한 내용도 대법원의 고유 관할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4 1996 독극물 및 치료제법 및 약물 오용과 밀매법과의 관계

본 법률의 조항과 1966 독극물 및 치료제법 또는 1985 약물 오용과 밀매법 조항이 일관되지 않는 경우, 상충 또는 비일관된 범위에 한해 본 법률의 조항이 우선한다.

제2장 자발적 조력사망 대상자 요건

15 개인이 자발적 조력사망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

개인은 다음 사항을 충족 시 자발적 조력사망 대상자가 될 수 있다.

- (a) 개인이 1차 요청을 하였고,
- (b) 개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자발적 조력사망의 적절한 대상으로 평가받았고,
 - (i) 개인의 조정의사,
 - (ii) 개인의 상담의사,
- (c) 개인이 서면 선언서를 작성하였고,
- (d) 개인이 상담의사에게 최종 요청을 하였고,
- (e) 개인의 조정의사가 최종 검토 양식을 인증하였다.
 - (i) 본 법률에 따라 요청 및 평가 과정이 완료되었고,
 - (ii) 의사가 제52조(3)(f)에 언급된 사항을 만족해하고.
- (f) 개인이 투여 결정을 내렸고,
- (g) 개인이 자가 투여를 결정한 경우 개인이 담당자를 지명하였고,
- (h) 개인과 관련해 위원회에서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을 인가하였다.

16 적격성 기준

(1) 개인이 자발적 조력사망 대상자로 적격하기 위해서는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a) 개인이 성인이고,
- (b) 개인이
 - (i) 호주 시민이거나,
 - (ii) 호주 영주권자이거나,
 - (iii) 1차 요청 당시 최소 3년 이상 호주에 거주한 상태여야 하고,
- (c) 1차 요청 당시 최소 12개월 이상 뉴사우스웨일스에서 거주해왔고,
- (d) 개인이 최소 하나의 질병, 질환 및 의학적 상태를 진단받았고,

- (i) 이미 진행된 상태이고, 진행성 질환이며, 사망에 이를 것이고,
 - (ii) 확률상 다음 기한 내에 사망을 야기할 것이고,
 - (A) 퇴행성 질병, 질환 및 의학적 상태의 경우—12개월 이내에, 또는
 - 주— 개인이 치매를 앓는다는 이유만으로는 자발적 조력사망에 적합한 대상자가 되지 않음을 규정한 제(2)항(b)를 참고한다.
 - (B) 그 외의 경우는 6개월 이내,
 - (iii) 개인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완화될 수 없는 고통을 야기하고 있고,
 - (e) 개인에게 자발적 조력사망과 관련해 의사결정능력이 있고,
 - (f) 개인이 자발적으로 행동하고,
 - (g) 개인이 압력 또는 협박으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 주— 별지 1의 정의에서 **압력 또는 협박**(*pressure or duress*)을 참고한다.
 - (h) 자발적 조력사망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 (2) 개인이 단순히 다음 사항에 해당한다고 해서 자발적 조력사망에 적합한 대상자는 아니다.
- (a) 장애가 있는 자, 또는
 - (b) 치매를 앓는 자, 또는
 - (c) 2020 정신건강 및 인지장애 법의학조항법(Mental Health and Cognitive Impairment Forensic Provisions Act 2020)에 규정된 의미에서 정신건강장애를 앓는 자.
- (3) 명확성을 위해, 개인이 요청 및 평가 과정 중에 언제든지 자발적 조력사망과 관련된 의사결정능력을 영구적으로 상실하게 될 경우, 제(1)항(e)에 따라 자발적 조력사망의 적격성이 상실된다.
- (4) 제(3)항에서,
- 자발적 조력사망과 관련된 의사결정능력 상실이 **영구적(permanently)**이란 의미는 개인이 자발적 조력사망과 관련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평생 상실된다는 의미다.

17 거주 면제

- (1) 개인은 위원회에 제16조(1)(c)의 요건을 면제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2) 위원회는 다음 조건을 충족 시 면제권을 부여해야 한다.

(a) 개인이 뉴사우스웨일스와 관계가 있고,

다음 사항은 예시에 해당한다.

- 1 뉴사우스웨일스에서 가까운 곳에서 장기 거주하면서 뉴사우스웨일스에서 일을 하거나, 뉴사우스웨일스에서 의료를 받는 자
- 2 가족 구성원이 뉴사우스웨일스에 거주하고, 개인의 말기질환과 관련해 돌봄과 지원을 받고자 가족 구성원과 가까이 뉴사우스웨일스로 이사를 온 자
- 3 뉴사우스웨일스 외부에 거주하지만 이전에 뉴사우스웨일스 주민이자 가족이 뉴사우스웨일스에서 거주하는 자

(b) 면제권을 부여할만한 인도적 사유가 있다.

제3장 자발적 조력사망 요청과 적격성 평가

제1절 의사의 적격성 요건

18 조정의사 또는 상담의사로서 적격성

의사는 다음의 경우에 한해 자발적 조력사망을 요청하는 개인의 조정의사 또는 상담의사로 적격하다.

(a) 의사가,

(i) 전문의 등록증을 소지하거나,

(ii) 일반의 등록증을 소지하고, 일반의 등록증 소지자로서 최소 10년 이상 의료계에 종사해왔고,

(b) 승인된 교육을 이수하였고,

(c) 본조의 목적을 위해 규정에서 지시하는 기타 요건을 충족하였고,

(d) 환자의 가족 구성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e) 자신이 다음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음을 알고 있거나 믿고 있다.

(i) 개인의 유언장에 따른 수혜자, 또는

(ii) 개인의 조정의사 또는 상담의사로서 서비스 제공에 적정 수수료를 수령하는 것 외에 환자의 사망으로 인해 재정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수혜를 보는 자.

제2절 1차 요청**19 개인은 의사에게 1차 요청을 할 수 있다**

- (1) 개인은 의사에게 자발적 조력사망을 요청할 수 있다.
- (2) 요청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a) 분명하고 명확하며,
 - (b) 의료 상담 중에 요청하였고,
 - (c) 직접 요청하였고,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 제176조(1)(a)에 따라 요청하였다.
- (3) 개인은 다음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다.
 - (a) 구두로, 또는
 - (b) 기타 방법으로.

제(b)호의 예시— 몸짓 이용

- (4) 개인은 통역사의 도움을 받아 요청할 수 있다.

20 1차 요청 이후에도 계속해야 할 의무는 없다

- (1) 1차 요청을 한 자는 언제든지 요청 및 평가 과정을 중단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 (2) 개인이 요청 및 평가 과정을 중단하기로 결정할 경우 요청 및 평가 과정이 종료된다.
- (3) 제(2)항에 따라 요청 및 평가 과정이 종료되면, 개인은 다시 1차 요청을 함으로써 요청 및 평가 과정을 새로 시작할 수 있다.

21 의사는 요청을 수락하거나 거절해야 한다

- (1) 의사에게 1차 요청을 하는 경우, 의사는,
 - (a) 요청을 수락할 것인지, 또는
 - (b) 요청을 거절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 (2) 의사가 1차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유일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 (a) 의사가 자발적 조력사망에 대한 양심적 거부로 인해, 또는 조정의사의 의무를 이행하고 싶지 않아서, 또는
 - (b) 의사가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또는 다른 이유로 인해 조정의사의 책임을 수행할 수 없어서, 또는
 - (c) 의사가 제(3)항에 따라 요청을 거절하도록 요구되는 경우.
- (3) 의사가 1차 요청을 받을 당시 조정의사 역할을 하기에 적격하지 않다면 즉시 1차 요청을 거절하기로 선택해야 한다.

- (4) 제(5)항이 적용되지 않는 한 의사는 1차 요청으로부터 영업일 2일 이내에,
 - (a) 의사가 요청을 수락하기로 또는 거절하기로 하였음을 환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 (b) 본조의 목적을 위해 보건부 차관이 관보 통지를 통해 본인이 수락한 정보를 환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 (5) 의사가 자발적 조력사망에 대한 양심적 거부로 1차 요청을 거절하기로 결정한 경우, 1차 요청을 한 직후 환자에게 의사가 거절하기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해야 한다.

22 의사는 1차 요청과 수락 또는 거절 사실을 기록해야 한다

의사는 개인의 의료 기록에 다음 정보를 기록해야 한다.

- (a) 1차 요청,
- (b) 의사의 1차 요청 수락 또는 거절 여부,
 주— 의사가 1차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제21조(2)를 참고한다.
- (c) 의사가 1차 요청을 거절하기로 결정할 경우, 거절 사유,
- (d) 의사가 제21조(4)(b)와 (5)에 언급된 정보를 환자에게 제공하였는지 여부.

23 의사는 위원회에 1차 요청을 통지해야 한다

- (1) 1차 요청을 수락 또는 거절할 것인지 결정하고 영업일 5일 이내에 의사는 다음을 이행해야 한다.
 - (a) 승인된 양식(1차 요청서)을 작성하고,
 - (b) 위원회에 1차 요청서 사본을 제공한다.
- (2) 1차 요청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a) 환자의 이름, 생년월일 및 연락처 정보,
 - (b) 의사 이름 및 연락처 정보,
 - (c) 1차 요청일,
 - (d) 1차 요청을 직접 하였는지, 아니면 시청각 통신을 이용하였는지 여부,
 - (e) 1차 요청을 구두로 하였는지, 아니면 다른 방식을 이용하였는지 여부,
 - (f) 환자가 1차 요청을 하면서 통역사의 도움을 받은 경우, 통역사 이름, 연락처 정보 및 공인기관 정보,
 - (g) 의사의 1차 요청 수락 또는 거절 여부,
 - (h) 의사가 1차 요청을 거절하기로 결정할 경우, 거절 사유,
 - (i) 의사가 환자에게 자신의 결정을 통지한 날짜, 제21조(4)(b) 또는 (5)에 언급된 정보를 환자에게 제공한 날짜,
 - (j) 의사의 서명과 양식에 서명한 날짜.

24 1차 요청을 수락한 의사는 조정의사가 된다

의사가 1차 요청을 수락하면 환자의 조정의사가 된다.

제3절 1차 평가**25 1차 평가**

- (1) 환자의 조정의사는 환자가 자발적 조력사망에 적격한지를 평가해야 한다.
- (2) 제(1)항의 목적을 위해, 조정의사는 각 적격성 기준과 관련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
- (3) 본조의 어떠한 내용도 조정의사로 하여금 다른 등록된 의료종사자가 작성하거나 실시한 환자의 관련 정보를 고려하는 것을 금하지 아니한다.

26 다른 의사의 소견을 위한 의뢰—질병, 질환 및 의학적 상태

- (1) 본조는 조정의사가 환자에게 제16조(1)(d)의 요건을 충족하는 질병, 질환 및 의학적 상태가 있는지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 (2) 조정의사는 이 문제를 판단하기에 적절한 기술을 겸비하고 교육을 이수한 의사에게 환자를 의뢰해야 한다.
주— 의뢰에 적용되는 지침에 관한 정보는 제181조(2)(a)를 참고한다.
- (3) 의사는,
 - (a) 환자에게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퇴행성의 질병, 질환 및 의학적 상태가 있는지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
 - (i) 진행된 상태이고 진행성이며 사망에 이를 것이고,
 - (ii) 확률상 사망을 야기할 것이고,
 - (A) 퇴행성 질병, 질환 및 의학적 상태의 경우—12개월 이내에, 또는
 - (B) 그 외의 경우는 6개월 이내,
 - (iii) 개인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완화될 수 없는 고통을 야기하고 있고,
 - (b) 의사의 판단을 설명하는 임상 보고서를 조정의사에게 제공해야 한다.
- (4) 조정의사가 본조에 따라 의뢰를 하는 경우, 조정의사는 의뢰한 문제와 관련해 의사의 판단을 채택할 수 있다
- (5) 본조에 따라 환자를 의뢰 받은 의사는 다음에 해당해선 안 된다.
 - (a) 개인의 가족 구성원, 또는
 - (b) 자신이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나 믿고 있는 자,

- (i) 환자의 유언장에 따른 수혜자, 또는
- (ii) 의뢰와 관련된 서비스 제공에 대해 적정 수수료를 수령하는 것 외에 환자의 사망으로 인해 재정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수혜를 보는 자.

27 소견을 위한 의뢰—기타 사안

- (1) 본조는 조정의사가 다음 사항을 결정할 수 없을 경우 적용된다.
 - (a) 제16조(1)(e)에서 요하는 바와 같이 환자가 자발적 조력사망과 관련해 의사결정능력이 있는지 여부, 또는
 예시— 제16조(1)(f)에서 요하는 바와 같이 과거 또는 현재 환자의 정신질환으로 인해
 - (b) 환자가 자발적으로 행동하고 있는지 여부, 또는
 - (c) 제16조(1)(g)에서 요하는 바와 같이 환자가 압력 또는 협박으로 행동하지 않는지 여부.

주— 별지 1의 정의에서 **압력 또는 협박(pressure or duress)**을 참고한다.

- (2) 조정의사는 환자를 다음과 같이 의뢰해야 한다.
 - (a) 조정의사가 환자에게 자발적 조력사망과 관련된 의사결정능력이 있는지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 정신과 의사 또는 그러한 사안을 판단할 수 있는 적절한 기술과 교육을 이수한 다른 등록된 의료종사자에게 의뢰하거나,
 - (b) 조정의사가 환자가 자발적으로 행동하고 있는지 또는 환자가 압력 또는 협박으로 행동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 정신과 의사 또는 다른 등록된 의료종사자 또는 그러한 문제를 판단할 수 있는 적절한 기술과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의뢰해야 한다.

주—의뢰에 적용되는 지침에 관한 정보는 제181조(2)(b)를 참고한다.

- (3) 조정의사가 본조에 따라 의뢰를 하는 경우, 조정의사는 의뢰한 문제와 관련해 정신과 의사, 다른 등록된 의료종사자 또는 타인의 판단을 채택할 수 있다.
- (4) 본조에 따라 환자를 의뢰 받은 정신과 의사, 등록된 의료종사자 또는 타인은 다음에 해당해선 안 된다.
 - (a) 개인의 가족 구성원, 또는
 - (b) 자신이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나 믿고 있는 자,
 - (i) 환자의 유언장에 따른 수혜자, 또는
 - (ii) 의뢰와 관련된 서비스 제공에 적정 수수료를 수령하는 것 외에 환자의 사망으로 인해 재정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수혜를 보는 자.

28 환자가 적격성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평가된 경우 제공해야 할 정보

- (1) 조정의사가 환자가 적격성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정의사는 다음 사안에 대해 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a) 환자의 의학적 진단과 예후,
 - (b) 환자가 진단 받은 질병, 질환 및 의학적 상태에 대해 표준 치료로 간주할 수 있는 이용 가능한 치료 선택안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
 - (c) 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완화의료 및 치료 선택안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
 - (d) 본 법률에 따라 환자의 사망을 야기하는 목적으로 처방될 수 있는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의 투여 및 자가 투여의 잠재적 위험성,
 - (e) 제(d)호에 언급한 약물의 투여 또는 자가 투여 시 사망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
 - (f) 제(d)호에 언급한 약물을 투여 또는 자가 투여하는 방법,
 - (g) 2명의 증인이 입회한 상태에서 환자 또는 환자 대리인이 서명해야 하는 서면 선언서의 요건을 포함해 요청 및 평가 과정,
 - (h) 환자가 자가 투여를 결정하면 환자가 담당자를 지명해야 한다는 것,
 - (i) 환자는 요청 및 평가 과정을 언제든지 중단하거나 자발적 조력사망을 이용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
 - (j) 자발적 조력사망을 요청하도록 또는 요청 및 평가 과정을 중단하도록 환자에게 압력 또는 협박을 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것,

주— 관련된 범법 행위는 1900 형법(Crimes Act 1900) 제41C조를 참고한다.

- (k) 환자가 조정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담당 의사(treating practitioner)**]로부터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받는 경우,
 - (i) 환자는 자발적 조력사망의 요청에 대해 담당 의사에게 통지하도록 장려되고,
 - (ii) 환자가 자발적 조력사망을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환자 또는 환자의 가족과 측근에게 주로 제공하던 기타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
 - (iii) 담당 의사가 제(ii)목에 언급한 서비스를 중단하는 경우, 그 문제는 1993 건강 민원법(Health Care Complaints Act 1993)에 의거해 보건의료고충처리위원회(Health Care Complaints Commission)에 민원 제기의 대상이 된다는 것,
- (l) 환자가 영구적이든 임시든 거주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환자는 자발적 조력사망 요청에 대해 거주 시설 관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것.

- (2) 제(1)항(d)의 목적을 위해, 본 법률에 따라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목적으로 처방될 수 있는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의 투여 및 자가 투여의 잠재적 위험성에 관한 정보가 이용 기준(access standards)에 포함되는 경우, 이용 기준에 따라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주— 본 법률에 따라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목적으로 처방될 수 있는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의 투여 및 자가 투여의 잠재적 위험성에 관한 정보가 이용 기준에 포함될 수 있다고 규정하는 제174조(3)을 참고한다.

- (3) 제(1)항(k)(ii)에 언급된 상황에서 의사의 서비스 중단은 의료종사자규정국내법의 목적상 불만족스러운 전문가적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 (4) 조정의사는 제(1)항에 언급한 문제에 대해 개인에게 통지하는 것에 더해 환자가 동의할 경우 환자가 지명한 제3자와 환자에게 설명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 (a) 모든 관련된 임상 지침,
- (b)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의 투여와 관련된 계획.
- (5) 본조의 어떠한 내용도 다음에 의거한 의사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a) 관습법, 또는
- (b) 기타 법률 또는 법.

29 1차 평가 결과

- (1) 조정의사는 다음 사항에 대해 만족하는 경우 환자가 자발적 조력사망 대상자로 적격하다고 평가해야 한다.
- (a) 환자가 적격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 (b) 환자가 제28조(1)에 따라 제공하도록 요구되는 정보를 이해한다.
- (2) 조정의사가 제(1)항의 사안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a) 조정의사는 환자가 자발적 조력사망 대상자로 부적격하다고 평가해야 하고,
- (b) 요청 및 평가 과정이 종료된다.

주— 조정의사는 자발적 조력사망의 적격성에 대해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 특정 상황에서 다른 등록된 의료종사자 또는 타인에게 환자를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제26조와 제27조를 참고한다.

30 1차 평가 결과의 기록 및 통지

- (1) 조정의사는 1차 평가를 완료하고 가능한 한 빠르게 그 결과를 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2) 조정의사는 1차 평가 완료일로부터 영업일 5일 이내에 다음을 이행해야 한다.
- (a) 승인된 양식(1차 평가 보고서 양식)을 작성하고,
 - (b) 위원회에 1차 평가 보고서 양식 사본을 제공한다.
- 최대 벌금 - 100 벌금 단위(penalty units).
- (3) 조정의사는 1차 보고서 양식을 작성한 후 가능한 한 빨리 사본을 환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 (4) 1차 평가 보고서 양식은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a) 환자의 이름, 생년월일 및 연락처 정보,
 - (b) 환자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정보,
 - (i) 성별,
 - (ii) 국적,
 - (iii) 민족성,
 - (iv) 환자의 장애 유무, 장애가 있을 시 장애에 대한 상세 정보,
 - (v) 환자의 제1언어가 영어 외 언어인지 여부,
 - (vi) 조정의사가 환자에게 제28조(1)과 (4)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제176조(2)에 따라 통역사를 고용했는지 여부,
 - (c) 조정의사의 이름 및 연락처 정보,
 - (d) 조정의사가 제18조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진술서,
 - (e) 1차 요청일,
 - (f) 1차 평가 완료일,
 - (g) 적격성 기준과 관련해 조정의사의 결정을 비롯하여 1차 평가 결과,
 - (h) 환자가 1차 평가 결과를 통지받은 날짜,
 - (i) 환자를 제26조(2) 또는 제27조(2)에 따라 의뢰하는 경우, 환자를 의뢰한 등록된 의료종사자 또는 타인이 제공한 보고서 사본을 포함해 의뢰 결과,
 - (j) 1차 평가 시 통역사가 환자를 지원한 경우, 통역사 이름, 연락처 정보 및 공인기관 정보,
 - (k) 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완화의료 및 치료 선택안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
 - (l) 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완화의료 및 치료 선택안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환자에게 통지하였다는 진술서,

- (m) 자발적 조력사망을 요청하도록 또는 요청 및 평가 과정을 중단하도록 환자에게 압력 또는 협박을 하는 행위는 불법임을 환자에게 통지하였다는 진술서,
주— 관련된 범법 행위는 1900 형법(Crimes Act 1900) 제41C조를 참고한다.
- (n) 조정의사가 환자의 유언장에 따른 수혜자 또는 환자의 사망으로 인해 재정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수혜를 보는 자로부터 압력 또는 협박을 받았는지 환자에게 질문하였음을 확인하는 진술서,
- (o) 조정의사가 다음 사안과 관련해 제181조에 의거한 지침에 따라 행동하였다는 진술서,
 - (i) 제26조에 의거해 환자를 전문의에게 의뢰해야 할지에 대한 결정,
 - (ii) 환자를 제27조에 의거해 정신과 의사, 다른 등록된 의료종사자, 타인 중 누구에게 의뢰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
- (p) 조정의사가 환자가 자발적 조력사망을 요청하는 데에 압력 또는 협박을 경험하였는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제181조의 지침에 따라 행동하였다는 진술서,
- (q) 조정의사의 서명과 양식에 서명한 날짜.

31 환자가 적격한 대상으로 평가된 경우 상담 평가 의뢰

조정의사가 개인이 자발적 조력사망을 이용하기에 적격하다고 평가하는 경우, 조정의사는 상담 평가를 위해 다른 의사에게 의뢰해야 한다.

제4절 상담 평가

32 의사는 상담 평가 의뢰를 수락하거나 거절해야 한다

- (1) 의사가 제31조, 제42조, 또는 제175조(6)(a)에 따라 환자의 상담 평가를 의뢰 받는 경우, 의사는 의뢰를 수락할지 거절할지 결정해야 한다.
- (2) 의사가 의뢰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 (a) 의사가 자발적 조력사망에 대한 양심적 거부로 인해, 또는 자발적 조력사망의 의무를 이행하고 싶지 않아서, 또는
 - (b) 의사가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또는 다른 이유로 인해 상담의사의 책임을 수행할 수 없어서, 또는
 - (c) 의사가 제(3)항에 따라 요청을 거절하도록 요구되어서.
- (3) 의사가 상담의사 역할을 하기에 적격하지 않다면 의뢰를 거절해야 한다.

(4) 제(5)가 적용되지 않는 이상, 의사는 의뢰를 받고 영업일 2일 이내에 환자와 그의 조정의사에게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통지해야 한다.

- (a) 의뢰를 수락한다는 사실, 또는
- (b) 의뢰를 거절한다는 사실.

(5) 의사가 자발적 조력사망에 대한 양심적 거부로 의뢰를 거절하기로 결정한 경우, 의뢰 직후 환자와 그의 조정의사에게 거절 의사를 통지해야 한다.

33 의사는 의뢰 사실과 수락 또는 거절 사실을 기록해야 한다

의사는 개인의 의료 기록에 다음 정보를 기록해야 한다.

- (a) 의뢰 사실,
- (b) 의사의 의뢰 요청 수락 또는 거절 여부,
- (c) 의사가 의뢰를 거절하기로 결정할 경우, 거절 사유.

34 의사는 의뢰 사실을 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1) 의뢰를 수락 또는 거절할 것인지 결정하고 영업일 5일 이내에 의사는 다음을 이행해야 한다.

- (a) 승인된 양식(상담 의뢰 양식)을 작성하고,
- (b) 위원회에 상담 의뢰 양식의 사본을 제공한다.

최대 벌금 - 100 벌금 단위(penalty units).

(2) 상담 의뢰 양식은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a) 환자의 이름, 생년월일 및 연락처 정보,
- (b) 의사 이름 및 연락처 정보,
- (c) 의뢰를 받은 날짜,
- (d) 의사의 의뢰 요청 수락 또는 거절 여부,
- (e) 의사가 의뢰를 거절하기로 결정할 경우— 거절 사유,
- (f) 의사가 환자와 그의 조정의사에게 자신의 결정을 통지한 날짜,
- (g) 의사의 서명과 양식에 서명한 날짜.

35 의사가 의뢰를 수락하면 상담의사가 된다.

의사가 의뢰를 수락하면 환자의 상담의사가 된다.

36 상담 평가

- (1) 환자의 상담의사는 환자가 자발적 조력사망에 적격한지를 평가해야 한다.
- (2) 제(1)항의 목적을 위해, 상담의사는 다음을 이행해야 한다.
 - (a) 적격성 기준에 대해 판단하고,
 - (b) 조정의사와 별도로, 결정해야 할 사안에 대해 의견을 내야 한다.
- (3) 본조의 어떠한 내용도 상담의사로 하여금 다른 등록된 의료종사자가 작성하거나 실시한 환자의 관련 정보를 고려하는 것을 금하지 아니한다.

37 다른 의사의 소견을 위한 의뢰—질병, 질환 및 의학적 상태

- (1) 본조는 상담의사가 환자에게 제16조(1)(d)의 요건을 충족하는 질병, 질환 및 의학적 상태가 있는지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 (2) 상담의사는 이 문제를 판단하기에 적절한 기술을 검비하고 교육을 이수한 의사에게 환자를 의뢰해야 한다.
- 주— 의뢰에 적용되는 지침에 관한 정보는 제181조(2)(a)를 참고한다.

- (3) 의사는,
 - (a) 환자에게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퇴행성의 질병, 질환 및 의학적 상태가 있는지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
 - (i) 진행된 상태이고 진행성이며 사망에 이를 것이고,
 - (ii) 확률상 사망을 야기할 것이고,
 - (A) 퇴행성 질병, 질환 및 의학적 상태의 경우—12개월 이내에, 또는
 - (B) 그 외의 경우는 6개월 이내,
 - (iii) 개인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완화될 수 없는 고통을 야기하고 있고,
 - (b) 의사의 판단을 설명하는 임상 보고서를 상담의사에게 제공해야 한다.
- (4) 상담의사가 본조에 따라 의뢰를 하는 경우, 상담의사는 의뢰한 문제와 관련해 의사의 판단을 채택할 수 있다
- (5) 본조에 따라 환자를 의뢰 받은 의사는 다음에 해당해선 안 된다.
 - (a) 개인의 가족 구성원, 또는
 - (b) 자신이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나 믿고 있는 자,
 - (i) 환자의 유언장에 따른 수혜자, 또는
 - (ii) 의뢰와 관련된 서비스 제공에 적정 수수료를 수령하는 것 외에 환자의 사망으로 인해 재정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수혜를 보는 자.

38 소견을 위한 의뢰—기타 사안

- (1) 본조는 상담의사가 다음 사항을 결정할 수 없을 경우 적용된다.
- (a) 제16조(1)(e)에서 요하는 바와 같이 환자가 자발적 조력사망과 관련해 의사결정능력이 있는지 여부, 또는
 - 예시— 제16조(1)(f)에서 요하는 바와 같이 과거 또는 현재 환자의 정신질환으로 인해
 - (b) 환자가 자발적으로 행동하고 있는지 여부, 또는
 - (c) 제16조(1)(g)에서 요하는 바와 같이 환자가 압력 또는 협박으로 행동하지 않는지 여부.

주— 별지 1의 정의에서 **압력 또는 협박**(*pressure or duress*)을 참고한다.

- (2) 상담의사는 환자를 다음과 같이 의뢰해야 한다.
- (a) 상담의사가 환자에게 자발적 조력사망과 관련된 의사결정능력이 있는지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 정신과 의사 또는 그러한 사안을 판단할 수 있는 적절한 기술과 교육을 이수한 다른 등록된 의료종사자에게 의뢰하거나,
 - (b) 상담의사가 환자가 자발적으로 행동하고 있는지 또는 압력 또는 협박으로 행동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 정신과 의사 또는 다른 등록된 의료종사자 또는 그러한 문제를 판단할 수 있는 적절한 기술과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의뢰해야 한다.

주—의뢰에 적용되는 지침에 관한 정보는 제181조(2)(b)를 참고한다.

- (3) 상담의사가 본조에 따라 의뢰를 하는 경우, 상담의사는 의뢰한 문제와 관련해 정신과 의사, 다른 등록된 의료종사자 또는 타인의 판단을 채택할 수 있다.
- (4) 본조에 따라 환자를 의뢰 받은 정신과 의사, 등록된 의료종사자 또는 타인은 다음에 해당해선 안 된다.
- (a) 개인의 가족 구성원, 또는
 - (b) 자신이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나 믿고 있는 자,
 - (i) 환자의 유언장에 따른 수혜자, 또는
 - (ii) 의뢰와 관련된 서비스 제공에 적정 수수료를 수령하는 것 외에 환자의 사망으로 인해 재정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수혜를 보는 자.

39 환자가 적격성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평가된 경우 제공해야 할 정보

- (1) 상담의사가 환자가 적격성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의사는 제28조(1)에 언급한 사안에 관한 정보를 환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 (2) 본조의 어떠한 내용도 다음에 의거한 의사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a) 관습법, 또는
- (b) 기타 법률 또는 법.

40 상담 평가 결과

- (1) 상담의사는 다음 사항에 대해 만족하는 경우 환자가 자발적 조력사망 대상자로 적격하다고 평가해야 한다.
 - (a) 환자가 적격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 (b) 환자가 제39조(1)에 따라 제공하도록 요구되는 정보를 이해한다.
- (2) 상담의사가 제(1)항의 사안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상담의사는 환자가 자발적 조력사망 대상자로 부적격하다고 평가해야 한다.

41 상담 평가 결과의 기록 및 통지

- (1) 상담의사는 상담 평가를 완료하고 가능한 한 빠르게 그 결과를 환자와 그의 조정의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 (2) 상담의사는 상담 평가 완료일로부터 영업일 5일 이내에 다음을 이행해야 한다.
 - (a) 환자와 관련해 승인된 양식(상담 평가 보고서 양식)을 작성하고,
 - (b) 위원회에 상담 평가 보고서 양식의 사본을 제공한다.
최대 벌금 - 100 벌금 단위(penalty units).
- (3) 상담의사는 보고서 양식을 작성한 후 가능한 한 빨리 사본을 환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 (4) 상담 평가 보고서 양식은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a) 환자의 이름, 생년월일 및 연락처 정보,
 - (b) 상담의사의 이름 및 연락처 정보,
 - (c) 상담의사가 제18조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진술서,
 - (d) 상담 평가를 의뢰한 날짜,
 - (e) 상담 평가 의뢰를 수락한 날짜,
 - (f) 1차 평가 완료일,
 - (g) 적격성 기준과 관련해 상담의사의 결정을 비롯하여 상담 평가 결과,
 - (h) 환자가 상담 평가 결과를 통지받은 날짜,
 - (i) 환자의 조정의사가 상담 평가 결과를 통지받은 날짜,
 - (j) 환자를 제37조(2) 또는 38조(2)에 따라 의뢰하는 경우, 환자를 의뢰한 등록된 의료종사자 또는 타인이 제공한 보고서 사본을 포함해 의뢰 결과,

- (k) 상담 평가 시 통역사가 환자를 지원한 경우, 통역사 이름, 연락처 정보 및 공인기관 정보,
 - (l) 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완화의료 및 치료 선택안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
 - (m) 자발적 조력사망을 요청하도록 또는 요청 및 평가 과정을 중단하도록 환자에게 압력 또는 협박을 하는 행위는 불법임을 환자에게 통지하였다는 진술서,
 주— 관련된 범법 행위는 1900 형법(Crimes Act 1900) 제41C조를 참고한다.
 - (n) 의사가 환자의 유언장에 따른 수혜자 또는 환자의 사망으로 인해 재정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수혜를 보는 자로부터 압력 또는 협박을 받았는지 환자에게 질문하였음을 확인하는 진술서,
 - (o) 상담의사가 다음 사안과 관련해 제181조에 의거한 지침에 따라 행동하였다는 진술서,
 - (i) 제26조에 의거해 환자를 의사에게 의뢰해야 할지에 대한 결정,
 - (ii) 환자를 제27조에 의거해 정신과 의사, 다른 등록된 의료종사자, 타인 중 누구에게 의뢰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
 - (p) 상담의사가 환자가 자발적 조력사망을 요청하는 데에 압력 또는 협박을 경험하였는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제181조의 지침에 따라 행동하였다는 진술서,
 - (q) 상담의사의 서명과 양식에 서명한 날짜.
- (5) 상담의사는 상담 평가를 완료하고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상담 평가 보고서 양식의 사본을 환자의 조정의사에게 제공해야 한다.

42 환자가 부적격하다고 평가되는 경우 추가 상담 평가 의뢰

상담의사가 환자가 자발적 조력사망을 이용하기에 부적격하다고 평가하는 경우, 환자의 조정의사는 추가 상담 평가를 위해 환자를 다른 의사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5절 서면 선언서

43 적격한 대상으로 평가받은 환자는 서면 선언서를 작성할 수 있다

- (1) 다음 주체로부터 자발적 조력사망 대상으로 적격하다고 평가받은 환자는 자발적 조력사망을 요청하는 서면 선언서를 작성할 수 있다.

- (a) 환자의 조정의사,
- (b) 환자의 상담의사.
- (2) 서면 선언서는,
 - (a) 규정된 양식으로 작성되어야 하고,
 - (b) 환자의 조정의사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 (3) 서면 선언은,
 - (a) 다음 사항이 진술되어야 한다.
 - (i) 환자가 자발적으로 선언서를 작성하였고,
 - (ii) 환자가 압력 또는 협박의 영향을 받아 선언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며,
 주— 별지 1의 정의에서 **압력 또는 협박(pressure or duress)**을 참고한다.
 - (iii) 그 특성과 결과를 이해한다.
 - (b) 2명의 증인이 입회한 자리에서 환자가 직접 또는 제(4)항에 언급한 자가 대신 서명하였고,
 - (c)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 (i) 환자의 이름, 생년월일 및 연락처 정보,
 - (ii) 환자가 통역사의 도움을 받은 경우, 통역사 이름, 연락처 정보 및 공인기관 정보,
 - (iii) 환자의 조정의사의 이름 및 연락처 정보.
- (4) 다음과 같은 경우, 개인은 환자를 대신하여 서면 선언서에 서명할 수 있다.
 - (a) 환자가 선언서에 서명할 수 없고,
 - (b) 환자가 선언서에 서명하도록 개인에게 지시하였고,
 - (c) 개인이 다음 요건을 충족한다.
 - (i) 성인이고,
 - (ii) 선언서 서명의 증인이 아니며,
 - (iii) 선언서 작성자의 조정의사 또는 상담의사가 아니다.
- (5) 환자를 대신해 서면 선언서에 서명하는 자는 환자 앞에서 서명해야 한다.
- (6) 환자가 통역사의 도움으로 서면 선언서를 작성하는 경우, 통역사는 통역한 자료를 진실되고 정확하게 통역하였음을 선언서에 증명해야 한다.

44 서면 선언서의 서명 증인

- (1) 제43조(3)(b)의 목적을 위해 개인은 다음 조건을 충족할 경우 서면 선언서 서명을 목격하기에 적격하다.

- (a) 성인이고,
 - (b) 부적격한 증인이 아니다.
- (2) 제(1)항(b)의 목적을 위해 개인은 다음 조건을 충족할 경우 증인으로 부적격하다.
- (a) 자신이 다음 사항에 하나라도 해당한다고 알고 있거나 믿고 있는 경우,
 - (i) 선언서를 작성하는 환자의 유언장에 따른 수혜자, 또는
 - (ii) 선언서를 작성하는 환자의 사망으로 재정적으로 또는 기타 물질적인 방식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 또는
 - (b) 선언서를 작성하는 환자의 가족 구성원, 또는
 - (c) 선언서를 작성하는 환자의 조정의사 또는 상담의사, 또는
 - (d) 선언서를 작성하는 환자의 조정의사 또는 상담의사의 가족 구성원이나 직원.

45 서면 선언서 서명의 증인 증명서

- (1) 선언서를 작성하는 환자가 서명하는 것을 목격하는 자는 다음을 이행해야 한다.
 - (a) 증인의 입회 하에 환자가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선언서에 서명하는 것처럼 보였음을 선언서에 서면으로 인증하고,
 - (b) 증인은 부적격한 증인이 아니라고 알고 있음을 진술해야 한다.
- (2) 선언서를 작성하는 대리인이 서면 선언서에 서명하는 것을 목격하는 자는 다음을 이행해야 한다.
 - (a) 선언서에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인증한다.
 - (i) 증인의 입회 하에 환자는 아무런 방해 없이 자발적으로 타인에게 선언서에 서명할 것을 지시하는 것처럼 보였고,
 - (ii) 환자와 증인의 입회 하에 타인이 선언서에 서명하였으며,
 - (b) 증인은 부적격한 증인이 아니라고 알고 있음을 진술해야 한다.
- (3) 본조에서,
부적격한 증인(*ineligible witness*)이란 제44조(2)에 따라 부적격한 증인에 해당하는 자를 의미한다.

46 조정의사는 서면 선언서를 기록해야 한다

환자가 조정의사에게 서면 선언서를 제공하면, 조정의사는 환자의 의료 기록에 다음 정보를 기록해야 한다.

- (a) 서면 선언서 작성일,
- (b) 조정의사가 서면 선언서를 수령한 날짜.

47 조정의사는 위원회에 서면 선언서를 통지해야 한다

조정의사는 환자로부터 서면 선언서를 수령하고 영업일 5일 이내에 위원회에 선언서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최대 벌금 - 100 벌금 단위(penalty units).

제6절 최종 요청과 최종 검토

48 환자는 조정의사에게 최종 요청을 할 수 있다

- (1) 서면 선언서를 작성한 환자는 조정의사에게 자발적 조력사망을 최종 요청할 수 있다.
- (2) 최종 요청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a) 분명하고 명확하며,
 - (b) 직접 요청하였고, 직접 요청이 불가능한 경우 제176조(1)(a)에 따라 요청하였다.
- (3) 환자는 다음 방법으로 최종 요청을 할 수 있다.
 - (a) 구두로, 또는
 - (b) 기타 방법으로.

제(b)호의 예시— 몸짓 이용

49 최종 요청 시기

- (1) 최종 요청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a) 제(2)항에 제공된 경우를 제외하고, 지정된 기한 이내에 요청해선 안 된다.
 - (b) 환자를 자발적 조력사망에 적격하다고 평가한 상담 평가 완료일로부터 적어도 하루는 지나야 한다.
- (2) 다음 조건에 한해 지정된 기한 이내에 최종 요청을 할 수 있다.
 - (a) 조정의사의 소견으로 환자가 지정된 기한 이내에 사망하거나 자발적 조력사망에 대한 의사결정능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 (b) 조정의사의 소견과 환자의 상담의사의 소견이 일치하는 경우.

50 조정의사는 최종 요청을 기록해야 한다

조정의사는 환자의 의료 기록에 다음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 (a) 최종 요청일,
- (b) 지정된 기한 이내에 최종 요청을 할 경우, 기한 이내에 최종 요청을 하는 사유.

51 조정의사는 위원회에 최종 요청을 통지해야 한다

- (1) 조정의사는 환자로부터 최종 요청을 받고 영업일 5일 이내에,
 - (a) 승인된 양식(최종 요청서)을 작성하고,
 - (b) 위원회에 최종 요청서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최대 벌금 - 100 벌금 단위(penalty units).
- (2) 최종 요청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a) 환자의 이름, 생년월일 및 연락처 정보,
 - (b) 조정의사의 이름 및 연락처 정보,
 - (c) 1차 요청일,
 - (d) 최종 요청일,
 - (e) 최종 요청을 직접 하였는지, 아니면 시청각 통신을 이용하였는지 여부,
 - (f) 최종 요청을 구두로 하였는지, 아니면 다른 방식을 이용하였는지 여부,
 - (g) 환자가 최종 요청을 하면서 통역사의 도움을 받은 경우, 통역사 이름, 연락처 정보 및 공인기관 정보,
 - (h) 지정된 기한 이내에 최종 요청을 할 경우, 기한 이내에 최종 요청을 하는 사유,
 - (i) 조정의사의 서명과 양식에 서명한 날짜.

52 최종 요청을 받은 조정의사의 최종 검토

- (1) 환자로부터 최종 요청을 받은 조정의사는 다음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 (a) 환자와 관련된 상담 평가 보고서 양식을 검토하고,
 - (b) 환자의 서면 선언서를 검토하고,
 - (c) 환자와 관련해 승인된 양식(최종 검토 양식)을 작성한다.
- (2) 조정의사가 최종 검토를 실시할 때는 요청 및 평가 과정에서 내린 결정과 관련해 제6장에 따라 대법원의 결정을 고려해야 한다.
- (3) 최종 검토 양식은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a) 환자의 이름, 생년월일 및 연락처 정보,
 - (b) 조정의사의 이름 및 연락처 정보,
 - (c) 조정의사가 다음 사항을 검토하였다는 진술,

- (i) 환자와 관련된 모든 상담 평가 보고서 양식,
 - (ii) 환자의 서면 선언서,
 - (d) 요청 및 평가 과정이 본 법률에 따라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인증하는 진술,
 - (e) 환자가 통역사의 도움을 받은 경우, 통역사 이름, 연락처 정보 및 공인기관 정보,
 - (f) 조정의사가 다음 사항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인증하는 진술,
 - (i) 환자에게 자발적 조력사망과 관련해 의사결정능력이 있고,
 - (ii) 환자가 자발적 조력사망을 요청하는 데에 있어 자발적으로 행동하고 있고,
 - (iii) 환자가 어떠한 압력 또는 협박도 없이 자발적 조력사망을 요청하고 있고,

주— 별지 1의 정의에서 **압력 또는 협박(pressure or duress)**을 참고한다.
 - (iv) 환자가 자발적 조력사망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고,
 - (g) 조정의사의 서명과 양식에 서명한 날짜.
 - (4) 조정의사는 최종 검토 양식을 작성하고 영업일 5일 이내에 그 사본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최대 벌금 - 100 벌금 단위(penalty units).

53 기술적 오류는 요청 및 평가 과정을 무효화하지 않는다

요청 및 평가 과정의 유효성은 다음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a) 본 법률에 따른 문서 내 사소한 오류 또는 기술적 오류. 여기에는,
 - (i) 최종 검토 양식, 또는
 - (ii) 상담 평가 보고서 양식, 또는
 - (iii) 환자의 서면 선언서, 또는
 - (iv) 처방전, 또는
- (b) 개인이 본 법률에 규정된 기한 내에 양식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54 요청 및 평가 과정이 완료되어도 환자가 계속해야 할 의무는 없다

요청과 평가 과정이 완료된 환자는 언제든지 자발적 조력사망과 관련해 다음 단계를 계속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다.

제4장 자발적 조력사망 이용과 사망

제1절 약물투여 의사의 적격성 요건

55 약물투여 의사로서 적격성

개인은 다음의 경우에 한해 환자의 약물투여 의사로 적격하다.

- (a) 개인이,
 - (i) 전문의 등록증을 소지한 의사이거나,
 - (ii) 일반의 등록증을 소지하고 최소 5년 이상 의료계에 종사해왔거나,
 - (iii) 제한 등록증(limited registration) 또는 임시 등록증(provisional registration)을 소지하고 있고 해외에서 교육 받은 전문의(overseas-trained specialist)이거나,
 - (iv) 전담 간호사이고,
- (b) 개인이 승인된 교육을 이수하였고,
- (c) 개인이 본조의 목적을 위해 규정에서 지시하는 기타 요건을 충족하였고,
- (d) 개인이 환자의 가족 구성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 (e) 개인이 다음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나 믿고 있는 경우.
 - (i) 개인의 유언장에 따른 수혜자, 또는
 - (ii) 개인의 약물투여 의사로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적정 수수료를 받는 것 외에 환자의 사망으로 인해 재정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수혜를 보는 자.

제2절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의 투여

56 본절의 적용

본절은 다음 상황에서 적용된다.

- (a) 환자와 관련해 요청 및 평가 과정이 완료되었고,
 - (b) 환자의 최종 검토 양식에서 환자의 조정의사가 다음 사항을 만족함을 인증하는 경우.
 - (i) 환자에게 자발적 조력사망과 관련해 의사결정능력이 있고,
 - (ii) 환자가 자발적 조력사망을 요청하는 데에 있어 자발적으로 행동하고 있고,
 - (iii) 환자가 어떠한 압력 또는 협박도 없이 자발적 조력사망을 요청하고 있고,
- 주— 별지 1의 정의에서 **압력 또는 협박(pressure or duress)**을 참고한다.

(iv) 환자가 자발적 조력사망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57 투여 결정

- (1) 환자는 조정의사와 상의하여,
 - (a)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을 자가 투여하기로 결정하거나(자가 투여 결정),
 - (b) 환자의 약물투여 의사가 환자에게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을 투여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의료인 투여 결정).
- (2) 투여 결정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a) 분명하고 명확하며,
 - (b) 환자의 조정의사에게 직접 전달해야 하고,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 제176조(1)(a)에 따라 전달해야 한다.
- (3) 환자는 다음 방법으로 투여 결정을 내릴 수 있다.
 - (a) 구두로, 또는
 - (b) 기타 방법으로.

제(b)호의 예시— 몸짓 이용

- (4) 환자는 통역사의 도움을 받아 투여 결정을 내릴 수 있다.
- (5) 환자가 투여 결정을 하는 경우, 환자의 조정의사는 환자의 의료 기록에 그러한 결정을 기록해야 한다.
- (6) 환자의 조정의사는 환자가 투여 결정을 내리고 영업일 5일 이내에,
 - (a) 제(7)항에서 요하는 바와 같이 승인된 투여 결정 양식(투여 결정 양식)을 작성하고,
 - (b) 투여 결정 양식 사본을 위원회에 제공해야 한다.
최대 벌금 - 100 벌금 단위(penalty units).
- (7) 투여 결정 양식은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a) 환자의 이름, 생년월일 및 연락처 정보,
 - (b) 조정의사의 이름 및 연락처 정보,
 - (c) 환자의 투여 결정,
 - (d) 투여 결정일,
 - (e) 환자가 통역사의 도움을 받아 투여 결정을 내린 경우, 통역사 이름, 연락처 정보 및 공인기관 정보,
 - (f) 조정의사의 이름과 양식에 서명한 날짜.

58 투여 결정 취소

- (1) 개인은 언제든지 다음을 이행할 수 있다.
 - (a) 환자가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을 자가 투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환자의 조정의사에게 통지함으로써 자가 투여 결정을 취소하거나,
 - (b) 환자가 자발적 조력사망약물 투여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약물투여 의사에게 통지함으로써 의료인 투여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2) 투여 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은 분명하고 명확해야 한다.
- (3) 제(1)항의 목적을 위해, 환자는 조정의사 또는 약물투여 의사에게 환자의 결정을 다음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 (a) 서면으로, 또는
 - (b) 구두로, 또는
 - (c) 기타 방법으로.

제(c)호의 예시— 몸짓 이용

- (4) 환자는 통역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결정을 조정의사 또는 약물투여 의사에게 통지할 수 있다.
- (5) 환자가 제(1)항에 따라 투여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결정을 통지 받은 조정의사 또는 약물투여 의사는 다음을 이행해야 한다.
 - (a) 환자의 의료 기록에 취소 사실을 기록하고,
 - (b) 의사가 개인의 조정의사가 아닌 경우, 조정의사에게 취소 사실을 통지하고,
 - (c) 취소일로부터 영업일 5일 이내에,
 - (i) 승인된 양식(취소 양식)을 작성하고,
 - (ii) 위원회에 취소 양식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최대 벌금 - 100 벌금 단위(penalty units).

- (6) 취소 양식은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a) 환자의 이름, 생년월일 및 연락처 정보,
 - (b) 양식 작성자의 이름 및 연락처 정보,
 - (c) 양식 작성자가 환자의 조정의사가 아닌 경우, 조정의사의 이름 및 연락처 정보,
 - (d) 투여 결정을 취소한 날짜,
 - (e) 환자가 설명한 투여 결정의 취소 사유,
 - (f) 환자가 통역사의 도움을 받아 투여 취소 결정을 내린 경우, 통역사 이름, 연락처 정보 및 공인기관 정보,

- (g) 양식 작성자의 서명과 양식에 서명한 날짜.
- (7) 투여 결정을 취소한다고 해서 제 57조(1)에 따라 환자가 다시 투여하기로 결정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59 자가 투여

- (1) 본조는 환자가 다음 요건을 충족 시 적용된다.
 - (a) 자가 투여를 결정하였고,
 - (b) 결정을 취소하지 않았다.
- (2) 환자의 조정의사에게는 사망을 야기하기에 충분한 용량의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을 환자에게 처방할 권한이 부여된다.
- (3) 명확성을 위해, 제(2)항은 다음을 전제로 한다.
 - (a) 제67조(5)에서 요하는 바와 같이 조정의사가 담당자 지명서 양식을 제공받았고,
 - (b) 위원회가 환자에 대해 제71조에 의거한 자발적 조력사망약물 권한을 부여하였다.
- (4) 환자의 처방전을 받은 승인된 공급자에게는 다음 행위를 이행할 권한이 부여된다.
 - (a) 제(c)호에 언급된 개인에게 조제 및 공급할 목적으로 처방된 약물을 소지하고,
 - (b) 처방된 약물을 조제하고,
 - (c) 환자, 담당자 또는 대리인에게 처방된 약물을 공급하는 행위.
- (5) 환자에게는 다음과 같이 이행할 권한이 부여된다.
 - (a) 승인된 공급자, 담당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처방된 약물을 수령하고,
 - (b) 처방된 약물을 조제 및 자가 투여할 목적으로 약물을 소지하고,
 - (c) 처방된 약물을 조제하고,
 - (d) 처방된 약물을 자가 투여하는 행위.
- (6) 환자 담당자에게는 제68조(1)에 규정된 바와 같은 권한이 부여된다.
- (7) 환자 대리인에게는 다음 행위의 권한이 부여된다.
 - (a) 승인된 공급자로부터 처방된 약물을 수령하고,
 - (b) 환자에게 약물을 공급할 목적으로 처방된 약물을 소지하고,
 - (c) 환자가 자가 투여할 약물을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고,
 - (d) 처방된 약물을 환자에게 공급하는 행위.

60 의료인 투여

- (1) 본조는 환자가 다음 요건을 충족 시 적용된다.
 - (a) 의료인 투여를 결정하였고,
 - (b) 결정을 취소하지 않았다.
- (2) 환자의 조정의사에게는 사망을 야기하기에 충분한 용량의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을 환자에게 처방할 권한이 부여된다.
- (3) 명확성을 위해, 제(2)항은 제71조에 의거해 자발적 조력사망약물 권한을 부여 받은 위원회를 대상으로 한다.
- (4) 환자의 처방전을 받은 승인된 공급자에게는 다음 행위를 이행할 권한이 부여된다.
 - (a) 환자를 위해 약물투여 의사에게 약물을 조제 및 공급할 목적으로 처방된 약물을 소지하고,
 - (b) 처방된 약물을 조제하고,
 - (c) 환자를 위해 처방된 약물을 약물투여 의사에게 공급하는 행위.
- (5) 환자의 약물투여 의사에게는 다음 행위를 이행할 권한이 부여된다.
 - (a) 승인된 공급자로부터 처방된 약물을 수령하고,
 - (b) 환자에게 약물을 조제 및 투여할 목적으로 처방된 약물을 소지하고,
 - (c) 처방된 약물을 조제하는 행위.
- (6) 환자의 약물투여 의사가 증인 1명의 입회 하에 환자에게 처방된 약물을 투여할 당시 다음 사항을 확신하는 경우 약물투여 의사에게는 약물을 투여할 권한이 부여된다.
 - (a) 환자에게 자발적 조력사망과 관련해 의사결정능력이 있고,
 - (b) 환자가 자발적으로 행동하고 있으며,
 - (c) 환자가 압력 또는 협박으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주— 별지 1의 정의에서 **압력 또는 협박(pressure or duress)**을 참고한다.
 - (d) 환자가 자발적 조력사망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61 조정의사는 약물 처방에 대해 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 (1) 환자의 조정의사는 환자를 위한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을 처방하고 영업일 5일 이내에,
 - (a) 제(2)항에서 요하는 정보를 포함해 자발적 조력사망약물 처방전으로 승인된 양식(처방전 양식)을 작성하고,

(b) 처방전 양식 사본을 위원회에 제공해야 한다.

최대 벌금 - 100 벌금 단위(penalty units).

(2) 처방전 양식은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a) 환자의 이름, 생년월일 및 연락처 정보,

(b) 조정의사의 이름 및 연락처 정보,

(c) 조정의사가 제73조(2) 또는 (3)을 준수하였다는 진술,

(d) 자발적 조력사망약물 처방전 발급일,

(e) 조정의사의 이름과 양식에 서명한 날짜.

62 처방받은 약물의 투여 이후 약물투여 의사의 인증

(1) 본조는 환자의 약물투여 의사가 환자에게 처방된 약물을 투여할 경우에 적용된다.

(2) 약물투여 의사는 서면으로 다음 사항을 인증해야 한다.

(a) 환자가 의료인 투여를 결정하였고 결정을 취소하지 않았으며,

(b) 처방된 약물을 환자에게 투여할 때 약물투여 의사가 다음 사항을 확신하였다.

(i) 환자에게 자발적 조력사망과 관련해 의사결정능력이 있었고,

(ii) 환자가 자발적으로 행동하였으며,

(iii) 환자가 압력 또는 협박으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주— 별지 1의 정의에서 **압력 또는 협박(pressure or duress)**을 참고한다.

(iv) 환자가 자발적 조력사망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다.

(3) 인증서는 승인된 양식(**의료인 투여 양식**)이어야 하고,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a) 환자의 이름 및 생년월일,

(b) 약물투여 의사의 이름 및 연락처 정보,

(c) 처방된 약물 투여 증인의 이름, 생년월일 및 연락처 정보,

(d) 처방된 약물을 투여한 날짜와 시간,

(e) 처방된 약물을 투여한 장소,

(f) 환자의 사망 날짜와 시간,

(g) 처방된 약물 투여부터 사망까지 경과시간,

(h) 처방된 약물 투여와 관련해 발생한 문제에 대한 세부 사항,

(i) 제63조(3)에 따라 요구되는 증인 증명서,

(j) 약물투여 의사의 서명과 양식에 서명한 날짜,

(k) 증인의 서명과 양식에 서명한 날짜.

- (4) 약물투여 의사는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을 투여하고 영업일 5일 이내에 의료인 투여 양식 사본을 위원회에 제공해야 한다.
최대 벌금 - 100 벌금 단위(penalty units).

63 처방받은 약물의 투여 증인

- (1) 제60조(6)의 목적을 위해 개인은 다음 조건을 충족할 경우 처방된 약물 투여를 목격하기에 적격하다.
- (a) 성인이고,
 - (b) 부적격한 증인이 아니다.
- (2) 제(1)항(b)의 목적을 위해 개인은 다음 조건을 충족할 경우 증인으로 부적격하다.
- (a) 환자의 약물투여 의사의 가족 구성원, 또는
 - (b) 환자의 약물투여 의사에게 고용되었거나 서비스 계약에 따라 고용된 경우.
- (3) 환자에게 처방된 약물 투여를 목격하는 자는 환자에 대한 의료인 투여 허가증에 다음 사항을 인증해야 한다.
- (a) 환자가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자발적 조력사망을 요청하는 것으로 보였고,
 - (b) 환자의 약물투여 의사가 증인의 입회 하에 처방된 약물을 환자에게 투여하였다.

64 약물투여 의사의 역할 이전

- (1) 본조는 다음 상황에서 적용된다.
- (a) 환자가 의료인 투여를 결정하였고,
 - (b) 환자의 조정의사가 환자를 위해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을 처방하였고,
 - (c) 환자의 약물투여 의사(최초 의사)가 어떠한 사유로든 환자에게 처방된 약물을 투여할 수 없거나 투여할 의지가 없는 경우. 단, 최초 의사는
 - (i) 환자의 조정의사든,
 - (ii) 제(2)항에 따라 약물투여 의사의 역할을 이전 받은 자든 상관 없이 적용된다.
- (2) 최초 의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타인에게 약물투여 의사의 역할을 이전해야 한다.
- (a) 환자의 약물투여 의사로 적격하고,
 - (b) 역할의 이전을 수락하는 경우.

- (3) 개인(새로운 의사)이 역할 이전을 수락하면 최초 의사는 다음을 이행해야 한다.
 - (a) 환자에게 다음 사항을 통지하고,
 - (i) 약물투여 의사의 역할이 새로운 의사에게 이전되었다는 사실,
 - (ii) 새로운 의사의 이름 및 연락처 정보,
 - (b) 환자의 의료 기록에 역할 이전 사실을 기록하고,
 - (c) 역할 이전을 수락하고 영업일 5일 이내에 승인된 양식(약물투여 의사 역할이전 양식)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사본을 제공한다.

최대 벌금 - 100 벌금 단위(penalty units).
- (4) 약물투여 의사 역할이전 양식은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a) 환자의 이름, 생년월일 및 연락처 정보,
 - (b) 최초 의사의 이름 및 연락처 정보,
 - (c) 새로운 의사의 이름 및 연락처 정보,
 - (d) 새로운 의사가 역할 이전을 수락한 날짜,
 - (e) 환자가 역할 이전을 통지받은 날짜,
 - (f) 최초 의사의 서명과 양식에 서명한 날짜.
- (5) 역할이 이전되었을 때 최초 의사가 처방된 약물을 소지한 경우,
 - (a) 최초 의사는 새로운 의사에게 처방된 약물을 공급할 권한이 부여되고,
 - (b) 새로운 의사는 최초 의사로부터 처방된 약물을 수령할 권한이 부여된다.
- (6) 환자의 조정의사는 제(2)항에 따라 약물투여 의사의 역할 이전에도 불구하고 조정의사로 남지만, 제175조를 전제로 한다.

제3절 담당자

65 본절의 적용

본조는 환자가 자가 투여를 결정하였을 때 적용된다.

66 환자는 담당자를 지명해야 한다

- (1) 환자는 개인을 자신의 담당자로 지명해야 한다.
- (2) 개인이 성인인 경우, 지명에 적격하다.
- (3) 담당자로 지명할 수 있는 자를 제한함이 없이, 환자는 다음 대상을 지명할 수 있다.

- (a) 환자의 조정의사, 또는
- (b) 환자의 상담의사, 또는
- (c) 다른 등록된 의료종사자.
- (4) 개인이 지명에 동의하지 않는 한 담당자로 지명되어선 안 된다.
- (5) 환자는 담당자 지명을 취소할 수 있다.
- (6) 환자가 담당자 지명을 취소할 경우,
 - (a) 환자는 담당자에게 취소를 통지하고,
 - (b) 개인은 제(a)호에 따라 더 이상 담당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 (c) 환자는 제(1)항에 따라 다른 사람을 지명해야 한다.

67 담당자 지명서 양식

- (1) 담당자 지명은 승인된 양식(**담당자 지명서 양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 (a) 환자의 이름, 생년월일 및 연락처 정보,
 - (b) 환자의 조정의사 이름 및 연락처 정보,
 - (c) 환자의 이름, 생년월일 및 연락처 정보,
 - (d) 담당자가 지명에 동의한다는 진술,
 - (e) 담당자가 다음 사항을 포함해 본 법률에 따라 개인의 역할을 이해한다는 진술,
 - (i) 담당자가 제181조(2)(d)에 의거해 보건부 차관이 발행한 지침을 준수하기로 동의한다는 진술,
 - (ii) 제125조의 요건과 그러한 요건을 위반 시 처벌,
 - (f) 환자가 통역사의 도움을 받아 지명하는 경우, 통역사 이름, 연락처 정보 및 공인기관 정보,
 - (g) 담당자의 서명과 양식에 서명한 날짜,
 - (h) 환자의 서명 또는 환자를 대신해 양식을 작성한 자의 서명, 그리고 양식에 서명한 날짜.
- (2) 다음과 같은 경우, 개인은 환자를 대신하여 양식을 작성할 수 있다.
 - (a) 환자가 담당자 지명서 양식을 작성할 수 없고,
 - (b) 환자가 개인에게 담당자 지명서 양식을 작성하도록 지시하며,
 - (c) 개인이 성인에 해당한다.

- (3) 환자 또는 그 담당자는 담당자 지명서 양식을 환자의 조정의사에게 제공해야 한다.
- (4) 환자의 조정의사는 담당자 지명서 양식을 받고 영업일 5일 이내에 그 사본을 위원회에 제공해야 한다.
최대 벌금 - 100 벌금 단위(penalty units).
- (5) 환자의 조정의사는 담당자 지명 양식을 제공 받기 전에는 환자에게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을 처방하지 아니한다.

68 담당자의 역할

- (1) 담당자에게는 다음 행위를 이행할 권한이 부여된다.
 - (a) 승인된 공급자로부터 처방된 약물을 수령하고,
 - (b) 제(c)호 내지 제(d)호를 목적으로 처방된 약물을 소지하고,
 - (c) 환자가 자가 투여할 약물을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고,
 - (d) 처방된 약물을 환자에게 공급하고,
 - (e) 제125조에 따라 처방된 약물, 또는 미사용 또는 잔여 약물을 허가된 폐기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2) 담당자는 환자가 처방된 약물의 자가 투여 또는 기타 사유로 사망할 경우 환자의 조정의사에게 사망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69 담당자는 역할을 지속하길 거절할 수 있다

- (1) 담당자는 담당자 역할 수행을 지속하기를 거절할 수 있다
- (2) 담당자가 역할 수행을 지속하기를 거절하는 경우,
 - (a) 개인은 환자에게 거절 사실을 통지해야 하고,
 - (b) 개인은 제(a)호에 따라 더 이상 개인에게 통지해야 하는 담당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 (c) 환자는 제66조(1)에 따라 다른 사람을 지명해야 한다.

제4절 자발적 조력사망약물과 관련된 허가

70 조정의사는 위원회에 자발적 조력사망약물 허가증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 (1) 환자가 투여를 결정하는 경우, 환자의 조정의사는 위원회에 환자를 위한 자발적 조력사망약물 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다.
- (2) 신청서는,
 - (a) 규정된 양식으로 작성되어야 하고,

(b)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요청 및 평가 과정과 관련된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71 위원회는 신청을 결정해야 한다

- (1) 위원회는 환자의 조정의사로부터 자발적 조력사망약물 허가증 신청서를 수령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 (a) 신청을 고려하고,
 - (b) 다음 사항을 결정해야 한다.
 - (i) 신청서를 승인할지, 또는
 - (ii) 제72조가 적용되는 경우, 신청서를 거절한다.
- (2) 위원회에서 신청서를 승인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결정을 내리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인과 관련해 자발적 조력사망약물 허가증을 승인된 양식으로 부여해야 한다.
- (3) 자발적 조력사망약물 허가증은 다음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 (a) 환자의 이름 및 생년월일,
 - (b) 환자의 조정의사의 이름,
 - (c) 환자의 조정의사가 자신의 권한에 따라 약물을 처방할 수 있는 기간,
 - (d) 보건부에서 요하는 기타 정보.
- (4) 자발적 조력사망약물 허가증은 자가 투여 또는 개인에게 투여할 수 있는 자발적 조력사망약물 허가증과 관련이 있다.

72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의 허가 신청 거절

- (1)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 환자의 조정의사에게 환자를 위한 자발적 조력사망약물 허가증 발급을 거절할 수 있다.
 - (a) 위원회가 제70조(2)(b)에서 요하는 요청 및 평가 과정과 관련된 서류를 모두 수령하지 않은 경우, 또는
 - (b) 위원회에서 개인과 관련해 본 법률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 (2) 위원회에서 자발적 조력사망약물 허가증 발급을 거절하는 경우, 위원회는 영업일 2일 이내에 환자의 조정의사에게 서면 통지서를 제공해야 하고, 해당 통지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진술해야 한다.
 - (a) 신청이 거절되었다는 사실,
 - (b) 거절 사유.

제5절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의 처방, 공급 및 폐기

73 약물을 처방하기 전에 제공해야 할 정보

- (1) 본조는 다음 상황에서 적용된다.
 - (a) 환자가 투여를 결정하였고,
 - (b) 위원회가 환자에 대해 자발적 조력사망약물 허가증을 발급한 경우.
- (2) 환자가 자가 투여를 결정한 경우, 환자의 조정의사는 환자를 위해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을 처방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개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a) 별지 4의 독극물 또는 별지 8의 독극물 또는 두 가지의 혼합물도 약물에 해당한다는 것,
 - (b) 환자는 약물을 받아야 할 의무가 없다는 것,
 - (c) 환자는 약물을 자가 투여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것,
 - (d) 약물을 조제하는 방법,
 - (e) 약물은,
 - (i) 제79조에 명시된 요건을 준수하여 잠금 상자에 보관해야 하고,
 - (ii) 그렇지 않으면 약물을 공급하는 승인된 공급자가 제공한 정보에 따라 보관해야 한다는 것,
 - (f) 약물을 조제하고 자가 투여하는 방법,
 - (g) 약물을 자가 투여할 방법,
 - (h) 약물의 자가 투여로 예상되는 결과,
 - (i) 약물을 자가 투여 후 환자가 사망에 이르는 시간,
 - (j) 약물의 자가 투여로 인한 잠재적 위험성,
 - (k) 환자가 약물을 자가 투여하지 않기로 결정할 경우, 담당자는 약물을 폐기하기 위해 허가된 폐기자에게 약물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
 - (l) 환자가 사망하면 담당자는 미사용 또는 잔여 약물을 폐기하기 위해 허가된 폐기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것.
- (3) 의료인 투여를 결정한 환자의 조정의사는 환자를 위해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을 처방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a) 별지 4의 독극물 또는 별지 8의 독극물 또는 두 가지의 혼합물도 약물에 해당한다는 것,
 - (b) 환자는 약물을 투여 받을 의무가 없다는 것,
 - (c) 약물을 조제하는 방법,

- (d) 약물을 투여할 방법,
- (e) 약물 투여로 예상되는 결과,
- (f) 약물을 투여 후 환자가 사망에 이르는 시간,
- (g) 약물 투여로 인한 잠재적 위험성,
- (h) 자가 투여 결정을 취소하고 나서 의료인 투여를 결정하는 경우, 담당자는 환자, 담당자 또는 환자 대리인이 수령한 약물을 폐기하기 위해 허가된 폐기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것.

74 약물 처방

- (1) 본조는 환자의 조정의사가 개인에게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을 처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주

1 자발적 조력사망약물 처방에 관한 본조의 요건은 다음 법률에 의거해 처방전에 적용 가능한 요건에 추가로 적용된다.

- (a) 1966 독극물 및 치료제법, 또는
- (b) 뉴사우스웨일스 또는 오스트레일리아 연방의 기타 법률.

2 본 법률과 1966 독극물 및 치료제법의 조항이 상충되는 경우, 상충되는 범위에 한해 본 법률의 조항이 우선한다는 내용은 제14조를 참고한다.

- (2) 조정의사가 발급한 처방전은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a)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의 처방임을 분명하게 표시하는 설명서,
- (b) 다음과 같은 설명서,
 - (i) 본 법률에 따라 환자를 대상으로 요청 및 평가 과정이 완료되었음을 인증하고,
 - (ii) 환자가 투여 결정을 내렸음을 인증하고, 자가 투여와 의료인 투여 중 어떤 것을 선택했는지 명시하고,
- (c) 환자의 휴대전화 번호.

- (3) 처방전은 약물 도표 양식이어서는 안 된다.

- (4) 처방전은 처방 약물을 1회 이상 제공하지 아니한다.

- (5) 조정의사는 승인된 공급자에게 직접 처방전을 제공해야 한다.

- (6) 명확성을 위해, 승인된 공급자에게 직접 처방전을 제공하도록 요하는 제(5)항의 요건에 따르면 승인된 공급자에게 처방전을 면대면으로 제공하도록 요하는 것이 아니라 우편이나 이메일과 같은 전자수단을 통해 제공할 수 있다.

(7) 본조에서,

약물 도표(*medication chart*)란 환자의 치료를 위해 사용되거나 사용할 예정인 약물을 기록한 도표이다.

75 승인된 공급자가 처방을 입증해야 한다

자발적 조력사망약물 처방을 제공 받은 승인된 공급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지 않는 한 처방전에 따라 약물을 공급하는 것이 금지된다.

- (a) 처방전의 진위성,
- (b) 처방전을 발급한 자의 신원,
- (c) 약물을 제공받게 될 개인의 신원.

76 처방된 약물을 공급 시 제공해야 하는 정보

- (1) 본조는 승인된 공급자가 환자, 담당자 또는 대리인(수령인)에게 처방된 약물을 공급할 경우 적용된다.
- (2) 승인된 공급자는 처방된 약물을 공급할 때 수령인에게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a) 환자는 약물을 자가 투여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것,
 - (b) 약물은,
 - (i) 제79조에 명시된 요건을 준수하여 잠금 상자에 보관해야 하고,
 - (ii) 그렇지 않으면, 승인된 공급자가 제공한 기타 요건에 따라 보관해야 한다는 것,
 - (c) 약물을 조제하고 자가 투여하는 방법,
 - (d) 환자가 약물을 자가 투여하지 않기로 결정할 경우, 담당자는 약물을 폐기하기 위해 허가된 폐기자에게 약물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
 - (e) 환자가 사망하면, 담당자는 미사용 또는 잔여 약물을 폐기하기 위해 사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허가된 폐기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것,
 - (f) 미사용 또는 잔여 약물을 폐기하기 위해 허가된 폐기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한 상세 정보.
- (3) 수령인이 환자가 아닌 경우, 승인된 공급자는 처방된 약물을 공급 시 수령인에게 제(2)항에 따라 제공된 정보를 환자에게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77 처방된 약물의 라벨링 요건

- (1) 1977 독극물 및 치료제법에 따른 라벨링 요건에 더해 처방된 약물을 공급하는 승인된 공급자는 관련된 포장지 또는 용기에 서면으로 라벨링 설명서를 첨부함으로써,
 - (a) 약물의 투여량에 대한 목적을 경고하고,
 - (b) 약물 투여의 위험성에 대해 명시하고,
 - (c) 자가 투여를 위해 약물을 공급 시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 (i) 약물은,
 - (A) 제79조에 명시된 요건을 준수하여 잠금 상자에 보관해야 하고,
 - (B) 그렇지 않으면, 승인된 공급자가 제공한 기타 요건에 따라 보관해야 하며,
 - (ii) 미사용 또는 잔여 약물은 약물을 공급 받은 담당자가 허가된 폐기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 (2) 설명서는 승인된 양식을 따라야 한다.

78 승인된 공급자는 공급을 기록하고 통지해야 한다

- (1) 처방된 약물을 공급하는 승인된 공급자는 즉시 승인된 양식을 작성해야 한다(*허가된 공급 양식*).
- (2) 허가된 공급 양식은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a) 환자의 이름, 생년월일 및 연락처 정보,
 - (b) 승인된 공급자의 이름 및 연락처 정보,
 - (c) 처방된 약물이 공급되었음을 명시하는 진술,
 - (d) 처방된 약물이 공급된 개인의 이름 및 연락처 정보,
 - (e) 처방된 약물이 공급된 날짜,
 - (f) 제75조, 제76조, 제77조에 따른 요건을 준수하였다는 진술,
 - (g) 승인된 공급자의 서명과 양식에 서명한 날짜.
- (3) 승인된 공급자는 처방된 약물을 공급하고 영업일 5일 이내에 허가된 공급 양식 사본을 위원회에 제공해야 한다.
최대 벌금 - 100 벌금 단위(penalty units).

79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의 보관

- (1)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을 수령하는 자는 약물을 잠금 상자에 보관해야 한다.
- (2) 잠금 상자는,
 - (a) 강철 재질이어야 하고,
 - (b) 쉽게 침투할 수 없으며,
 - (c) 견고한 구조의 잠금장치를 이용해 잠겨야 한다.

80 허가된 폐기자에 의한 처방된 약물 폐기

- (1) 본조는 담당자가 처방된 약물 또는 미사용 또는 잔여 약물을 허가된 폐기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2) 허가된 폐기자는 다음 행위를 이행하도록 허가된다.
 - (a) 처방된 약물 또는 미사용 또는 잔여 약물을 폐기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 (b) 처방된 약물을 폐기하는 행위.
- (3) 허가된 폐기자는 처방된 약물 또는 미사용 또는 잔여 약물을 수령하는 즉시 최대한 빨리 폐기해야 한다.
- (4) 허가된 폐기자는 처방된 약물을 폐기하면서 폐기에 적용되는 1966 독극물 및 치료제법의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81 허가된 폐기자는 폐기를 기록하고 통지해야 한다

- (1) 처방된 약물을 폐기하는 허가된 폐기자는 즉시 승인된 양식을 작성해야 한다(*허가된 폐기 양식*).
- (2) 허가된 폐기 양식은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a) 환자의 이름, 생년월일 및 연락처 정보,
 - (b) 허가된 폐기자의 이름 및 연락처 정보,
 - (c) 처방된 약물을 허가된 폐기자에게 공급한 자의 이름 및 연락처 정보,
 - (d) 처방된 약물을 허가된 폐기자에게 제공한 날짜,
 - (e) 처방된 약물을 허가된 폐기자가 폐기한 날짜,
 - (f) 허가된 폐기자의 서명과 양식에 서명한 날짜.
- (3) 허가된 폐기자는 처방된 약물을 폐기하고 영업일 5일 이내에 허가된 폐기 양식 사본을 위원회에 제공해야 한다.
최대 벌금 - 100 벌금 단위(penalty units).

82 약물투여 의사의 처방된 약물 폐기

- (1) 제(2)항과 제(3)항은 다음의 경우에 적용된다.
 - (a) 환자가 의료인 투여를 결정하였다가 취소하고,
 - (b) 결정이 취소되었을 때 환자의 약물투여 의사가 처방된 약물을 소지한 경우.
- (2) 약물투여 의사에게는 다음 행위를 이행할 권한이 부여된다.
 - (a) 처방된 약물 또는 미사용 또는 잔여 약물을 폐기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 (b) 처방된 약물을 폐기하는 행위.
- (3) 약물투여 의사는 의료인 투여 결정이 취소되면 가능한 한 빨리 처방된 약물을 폐기해야 한다.
- (4) 제(5)항과 제(6)항은 다음 경우에 적용된다.
 - (a) 사망 시점이 처방된 약물 투여 전후 여부와 상관없이 의료인 투여를 결정한 환자가 사망하였고,
 - (b) 환자의 약물투여 의사가 환자의 사망 후에 미사용 또는 잔여 약물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미사용 또는 잔여 약물*).
- (5) 약물투여 의사에게는 다음 행위를 이행할 권한이 부여된다.
 - (a) 미사용 또는 잔여 약물을 폐기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 (b) 미사용 또는 잔여 약물을 폐기하는 행위.
- (6) 약물투여 의사는 환자의 사망 후 가능한 한 빨리 미사용 또는 잔여 약물을 폐기해야 한다.
- (7) 약물투여 의사는 처방된 약물 또는 미사용 또는 잔여 약물을 폐기하면서 경우에 따라 폐기에 적용되는 1966 독극물 및 치료제법의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83 약물투여 의사는 폐기를 기록하고 통지해야 한다

- (1) 처방된 약물을 폐기하는 환자의 약물투여 의사는 즉시 승인된 양식을 작성해야 한다(*허가된 폐기 양식*).
- (2) 의료인 폐기 양식은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a) 환자의 이름, 생년월일 및 연락처 정보,
 - (b) 약물투여 의사의 이름 및 연락처 정보,
 - (c) 처방된 약물을 약물투여 의사에게 제공한 날짜,
 - (d) 환자가 의료인 투여 결정을 취소하거나 사망한 날짜,
 - (e) 약물투여 의사가 처방된 약물을 폐기한 날짜,
 - (f) 약물투여 의사의 서명과 양식에 서명한 날짜.

- (3) 약물투여 의사는 처방된 약물을 폐기하고 영업일 5일 이내에 작성한 의료인 폐기 양식 사본을 위원회에 제공해야 한다.
- 최대 벌금 - 100 벌금 단위(penalty units).

제6절 기타 사안

84 승인된 공급자와 허가된 폐기자

- (1) 보건부 차관은 관보 공고문을 통해 등록된 의료종사자 또는 그 부류에게 본장의 목적을 위해 처방된 약물을 공급할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승인된 공급자(authorised supplier)**이다.
- (3) 보건부 차관은 관보 공고문을 통해 등록된 의료종사자 또는 그 부류에게 본장의 목적을 위해 처방된 약물을 폐기할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 (4) 제(3)항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허가된 폐기자(authorised disposer)**이다.
- (5) 보건부 차관은 관보 공고문을 통해 제(1)항 또는 제(3)항에 제공된 권한을 취소할 수 있다.
- (6) 보건부 차관은 다음에 관한 상세 정보를 포함하는 기록부(register)를 유지해야 한다.
- (a) 승인된 공급자,
 - (b) 허가된 폐기자.
- (7) 제(6)항에 따라 보관하는 기록부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만 검사할 수 있어야 한다.
- (a) 환자, 또는
 - (b) 담당자 또는 대리인, 또는
 - (c) 조정의사, 또는
 - (d) 상담의사, 또는
 - (e) 약물투여 의사, 또는
 - (f) 기능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여 본 법률에 따라 기능을 수행하는 자.

85 금지 약물의 공급 및 투여와 관련된 특정 지침

- (1) 환자의 조정의사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의료종사자에게 처방된 약물을 환자, 담당자 또는 대리인에게 공급하도록 지시해서는 안 된다.
- (a) 의료종사자가 승인된 공급자이고,
 - (b) 처방된 약물의 처방전 양식으로 작성한 지시를 승인된 공급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경우.

- (2) 환자의 조정의사 또는 약물투여 의사는 의료종사자에게 처방된 약물을 환자에게 투여하도록 지시해서는 안 된다.

86 약물에 대해 구조화된 투여 및 공급 계획을 교부해선 안 된다

- (1) 개인은 자발적 조력사망을 목적으로 한 약물의 투여 및 공급과 관련해 구조화된 투여 및 공급 계획을 교부해선 안 된다.

- (2) 본조에서,

*구조화된 투여 및 공급 계획(structured administration and supply arrangement)*이란 문서에 명시된 의료종사자 또는 그 부류가 문서에 명시된 약물을 투여 또는 공급할 수 있는 상황을 규정하는 문서를 의미한다.

87 사망 통지

- (1) 환자의 조정의사 또는 약물투여 의사는 환자의 사망 사실을 인지하고 영업일 5일 이내에 승인된 양식으로 환자의 사망 사실을 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최대 벌금 - 100 벌금 단위(penalty units).

- (2) 제(1)항은 환자가 본 법률에 따라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을 자가 투여하거나 투여 받은 이후로 사망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3) 제(1)항은 개인의 약물투여 의사가 제62조(4)에 의거해 개인과 관련해 의료인 투여 양식 사본을 위원회에 제공할 경우에 적용된다.

- (4) 제(5)항과 제(6)항은 개인의 사망 원인 증명서를 제공해야 하는 의사가 본 법률에 따라 개인이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을 자가 투여하거나 투여 받은 환자임을 알고 있거나 합당하게 믿고 있을 경우에 적용된다.

- (5) 의사는 개인이 사망하였음을 인지하고 영업일 5일 이내에 승인된 양식으로 개인의 사망을 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단, 의사가 개인의 조정의사 또는 약물투여 의사인 경우는 제외된다.

- (6) 의사는 개인의 사망 원인 증명서에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a) 의사는 환자가 본 법률에 따라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을 자가 투여하거나 투여 받았음을 알고 있거나 합당하게 믿고 있다는 것,

(b) 개인이 진단 받아 자발적 조력사망에 적절한 대상자가 된 사유에 해당하는 질병, 질환 및 의학적 상태.

최대 벌금 - 100 벌금 단위(penalty units).

(7) 본조에서,

*개인의 사망 원인 증명서(cause of death certificate)*란, 1995 출생, 사망, 결혼 등록법 제39조(1)에 따른 개인의 사망과 사망 사유에 대한 확인서를 의미한다.

제5장 참여

제1절 예비 조항

88 정의

본장에서,

개인을 위한 결정과 관련해 *판단 의사(deciding practitioner)*란 다음을 의미한다.

(a) 개인의 조정의사, 또는

(b) 개인의 조정의사가 없는 경우, 개인이 지명한 다른 의사.

*의료(health care)*란 의학적, 외과적 및 간호적 치료를 의미한다.

*의료기관(health care establishment)*이란,

(a) 2007 민간의료시설법(Private Health Facilities Act 2000)에 규정된 의미에서 민간의료시설, 또는

(b) 1997 보건서비스법(Health Services Act 1997)에 규정된 의미에서 공공병원을 의미한다.

*의료단체(health entity)*는 의료기관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단체를 의미한다.

*관련 기관(relevant entity)*이란 개인 이외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관련 서비스(relevant service)*란 다음을 의미한다.

(a) 개인 돌봄 서비스, 또는

(b) 장기요양 서비스.

*장기요양(residential aged care)*이란 거주 시설에서 개인에게 제공되는 간호 또는 개인 돌봄을 의미하며, 개인에게 다음을 포함한 숙박시설이 제공된다.

(a) 개인의 간호와 개인 돌봄의 요구를 충족하는 직원,

(b) 식사와 청소 서비스,

(c) 개인의 간호 또는 개인 돌봄과 숙박 제공에 필요한 비품, 가구 및 장비.

89 자발적 조력사망 제공에 참여

- (1) 거주 시설 또는 의료기관은 시설 또는 기관에서 자발적 조력사망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다.
- (2) 제(1)항의 목적을 위해, 거주 시설 또는 의료기관은 다음 사항을 거절하거나, 동 시설 및 기관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자의 고용을 거절할 수 있다.
 - (a) 요청 및 평가 과정에 참여하는 행위,
 - (b) 투여 결정에 참여하는 행위,
 - (c)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을 처방, 공급 및 투여하는 행위,
 - (d)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을 보관하는 행위,
 - (e) 자발적 조력사망약물 투여 또는 자가 투여 시 입회하는 행위.
- (3) 제(1)항과 제(2)항은 제2절과 제3절의 요건을 전제로 한다.

제2절 거주 시설**제1관 자발적 조력사망에 관한 정보****90 자발적 조력사망에 관한 정보로의 접근성**

- (1) 본조는 다음 상황에서 적용된다.
 - (a) 개인이 거주 시설에서 관련 기관으로부터 관련 서비스를 받고 있고,
 - (b) 개인이 관련 기관에 자발적 조력사망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고,
 - (c) 관련 기관이 거주 시설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 받는 개인이 요청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 (2) 관련 기관과 거주 시설을 소유 및 사용하는 기타 기관은,
 - (a) 거주 시설에서 자발적 조력사망에 관한 정보로의 접근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 (b)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요청 시 접근을 합리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 (i) 등록된 의료종사자 또는 타인이 개인에게 자발적 조력사망과 관련해 요청한 정보를 개인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 또는
 - (ii) 자발적 조력사망 공식 케어 네비게이터 서비스의 회원이 개인에게 자발적 조력사망과 관련해 지지, 지원 및 정보를 제공해달라는 요청.

제2관 자발적 조력사망 이용

91 본관의 적용

본관은 개인이 거주 시설에서 관련 기관으로부터 관련 서비스를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92 1차 요청과 최종 요청

(1) 본조는 다음 상황에서 적용된다.

- (a) 개인 또는 그 대리인이 관련 기관에 개인이 1차 요청 또는 최종 요청을 하길 원한다는 사실을 알리고(각 **관련 요청**),
- (b) 관련 기관이 거주 시설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에게 시설에서 요청 및 평가 과정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2) 관련 기관을 비롯해 시설을 소유 및 사용하는 기타 기관은 거주 시설에서 의사가 개인에게 적절하게 접근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 (a) 개인이 입회를 요청한 자,
- (b) 다음에 해당하는 자,
 - (i) 1차 요청 시 조정의사 역할에 적합한 자, 또는
 - (ii) 최종 요청 시 개인의 조정의사.

(3) 요청한 조정 담당자가 참석할 수 없는 경우, 관련 기관은 조정 담당자의 참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 (a) 요청을 받은 의사, 또는
- (b) 조정의사로 적격하고 활동할 의향이 있는 다른 의사에게 해당 개인의 관련 요청을 할 수 있는 장소로 개인을 이송하는 것.

93 1차 평가

(1) 본조는 다음 상황에서 적용된다.

- (a) 개인이 1차 요청을 하였고,
- (b) 개인 또는 그 대리인이 관련 기관에 개인이 1차 평가를 받길 원한다는 사실을 통지하고,
- (c) 관련 기관이 거주 시설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에게 시설에서 요청 및 평가 과정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2) 개인이 시설의 영주권자인 경우,

- (a) 관련 기관을 비롯해 동 거주 시설을 소유 및 사용하는 기타 기관은 시설에서 의사가 개인을 평가하도록 접근성을 적절하게 허용해야 한다.
- (b) 관련 의사가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관련 기관은 개인이 다음 대상에게 관련 요청을 할 수 있는 장소로 개인을 이동시키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i) 관련된 의사, 또는
 - (ii) 관련된 의사로 적격하고 그러한 역할을 맡을 의향이 있는 다른 의사.
- (3) 개인이 거주 시설의 영주권자인 경우,
 - (a) 관련 기관은 개인과 관련된 의사가 개인의 1차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장소로 개인을 이동시키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는
 - (b) 판단 의사 소견으로 제(a)호에 설명된 개인의 이동이 상황상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기관을 비롯해 동 시설을 소유 및 사용하는 기타 기관은 개인의 조정의사가 시설에서 개인에게 적절하게 접근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 (4) 제(3)항(b)에 따른 결정을 내리는 데에 있어 결정하는 의사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a) 이동으로 개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것인지 여부,
 - (b) 이동으로 인해 개인의 자발적 조력사망 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 여부,
 - (c) 이동으로 인해 자발적 조력사망 이용이 지나치게 지연되고 통증이 연장될 수 있는지 여부,
 - (d) 개인의 이동 목적지로 제안한 장소에서 개인을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
 - (e) 이동으로 인해 개인에게 재정적 손실 또는 비용이 발생할 것인지 여부,
- (5) 본조에서,
 개인과 *관련된 의사(relevant practitioner)*란 다음을 의미한다.
 - (a) 개인의 조정의사, 또는
 - (b) 개인의 조정의사가 제26조에 따른 사안을 의뢰한 의사.

94 상담 평가

- (1) 본조는 다음 상황에서 적용된다.
 - (a) 개인이 1차 평가를 완료하였고,
 - (b) 개인 또는 그 대리인이 관련 기관에 개인이 상담 평가를 받길 원한다는 사실을 통지하고,

- (c) 기관이 거주 시설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에게 시설에서 요청 및 평가 과정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 (2) 개인이 시설의 영주권자인 경우,
 - (a) 관련 기관을 비롯해 동 거주 시설을 소유 및 사용하는 기타 기관은 시설에서 의사가 개인을 평가하도록 접근성을 적절하게 허용해야 한다.
 - (b) 관련 의사가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관련 기관은 개인이 다음 대상에게 관련 요청을 할 수 있는 장소로 개인을 이동시키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i) 관련된 의사, 또는
 - (ii) 관련된 의사로 적격하고 그러한 역할을 맡을 의향이 있는 다른 의사.
- (3) 개인이 거주 시설의 영주권자인 경우,
 - (a) 관련 기관은 개인과 관련된 의사가 개인의 1차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장소로 개인을 이동시키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는
 - (b) 판단 의사 소견으로 제(a)호에 설명된 개인의 이동이 상황상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기관을 비롯해 동 시설을 소유 및 사용하는 기타 기관은 개인의 조정의사가 시설에서 개인에게 적절하게 접근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 (4) 제(3)항(b)에 따른 결정을 내리는 데에 있어 결정하는 의사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a) 이동으로 개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것인지 여부,
 - (b) 이동으로 인해 개인의 자발적 조력사망 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 여부,
 - (c) 이동으로 인해 자발적 조력사망 이용이 지나치게 지연되고 통증이 연장될 수 있는지 여부,
 - (d) 개인의 이동 목적지로 제안한 장소에서 개인을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
 - (e) 이동으로 인해 개인에게 재정적 손실 또는 비용이 발생할 것인지 여부,
- (5) 본조에서,

개인과 관련된 의사(*relevant practitioner*)란 다음을 의미한다.

 - (a) 개인의 상담의사, 또는
 - (b) 개인의 상담의사가 제37조에 따른 사안을 의뢰한 의사.

95 서면 선언서

- (1) 본조는 다음 상황에서 적용된다.
 - (a) 개인이 자발적 조력사망 대상자로 적격하다고 평가받았고,
 - (b) 개인 또는 그 대리인이 관련 기관에 개인이 서면 선언서를 작성하길 원한다고 통지하고,
 - (c) 기관이 의료지역 내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에게 시설에서 요청 및 평가 과정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 (2) 개인이 시설의 영주권자인 경우,
 - (a) 관련 기관을 비롯해 거주 시설을 소유 및 사용하는 기타 기관은 동 시설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개인에게 적절하게 접근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 (i) 개인의 조정의사,
 - (ii) 개인이 서면 선언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개인의 자발적 조력사망에 합법적으로 참여하는 타인,
 - (b) 조정의사가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관련 기관은 개인이 서면 선언서를 작성할 수 있는 장소로 이동시키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 (3) 개인이 거주 시설의 영주권자인 경우,
 - (a) 관련 기관은 개인이 서면 선언서를 작성할 수 있는 장소로 개인을 이동시키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는,
 - (b) 판단 의사 소견으로 제(a)호에 설명된 개인의 이동이 상황상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관을 비롯해 동 시설을 소유 및 사용하는 기타 기관은 다음 대상자가 시설에서 개인에게 적절하게 접근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 (i) 개인의 조정의사,
 - (ii) 개인의 자발적 조력사망 요청에 합법적으로 참여하는 자.
- (4) 제(3)항(b)에 따른 결정을 내리는 데에 있어 결정하는 의사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a) 이동으로 개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것인지 여부,
 - (b) 이동으로 인해 개인의 자발적 조력사망 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 여부,
 - (c) 이동으로 인해 자발적 조력사망 이용이 지나치게 지연되고 통증이 연장될 수 있는지 여부,
 - (d) 개인의 이동 목적지로 제안한 장소에서 개인을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

(e) 이동으로 인해 개인에게 재정적 손실 또는 비용이 발생할 것인지 여부,

96 투여 결정 신청

(1) 본조는 다음 상황에서 적용된다.

(a) 개인이 최종 요청을 하였고,

(b) 개인 또는 그 대리인이 관련 기관에 개인이 투여 결정을 신청하길 원한다는 사실을 통지하고,

(c) 거주 시설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 받는 개인이 투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인의 조정의사에게 접근하는 것을 기관이 허용하지 않는 경우.

(2) 개인이 시설의 영주권자인 경우,

(a) 관련 기관을 비롯해 동 시설을 소유 및 사용하는 기타 기관은 시설에서 개인의 조정의사가 개인에게 적절하게 접근하여 투여 신청을 상담하고 신청과 관련해 개인을 평가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b) 조정의사가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관련 기관은 개인이 신청과 관련해 상담과 평가, 그리고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장소로 개인을 이동시키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i) 조정의사, 또는

(ii) 조정의사로 적격하고 활동할 의향이 있는 다른 의사.

(3) 개인이 거주 시설의 영주권자인 경우,

(a) 관련 기관은 개인의 조정의사가 신청과 관련해 개인과 상담 및 평가할 수 있는 장소로 개인을 이동시키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는,

(b) 판단 의사 소견으로 제(a)호에 설명된 개인의 이동이 상황상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기관을 비롯해 동 시설을 소유 및 사용하는 기타 기관은 개인의 조정의사가 시설에서 신청과 관련해 개인을 상담 및 평가하도록 적절하게 접근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4) 제(3)항(b)에 따른 결정을 내리는 데에 있어 결정하는 의사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a) 이동으로 개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것인지 여부,

(b) 이동으로 인해 개인의 자발적 조력사망 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 여부,

(c) 이동으로 인해 자발적 조력사망 이용이 지나치게 지연되고 통증이 연장될 수 있는지 여부,

- (d) 개인의 이동 목적지로 제안한 장소에서 개인을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
- (e) 이동으로 인해 개인에게 재정적 손실 또는 비용이 발생할 것인지 여부.

제3관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의 투여

97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의 투여

- (1) 본조는 다음 상황에서 적용된다.
 - (a) 개인이 투여 결정을 내렸고,
 - (b) 개인 또는 그 대리인은 개인이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의 자가 투여와 의료인 투여 중 원하는 것을 결정하여 관련 기관에 알리고,
 - (c) 관련 기관이 거주 시설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 받는 개인에게 자발적 조력사망약물 투여로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 (2) 개인이 거주 시설의 영주권자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기관을 비롯해 동 시설을 소유 및 사용하는 기타 기관은 다음을 이행해야 한다.
 - (a) 개인이 의료인 투여를 결정한 경우, 다음 대상이 시설에서 개인에게 적절하게 접근하도록 허용한다.
 - (i) 개인에게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을 투여하는 약물투여 의사,
 - (ii) 개인의 약물투여 의사가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을 투여하는 모습을 목격하는 적절한 증인을 포함해 개인의 자발적 조력사망약물 요청에 합법적으로 참여하는 자, 또는
 - (b) 개인이 자가 투여를 결정한 경우,
 - (i) 개인에게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을 합법적으로 전달하는 자가 시설에서 개인에게 적절하게 접근하도록 허용하고,
 - (ii) 개인의 자발적 조력사망 요청에 합법적으로 참여하는 자가 시설에서 개인에게 적절하게 접근하도록 허용하고,
 - (iii) 그 외에는 개인을 대상으로 자발적 조력사망약물로의 접근을 저해하지 아니한다.
- (3) 개인이 거주 시설의 영주권자인 경우,
 - (a) 관련 기관은 개인이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을 투여받거나 자가 투여할 수 있는 장소로 개인을 이동시키기 위해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는
 - (b) 판단 의사 소견으로 제(a)호에 설명된 개인의 이동이 상황상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개인이 거주 시설의 영주권자인 것과 같이 제(2)항이

적용된다.

- (4) 제(3)항(b)에 따른 결정을 내리는 데에 있어 결정하는 의사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a) 이동으로 개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것인지 여부,
 - (b) 이동으로 인해 개인의 자발적 조력사망 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 여부,
 - (c) 이동으로 인해 자발적 조력사망 이용이 지나치게 지연되고 통증이 연장될 수 있는지 여부,
 - (d) 개인의 이동 목적지로 제안한 장소에서 개인을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
 - (e) 이동으로 인해 개인에게 재정적 손실 또는 비용이 발생할 것인지 여부.

제4관 자발적 조력사망의 이용 불가능성에 관한 정보

98 관련 기관에서 자발적 조력사망의 이용 불가능성을 공개해야 한다

- (1) 본조는 관련 기관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주 시설에서 조력사망약물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기관에 적용되며, 그러한 서비스로는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의 요청 및 평가 과정 또는 약물 투여로의 접근성이 있다.
- (2) 관련 기관은 거주 시설에서 자발적 조력사망과 관련된 서비스 또는 특정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공개해야 한다.
- (3) 관련 기관은 거주 시설에서 기관의 정보를 받는 개인이 그러한 정보를 쉽게 인지하도록 공개해야 한다.

제3절 건강관리기관

제1관 자발적 조력사망에 관한 정보

99 자발적 조력사망에 관한 정보로의 접근성

- (1) 본조는 다음 상황에서 적용된다.
 - (a) 개인이 의료기관에서 의료단체로부터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고,
 - (b) 개인이 의료단체에 자발적 조력사망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고,
 - (c) 의료단체가 의료 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는 개인이 요청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 (2) 의료단체는,

- (a) 의료기관에서 자발적 조력사망에 관한 정보에 대한 개인의 접근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 (b) 자발적 조력사망 공식 케어 네비게이터 서비스의 회원이 개인에게 자발적 조력사망과 관련해 지지, 지원 및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개인에게 접근을 요청 시 적절한 접근성을 허용해야 한다.

제2관 자발적 조력사망 이용

100 본관의 적용

본관은 개인이 의료기관에서 의료단체로부터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101 1차 요청과 최종 요청

- (1) 본조는 다음 상황에서 적용된다.
 - (a) 개인 또는 그 대리인이 의료단체에 개인이 1차 요청 또는 최종 요청을 하길 원한다는 사실을 알리고(각 *관련 요청*),
 - (b) 의료단체가 의료기관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 받는 개인에게 기관에서 요청 및 평가 과정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 (2) 의료단체는 개인이 다음 대상자에게 관련 요청을 할 수 있는 장소로 개인을 이동시키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 (a) 개인이 요청한 의사로,
 - (i) 1차 요청 시 조정의사 역할에 적합한 자, 또는
 - (ii) 최종 요청 시 개인의 조정의사, 또는
 - (b) 요청을 받은 의사가 참여할 수 없는 경우, 개인의 조정의사로 적격하고 그러한 역할을 맡을 의향이 있는 다른 의사.

102 1차 평가

- (1) 본조는 다음 상황에서 적용된다.
 - (a) 개인이 1차 요청을 하였고,
 - (b) 개인 또는 그 대리인이 의료단체에 개인이 1차 평가를 받길 원한다는 사실을 통지하고,

- (c) 의료단체가 의료기관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 받는 개인에게 시설에서 요청 및 평가 과정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 (2) 의료단체는 개인과 관련된 의사가 개인의 1차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장소로 개인을 이동시키기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3) 개인의 용이한 이동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한 제(2)항에 따른 결정을 내리는 데에 있어 의료단체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a) 이동으로 개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것인지 여부,
 - (b) 이동으로 인해 개인의 자발적 조력사망 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 여부,
 - (c) 이동으로 인해 자발적 조력사망 이용이 지나치게 지연되고 통증이 연장될 수 있는지 여부,
 - (d) 개인의 이동 목적지로 제안한 장소에서 개인을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
 - (e) 이동으로 인해 개인에게 재정적 손실 또는 비용이 발생할 것인지 여부,
- (4) 본조에서,
 개인과 관련된 의사(*relevant practitioner*)란 다음을 의미한다.
 - (a) 개인의 조정의사, 또는
 - (b) 개인의 조정의사가 제26조에 따른 사안을 의뢰한 의사.

103 상담 평가

- (1) 본조는 다음 상황에서 적용된다.
 - (a) 개인이 1차 평가를 완료하였고,
 - (b) 개인 또는 그 대리인이 의료단체에 개인이 상담 평가를 받길 원한다는 사실을 통지하고,
 - (c) 의료단체가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는 개인에게 시설에서 요청 및 평가 과정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 (2) 의료단체는 개인과 관련된 의사가 개인의 1차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장소로 개인을 이동시키기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3) 개인의 용이한 이동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한 제(2)항에 따른 결정을 내리는 데에 있어 의료단체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a) 이동으로 개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것인지 여부,
 - (b) 이동으로 인해 개인의 자발적 조력사망 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 여부,

- (c) 이동으로 인해 자발적 조력사망 이용이 지나치게 지연되고 통증이 연장될 수 있는지 여부,
 - (d) 개인의 이동 목적지로 제안한 장소에서 개인을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
 - (e) 이동으로 인해 개인에게 재정적 손실 또는 비용이 발생할 것인지 여부,
- (4) 본조에서,
개인과 *관련된 의사(relevant practitioner)*란 다음을 의미한다.
- (a) 개인의 상담의사, 또는
 - (b) 개인의 상담의사가 제37조에 따른 사안을 의뢰한 의사.

104 서면 선언서

- (1) 본조는 다음 상황에서 적용된다.
 - (a) 개인이 자발적 조력사망 대상자로 적격하다고 평가받았고,
 - (b) 개인 또는 그 대리인이 관련 기관에 개인이 서면 선언서를 작성하길 원한다고 알리며,
 - (c) 의료단체가 거주 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 받는 개인에게 시설에서 요청 및 평가 과정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 (2) 의료단체는 개인이 서면 선언서를 작성할 수 있는 장소로 개인을 이동시키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 (3) 개인의 용이한 이동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한 제(2)항에 따른 결정을 내리는 데에 있어 의료단체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a) 이동으로 개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것인지 여부,
 - (b) 이동으로 인해 개인의 자발적 조력사망 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 여부,
 - (c) 이동으로 인해 자발적 조력사망 이용이 지나치게 지연되고 통증이 연장될 수 있는지 여부,
 - (d) 개인의 이동 목적지로 제안한 장소에서 개인을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
 - (e) 이동으로 인해 개인에게 재정적 손실 또는 비용이 발생할 것인지 여부,

105 투여 결정 신청

- (1) 본조는 다음 상황에서 적용된다.
 - (a) 개인이 최종 요청을 하였고,
 - (b) 개인 또는 그 대리인이 의료단체에 개인이 투여 결정을 신청하길 원한다는 사실을 통지하고,

- (c) 거주 시설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 받는 개인이 투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인의 조정의사에게 접근하는 것을 기관이 허용하지 않는 경우.
- (2) 의료단체는 개인의 조정의사가 신청과 관련해 개인과 상담 및 평가할 수 있는 장소로 개인을 이동시키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 (3) 개인의 용이한 이동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한 제(2)항에 따른 결정을 내리는 데에 있어 의료단체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a) 이동으로 개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것인지 여부,
 - (b) 이동으로 인해 개인의 자발적 조력사망 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 여부,
 - (c) 이동으로 인해 자발적 조력사망 이용이 지나치게 지연되고 통증이 연장될 수 있는지 여부,
 - (d) 개인의 이동 목적지로 제안한 장소에서 개인을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
 - (e) 이동으로 인해 개인에게 재정적 손실 또는 비용이 발생할 것인지 여부.

제3관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의 투여

106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의 투여

- (1) 본조는 다음 상황에서 적용된다.
 - (a) 개인이 투여 결정을 내렸고,
 - (b) 개인 또는 그 대리인은 개인이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의 자가 투여와 의료인 투여 중 원하는 것을 결정하여 의료단체에 알리고,
 - (c) 의료단체가 거주 시설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 받는 개인에게 기관에서 자발적 조력사망약물 투여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 (2) 의료단체는 개인이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을 투여받거나 자가 투여할 수 있는 장소로 개인을 이동시키기 위해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3) 개인의 용이한 이동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한 제(2)항에 따른 결정을 내리는 데에 있어 의료단체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a) 이동으로 개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것인지 여부,
 - (b) 이동으로 인해 개인의 자발적 조력사망 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 여부,
 - (c) 이동으로 인해 자발적 조력사망 이용이 지나치게 지연되고 통증이 연장될 수 있는지 여부,

- (d) 개인의 이동 목적지로 제안한 장소에서 개인을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
- (e) 이동으로 인해 개인에게 재정적 손실 또는 비용이 발생할 것인지 여부.

제4관 자발적 조력사망의 이용 불가능성에 관한 정보

107 관련 기관에서 자발적 조력사망의 이용 불가능성을 공개해야 한다

- (1) 본조는 의료단체가 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서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의 요청 및 평가 과정 또는 약물 투여로의 접근성을 포함해 자발적 조력사망약물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 (2) 의료단체는 의료기관에서 자발적 조력사망과 관련된 서비스 또는 특정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공개해야 한다.
- (3) 의료단체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받는 개인이 그러한 정보를 쉽게 인지하도록 공개해야 한다.

제6장 대법원의 검토

108 정의

본장에서,

적격한 신청자(*eligible applicant*)란,

- (a) 제109조(1)(a) 내지 (d)에 언급된 결정의 대상이 되는 환자, 또는
- (b) 제(a)호에 언급된 환자가 그 대리인으로 지정한 자,
 - (i) 서면으로, 또는
 - (ii) 대법원이 해당 상황에서 만족스럽다고 간주할만한 기타 수단을 통해, 또는
- (c) 자발적 조력사망과 관련해 제(a)호에서 언급하는 권리와 이익에 진심으로 충분한 관심을 가진 다른 사람.

검토 신청과 관련해 **법적 절차의 당사자**(*party to the proceeding*)란 신청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진행되는 법적 절차의 당사자를 의미한다.

환자와 관련된 **검토 신청**(*review application*)이란, 환자에 대해 내린 결정을 검토하고자 제109조(1)에 따른 신청을 의미한다.

검토 신청과 관련해 **검토된 결정**(*reviewed decision*)이란 신청 대상에 대한 결정을 의미한다.

109 특정 결정에 대한 대법원의 검토 신청

(1) 적절한 신청자는 대법원에 다음과 같은 결정을 검토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a) 1차 평가에서 다음 사항에 대한 조정의사의 판단.

- (i) 환자가 1차 요청 당시 최소 12개월 이상 뉴사우스웨일스에서 거주해왔는지 여부, 또는
- (ii) 자발적 조력사망과 관련해 의사결정능력이 있는지 여부, 또는
- (iii) 자발적으로 행동하는지 여부, 또는
- (iv) 압력 또는 협박으로 행동하는지 여부.

주— 별지 1의 정의에서 **압력 또는 협박**(*pressure or duress*)을 참고한다.

(b) 상담 평가에서 다음 사항에 대한 조정의사의 결정.

- (i) 환자가 1차 요청 당시 최소 12개월 이상 뉴사우스웨일스에서 거주해왔는지 여부, 또는
- (ii) 자발적 조력사망과 관련해 의사결정능력이 있는지 여부, 또는
- (iii) 자발적으로 행동하는지 여부, 또는
- (iv) 압력 또는 협박으로 행동하는지 여부.

(c) 최종 검토 양식에서 다음 사항에 만족한다는 진술을 하겠다는 조정의사의 결정.

- (i) 환자에게 자발적 조력사망과 관련해 의사결정능력이 있는지 여부, 또는
- (ii) 자발적 조력사망을 요청하는 데에 있어
 - (A) 환자가 자발적으로 행동하는지 여부, 또는
 - (B) 환자가 압력 또는 협박으로 행동하는지 여부,

(d) 위원회가 환자에 대해 자발적 조력사망약물 허가증 신청을 거부하는 결정.

(2) 검토된 결정을 재검토 시에는,

- (a) 새로 심리를 열어 다루어야 하고,
- (b) 검토된 결정과 관련해 제공된 정보를 대신하거나 추가하는 증거 및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10 법적 절차에 대한 환자 당사자

환자와 관련해 검토 신청을 하는 경우, 환자가 검토 신청자든 아니든 상관없이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된다.

111 검토 신청 결과

- (1) 본조는 환자와 관련해 검토 신청을 한 경우에 적용된다.
- (2) 환자와 관련해 요청 및 평가 과정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 (a) 요청 및 평가 과정이 중단되고,
 - (b) 검토 신청이 결정되거나 처리될 때까지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다.
- (3) 환자와 관련해 요청 및 평가 과정이 완료된 경우,
 - (a) 제4장에 따라 자발적 조력사망 이용 과정이 중단되고,
 - (b) 검토 신청이 결정되거나 처리될 때까지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의 처방, 공급 및 투여를 포함하여 환자와 관련해 제4장에 따른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다.

112 환자가 사망 시 검토 신청은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환자와 관련된 검토 신청은 환자가 사망하면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113 대법원의 결정

환자와 관련해 검토 신청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 대법원은 다음을 판단할 수 있다.

- (a) 환자가 1차 요청 당시 최소 12개월 이상 뉴사우스웨일스에서 거주해왔는지, 또는
- (b) 환자가 1차 요청 당시 최소 12개월 이상 뉴사우스웨일스에서 거주하지 않았는지, 또는
- (c) 환자에게 자발적 조력사망과 관련해 의사결정능력이 있는지, 또는
- (d) 환자에게 자발적 조력사망과 관련해 의사결정능력이 없는지, 또는
- (e) 환자가 자발적으로 행동하는지, 또는
- (f) 환자가 압력 또는 협박으로 행동하지 않는지, 또는

주— 별지 1의 정의에서 **압력 또는 협박**(*pressure or duress*)을 참고한다.
- (g) 환자가 자발적으로 행동하지 않는지, 또는
- (h) 환자가 압력 또는 협박으로 행동하는지, 또는
- (i) 자발적 조력사망약물 허가증의 발급을 거절할 사유가 있는지, 또는
- (j) 자발적 조력사망약물 허가증의 발급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지 여부.

114 제113조(a), (c), (e), (f) 또는 (j)에 의거한 결정의 효과

- (1) 대법원이 개인과 관련된 검토 신청과 관련해 제113조(a), (c), (e), (f) 또는 (j)에 언급된 결정을 내리는 경우,

- (a) 제111조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아니하고,
 - (b) 검토를 신청할 당시 환자와 관련된 요청 및 평가 과정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요청 및 평가 과정이 재개될 수 있고,
 - (c) 검토를 신청할 당시 환자와 관련된 요청 및 평가 과정이 완료된 경우, 제4장에 따른 과정이 재개될 수 있고, 제4장에 따라 환자에게 허가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 (d) 법원에서 검토 결정을 제쳐두는 경우, 제(2)항, 제(3)항 또는 제(4)항이 적용된다.
- (2) 대법원에서 제쳐둔 검토된 결정이 1차 평가에서 조정의사의 결정인 경우,
- (a) 검토된 결정은 법원의 결정으로 대체되고,
 - (b) 검토된 결정을 제외하고 1차 평가에서 개인이 자발적 조력사망에 부적격한 대상으로 평가하는 결과가 나왔다면, 조정의사가 환자를 자발적 조력사망의 대상으로 적격하다고 평가하는 1차 평가를 낸 것으로 간주한다.
- (3) 대법원에서 제쳐둔 검토된 결정이 상담 평가에서 조정의사의 결정인 경우,
- (a) 검토된 결정은 법원의 결정으로 대체되고,
 - (b) 검토된 결정을 제외하고 상담 평가에서 개인이 자발적 조력사망에 부적격한 대상으로 평가하는 결과가 나왔다면, 상담의사가 환자를 자발적 조력사망의 대상으로 적격하다고 평가하는 상담 평가를 낸 것으로 간주한다.
- (4) 대법원에서 제쳐둔 검토된 결정이 최종 평가에서 조정의사의 결정인 경우,
- (a) 검토된 결정은 법원의 결정으로 대체되고,
 - (b) 최종 검토 양식은 다음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i) 검토된 결정이 제109조(1)(c)(i)에 언급된 결정인 경우, 조정의사가 자발적 조력사망과 관련해 환자에게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는 진술, 또는
 - (ii) 검토된 결정이 제109조(1)(c)(ii)(A)에 언급된 결정인 경우, 조정의사가 자발적 조력사망과 관련해 환자가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확인된다는 진술, 또는
 - (iii) 검토된 결정이 제109조(1)(c)(ii)(B)에 언급된 결정인 경우, 조정의사가 자발적 조력사망과 관련해 환자가 압력 또는 협박으로 행동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진술.

주— 별지 1의 정의에서 **압력 또는 협박**(*pressure or duress*)을 참고한다.

115 제113조(b), (d), (g), (h) 또는 (i)에 의거한 결정의 효과

대법원이 환자와 관련된 검토 신청에 대해 제113조(b), (d), (g), (h) 또는 (i)에 언급된 결정을 내리는 경우,

- (a) 환자는 자신과 관련된 요청 및 평가 과정을 위해 자발적 조력사망을 이용하기에 부적격한 대상으로 간주하고,
- (b) 검토를 신청할 당시 환자와 관련된 요청 및 평가 과정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요청 및 평가 과정이 종료되고,
- (c) 검토를 신청할 당시 개인과 관련된 요청 및 평가 과정이 완료된 경우,
 - (i) 제4장에 따라 자발적 조력사망 절차가 종료되고,
 - (ii)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의 처방, 공급 및 투여를 포함하여 환자와 관련해 제4장에 따른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다.

116 조정의사는 역할을 지속하길 거절할 수 있다

- (1) 제114조(2)(a) 또는 (4)(a)에 의거해 대법원의 결정이 환자의 조정의사의 결정을 대신하는 경우, 조정의사는 조정의사로서 역할을 계속 수행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라 조정의사로서 역할을 계속하길 거절하는 조정의사는 제175조에 따라 조정의사 역할을 이전해야 한다.

117 대법원의 심리는 비공개로 소집해야 한다

- (1) 검토 신청에 관한 대법원 심리는 비공개로 소집해야 한다.
- (2) 대법원은 검토 신청과 관련해 심리 참석자에 대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

118 통지 요건

- (1) 환자와 관련해 검토를 신청한 경우, 대법원 등록 담당자는 신청 및 그와 관련된 모든 명령 또는 결정(어떠한 용어로 설명하든)을 다음 대상에게 통지해야 한다.
 - (a) 조정의사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아닌 경우 환자의 조정의사,
 - (b) 상담의사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아닌 경우 환자의 상담의사,
 - (c) 환자의 약물투여 의사 역할이 제64조(2)에 따라 이전된 경우, 환자의 약물투여 의사,
 - (d) 보건부 차관,
 - (e) 위원회.

(2)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검토 신청을 통지받고 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제111조(2)와 (3)의 결과를 다음 대상에게 통지해야 한다.

- (a) 법적 절차의 각 당사자,
- (b) 조정의사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아닌 경우 환자의 조정의사,
- (c) 환자의 약물투여 의사 역할이 제64조(2)에 따라 이전된 경우, 환자의 약물투여 의사,

119 조정의사와 상담의사는 대법원에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1) 제118조(1)에 따라 검토 신청을 통지받은 환자의 조정의사 또는 상담의사는 대법원 등록 담당자에게 다음을 제공해야 한다.

- (a) 조정의사 또는 상담의사가 검토 대상에 대해 결정을 내린 경우,
 - (i) 검토된 결정의 사유에 대한 진술,
 - (ii) 의사가 소지 또는 통제하고, 검토된 결정에 대한 법원의 재검토와 관련된 기타 문서 및 자료, 또는
- (b) 조정의사 또는 상담의사가 검토 대상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경우,
 - (i) 의사가 소유 또는 통제하고,
 - (ii) 검토된 결정에 대한 법원의 재검토와 관련된 기타 문서 및 자료.

(2) 조정의사 또는 상담의사는 대법원 등록 담당자에게 사유에 대한 진술을 포함해 서류 및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a) 검토 신청을 통지받고 영업일 7일 이내에, 또는
- (b) 법원에서 명령하는 더 짧은 기한 이내에.

120 대법원은 서면으로 결정 이유를 제공한다

(1) 대법원은 검토 신청과 관련해 내린 결정 이유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2) 대법원 등록 담당자는 서면 사유 사본을 다음 대상에게 제공해야 한다.

- (a) 법적 절차의 각 당사자,
- (b) 조정의사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아닌 경우 환자의 조정의사,
- (c) 상담의사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아닌 경우 환자의 상담의사,
- (d) 환자의 약물투여 의사 역할이 제64조(2)에 따라 이전된 경우, 환자의 약물투여 의사,
- (e) 보건부 차관,
- (f) 위원회.

- (3) 법적 절차 중에 대법원의 결정 사유를 구두로 제공한 부분을 서면으로 작성한 자료만으로도 본조의 목적상 서면 사유를 구성하기에 충분하다.

121 공개된 결정 또는 사유에는 개인 정보를 제외시킨다

- (1) 대법원에서 검토 신청과 관련해 내린 결정 또는 결정 사유를 공개하는 경우, 법원은 다음 사항이 포함된 개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방식으로 공개할 것을 보장해야 한다.
- (a) 법적 절차의 각 당사자,
 - (b) 법적 절차 중에 법원에 출석한 자,
 - (c) 조정의사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아닌 경우 환자의 조정의사,
 - (d) 상담의사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아닌 경우 환자의 상담의사,
 - (e) 개인이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아닌 경우, 환자의 이전 조정의사 또는 이전 상담의사.
 - (f) 환자의 약물투여 의사 역할이 제64조(2)에 따라 이전된 경우, 그러한 역할을 이전 받은 자.
- (2) 제(1)항은 대법원으로 하여금 본 항에 언급된 자와 관련된 개인 정보 공개를 금하지 아니한다.
- (a) 제120조(1)에 따라 제공된 서면 사유, 또는
 - (b) 제120조(2)에 따라 제공된 서면 사유 사본.
- (3) 본조에서,
개인 정보(*personal information*)란 개인의 신원을 공개하는 정보를 포함한다.

122 잠정 명령

대법원은 검토 신청에서 공정하다고 판단하는 잠정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제7장 범죄

123 잘못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

본 법률에 의거한 개인, 목적 및 요건에 대해 다음 행위는 1990 형법(Crimes Act 1900) 제5A장에 따라 범죄에 해당한다.

- (a) 개인이 잘못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진술을 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또는
- (b) 개인이 아는 바로 진술 또는 정보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이 없이 무언가를 누락하는 행위.

124 처방전으로 제출한 서류의 취소

- (1) 본조는 다음 상황에서 적용된다.
 - (a) 승인된 공급자는 자발적 조력사망약물 처방전으로 제시한 문서를 제공받는다.
 - (b) 승인된 공급자가
 - (i) 문서가 제74조를 준수하지 않는다거나,
 - (ii) 문서와 관련된 환자의 조정의사가 발급하지 않았거나,
 - (iii) 특정 사항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 (2) 승인된 공급자는
 - (a) 서류 중앙에 “취소됨(cancelled)”이라고 표기하여 서류를 취소하고,
 - (b) 보건부 차관에게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i) 문서가 취소되었다는 사실,
 - (ii) 문서를 취소한 사유.

최대 형벌—징역 12개월.

125 담당자는 미사용 및 잔여 약물을 허가된 폐기자에게 제공한다

- (1) 승인된 공급자가 환자에게 처방된 약물을 공급한 후 환자가 자가 투여 결정을 철회하는 경우, 담당자는 결정을 철회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기 전에 최대한 빠르게 처방된 약물을 허가된 폐기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최대 형벌—징역 12개월.
- (2) 자가 투여를 결정한 환자가 승인된 공급자로부터 처방된 약물을 공급 받은 이후에 사망하는 경우, 환자 담당자는 결정을 철회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기 전에 최대한 빠르게 미사용 또는 잔여 약물을 허가된 폐기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최대 형벌—징역 12개월.
- (3) 제(2)항에서, 미사용 또는 잔여 약물에 대한 언급은 환자의 사망 이후 처방된 약물 중에 담당자가 알고 있는 미사용 또는 잔여 약물을 의미한다.

126 정보의 기록, 사용 및 공개

- (1) 개인은 본 법률에 의거해 현재 또는 과거에 부여된 기능으로 인해 취득한 정보를 직간접적으로 기록, 사용 및 공개해서는 안 된다.
최대 형벌—징역 12개월.
- (2) 제(1)항은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의 기록, 사용 및 공개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a) 본 법률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 또는
 - (b) 본 법률 또는 기타 법률에서 요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또는
 - (c) 법원 명령이나 재판에 따라 행동하는 기타 개인 또는 단체인 경우, 또는
 - (d) 제6장에 따른 법적 소송을 목적으로, 또는 법원이나 재판에 따라 행동하는 기타 개인 또는 단체와의 기타 법적 소송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또는
 - (e) 범죄의 혐의를 조사하기 위한 목적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범죄와 관련해 법적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 또는
 - (f) 다음 대상으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
 - (i) 정보와 관련된 자, 또는
 - (ii) 정보와 관련된 자의 유언 집행자 또는 재산 관리인.
- (3) 제(1)항은 통계 또는 개인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정보의 기록, 사용 및 공개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27 대법원에서 법적 절차와 관련해 개인 정보의 공개

- (1) 개인은 제6장에 의거한 법적 절차와 관련해 다음 사항에 대한 개인 정보를 공개해선 안 된다.
 - (a) 법적 절차의 각 당사자,
 - (b) 법적 절차 중에 대법원에 출석한 자,
 - (c) 조정의사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아닌 경우 환자의 조정의사,
 - (d) 상담의사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아닌 경우 환자의 상담의사,
 - (e) 개인이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아닌 경우, 환자의 이전 조정의사 또는 이전 상담의사.
 - (f) 환자의 약물투여 의사 역할이 제64조(2)에 따라 이전된 경우, 그러한 역할을 이전 받은 자.
- 최대 형벌—징역 12개월.

(2) 본조에서,

법적 절차에 관한 정보(*information about a proceeding*)란 다음에 관한 정보를 의미한다.

(a) 제6장에 따라 대법원에서 진행하는 법적 절차, 또는

(b) 제6장에 의거한 법적 절차에서 대법원의 판결 또는 명령.

법적 절차의 당사자(*party to the proceeding*)는 제108조를 참고한다.

공개하다(*publish*)란 어떤 수단을 이용해서든 대중 또는 일부 대중에게 전파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러한 수단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a) 신문 또는 정기 간행물,

(b) 라디오 방송, 텔레비전, 웹사이트, 온라인 시설 또는 기타 전자 수단.

제8장 집행

128 1996 독극물 및 치료제법의 적용

(1) 1966 독극물 및 치료제법, 제5장 제2절 내지 제4절(**적용된 조항**(*applied provisions*))의 조항은 본 법률을 집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용되며,

(a) 규정에서 지시하는 수정 사항과,

(b) 기타 필요한 수정 사항도 함께 적용된다.

(2) 적용된 조항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1966 독극물 및 치료제법의 정의는 제(1)항에 의거한 조항을 적용하는 목적으로도 적용된다.

129 법원은 법률에 의거한 범죄의 유죄 판결을 보건부 장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법원에서 개인에게 본 법률에 따른 범죄로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경우, 법원 기록 담당자는 보건부와 위원회에 다음 사항에 대한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a) 유죄 판결,

(b) 부과되는 처벌.

제9장 면책

130 자발적 조력사망을 지원하는 자 또는 의약품 투여 시 입회한 자에 대한 보호

개인은 다음 요건을 충족 시 형사적 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 (a) 본 법률에 따라 개인이 자발적 조력사망을 요청 또는 이용하도록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또는
- (b) 개인이 본 법률에 따라 처방된 약물을 자가 투여하거나 투여 받을 때 입회하는 경우.

131 본 법률에 따라 행위하는 자에 대한 보호

- (1) 본조는 개인이 신의성실의 원칙과 주의의무를 다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a) 본 법률에 따라 행위하는 경우, 또는
 - (b) 타당한 근거를 기반으로 본 법률에 따라 이행한다고 믿는 경우.
- (2) 개인은 다음에 처하지 아니한다.
 - (a) 작위로 인한 민사적 책임, 또는
 - (b) 작위로 인한 본 법률에 따른 형사적 책임.
- (3) 작위는 다음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 (a) 개인의 직업과 관련해 개인에게 적용 가능한 전문가적인 윤리 또는 기준 또는 행동 원칙의 위반, 또는
 - (b) 의료종사자규정국내법의 목적에서 불만족스러운 전문가적 행동 또는 의료전문직 부정행위.
- (4) 본조에서 작위(doing of a thing)는 부작위(omission to do a thing)를 포함한다.

132 개인을 의뢰하거나 정보를 요청하는 의사에 대한 보호

- (1) 의사는,
 - (a) 기타 법률에도 불구하고,
 - (i) 개인(환자)을 본 법률에 따라 타인에게 의뢰할 수 있고,
 - (ii) 본 법률에 따라 타인에게 환자의 의료 기록 사본 또는 환자에 관한 기타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 (b) 의뢰 또는 요청으로 인해 본 법률에 의거한 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 (c) 의뢰 또는 요청 사실만으로 의사의 전문가적인 행동을 규제하는 단체로부터 제재, 견책 및 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2) 제(1)항(a)에 언급된 의뢰 또는 요청을 받은 자는,
 - (a) 기타 법률에도 불구하고,
 - (i) 의뢰와 관련된 환자를 진료하거나,
 - (ii) 요청한 의사에게 요청 받은 의료 기록 사본 또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 (b) 진료를 하거나 요청 받은 의료 기록 사본 또는 기타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 (c) 진료를 보거나 요청 받은 의료 기록 사본 또는 기타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의사의 전문가적인 행동을 규제하는 단체로부터 제재, 견책 및 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33 응급처치를 하지 않는 특정인에 대한 보호

- (1) 본조는 보호 대상자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타인에게 응급처치(lifesaving treatment)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 (a) 타인이 응급처치 이행을 요청하지 않았고,
 - (b) 보호 대상자가 타당한 근거를 기반으로 타인이 본 법률에 따라 처방된 약물을 자가 투여하거나 투여 받은 이후로 사망하고 있다고 믿는 경우.
- (2) 보호 대상자는 응급처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민사 및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행정절차에서 면책된다.
- (3) 제(2)항을 제한함이 없이, 응급처치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 (a) 업무상 과실 또는 전문가적인 책임을 야기하는 의무 위반, 또는
 - (b) 전문가적 윤리 또는 기준의 위반, 또는 허용되는 전문가적 행동 기준에서 이탈, 또는
 - (c) 의료종사자규정국내법의 목적에서 불만족스러운 전문가적 행동 또는 의료전문직 부정행위, 또는
 - (d) 보호 대상자의 직업에 적용 가능한 행동 원칙의 위반.
- (4) 본조에서,

구급대원(ambulance officer)이란 응급 상황에 처한 자에게 의료 또는 기타 원조를 목적으로 구급서비스 제공자가 고용 또는 관여해온 개인을 의미하며, 자발적인 제공자도 포함된다.

응급처치(lifesaving treatment)란,

- (a) 응급의료(lifesaving medical treatment) 또는
- (b) 생명유지 의료(life-preserving medical treatment)를 의미한다.

보호 대상자(protected person)란,

- (a) 등록된 의료종사자, 또는
- (b) 구급대원, 또는
- (c) 제(a)호 또는 제(b)호에 언급된 자를 제외하고 타인에게 응급처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를 의미한다.

제10장 자발적 조력사망 위원회

제1절 설치

134 위원회 설치

자발적 조력사망 심사위원회가 설치되었다.

135 현황

위원회는

- (a) 정부 기관으로,
- (b) 정부로서 지위, 면책 및 특권을 가진다.

제2절 기능과 권한

136 위원회의 기능

- (1)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다.
 - (a) 본 법률의 시행을 검토한다.
 - (b) 자발적 조력사망을 지원할 의향이 있는 등록된 의료종사자 명단을 유지하며, 이러한 의료종사자가 이행하는 행위는 다음을 포함한다.
 - (i) 요청 및 평가 과정에 참여하고,
 - (ii)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을 처방, 공급 및 투여하고,
 - (iii)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의 투여 시 입회하고,

- (c) 제17조(1)에 의거해 위원회에 대한 신청과 관련해 결정을 내리고,
 - (d) 자발적 조력사망약물 허가증에 대해 결정을 내리고,
 - (e) 자발적 조력사망 개선을 위한 권고사항을 포함해 본 법률의 시행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조언, 정보 및 보고서를 자발적으로 또는 요청에 따라 장관 또는 보건부 차관에게 제공하고,
 - (f) 위원회에서 자발적 조력사망과 관련해 다음 개인 또는 단체의 기능과 관련이 있다고 파악한 문제를 각 개인 또는 단체로 회부한다.
 - (i) 1990 경찰법(Police Act 1990)에 따라 경찰국장,
 - (ii) 1995 출생, 사망, 결혼 등록법(Births, Deaths and Marriages Registration Act 1995)에 따라 출생, 사망, 결혼 등록 담당자,
 - (iii) 2009 검시관법(Coroners Act 2009) 제7조에 따라 지명된 주 검시관(State Coroner),
 - (iv) 보건부 차관,
 - (v) 2009 검시관법을 집행한 부서의 차관(Secretary of the Department),
 - (vi) 의료종사자규정국내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호주 의료종사자등록기관,
 - (vii) 1993 건강 민원법(Health Care Complaints Act 1993) 제76조에 따라 지명된 위원(Commissioner),
 - (g) 본 법률에 따라 위원회에 제공되는 정보를 분석 및 연구하는 기능,
 - (h)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 법률에 따라 위원회로 제공되는 정보를 수집, 활용 및 공개하는 기능,
 - (i) 본 법률 또는 기타 법률에 따라 위원회에 부여되는 기타 기능.
- (2) 위원회 또는 그 회원은 제(1)항(b)에 의거해 유지하는 등록된 의료종사자 명단 또는 명단에 포함된 정보를 다른 단체에 제공해선 안 된다. 단, 다음 대상은 제외된다.
- (a) 자발적 조력사망 공식 케어 네비게이터 서비스,
 - (b) 자발적 조력사망 공식 케어 네비게이터 서비스를 위해 고용되거나 관여되거나 대리자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 (c) 본 법률에 의거한 기능을 행사하기 위해 명단 또는 명단에 있는 정보에 접근해야 하는 타인.

제(c)호의 예시— 조정의사, 상담의사, 약물투여 의사

137 위원회의 권한

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을 모두 갖고 있다.

138 위원회의 위임

- (1) 위원회는 이러한 위임 권한 외에도 위원회 기능을 다음 대상에게 위임할 수 있다.
 - (a) 위원회 회원, 또는
 - (b) 제163조에 의거해 설치된 전담위원회(committee).
- (2) 위임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3) 본조에 따라 기능을 위임 받은 개인 또는 전담위원회는 그 기능을 위임해선 안 된다.
- (4) 본조에 따라 개인 또는 전담위원회로 위임된 기능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전담위원회는 달리 입증되지 않는 이상 위임 임기에 따라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5) 본조의 어떠한 내용도 위원회가 다음 대상을 통해 기능을 수행하는 능력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 (a) 제139조에 의거해 위원회로 제공된 직원, 또는
 - (b) 위원회 대리인.

제3절 직원과 원조

139 직원과 서비스

보건부 차관은 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합당하게 필요한 직원, 서비스, 시설, 기타 자원 및 지원을 제공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140 원조

- (1) 위원회는 장관의 승인 하에 특정 사안에 대해 위원회를 원조할만한 특별한 지식 또는 기술을 겸비한 자를 지명할 수 있다.
- (2) 위원회를 지원하도록 지명된 자는 위원회 회의와 숙의과정에 참석할 수 있으나 위원회 회의에서 투표권은 갖지 아니한다.

제4절 책임

141 장관(Minister)은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

- (1) 장관은 위원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해 위원회에 서면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
- (2) 위원회는 제(1)항에 의거해 장관이 제공한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 (3) 하지만 제(1)항에 의거한 지침은 특정한 개인 또는 사안과 관련된 기능의 수행과 관련되어선 안 된다.

142 장관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 (1) 장관은 다음을 이행할 권한이 있다.
 - (a) 위원회가 보유한 정보를 취득하고,
 - (b) 정보가 문서로 되어 있다면 그 문서를 취득하거나, 생성하여 사본을 관리한다.
- (2) 하지만 장관은 개인이 개인 정보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한 개인에 대한 개인 정보를 취득할 권한은 갖지 아니한다.
- (3) 제(1)항의 목적을 위해, 장관은,
 - (a) 위원회에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 (b) 정보로 접근할 권한을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고,
 - (c) 제(b)호의 목적을 위해, 제139조에 의거해 위원회로 제공된 직원과 위원회 시설을 이용해 정보를 취득하여 장관에게 제공할 수 있다.
- (4) 위원회는,
 - (a) 제(3)항에 따른 요청을 준수해야 하고,
 - (b) 제(3)항(c)에서 요하는 바와 같이, 장관이 직원과 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 (5) 본조에서,

문서(document)는 정보가 기록 및 보관된 테이프, 디스크, 기타 장치 및 매체를 모두 포함한다.

정보(information)란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해 장관이 명시한 정보 또는 명시한 종류의 정보를 의미한다.

제5절 회원자격

143 위원회의 회원자격

- (1) 위원회는 장관과 법무장관(Attorney General)이 관보 공고문을 통해 공동으로 지명한 5명의 회원으로 구성된다.

- (2) 위원회는 의사 회원 2명을 포함해야 한다.
- (3) 장관과 법무장관이 위원회의 기능에 적절한 지식, 기술 또는 경험을 겸비한 자라고 판단하는 자는 위원회 회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 (4) 다음에 해당하는 개인은 위원회 회원으로 지명할 수 없다.
 - (a) 커먼웰스 2001 기업법(Corporations Act 2001) 제9조에 따라 행정부 하에 파산한 자, 또는
 - (b) 형이 소멸된 경우를 제외하고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 또는
 - (c) 국회의사당 구성원.
- (5) 본조에서,

*형의 소멸(spent conviction)*이란 1991 범죄기록법(Criminal Records Act 1991)에 의거한 형의 소멸을 의미한다.

144 회장과 부회장

- (1) 장관과 법무장관은,
 - (a) 위원회 회원 1명을 위원회 회장으로 지명하고,
 - (b) 위원회 회원 중 다른 1명을 위원회 부회장으로 지명해야 한다.
- (2) 위원회 회원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만 회장 또는 부회장으로 적격하다.
 - (a) 최소 7년 이상 법률 업무의 경험이 있는 호주의 변호사(legal practitioner)이고,
 - (b)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 (i) 주(State), 다른 주, 다른 영토 또는 호주의 상급기록법원(superior court of record)의 판사 또는 다른 사법관, 또는 전직 판사 또는 다른 사법관, 또는
 - (ii) 제(i)목에 언급된 판사 또는 법원의 다른 사법관으로 지명되기에 적합한 자.
- (3) 회장이 질병, 부재 또는 기타 사유로 행동하지 못하거나 회장직이 공석인 경우, 부회장이 회장직의 업무를 수행한다.
- (4) 회장의 직무를 대신할 기회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중단되었다는 이유로 회장의 직무를 대신하는 부회장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이의를 제기해선 안 된다.

145 임기

- (1) 회원은 각자 임명장에 명시된 바와 같이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직위를 맡는다.
- (2) 위원회 회원은 재지명을 받기에 적격하다.

146 임시적 공석

- (1) 위원회 회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공석이 된다.
 - (a) 회원이 본조에 의거해 사망하거나, 사임하거나, 해임되는 경우, 또는
 - (b) 파산하거나, 파산 구제 또는 파산한 채무자를 위한 법을 이용하도록 신청하거나, 회원의 채권자들과 타협하거나, 회원의 채권자들의 이익을 위해 회원의 보수를 할당하는 경우, 또는
 - (c) 12개월 이상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위법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또는
 - (d) 158조에 따라 위법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 (2) 위원회 회원은 언제든지 장관 또는 법무장관에게 서면 통지를 전달하여 직위에서 사임할 수 있다.
- (3) 장관과 법무장관은 공동으로 다음 사유를 근거로 하여 위원회 회원을 해임할 수 있다.
 - (a) 직무 태만, 또는
 - (b) 부정행위 또는 무능력, 또는
 - (c) 일시적 질환을 제외하고 회원의 직무 수행을 저하시키는 정신적 또는 신체적 무능력, 또는
 - (d) 위원회 회원이 통지를 받은 위원회 회의에 3회 연속 무단 불참.
- (4) 본조에서,
부정행위(misconduct)는 직위상 의무와 상관없는 행위라 하더라도 위원회 회원으로서 직위를 맡기에 부적합한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147 공석 중 임기 연장

- (1) 위원회 회원의 임기가 끝나면서 직위에 공석이 발생하면, 회원을 재지명하거나 회원에게 후임자를 지명하여 공석이 채워지는 날까지 계속 회원으로 유지된다.
- (2) 제(1)항은 제146조에 따라 회원이 사임하거나 해임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 (3) 위원회 회원의 임기가 끝나고 본조에 따라 위원회 회원으로 유지되는 기간은 최대 3개월이다.

148 대체회원

- (1) 회장 외에 위원회 회원이 질병, 부재 또는 기타 사유로 행동하지 못하는 경우, 장관은 회원의 자리를 임시 대체할 다른 회원을 대체 회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 (2) 부회장이 회장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장관은 부회장 업무를 임시로 수행할 사람을 위원회 대체 회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 (3) 위원회 대체 회원은 임명장에 따라 행동하는 동시 위원회 회원의 자격을 가진 것으로 간주된다.
- (4) 위원회 대체 회원의 작위 및 부작위는 임명 또는 행동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중단된 경우를 근거로 의심해선 안 된다.

149 회원의 보수

위원회 회원은 장관이 수시로 결정하는 보수 및 수당을 지급 받을 권한이 있다.

제6절 위원회 회의

150 회의 소집

- (1) 위원회 최초 회의는 회장이 소집해야 하고, 이후 회의는 위원회가 결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소집해야 한다.
- (2) 위원회 특별 회의는 수시로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151 정족수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기 위한 정족수는 위원회 회원 3명으로 한다.

152 주재 회원

- (1) 회장이 참석한 경우 위원회 회의를 주재해야 한다.
- (2) 회장 또는 회장 업무를 보는 부회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주재하지 않는 경우, 회의에 참여한 위원회 회원들이 회의를 주재할 회원 1명을 선출해야 한다.

153 회의 절차

위원회는 본 법률에서 회의 절차를 규정하지 않는 경우 회의 절차를 자체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154 투표

- (1) 위원회 회의에 입회한 각 회원은 제159조에서 회원의 투표를 금지하지 않는 이상 투표권을 가진다.
- (2) 득표수가 같은 경우, 회의를 주재하는 회원이 투표권에 더해 결정 투표권을 가진다.
- (3) 문제는 투표를 통해 과반수로 해결한다.

155 원격 회의 주최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직접 참석할 필요는 없으며, 개인과 다른 사람이 각각 전화 또는 다른 실시간 소통으로 동시에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156 회의 없이 해결

위원회 각 회원이 서면으로 서명하거나 동의한 결의안은 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된 결의안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157 회의록

위원회는 각 회의에서 법적 절차에 대해 정밀한 회의록을 기록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7절 이해관계 공개

158 실질적인 개인적 이해관계 공개

- (1) 위원회가 고려 중이거나 고려할 예정인 사안에 대해 실질적인 개인적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회 회원은 관련된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최대한 빨리 이해관계의 성질을 위원회 회의에서 공개해야 한다.

최대 벌금 - 100 벌금 단위(penalty units).

- (2) 제(1)항에 의거한 공개는 회의록에 기록되어야 한다.

159 이해관계가 있는 회원의 투표

- (1) 위원회가 고려 중인 사안에 대해 실질적인 개인적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회 회원은,
 - (a) 회의든 아니든 해당 사안에 투표를 해선 안 되고,
 - (b) 회의에서 동 사안을 고려 중일 때 참석해선 안 된다.
- (2) 제(1)항에서 사안에 대한 언급은 회원 또는 다른 회원과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사안과 관련해 제160조에 의거해 제안된 결의안의 언급을 포함한다.

160 제159조는 적용 불가능한 것으로 선언할 수 있다

제159조는 다음의 경우 적용되지 아니한다.

- (a) 위원회 회원이 제158조에 따라 사안에 이해관계를 공개하였고,
- (b) 위원회가 언제든 다음과 같은 결의안을 통과한 경우.

- (i) 회원, 이해관계 및 사안에 대해 명시하고,
- (ii) 결의안에 찬성하는 위원회 회원들이 이해관계가 너무 미비하거나 사소하여 공개하는 회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적고 사안에 대한 숙의 또는 투표 과정에 회원의 자격을 박탈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음을 명시하는 결의안.

161 제159조가 적용되는 정족수

- (1) 제151조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원이 사안과 관련해 제159조에 따라 자격이 박탈되는 경우, 사안과 관련된 회의에서 제안되는 발의에 투표 권한이 있는 위원회 회원 2명이 입회한 경우, 사안의 숙의에 필요한 정족수가 입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 (2) 제(1)항으로 인해 위원회가 사안을 처리해선 안 되는 경우에 한해 장관이 사안을 처리할 수 있다.

162 장관은 제159조와 제160조를 적용 불가한 조항으로 선언할 수 있다

- (1) 장관은 서면 통지를 통해 제159조 또는 제160조가 명시된 사안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선언할 수 있다.
 - (a) 일반적으로, 또는
 - (b) 특정 결의안에 투표를 통해.
- (2)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언서가 작성되고 14 회기일(sitting days) 내에 각 국회의사당에 선언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제8절 전담위원회

163 전담위원회 설치

- (1) 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해줄 위원회(committee)를 설치할 수 있다.
- (2) 위원회는 전담위원회를 해체, 변경 또는 재편성할 수 있다.
- (3) 위원회는,
 - (a) 전담위원회의 기능, 회원 자격 및 구성을 결정할 수 있고,
 - (b) 위원회 회원 또는 타인을 전담위원회 회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164 전담위원회에 대한 지침

- (1) 위원회는 그 기능과 절차에 대한 지침을 전담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다.

(2) 전담위원회는 위원회가 제공한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165 전담위원회는 자체 절차를 결정한다

위원회 지침과 제138조에 따른 위임 조건을 전제로 하여 전담위원회는 자체 절차를 결정할 수 있다.

166 전담위원회 회원의 보수

전담위원회 회원은 장관이 수시로 결정하는 보수 및 수당을 지급 받을 권한이 있다.

제9절 정보

167 위원회는 담당자에게 정보를 전송해야 한다

위원회는 제67조(4)에 따라 환자에 대한 담당자 지명서 양식 사본을 수령하고 영업일 5일 이내에 담당자에게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전송해야 한다.

- (a) 제125조에 따라 처방된 약물, 또는 미사용 또는 잔여 약물을 허가된 폐기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요건을 설명하는 정보,
- (b) 담당자가 요건을 준수하도록 지원하는 데에 이용할 수 있는 지원 서비스를 열거하는 정보.

168 정보 요청

- (1) 위원회는 위원회의 기능 수행을 지원하도록 환자 담당자를 포함해 누구에게든 위원회에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2) 개인은 정보의 공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법률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요청을 준수해야 한다.

169 정보 공개

위원회는 개인 정보를 제외하고 그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는 요청에 따라 다음 대상에게 공개할 수 있다.

- (a) 당국, 또는
- (b) 교육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개인 또는 단체.

170 위원회는 통계 정보를 기록하고 유지해야 한다

- (1) 위원회는 자발적 조력사망과 관련해 다음 사안에 대한 통계 정보를 기록하고 보관해야 한다.
 - (a) 환자가 최종 요청을 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제16조(1)(d)의 요건을 충족하는 환자의 질병, 질환 및 의학적 상태,
 - (b) 나이, 성별, 거주하는 지역정부 구역, 해당 시 문화적 배경과 교육 수준을 포함해 자발적 조력사망 신청자와 관련된 사회인구통계적 정보,
 - (c) 환자가 본 법률에 따라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을 투여 받거나 자가 투여한 후 사망하는 경우, 개인이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나이,
 - (d) 지역 주민에 해당하는 환자의 요청 및 평가 과정에 참여, 자발적 조력사망 이용,
 - (e) 1차 평가에서 자발적 조력사망에 적절한 대상자로 평가받은 자,
 - (f) 1차 평가에서 자발적 조력사망에 부적격한 대상자로 평가받은 자,
 - (g) 상담 평가에서 자발적 조력사망에 적절한 대상자로 평가받은 자,
 - (h) 상담 평가에서 자발적 조력사망에 부적격한 대상자로 평가받은 자,
 - (i) 개인이 압력 또는 협박 하에 행동하여 자발적 조력사망에 부적격한 대상자로 평가받은 경우,
 - (j) 자발적 조력사망약물 허가증 승인 횟수,
 - (k) 자발적 조력사망약물 허가증 거절 횟수,
 - (l)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이 조제된 횟수,
 - (m)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의 자가 투여로 사망이 확인된 횟수,
 - (n)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의 의료인 투여로 사망이 확인된 횟수,
 - (o) 환자가 약물을 투여하기 전에 사망하여 미사용된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을 폐기하기 위해 허가된 폐기자에게 제공된 사례 수,
 - (p) 환자가 사망한 후에 남은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을 폐기하기 위해 허가된 폐기자에게 제공된 사례 수.
 - (q) 제(2)항에 따른 지침에 명시된 사안.
- (2) 장관은 위원회에 다음을 요구하는 서면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
 - (a) 지침에 명시된 자발적 조력사망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통계 정보를 기록 및 보관하고,
 - (b) 통계 정보를 연례 보고서에 포함시킨다.

- (3)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지침을 시행해야 한다.

제10절 기타 조항

171 위원회는 양식을 수령 시 통지해야 한다

- (1) 위원회는 본 법률에 따라 개인에게서 양식 또는 그 사본을 수령한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양식을 수령하였음을 개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2) 위원회는 허가된 폐기 양식 또는 의료인 폐기 양식 사본을 수령한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보건부 차관에게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172 위원회의 문서 작성

- (1) 제(2)항에 따라 허가된 위원회 회원 2명이 위원회를 대신해 문서에 서명하는 경우, 문서는 위원회에서 작성한 것과 같다.
- (2) 위원회는 회원들에게 위원회를 대신해 서명할 권한을 제공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 (a) 일반적으로, 또는
 - (b) 허가증에 명시된 조건을 전제로 하여.
- (3) 본조에 따라 작성하도록 요하는 문서는 그에 반하는 내용이 입증될 때까지는 작성된 것으로 간주된다.

173 연례 보고서

- (1) 위원회는 회계 연도가 종료되고 6개월 이내에 각 회계연도 동안 본 법률의 시행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제공해야 한다.
- (2) 연례 보고서는 다음 항목을 포함해야 한다.
 - (a) 위원회가 자발적 조력사망과 관련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권고 사항,
 - (b) 위원회가 그 기능과 관련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정보,
 - (c) 제136조(1)(f)에 따라 위원회가 회부한 횟수,
 - (d) 제141조(1) 또는 제170조(2)에 따라 위원회로 제공된 지침의 내용,
 - (e) 보고서에서 다루는 사안과 관련해 제158조(1)에 의거한 공개 및 그러한 공개와 관련해 제160조에 의거한 해결책의 상세 정보,
 - (f) 위원회가 제170조(1)(b)와 (e) 내지 (p)에 의거해 기록하고 보관하도록 요구되는 통계 정보,
 - (g) 제170조(2)에 의거해 위원회가 보고서에 포함하도록 요구되는 통계 정보,

- (h) 제170조(1)(c)에 의거해 기록하고 보관하는 통계 정보를 포함해 지역 주민이 자발적 조력사망을 이용하는 범위에 관한 정보, 제174조에 의거한 이용 기준과 관련된 정보.
- (3) 보고서는 다음 항목을 포함해야 한다.
 - (a) 환자, 의사, 또는 요청 및 평가 과정에 참여하는 자, 또는 제4장에 의거해 자발적 조력사망 이용 절차에 관한 개인 정보, 또는
 - (b) 다음 사항에 해가 되는 정보,
 - (i) 범죄 수사 또는 형사 소송, 또는
 - (ii) 민사 소송, 또는
 - (iii) 뉴사우스웨일스 검시관 법원의 소송.
- (4) 장관은 보고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 회기일 이내에 각 국회의사당에 보고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11장 이용 기준

174 자발적 조력사망 이용에 관한 기준

- (1) 보건부 차관은 보건부에서 뉴사우스웨일스에 거주하는 자에게 자발적 조력사망의 이용을 어떻게 도모할 것인지 규정하는 기준(*이용 기준(access standard)*)을 발표해야 하며, 여기에는 장관이 다음 사항에 대한 접근을 도모하는 방법도 포함된다.
 - (a) 본 법률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는 의사와 기타 개인의 서비스,
 - (b) 처방된 약물,
 - (c) 자발적 조력사망에 관한 정보.
- (2) 이용 기준은 보건부에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 자발적 조력사망의 이용을 어떻게 도모할 계획인지 규정해야 한다.
- (3) 이용 기준에는 본 법률에 따라 처방되는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의 자가 투여 또는 기타 투여 방식의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정보도 포함되어야 한다.
- (4) 보건부 차관은 이용 기준을 수정 또는 대체할 수 있다.
- (5) 보건부 차관은 보건부 웹사이트에 이용 기준을 게재해야 한다.

제12장 일반 조항

175 조정의사의 역할 이전

- (1) 환자의 조정의사(최초 의사(*original practitioner*))는 다른 의사에게 조정의사의 역할을 이전할 수 있으나, 단, 다음 조건을 전제로 한다.
 - (a) 상담의사가 환자를 자발적 조력사망 대상자로 적격하다고 평가하였고,
 - (b) 다른 의사가 역할 이전을 수락할 경우.
- (2) 역할의 이전은 다음을 전제로 한다.
 - (a) 환자의 요청에 따라, 또는
 - (b) 최초 의사가 자발적으로.
- (3) 제(1)항에 따라 역할 이전을 수락해달라는 최초 의사의 요청으로부터 영업일 5일 이내에 다른 의사는 역할 이전의 수락 또는 거부 의사를 최초 의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 (4) 다른 의사가 역할 이전을 수락하는 경우, 최초 의사는 다음을 이행해야 한다.
 - (a) 역할 이전 사실을 개인에게 통지하고,
 - (b) 환자의 의료 기록에 역할 이전 사실을 기록하고,
 - (c) 이전을 수락하고 영업일 5일 이내에,
 - (i) 승인된 양식(조정의사 역할 이전 양식(*coordinating practitioner transfer form*))을 작성하고,
 - (ii) 위원회에 조정의사 역할 이전 양식 사본을 제공한다.

최대 벌금 - 100 벌금 단위(*penalty units*).
- (5) 조정의사 역할 이전 양식은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a) 환자의 이름, 생년월일 및 연락처 정보,
 - (b) 최초 의사의 이름 및 연락처 정보,
 - (c) 다른 의사 이름 및 연락처 정보,
 - (d) 다른 의사가 역할 이전을 수락한 날짜,
 - (e) 환자가 역할 이전을 통지받은 날짜,
 - (f) 최초 의사의 서명과 양식에 서명한 날짜.
- (6) 다른 의사가 역할의 이전을 거절하는 경우, 최초 의사는 다음을 이행할 수 있다.
 - (a) 다른 의사에게 환자의 추가 상담 평가를 의뢰하고,
 - (b)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다른 의사에게 조정의사의 역할을 이전한다.

- (i) 다른 의사가 추가 상담 평가 의뢰를 수락하고,
 - (ii) 환자가 자발적 조력사망에 적격하다고 평가하고,
 - (iii) 역할의 이전을 수락하는 경우.
- (7) 추가 상담 평가 의뢰를 수락하는 경우, 이전에 환자를 자발적 조력사망에 적격하다고 평가한 상담 평가는 무효가 된다.

176 환자와 의사 간에 의사소통

- (1) 환자가 1차 요청, 최종 요청 또는 투여 결정을 직접 하지 못하는 경우,
 - (a) 환자는 시청각 통신을 이용해 요청 또는 결정을 내릴 수 있고,
 - (b) 그러한 요청 또는 결정을 통지 받은 의사는 시청각 통신을 이용해 환자에게 그러한 요청 또는 결정에 대한 조언이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2) 제(1)항(b)를 전제로 하여, 의사 또는 다른 등록된 의료종사자는 각자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통신 방법을 이용해 본 법률의 목적을 위해 개인에게 조언 또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개인과 소통할 수 있으며, 이러한 통신 방법에는 전자 통신과 통역사도 포함된다.
- (3) 하지만, 제(1)항과 제(2)항은 커먼웰스 법률에 위배되거나 상충되는 통신 방법의 이용은 허가하지 아니한다.
- (4) 본조에서,

*시청각 통신(audiovisual communication)*이란 사람들이 서로를 동시에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전자통신 방법을 의미한다.

177 전자 서명

- (1) 본조는 승인된 양식 또는 기타 문서에 대해 본 법률에 의거해 서명해야 하는 요건에 적용된다.
- (2) 명확성을 위해, 문서는 전자식으로 서명할 수 있다.

예시— 디지털 서명을 이용할 수도 있다
- (3) 하지만, 제43조에 따른 서면 선언서를 전자식으로 서명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로 제한한다.
 - (a) 환자가 신체적으로 선언서에 서명할 수 없고,
 - (b) 환자가 일반적으로 문서에 서명할 때 디지털 서명을 사용하고,
 - (c) 전자 방식으로 선언서에 서명할 때 환자가 디지털 서명을 이용해 선언서에 서명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178 자발적 조력사망에 관한 정보

- (1) 허가된 공무원(authorised official)은 자발적 조력사망에 관한 정보를 일반인에게 공개할 수 있다.
- (2) 전자통신을 포함해 허가된 공무원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통신 방법을 이용해 본 조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 (3) 하지만, 커먼웰스 법률에 위배되거나 상충되는 경우 제(2)항은 통신 방법의 이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 (4) 보건부 차관은 관보 공고문을 통해 개인 또는 그 부류를 본조의 목적을 위해 허가된 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 (5) 본조에서,
~~허가된 공무원(authorised official)~~이란,
 (a) 보건부 차관, 또는
 (b) 보건부에서 고용한 공무원, 또는
 (c) 제(4)항에 의거해 허가된 공무원으로 지정된 자를 의미한다.

179 자발적 조력사망 공식 케어 네비게이터 서비스

- (1) 보건부 차관은 단체가 본 법률상 자발적 조력사망 공식 케어 네비게이터 서비스가 되도록 승인할 수 있다.
- (2) 자발적 조력사망 공식 케어 네비게이터 서비스의 목적은 자발적 조력사망과 관련해 지지, 지원 및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있으며, 그 대상은 다음을 포함한다.
 (a) 부모,
 (b) 부모의 간병인, 가족 및 친구,
 (c) 의사, 그리고 환자 의료서비스 팀의 기타 구성원,
 (d) 거주 시설 관리자, 거주 시설에서 고용 또는 채용한 기타 개인, 또는 거주 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타 개인.
- (3) 자발적 조력사망 공식 케어 네비게이터 서비스에서 제136조(1)(b)에 따라 보관한 등록된 의료종사자 명단을 받은 경우, 관계자는 고의로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을 금한다.
 (a) 관계자와 독립된 다른 단체에게 명단의 사본을 제공하거나,
 (b) 명단에 실린 정보를 타인에게 공개하는 행위. 단, 타인이,
 (i) 자발적 조력사망을 요청하였거나,

(ii) 자발적 조력사망을 요청한 자를 지원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최대 벌금 - 100 벌금 단위(penalty units).

(4) 본조에서,

*관계자(relevant person)*란 자발적 조력사망 공식 케어 네비게이터 서비스에서 고용 또는 채용한 자, 또는 대리인을 의미한다.

180 보건부 차관은 교육, 정보 및 기타 자원을 승인할 수 있다

보건부 차관은 다음 사안에 대해 교육, 정보 및 기타 자원을 승인할 수 있다.

- (a) 조정의사, 상담의사, 약물투여 의사의 기능을 포함하여 의사와 기타 의료종사자와 관련해 본 법률의 시행,
- (b) 환자가 적격성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평가,
- (c) 노인 학대와 약자 학대를 포함해 압력 또는 협박의 위험 요인에 대한 식별과 평가.
주— 별지 1의 정의에서 **압력 또는 협박(pressure or duress)**을 참고한다.
- (d) 조정의사와 상담의사가 완화의료 선택안에 대한 정보를 환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본 법률을 준수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사안,
- (e) 본 법률의 시행과 관련된 기타 사안.

181 지침

- (1) 보건부 차관은 요청 및 평가 과정에 대한 지도를 제공하는 지침을 발표할 수 있다.
- (2) 제(1)항을 제한함이 없이, 보건부 차관은 다음에 관한 지침을 발표할 수 있다.
 - (a) 환자의 조정의사와 상담의사가 제26조와 제37조에 의거한 의사에게 환자를 의뢰하는 것,
 - (b) 환자의 조정의사와 상담의사가 제27조와 제38조에 의거해 정신과 의사, 다른 등록된 의료종사자 및 개인에게 환자를 의뢰하는 것,
 - (c) 환자가 자발적 조력사망을 요청하도록 압력 또는 협박을 받았는지 조정의사와 상담의사가 판단하는 방법,
 - (d) 담당자의 기능과 행동.

182 보건부 차관은 양식을 승인할 수 있다

보건부 차관은 본 법률에 의거한 사용 양식을 승인할 수 있다.

183 통역사

(1) 환자의 통역사는,

- (a) 보건부 차관이 승인한 기관에서 공인되어야 하고,
- (b) 다음에 해당해선 안 된다.
 - (i) 환자의 가족 구성원, 또는
 - (ii) 환자의 유언장에 따른 수혜자 또는 본인이 통역사로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적정 수수료를 수령하는 것 외에 환자의 사망으로 인해 재정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수혜를 보는 것으로 알고 있거나 믿고 있는자, 또는
 - (iii) 환자가 치료를 받거나 거주하고 있는 보건시설의 소유주 또는 경영자, 또는
 - (iv) 환자에게 보건 서비스 또는 개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직접 관여하는 자.

(2) 본조에서,

*보건시설(health facility)*이란 다음을 의미한다.

- (a) 1997 보건서비스법에 규정된 의미에서 병원,
 - (b) 커먼웰스의 1997 노인복지법 제41-3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거주 간호(residential care)가 제공되는 의료지역,
 - (c) 장애인에게 사택 외에 숙박시설과 개인 돌봄 또는 간호를 제공하는 의료지역.
- 환자의 통역사(interpreter)*란 다음 사항에 지원을 제공하는 통역사를 의미한다.

- (a) 요청 및 평가 과정, 또는
- (b) 제4장에 따라 자발적 조력사망 절차, 또는
- (c) 제6장에 따른 법적 절차.

184 1987 성년후견인법 및 2003 위임장법과의 관계

명확성을 위해, 자발적 조력사망은 다음 법률에서 적용되는 사안이 아니고, 다음 법률에 의거한 법적 문서에서 제공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 (a) 1987 성년후견인법(Guardianship Act 1987),
- (b) 2003 위임장법(Powers of Attorney Act 2003).

185 연례 보고서에서는 완화의료 지출에 관한 정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 (1) 보건부 차관은 장관을 위해 회계 연도(*보고 연도(reporting year)*)에 대해 작성된 1985 연례 보고서 (부처) 법(Annual Reports (Departments) Act 1985)에 다음 사항이 포함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 (a) 보고 연도 이전 회계 연도 동안 장관이 완화의료에 지출한 총액,
 - (b) 보고 연도 이전 5년의 회계 연도 동안 장관이 완화의료에 지출한 총액,
 - (c) 보고 연도에 다음 사항의 총합,
 - (i) 공공 병원에 입원하는 동안 완화의료를 제공 받은 개인의 수,
 - (ii) 공공 병원 입원을 제외한 공공 보건 시스템에서 완화의료를 제공 받은 개인의 수.
- (2) 제(1)항에 따른 연례 보고서에 포함된 정보는 다음을 대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 (a) 전국적으로,
 - (b) 보건 지역구별로.
- (3) 본조에서,
- 회계 연도(financial year)*란 1985 연례 보고서(부처)법에 규정된 의미로 사용된다.
- 보건 지역구(local health district)*란 1997 보건서비스법 제8조에 규정된 의미로 사용된다.
- 공공 보건 시스템(public health system)*이란 1997 보건서비스법 제6조에 규정된 의미로 사용된다.
- 공공 병원(public hospital)*이란 1997 보건서비스법 제15조에 규정된 의미로 사용된다.

186 법률 검토

- (1) 장관은 본 법률의 시행과 실효성을 검토하고, 그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되,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a) 본조가 시행되는 날로부터 2년이 지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 (b) 이후로는 5년 이하의 주기로.
- (2) 제(1)항을 제한함이 없이, 본 법률의 시행과 실효성에 대한 검토 시에는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하여 제4조에 규정된 원칙에 대한 고려를 포함해야 한다.
 - (a) 개인은 뉴사우스웨일스에서 어디에 거주하는지 또는 개인의 문화나 언어와 상관없이 자신의 돌봄, 치료 및 임종에 대해 진정한 선택권을 가질 권한이 있다.
 - (b) 지역 주민에 해당하는 자는 자발적 조력사망과 완화의료를 비롯한 양질의 돌봄 및 치료에 대해 대도시 지역에 사는 자와 동일한 수준의 접근성을 가질 권한이 있다.

- (3) 장관은 보고서를 작성하는 즉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국회의사당으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 기한은
 - (a) 1차 검토의 경우 두 번째 기념일(second anniversary)로부터 12개월을 넘지 아니하고,
 - (b) 이후 검토는 5개년이 종료되고 12개월을 넘지 아니한다.

187 규정

- 위원회 운영 위원(Governor)은 다음의 사안에 대해 규정을 만들 수 있다.
- (a) 본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요구하거나 허락하는 사안, 또는
 - (b) 본 법률을 시행하거나 실시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편리한 사안.

별지 1A 기타 법률의 결과적 개정

1A.1 1995 출생, 사망, 결혼 등록법 No 62

[1] 제42조 등록

- 제42조(2) 뒤에 다음 내용을 삽입한다.
- (3) 등록 담당자가 2022 자발적 조력사망법 제87조(6)에 언급된 사망 원인 증명서를 수령하면, 사망과 관련해 다음 사항을 기록하는 입력란을 만들어 기록부에 사망을 등록해야 한다.
 - (a) 개인이 진단 받아 자발적 조력사망에 적절한 대상자가 된 사유에 해당하는 질병, 질환 및 의학적 상태로서 사망 원인,
 - (b) 개인이 2022 자발적 조력사망법에 의거해 자발적 조력사망 권한의 대상이었고, 자발적 조력사망으로 사망하였다는 내용.

[2] 제49조 증명서 발급

- 제49조(3) 뒤에 다음 내용을 삽입한다.
- (3A) 기록부 입력란에서 제42조(1A)(b)에 언급된 정보를 기록하는 경우, 해당 정보는 등록 담당자가 발급한 증명서에 포함되어선 안 된다.

1A.2 1990 형법 No 40**제41B조—제41E조**

제41A조 뒤에 다음 내용을 삽입한다.

41B 처방된 약물의 허가되지 않은 투여

- (1) 다음을 이행하는 자는 범죄가 성립된다.
 - (a) 개인(첫 번째 사람)이 처방된 약물을 타인에게 투여하고,
 - (b) 첫 번째 사람이 2022 자발적 조력사망법 제60조(6)에 의거해 처방된 약물을 타인에게 투여할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경우.
 최대 형벌—무기징역.
- (2) 본조에서,

*처방된 약물(prescribed substance)*이란 2022 자발적 조력사망법에 규정된 의미로 사용된다.

41C 타인에게 자발적 조력사망을 요청 또는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 (1) 부정 행위 또는 압력 또는 협박으로 타인에게 다음과 같이 유도하는 자는 범죄가 성립된다.
 - (a) 자발적 조력사망을 요청하도록, 또는
 - (b) 자발적 조력사망을 이용하도록. 최대 형벌—징역 7년.
- (2) 본조에서,

*압력 또는 협박(pressure or duress)*이란 2022 자발적 조력사망법에 규정된 의미로 사용된다.

*자발적 조력사망 요청(request for access to voluntary assisted dying)*이란 2022 자발적 조력사망법에 의거해 다음을 의미한다.

 - (a) 1차 요청,
 - (b) 서면 선언서,
 - (c) 최종 요청,
 - (d) 투여 결정을 의미한다.

*자발적 조력사망(voluntary assisted dying)*이란 2022 자발적 조력사망법에 규정된 의미로 사용된다.

41D 처방된 약물의 자가 투여를 유도하는 행위

- (1) 부정 행위 또는 압력 또는 협박으로 개인이 타인에게 처방된 약물을 자가 투여하도록 유도하는 자는 범죄가 성립된다.

최대 형벌—무기징역.

- (2) 본조에서,

*처방된 약물(prescribed substance)*이란 2022 자발적 조력사망법에 규정된 의미로 사용된다.

*압력 또는 협박(pressure or duress)*이란 2022 자발적 조력사망법에 규정된 의미로 사용된다.

41E 별지 4 또는 8 독극물을 자발적 조력사망약물로 광고하는 행위

- (1) 별지 4 독극물 또는 별지 4 독극물을 자발적 조력사망약물로 광고하는 자는 범죄가 성립된다.

최대 형벌 - 330 벌금 단위(penalty units) 또는 3년 징역형, 또는 두 가지 모두.

- (2) 본조에서,

*별지 4 독극물(Schedule 4 poison)*이란 2022 자발적 조력사망법에 규정된 의미로 사용된다.

*별지 8 독극물(Schedule 8 poison)*이란 2022 자발적 조력사망법에 규정된 의미로 사용된다.

*자발적 조력사망약물(voluntary assisted dying substance)*이란 2022 자발적 조력사망법에 규정된 의미로 사용된다.

1A.3 1986 형사소송법(Criminal Procedure Act 1986) No 209

[1] 별지 1은 즉시 공판에 회부 가능한 중범죄

목차 1, 제1장, 조항 2에서 “41C”를 “41A” 뒤에 삽입한다.

[2] 별지 1, 제2A장, 조항 4F

조항 4E 뒤에 다음 내용을 삽입한다.

4F 자발적 조력사망

1900 형법(Crimes Act 1900) 제41E조에 따른 범죄.

1A.4 1974 옴부즈맨법(Ombudsman Act 1974) No 68**[1] 별지 1 당국의 제외된 행동**

항목 3에서 “Conduct” 앞에 “(1)”을 삽입한다.

[2] 별지 1, 항목 3

항목 끝에 다음 내용을 삽입한다.

- (2) 하지만, 하위 항목 (1)은 2022 자발적 조력사망법에 의거해 설치된 자발적 조력사망 위원회의 행동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별지 1 용어**제5조**

이용 기준(access standard)—제174조(1)을 참고한다.

개인의 약물투여 의사(administering practitioner)란 다음을 의미한다.

- (a) 개인의 조정의사, 또는
- (b) 제64조(2)에 의거해 약물투여 의사의 역할을 이전 받은 자.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의 투여(administration)에는 자가 투여도 포함된다.

투여 결정(administration decision)이란 다음을 의미한다.

- (a) 자가 투여 결정, 또는
- (b) 의료인 투여 결정.

성인(adult)이란 18세 이상의 개인을 의미한다.

환자의 대리인(agent)이란 환자를 대신해 행동하는 자를 의미한다.

위원회의 연례 보고서(annual report)란 제173조에 따른 보고서를 의미한다.

승인된 양식(approved form)이란 제182조에 의거해 보건부 차관이 승인한 양식을 의미한다.

승인된 교육(approved training)이란 제180조에 의거해 보건부 차관이 승인한 교육을 의미한다.

허가된 폐기 양식(authorised disposal form)은 제81조(1)을 참고한다.

허가된 폐기자(authorised disposer)는 제84조(4)를 참고한다.

승인된 공급자(*authorised supplier*)는 제84조(2)를 참고한다.

위원회(*Board*)란 제134조에 따라 설치된 자발적 조력사망 심사위원회(*Voluntary Assisted Dying Board*)를 의미한다.

요청 및 평가 과정의 완료(*completed*)는 제8조를 참고한다.

상담 평가(*consulting assessment*)란 제36조(1)에 의거해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를 의미한다.

상담 평가 보고서 양식(*consulting assessment record form*)은 제41조(2)(a)를 참고한다.

상담의사(*consulting practitioner*)란 개인에 대한 상담 평가 의뢰를 수락한 등록 의사를 의미한다.

개인과 관련된 연락처 정보(*contact details*)란 개인의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를 포함한다.

담당자(*contact person*)란 제66조(1)에 의거해 환자가 지명한 자를 의미한다.

담당자 지명 양식(*contact person appointment form*)은 제67조(1)을 참고한다.

개인의 조정의사(*coordinating practitioner*)란 다음을 의미한다.

- (a) 개인의 1차 요청을 수락한 등록 의사, 또는
- (b) 제175조에 의거해 개인의 조정의사 역할 이전을 수락하는 의사.

자발적 조력사망과 관련된 의사결정능력(*decision-making capacity*)은 제 6(1)을 참고한다.

환자의 최종 요청과 관련된 지정된 기한(*designated period*)이란 다음 기한을 의미한다.

- (a) 환자의 1차 요청일부터 시작해,
- (b) 5일 이후에 종료되는 기한.

장애(*disability*)는 2014 장애인포용법(*Disability Inclusion Act 2014*) 제7조(1)에 규정된 의미와 동일하게 사용된다.

적격성 기준(*eligibility criteria*)이란 제16조(1)에 규정된 기준을 의미한다.

단체(*entity*)란 다음을 포함한다.

- (a) 개인,
- (b) 비법인 단체.

개인의 가족 구성원(*family membe*)이란 다음을 의미한다.

- (a) 개인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의 동거인,

- (b) 개인의 부모 또는 양부모, 개인의 부모 또는 양부모의 형제자매,
- (c) 개인의 조부모 또는 양조부모,
- (d) 개인의 형제자매 또는 양형제자매, 또는 개인의 형제자매의 자녀 또는 양형제자매의 자녀,
- (e) 개인의 자녀 또는 양자녀,
- (f) 개인의 손주 또는 양손주.

최종 요청(*final request*)이란 제48조(1)에 의거한 자발적 조력사망의 최종 요청을 의미한다.

최종 검토(*final review*)란 환자의 조정의사가 제52조(1)(a)와 (b)에 따라 실시한 검토를 의미한다.

최종 검토 양식(*final review form*)은 제52조(1)(c)를 참고한다.

1차 평가(*first assessment*)란 제25조(1)에 의거해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를 의미한다.

1차 요청(*first request*)이란 제19조(1)에 의거한 자발적 조력사망 요청을 의미한다.

관보 공고문(*Gazette notice*)이란 관보에 게재한 공고문을 의미한다.

일반의 등록증(*general registration*)이란 의료 직종에서 의료종사자규정국내법에 의거한 일반의 등록증을 의미한다.

그레이터 시드니 지역(*Greater Sydney Region*)은 2015 그레이터 시드니 위원회법(*Greater Sydney Commission Act 2015*)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

의료종사자규정국내법(*Health Practitioner Regulation National Law*)이란

- (a) 퀸즐랜드 2009 의료종사자규정국내법의 별지에 규정되어 수시로 시행되는 대로,
- (b) 수정 유무와 상관없이 뉴사우스웨일스 또는 기타 주의 법률로서 적용되는 대로.

보건부 차관(*Health Secretary*)은 보건부의 차관을 의미한다.

의료서비스(*health service*)란 1997 건강기록법(*Health Records Act 1997*)에 규정된 의미로 사용된다.

제한 등록증(*limited registration*)이란 의료 직종에서 의료종사자규정국내법에 의거한 제한 등록증을 의미한다.

지역 정부 당국(local government authority)이란 1993 지역정부법(Local Government Act 1993)에 따라 다음을 의미한다.

- (a) 의회(council),
- (b) 자치 단체 의회(county council),
- (c) 공동 조직(joint organisation).

의약품(medicine)이란 1966 독극물 및 치료제법의 의미 내에서 규제되는 제품을 의미한다.

자발적 조력사망 공식 케어 네비게이터 서비스(official voluntary assisted dying care navigator service)란 제179조에 의거해 보건부에서 승인한 자발적 조력사망 공식 케어 네비게이터 서비스를 의미한다.

완화의료와 치료(palliative care and treatment)란 다음에 해당하는 의료와 치료를 의미한다.

- (a) 수명을 제한하는 진행성의 질병, 질환 및 의학적 상태를 진단 받은 개인에게 제공되는 의료와 치료.
- (b) 평안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개인의 통증, 불편함 또는 고통을 예방, 식별, 평가, 완화 및 치료하는 것을 목표로 한 의료와 치료.

환자(patient)란 본 법률에 의거해 자발적 조력사망을 요청하는 자를 의미한다.

개인 정보(personal information)란 2009 정부정보(일반인 열람)법(Government Information (Public Access) Act 2009), 별지 4의 4 조항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

의료인 투여 결정(practitioner administration decision)은 제57조(1)(b)를 참고한다.

의료인 투여 양식(practitioner administration form)은 제62조(3)을 참고한다.

의료인 폐기 양식(practitioner disposal form)은 제83조(1)을 참고한다.

처방된 약물을 조제하다(prepare)란,

- (a) 약물을 투여하기에 적절한 형태를 보장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모두 취한다는 의미로,
- (b) 약물을 이동, 희석, 용해, 혼합, 재구성, 색이나 향을 첨가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을 처방하다(prescribe)란 약물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처방된 약물(prescribed substance)이란,

- (a) 환자의 조정의사가 환자를 위해 처방한 자발적 조력사망약물과,
- (b) 특정 환자와 관련해 환자의 조정의사가 그 환자를 위해 처방한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을 의미한다.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의 **처방전(prescription)**이란 1966 독극물 및 치료제법 별지 4의 독극물 또는 별지 8의 독극물 처방전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

압력 또는 협박(pressure or duress)에는 학대, 강압, 위협 및 부당한 영향력도 포함된다.

예시 — 노인 학대 또는 약자 학대

전문적 돌봄 서비스(professional care services)란 고용계약 또는 서비스 계약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되는 다음 사항을 의미한다.

- (a) 다음을 포함한 원조 또는 지원,
 - (i) 목욕, 샤워, 개인 위생, 배변, 착탈의 또는 식사 지원,
 - (ii) 이동 문제가 있는 사람에 대한 지원,
 - (iii) 이동 가능하나 어느 정도의 지도나 지원이 필요한 자를 위한 지원,
 - (iv) 의약품 복용 시 지원 또는 지도,
 - (v) 상당한 정서적 지원 제공,
- (b) 장애가 있는 자에게 지원 또는 서비스 제공.

임시 등록증(provisional registration)이란 의료 직종에서 의료종사자규정국내법에 의거한 임시 등록증을 의미한다.

당국(public authority)이란,

- (a) 2013 정부부문고용법(Government Sector Employment Act 2013)의 의미에서 정부부문기관, 또는
- (b) 지역 정부 당국, 또는
- (c) 정부를 대표하는 법정 단체, 또는
- (d) 법인이든 비법인이든 법률 또는 기타 시행령 조항에 의거한 공공 목적을 위해 설립된 단체, 또는
- (e) 규정에서 해당 정의에 대한 당국으로 지시하는 단체를 의미한다.

지역 주민(regional resident)이란 그레이터 시드니 지역(Greater Sydney Region) 밖에 있는 뉴사우스웨일스 구역에 거주하는 자를 의미한다.

등록된 의료종사자(*registered health practitioner*)란 보건 직종에 종사하도록 의료종사자규정국내법에 의거해 등록된 자를 의미하나, 단, 학생은 제외된다.

요청 및 평가 과정(*request and assessment process*)이란 다음 단계로 구성된 과정을 의미한다.

- (a) 1차 요청,
- (b) 1차 평가,
- (c) 상담 평가,
- (d) 서면 선언서,
- (e) 최종 요청,
- (f) 최종 검토.

장기요양시설(*residential aged care facility*)이란 커먼웰스의 2018 어르신 돌봄의 질과 안전위원회법(Aged Care Quality and Safety Commission Act)에 따라 승인된 제공자가 기관에서 돌봄을 제공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장기요양을 제공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거주 시설(*residential facility*)이란,

- (a) 요양원, 호스텔, 또는 개인의 병약, 질병, 질환, 무능력 및 장애로 인해 간호나 개인 돌봄이 필요한 자에게 일상생활에서 숙박, 간호 및 개인 돌봄을 제공하는 기타 시설, 또는
- (b) 장기요양시설을 의미한다.

거주 시설 관리자(*residential facility manager*)란 거주 시설의 관리를 책임지도록 시설에 고용된 자를 의미한다.

별지 4 독극물은 1966 독극물 및 치료제법(Poisons and Therapeutic Goods Act 1966) 제8조에서 별지 4 약물의 의미와 동일하다.

별지 8 독극물은 1966 독극물 및 치료제법(Poisons and Therapeutic Goods Act 1966) 제8조에서 별지 8 약물의 의미와 동일하다.

자가 투여 결정(*self-administration decision*)은 제57조(1)(a)를 참고한다.

전문의 등록증(*specialist registration*)이란 의료 직종에서 의료종사자규정국내법에 의거한 전문의 등록증을 의미한다.

자발적 조력사망약물과 관련해 공급(*supply*)이란 1966 독극물 및 치료제법 제4조에서 독극물 공급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

미사용 또는 잔여 약물(*unused or remaining substance*)은 제82조(4)(b)를 참고한다.

*자발적 조력사망(voluntary assisted dying)*이란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의 투여를 의미하고, 그러한 투여와 합리적으로 관련된 단계를 포함한다.

*자발적 조력사망약물(voluntary assisted dying substance)*은 제7조(2)를 참고한다.

*자발적 조력사망약물 허가증(voluntary assisted dying substance authority)*이란 제71조(2)에 의거하여 부여되는 권한을 의미한다.

*서면 선언서(written declaration)*란 제43조(1)에 따른 자발적 조력사망을 요청하는 서면 선언서를 의미한다.

호주 퀸즐랜드주

Voluntary Assisted Dying Act 2021

2024.12.1. 기준 법령을 번역함

2021 자발적 조력사망법

Voluntary Assisted Dying Act 2021

퀸즐랜드 의회는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장 예비 조항

제1절 서문

1 약칭

본 법률은 2021 자발적 조력사망법이라 칭할 수 있다.

2 시행

- (1) 제8장과 제153조는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시행된다.
- (2) 본 법률의 나머지 조항은 2023년 1월 1일부로 시행된다.

3 법률의 주 목적

본 법률의 주 목적은 다음과 같다.

- (a) 고통 받으며 죽어가고 있고 기준을 충족하는 자에게 생명을 종결시킬 수 있는 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한다.
- (b) 그러한 선택권을 행사하는 적절한 개인을 위해 합법적인 절차를 확립한다.
- (c) 다음을 목적으로 한 보호조치를 확립한다.
 - (i) 적절한 대상자로 평가된 자만 자발적 조력사망을 이용하도록 한다.
 - (ii) 약자를 강압과 착취로부터 보호한다.
- (d) 본 법률에 따라 생명을 종결시킬 권한 행사를 지원하기로 선택 또는 거부하는 보건의를 법적으로 보호한다.
- (e) 본 법률을 준수하도록 자발적 조력사망 심사위원회 및 기타 기구를 설립한다.

4 본 법률은 모든 사람에게 효력을 발휘한다

본 법률은 국가를 포함해 모든 사람에게 효력을 발휘한다.

제2절 자발적 조력사망의 원칙

5 원칙

본 법률에 기초가 되는 원칙은 다음과 같다.

- (a) 인간의 생명은 본질적으로 중요하다.
- (b)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존엄하고, 배려와 존중을 바탕으로 동등하게 대우 받아야 한다.
- (c) 생명을 종결시키는 선택권의 자율성을 비롯해 개인의 자율성은 존중 받아야 한다.
- (d) 임종을 앞둔 모든 개인은 고통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을 극대화하기 위해 완화의료(palliative care)를 비롯한 양질의 돌봄을 제공 받아야 한다.
- (e) 퀴즐랜드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개인은 자발적 조력사망과 그 외 생명을 종결시키는 선택권이 주어져야 한다.
- (f) 개인은 신중하게 생명을 종결시키는 선택을 내리는 데에 있어 지원을 받아야 한다.
- (g) 약자는 강압과 착취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 (h) 개인의 사고, 양심, 종교, 신념 및 문화 향유에 대한 자유를 존중 받아야 한다.

제3절 해석

6 정의

별지 1의 사전은 본 법률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한다.

제4절 기타 조항

7 의료인은 자발적 조력사망에 대한 의논을 시작해선 안 된다

- (1) 개인에게 보건 서비스 또는 개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의료종사자는 다음을 이행해선 안 된다.

- (a) 사실상 자발적 조력사망에 대해 개인과 의논을 시작하는 행위, 또는
- (b) 사실상 해당 개인에게 자발적 조력사망을 제안하는 행위.
- (2) 단,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사와 전담 간호사가 동시에 다음 사항에 대해 개인에게 통지하는 경우, 의사 또는 전담 간호사는 제(1)항(a) 또는 (b)에 명시된 행위를 이행할 수 있다.
 - (a)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치료 선택안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
 - (b)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완화의료 및 치료 선택안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
- (3) 제(1)항의 어떠한 내용도 의료종사자가 개인의 요청에 따라 자발적 조력사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하지 아니한다.
- (4) 본조에서,

*의료종사자(health care worker)*란 다음을 의미한다.

 - (a) 등록 보건의(registered health practitioner), 또는
 - (b) 보건 서비스 또는 개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타인(another person).

8 자발적 조력사망은 자살이 아니다

국가 법률의 목적을 위해, 그리고 국내에서 체결하거나 국가 법률에 따른 계약서, 증서 및 기타 법률 문서의 목적을 위해, 본 법률에 의거해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의 투여 또는 자가 투여로 사망하는 자는,

- (a) 자살에 의해 사망한 것이 아니다.
- (b) 개인이 고통받던 제10조(1)(a)에 언급된 질병, 질환 및 의학적 상태로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장 자발적 조력사망 대상자 요건

9 개인이 자발적 조력사망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

개인은 다음 사항을 충족 시 자발적 조력사망 대상자가 될 수 있다.

- (a) 개인이 1차 요청을 하였다.
- (b) 개인의 조정의사가 개인이 1차 평가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 (c) 개인의 상담의사가 개인이 상담 평가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 (d) 개인이 2차 요청을 하였다.
- (e) 개인이 최종 요청을 하였다.

- (f) 개인의 조정의사가 최종 검토 양식에 다음과 같이 인증하였다.
- (i) 본 법률에 따라 요청 및 평가 과정이 완료되었다.
- (ii) 의사가 제46조(3)(b)에 언급된 사안을 확신한다.
- (g) 개인이 투여 결정을 내렸다.
- (h) 개인이 담당자를 지명하였다.

10 적격성

- (1) 개인은 다음의 경우 자발적 조력사망 대상자로 적격하다.
 - (a) 질병, 질환 및 의학적 상태를 다음과 같이 진단 받았다.
 - (i) 진행 중인 상태로 사망에 이를 것이다.
 - (ii) 12개월 이내에 사망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 (iii) 개인이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야기하고 있다.
 - (b) 자발적 조력사망과 관련해 의사결정능력이 있다.
 - (c) 자발적으로 어떠한 강압도 없이 행동한다.
 - (d) 18세 이상 성인이다.
 - (e) 다음 요건을 충족한다.
 - (i) 호주 시민이거나,
 - (ii) 호주 영주권자이거나,
 - (iii) 개인이 1차 요청을 하기 직전에 최소 3년 이상 호주에 거주해왔거나,
 - (iv) 제12조에 따라 최고 책임자(chief executive)로부터 호주 거주 조건의 면제권을 부여받았다.
 - (f) 다음 요건을 충족한다.
 - (i) 개인이 1차 요청을 하기 직전에 최소 12개월 이상 퀴즐랜드에 거주해왔거나,
 - (ii) 제12조에 따라 최고 책임자로부터 퀴즐랜드 거주 조건의 면제권을 부여받았다.
- (2) 본조에서,

영주권자(permanent resident)란 다음을 의미한다.

 - (a) 1958 이민법(커먼웰스) 제30조(1)에서 정의하는 영주 비자 소지자, 또는
 - (b) 1958 이민법(커먼웰스) 제32조에 정의된 특별 범주 비자(special category visa)를 소지한 뉴질랜드 시민.

고통(suffering)이란 질병, 질환 및 의학적 상태로 야기되는 것으로, 다음을 포함한다.

- (a)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
- (b) 질병, 질환 및 의학적 상태에 제공되는 치료로 야기되는 고통.

11 의사결정능력

- (1) 개인은 다음 사항을 충족 시 자발적 조력사망과 관련해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 (a) 자발적 조력사망의 특성과 그 결정으로 인한 결과를 이해하고,
 - (b) 자발적 조력사망 이용에 대해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결정을 내리고,
 - (c) 자발적 조력사망 이용에 대한 결정을 어떤 방식으로든 전달한다.
- (2) 개인은 상반된 증거가 없는 한 자발적 조력사망과 관련된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 (3) 개인에게 자발적 조력사망과 관련된 **의사결정능력**이 있는지를 판단 시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a) 개인이 일부 결정은 내릴 수 있으나 그 외의 결정은 내리지 못할 수 있다.
 - (b) 의사결정능력은 변할 수 있고, 일시적으로 상실하였다가 다시 생길 수도 있다.
 - (c) 다음 사항은 개인에게 **의사결정능력**이 없다고 주장할 만한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 (i) 연령, 외모 또는 언어 능력과 같은 개인적 특성, 또는
 - (ii) 장애 또는 질병 유무, 또는
 - (iii) 타인이 동의하지 않는 의사 결정을 내리는 행위,
 - (d) 개인이 적정 수준의 지원을 받아 제(1)항(a), (b) 또는 (c)에 언급된 행위를 이행할 수 있다면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이다.

여기서 지원이란,

- 개인의 요구에 맞춘 정보를 개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 개인의 요구에 맞춘 방식으로 개인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개인의 결정을 전달하거나 전달하도록 지원하는 행위
- 개인에게 추가 시간을 제공하고 개인과 문제를 의논하는 행위
- 개인의 장애가 미치는 영향을 완화시키는 기술을 이용하는 행위

12 거주 면제

- (1) 개인은 최고 책임자에게 다음을 신청할 수 있다.
 - (a) 제10조(1)(e)(i), (ii) 및 (iii) 요건으로부터 면제 (*호주 거주 면제*) 또는
 - (b) 제10조(1)(f)(i), 요건으로부터 면제 (*퀵랜드 거주 면제*).
- (2) 최고 책임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 시 면제권을 부여해야 한다.
 - (a) 개인이 퀵랜드와 실질적인 관계가 있는 경우,

다음 사항은 예시에 해당한다.

 - 퀵랜드 국경과 가까운 장소에서 장기 거주하고 퀵랜드에서 일을 하면서 퀵랜드에서 의료를 받는 자
 - 퀵랜드 밖에 거주하지만 이전에 퀵랜드 주민이었고 가족이 퀵랜드에서 거주하는 자
 - (b) 면제권을 부여할만한 인도적 사유(compassionate grounds)가 있다.

13 장애 또는 정신 질환

- (1) 분명히 규명하기 위해, 장애 또는 정신 질환이 있는 자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 (a) 제10조(1)(a)에 의거해 대상자로 적격할 수 있다.
 - (b) 단, 장애 또는 정신 질환을 앓는다는 이유만으로 제10조(1)(a)에 의거한 적격 대상자가 되지는 아니한다.
- (2) 본조에서,

*적격한(eligible)*이란 자발적 조력사망 대상자로 적격함을 의미한다.

*정신 질환(mental illness)*은 2016 정신건강법(Mental Health Act 2016) 제10조를 참고한다.

제3장 자발적 조력사망 요청과 적격성 평가

제1절 1차 요청

14 개인은 의사에게 1차 요청을 할 수 있다

- (1) 개인은 등록 의사에게 자발적 조력사망을 요청할 수 있다.(1차 요청)
- (2) 요청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a) 분명하고 명확해야 한다.

- (b) 개인을 대신하여 타인이 요청할 수 없으며, 개인이 직접 요청한다.
- (3) 개인은 구두 또는 몸짓 또는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기타 수단을 통해 요청할 수 있다.

15 1차 요청 이후에 계속할 의무는 없다

- (1) 개인은 요청 및 평가과정을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다.
- (2) 개인이 요청 및 평가과정을 중단하기로 결정할 경우 요청 및 평가과정이 종료된다.
- (3) 제(2)항에 따라 요청 및 평가과정이 종료되면, 개인은 다시 1차 요청을 통해 요청 및 평가과정을 새로 시작할 수 있다.

16 의사는 요청을 수락하거나 거절해야 한다

- (1) 의사가 조정의사 역할을 맡기에 적격하지 않다면 1차 요청을 거절해야 한다.
- (2) 의사는 다음 사항과 같은 경우, 1차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 (a) 자발적 조력사망에 양심적 거부로 인해, 또는 조정의사의 의무를 이행하고 싶지 않아서, 또는
 - (b) 조정의사의 의무를 이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이행할 능력이 없어서.
- (3) 의사가 1차 요청을 수락하면, 의사는 자신의 결정을 개인에게 알릴 때 승인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4) 의사가 1차 요청을 거절하면, 의사는 자신의 결정을 개인에게 알릴 때 다음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 (a) 개인의 요청을 지원해줄 수 있는 다른 등록 보건의, 의료 서비스 제공자 또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을 개인에게 통지한다.
 - (b) 개인에게 다음을 제공한다.
 - (i) 의사가 판단할 때 개인의 요청을 지원해줄 수 있는 등록 보건의, 의료 서비스 제공자 또는 서비스에 관한 정보, 또는
 - (ii) 개인의 요청을 지원해줄 수 있는 보건의, 의료 서비스 제공자 또는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개인에게 제공해줄 수 있는 자발적 조력사망 공식 케어 네비게이터 서비스에 대한 상세 정보.
- (5) 의사는 제(6)항에 언급한 기한 이내에 다음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 (a) 1차 요청을 수락할 것인지, 혹은 거절할 것인지 결정한다.
 - (b) 개인에게 결정을 통지하고, 거절하기로 선택한 경우 거절 사유를 통지한다.

(6) 제(5)항에는 다음 기간이 적용된다.

- (a) 의사가 자발적 조력사망에 양심적 거부를 하는 경우, 요청 직후 통지한다.
- (b) 그 외의 경우, 1차 요청으로부터 영업일 2일 이내에 통지한다.

17 의사는 1차 요청과 수락 또는 거절 사실을 기록해야 한다

의사는 개인의 의료 기록에 다음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 (a) 1차 요청,
- (b) 의사의 1차 요청 수락 또는 거절 여부,
- (c) 의사가 1차 요청을 거절하기로 결정한 경우, 거절 사유와 제16조(4)를 준수하기 위해 취한 조치,
- (d) 의사가 1차 요청을 수락하기로 결정한 경우, 승인된 정보를 개인에게 제공한 날짜.

18 1차 요청을 수락한 의사는 조정의사가 된다

의사가 1차 요청을 수락하면 개인의 조정의사가 된다.

제2절 1차 평가

19 1차 평가

- (1) 개인의 조정의사는 개인이 자발적 조력사망 대상자로 적격함을 평가해야 한다.
- (2) 제(1)항에 의거한 평가가 1차 평가이다.
- (3) 조정의사는 다른 의사가 작성하거나 취득한 개인과 관련된 정보를 고려할 수 있다.

20 조정의사는 승인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승인된 평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조정의사는 1차 평가를 시행해선 안 된다.

21 판단 의뢰

- (1) 조정의사가 다음 사항을 결정할 수 없을 경우, 제(2)항이 적용된다.
 - (a) 개인이 제10조(1)(a)에 언급된 질병, 질환 및 의학적 상태를 앓고 있는지 여부, 또는
 - (b) 개인에게 자발적 조력사망과 관련해 의사결정능력이 있는지 여부.
- (2) 조정의사는 이 문제를 판단하기에 적절한 기술을 겸비하고 교육을 이수한 등록 보건직에게 개인을 의뢰해야 한다.

- (3) 조정의사가 제10조(1)(c)에서 요하는 것처럼 개인이 자발적으로 어떠한 강압 없이 행동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 조정의사는 이 문제를 판단하기에 적절한 기술을 겸비하고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개인을 의뢰해야 한다.
- (4) 조정의사가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등록 보건의 또는 타인(의뢰를 받은 자(referee))에게 의뢰하는 경우, 조정의사는 의뢰한 문제와 관련해 의뢰를 받은 자의 판단을 채택할 수 있다.
- (5) 의뢰를 받은 자는 다음 사항에 해당해선 안 된다.
 - (a) 자발적 조력사망 요청자의 가족 구성원, 또는
 - (b) 자신이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나 믿고 있는 자,
 - (i) 자발적 조력사망 요청자의 유언장에 따른 수혜자, 또는
 - (ii) 의뢰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령하는 적정 수수료 외에 자발적 조력사망 요청자의 사망으로 인해 재정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수혜를 보는 자.

22 개인이 적격한 대상으로 평가된 경우 제공해야 할 정보

- (1) 조정의사가 개인이 자발적 조력사망 대상으로 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정의사는 다음 사안에 대해 개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a) 개인의 의학적 진단과 예후
 - (b)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치료 선택안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
 - (c)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완화의료 및 치료 선택안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
 - (d) 본 법률에 따라 개인의 사망을 야기하는 목적으로 처방될 수 있는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의 투여 및 자가 투여의 잠재적 위험성
 - (e) 제(d)호에 언급한 약물의 투여 또는 자가 투여 시 사망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
 - (f) 제(d)호에 언급한 약물을 투여 또는 자가 투여하는 방법
 - (g) 2명의 목격자가 입회한 상태에서 2차 요청서에 서명해야 하는 요건을 포함해 요청 및 평가 과정
 - (h) 개인이 투여를 결정하면 개인이 담당자를 지명해야 한다는 것
 - (i) 개인은 요청 및 평가과정을 언제든지 중단하거나 자발적 조력사망을 이용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
 - (j) 개인이 다른 의사로부터 지속적으로 보전 서비스를 받는 경우, 개인은 자발적 조력사망 요청에 대해 다른 의사에게 통지할 것을 권고한다는 것
- (2) 본조의 어떠한 내용도 관습법 또는 기타 법률에 따른 의사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3 1차 평가 결과

- (1) 조정의사가 다음과 같이 판단하는 경우,
 - (a) 개인이 자발적 조력사망 대상자로 적격하고,
 - (b) 개인이 제22조(1)에 따라 제공되는 정보를 이해한다.
 조정의사는 개인이 1차 평가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평가해야 한다.
- (2) 조정의사가 제(1)항의 사안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a) 의사는 개인이 1차 평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해야 하고,
 - (b) 요청 및 평가과정이 종료된다.

24 1차 평가 결과의 기록

- (1) 조정의사는 1차 평가를 완료한 이후 가능한 한 빨리 그 결과를 개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2) 조정의사는 1차 평가를 완료하고 영업일 2일 이내에 승인된 양식(1차 평가 기록 양식)으로 작성한 평가 기록 사본을 위원회에 제공해야 한다.
최대 벌금 - 100 벌금 단위(penalty units).
- (3) 1차 평가 기록 양식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a) 적격성 기준과 관련해 조정의사의 판단을 비롯하여 1차 평가 결과를 포함하고,
 - (b) 적격성 기준과 관련해 조정의사의 판단을 뒷받침하는 문서가 동봉되어야 한다.
- (4) 조정의사는 1차 평가 기록 양식을 작성한 후 가능한 한 빨리 사본과 동봉한 문서를 개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25 개인이 적격한 대상으로 평가된 경우 상담 평가

조정의사가 개인이 1차 평가 요건을 충족한다고 평가하는 경우, 다른 의사에게 개인의 상담 평가를 의뢰해야 한다.

제3절 상담 평가

26 의사는 상담 평가 의뢰를 수락하거나 거절해야 한다

- (1) 본절은 개인을 제25조, 제36조 또는 제47조에 따라 상담 평가에 의뢰할 경우 적용된다.
- (2) 의사가 상담의사 역할을 맡기에 적격하지 않다면 의뢰를 거절해야 한다.

(3) 의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의뢰를 거절할 수 있다.

- (a) 자발적 조력사망에 양심적 거부로 인해, 또는 상담의사의 의무를 이행하고 싶지 않아서, 또는
- (b) 상담의사의 의무를 이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이행할 능력이 없어서.

(4) 의사는 제(5)항에 언급한 기한 이내에 다음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 (a) 의뢰를 수락할 것인지, 혹은 거절할 것인지 결정한다.
- (b) 개인과 개인의 조정의사에게 결정을 통지하고, 의뢰를 거절하기로 선택한 경우 의뢰 사유를 통지한다.

(5) 제(4)항에는 다음 기간이 적용된다.

- (a) 의사가 자발적 조력사망에 양심적 거부를 하는 경우, 의뢰 직후 통지한다.
- (b) 그 외의 경우, 의뢰 요청으로부터 영업일 2일 이내에 통지한다.

27 의사는 의뢰 사실과 수락 또는 거절 사실을 기록해야 한다

의사는 개인의 의료 기록에 다음 정보를 기록해야 한다.

- (a) 의뢰
- (b) 의사의 의뢰 요청 수락 또는 거절 결정,
- (c) 의사가 의뢰를 거절하기로 결정할 경우, 거절 사유.

28 의사는 의뢰 사실을 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의사는 의뢰 수락 또는 거절을 결정하고 영업일 2일 이내에 승인된 양식으로 작성한 의뢰 수락 또는 거절 기록 사본을 위원회에 제공해야 한다.

최대 벌금 - 100 벌금 단위(penalty units).

29 의사가 의뢰를 수락하면 상담의사가 된다.

의사가 의뢰를 수락하면 개인의 상담의사가 된다.

30 상담 평가

- (1) 상담의사는 개인이 자발적 조력사망 대상자로 적격한지를 평가해야 한다.
- (2) 제(1)항에 의거한 평가가 **상담 평가**이다.
- (3) 제(1)항의 목적을 위해, 상담의사는 조정의사와 상관없이 의논할 사안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내야 한다.
- (4) 상담의사는 다른 의사가 작성하거나 취득한 개인과 관련된 정보를 고려할 수 있다.

31 상담의사는 승인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승인된 평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상담의사는 상담 평가를 시행해선 안 된다.

32 판단 의뢰

- (1) 상담의사가 다음 사항을 결정할 수 없을 경우, 제(2)항이 적용된다.
 - (a) 개인이 제10조(1)(a)에 언급된 질병, 질환 및 의학적 상태를 앓고 있는지 여부, 또는
 - (b) 개인에게 자발적 조력사망과 관련해 의사결정능력이 있는지 여부.
- (2) 상담의사는 이 문제를 판단하기에 적절한 기술을 겸비하고 교육을 이수한 등록 보건의에게 개인을 의뢰해야 한다.
- (3) 상담의사가 제10조(1)(c)에서 요하는 것처럼 개인이 자발적으로 어떠한 강압 없이 행동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 상담의사는 이 문제를 판단하기에 적절한 기술을 겸비하고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개인을 의뢰해야 한다.
- (4) 상담의사가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등록 보건의 또는 타인(의뢰를 받은 자(referee))에게 의뢰하는 경우, 상담의사는 의뢰한 문제와 관련해 의뢰를 받은 자의 판단을 채택할 수 있다.
- (5) 의뢰를 받은 자는 다음에 해당해선 안 된다.
 - (a) 자발적 조력사망 요청자의 가족 구성원, 또는
 - (b) 자신이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나 믿고 있는 자,
 - (i) 자발적 조력사망 요청자의 유언장에 따른 수혜자, 또는
 - (ii) 의뢰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령하는 적정 수수료 외에 자발적 조력사망 요청자의 사망으로 인해 재정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수혜를 보는 자.

33 개인이 적절한 대상으로 평가된 경우 제공해야 할 정보

- (1) 상담의사가 개인이 자발적 조력사망 대상으로 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의사는 제22조(1)에 언급된 사안에 대해 개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2) 본조의 어떠한 내용도 관습법 또는 기타 법률에 따른 의사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4 상담 평가 결과

- (1) 상담의사가,
 - (a) 개인이 자발적 조력사망 대상으로 적격하고,
 - (b) 개인이 제33조(1)에 따라 제공되는 정보를 이해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의사는 개인이 상담 평가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평가해야 한다.

- (2) 상담의사가 제(1)항의 사안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의사는 개인이 상담 평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해야 한다.

35 상담 평가 결과 기록

- (1) 상담의사는 상담 평가를 완료한 이후 가능한 한 빨리 그 결과를 개인과 개인의 조정의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 (2) 상담의사는 상담 평가를 완료하고 영업일 2일 이내에 승인된 양식(상담 평가 기록 양식)으로 작성한 평가 기록 사본을 위원회에 제공해야 한다.
최대 벌금 - 100 벌금 단위(penalty units).
- (3) 상담 평가 기록 양식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a) 적격성 기준과 관련해 상담의사의 판단을 비롯하여 상담 평가 결과를 포함해야 한다.
 - (b) 적격성 기준과 관련해 상담의사의 판단을 뒷받침하는 문서가 동봉되어야 한다.
- (4) 상담의사는 상담 평가 기록 양식을 작성한 후 가능한 한 빨리 사본과 동봉한 문서를 개인과 개인의 조정의사에게 제공해야 한다.

36 개인이 부적격하다고 평가되는 경우 추가 상담 평가 의뢰

상담의사가 개인이 상담 평가 요건을 충족한다고 평가하는 경우, 개인의 조정의사는 다른 의사에게 개인의 상담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4절 2차 요청

37 적격한 대상으로 평가된 개인은 2차 요청을 할 수 있다

- (1) 본조는 개인이 1차 요청을 하고 제2절에 의거한 1차 평가 요건과 제3절에 의거한 상담 평가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평가된 경우에 적용된다.
- (2) 개인은 서면으로 자발적 조력사망을 2차 요청(2차 요청) 할 수 있다.
- (3) 2차 요청서는 승인된 양식으로 작성해야 하고, 개인의 조정의사에게 제공해야 한다.
- (4) 2차 요청서는 다음을 충족해야 한다.
 - (a) 개인이 다음 사항을 이행하였음을 명시한다.

- (i) 개인이 자발적으로 어떠한 강압도 없이 작성하였고,
- (ii) 그 특성과 결과를 이해한다.
- (b) 2명의 적격한 목격자가 입회한 자리에서 개인이 직접 또는 제(5)항에 언급된 자가 대신 서명하였다.
- (5) 개인은 요청자를 대신해 2차 요청서에 서명할 수 있으나, 단, 다음을 전제로 한다.
 - (a) 요청자가 요청서에 서명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 (b) 요청자가 개인에게 서명을 하도록 지시하고,
 - (c) 요청서에 서명하는 자가 다음 요건을 충족한다.
 - (i) 18세 이상 성인이고,
 - (ii) 요청서 서명의 목격자가 아니며,
 - (iii) 요청자의 조정의사 또는 상담의사가 아니다.
- (6) 요청자를 대신해 2차 요청서에 서명하는 자는 요청자의 입회 하에 서명해야 한다.
- (7) 개인이 통역사의 도움으로 2차 요청서를 작성하는 경우, 통역사는 통역한 자료를 진실되고 정확하게 통역하였음을 요청서에 인증해야 한다.

38 2차 요청서 서명 목격자로서 적격성

- (1) 개인은 다음 조건을 충족할 경우 2차 요청서 서명을 목격하기에 적격하다.
 - (a) 18세 이상 성인이고,
 - (b) 부적격한 목격자가 아니다.
- (2) 개인은 다음 조건을 충족할 경우 2차 요청서 서명을 목격하기에 부적격하다.
 - (a) 자신이 다음 사항 중 하나라도 해당함을 알고 있거나 믿고 있는 경우,
 - (i) 요청자의 유언장에 따른 수혜자, 또는
 - (ii) 요청자의 사망으로 재정적으로 또는 기타 물질적인 수혜자, 또는
 - (b) 요청자가 치료를 받거나 거주하고 있는 보건시설의 소유주 또는 경영자, 또는
 - (c) 요청자의 조정의사 또는 상담의사.

39 2차 요청서 서명의 목격자 증명

- (1) 2차 요청서 서명의 목격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 (a) 요청서에 다음과 같이 서면으로 인증한다.
 - (i) 목격자의 입회 하에 개인이 요청서에 서명하였고,
 - (ii) 개인이 자유롭고 자발적으로 서명하는 것으로 보였다.

- (b) 2차 요청서 서명을 목격하기에 부적격한 목격자로 보이지 않았음을 요청서에 명시한다.
- (2) 요청자를 대신한 자가 2차 요청서에 서명하는 것을 목격하는 목격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 (a) 요청서에 다음과 같이 서면으로 인증한다.
 - (i) 요청자는 목격자의 입회 하에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타인에게 요청서에 서명하도록 지시하는 것처럼 보였고,
 - (ii) 요청자와 목격자의 입회 하에 제3자가 요청서에 서명하였다.
 - (b) 2차 요청서 서명을 목격하기에 부적격한 목격자로 보이지 않았음을 요청서에 명시한다.

40 조정의사는 2차 요청을 기록해야 한다

개인이 자신의 조정의사에게 2차 요청서를 제공하는 경우, 의사는 개인의 의료 기록에 다음 정보를 기록해야 한다.

- (a) 2차 요청일,
- (b) 조정의사가 2차 요청을 받은 날짜.

41 조정의사는 2차 요청을 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개인의 조정의사는 개인의 2차 요청서를 받고 그 사본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최대 벌금 - 100 벌금 단위(penalty units).

제5절 최종 요청과 최종 검토

42 개인은 조정의사에게 최종 요청을 할 수 있다

- (1) 2차 요청을 한 개인은 자신의 조정의사에게 자발적 조력사망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최종 요청**).
- (2) 최종 요청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a) 분명하고 명확하고,
 - (b) 개인을 대신하여 타인이 요청할 수 없으며, 개인이 직접 요청한다.
- (3) 개인은 구두 또는 몸짓 또는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기타 수단을 통해 최종 요청할 수 있다.

43 최종 요청 시기

- (1) 최종 요청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a) 제(2)항에 제공된 경우를 제외하고, 지정된 기한 이내에 요청한다.
 - (b) 어떤 경우든 개인이 상담 평가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평가된 상담 평가 완료일 기준으로 익일을 넘기지 아니한다.
- (2) 다음 조건에 한해 지정된 기한 이내에 최종 요청을 할 수 있다.
 - (a) 조정의사의 소견으로 개인이 지정된 기한 이내에 사망하거나 자발적 조력사망과 관련해 의사결정능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였고,
 - (b) 조정의사의 소견과 상담 평가에 나타난 개인의 상담의사의 소견이 일치하는 경우.
- (3) 본조에서,
*지정된 기한(designated period)*이란 개인이 1차 요청을 한 날로부터 9일을 의미한다.

44 조정의사는 최종 요청을 기록해야 한다

- (1) 조정의사는 개인의 의료 기록에 다음 정보를 기록해야 한다.
 - (a) 최종 요청을 한 날짜,
 - (b) 지정된 기한 이내에 최종 요청을 할 경우, 기한 이내에 최종 요청을 하는 사유.
- (2) 본조에서,
*지정된 기한*은 제43조(3)을 참고한다.

45 조정의사는 위원회에 최종 요청을 통지해야 한다

개인의 조정의사는 개인의 최종 요청을 받고 영업일 2일 이내에 승인된 양식으로 작성한 최종 요청서 사본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최대 벌금 - 100 벌금 단위(penalty units).

46 최종 요청을 받은 조정의사의 최종 검토

- (1) 최종 요청을 받은 조정의사는 다음을 이행해야 한다.
 - (a) 개인과 관련해 다음 사안을 검토한다.
 - (i) 최종 평가 기록 양식
 - (ii) 상담 평가 기록 양식
 - (iii) 2차 요청

- (b) 개인과 관련해 승인된 양식(최종 검토 양식)을 작성한다.
- (2) 조정의사가 검토를 실시할 때는 요청 및 평가과정에서 내린 판단과 관련해 제7장에 따라 QCAT의 판단을 고려해야 한다.
- 주
- QCAT의 판단이 미치는 영향은 제106조를 참고한다.
- (3) 최종 검토 양식은 다음 사항을 입증해야 한다.
- (a) 본 법률에 따라 요청 및 평가 과정이 완료되었다.
- (b) 조정의사가 다음 각 사항을 확신한다.
- (i) 개인에게 자발적 조력사망과 관련해 의사결정능력이 있고,
- (ii) 개인이 어떠한 강압 없이 자발적으로 자발적 조력사망을 요청하고 있다.
- (4) 조정의사는 최종 검토 양식을 작성한 후 가능한 한 빨리 사본을 개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 (5) 조정의사는 최종 검토 양식을 작성하고 영업일 2일 이내에 그 사본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최대 벌금 - 100 벌금 단위(penalty units).

제6절 기타 조항

47 조정의사의 역할 이전

- (1) 자발적 조력사망을 요청하는 개인의 조정의사(최초 의사(*original practitioner*))는 개인의 상담의사에게 조정의사의 역할을 이전할 수 있으나, 단, 다음 조건을 전제로 한다.
- (a) 상담의사가 개인이 상담 평가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평가하였고,
- (b) 상담의사가 역할의 이전을 수락하였다.
- (2) 역할의 이전은 다음을 전제로 한다.
- (a) 개인의 요청에 따라, 또는
- (b) 최초 의사가 자발적으로.
- (3) 상담의사는 제(1)항에 의거한 역할의 이전을 수락해달라는 최초 의사의 요청으로부터 영업일 2일 이내에 역할 이전의 수락 또는 거부 의사를 최초 의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 (4) 상담의사가 역할의 이전을 수락하는 경우, 최초 의사는 다음을 이행해야 한다.

- (a) 이전 사실을 개인에게 통지하고,
- (b) 개인의 의료 기록에 역할 이전을 기록하고,
- (c) 역할 이전을 수락하고 영업일 2일 이내에 승인된 양식으로 작성한 역할 이전 수락 기록 사본을 위원회에 제공한다.

제(c)호와 관련해 최대 벌금 - 100 벌금 단위(penalty units).

- (5) 상담의사가 역할의 이전을 거절하는 경우, 최초 의사는 다음을 이행할 수 있다.
 - (a) 다른 의사에게 개인의 추가 상담 평가를 의뢰한다.
 - (b)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다른 의사에게 조정의사의 역할을 이전한다.
 - (i) 다른 의사가 추가 상담 평가 의뢰를 수락하고,
 - (ii) 다른 의사가 개인을 상담의사의 상담 평가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평가하며,
 - (iii) 다른 의사가 역할의 이전을 수락하는 경우.
- (6) 추가 상담 평가 의뢰를 수락하고 나면, 이전에 개인이 상담 평가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평가한 상담 평가는 무효가 된다.

48 개인은 요청 및 평가과정이 완료되어도 계속할 의무는 없다

요청 및 평가과정이 완료된 개인은 언제든지 자발적 조력사망과 관련해 다음 단계를 계속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다.

제4장 자발적 조력사망 이용과 사망

제1절 자발적 조력사망약물 투여

49 본절의 적용

본절은 다음 상황에서 적용된다.

- (a) 개인이 최종 요청을 하였고,
- (b) 개인의 조정의사가 최종 검토 양식을 작성하였다.

50 투여 결정

- (1) 개인은 자신의 조정의사와의 상담과 조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할 수 있다.

- (a)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을 자가투여하기로 결정(**자가 투여 결정**)하거나,
- (b) 개인의 약물투여 의사가 개인에게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을 투여할 것인지 결정한다(**의료인 투여 결정**).
- (2) 개인의 조정의사가 다음 사항과 관련해 개인이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을 자가 투여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알리는 경우 의료인 투여를 결정할 수 있다.
 - (a) 개인이 약물을 자가 투여하는 능력,
 - (b) 개인이 약물의 자가 투여에 대해 가진 우려,
 - (c) 개인에게 적합한 약물의 투여 방법.
- (3) 투여 결정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a) 분명하고 명확하고,
 - (b) 개인을 대신하여 타인이 요청할 수 없으며, 개인이 직접 요청한다.
- (4) 개인이 구두 또는 몸짓 또는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기타 수단을 통해 투여를 결정할 수 있다.
- (5) 개인이 투여 결정을 하는 경우, 개인의 조정의사는 개인의 의료 기록에 결정을 기록해야 한다.

51 투여 결정 취소

- (1) 개인은 언제든지 다음을 이행할 수 있다.
 - (a) 개인이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을 자가 투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개인의 조정의사에게 통지함으로써 자가 투여 결정을 취소하거나,
 - (b) 개인이 자발적 조력사망약물 투여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개인의 약물투여 의사에게 통지함으로써 의료인 투여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2) 개인은 조정의사 또는 약물투여 의사에게 자신의 결정을 서면, 구두, 몸짓, 또는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기타 수단을 통해 통지할 수 있다.
 - (3) 개인이 제(1)항에 따라 투여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개인의 결정을 통지 받은 조정의사 또는 약물투여 의사는 다음을 이행해야 한다.
 - (a) 개인의 의료 기록에 취소 사실을 기록한다.
 - (b) 의사가 개인의 조정의사가 아닌 경우, 조정의사에게 취소 사실을 통지한다.
 - (c) 취소 이후 영업일 2일 이내에 승인된 양식으로 작성한 취소 기록 사본을 위원회에 제공한다.
- 제(c)호와 관련해 최대 벌금 - 100 벌금 단위(penalty units).

- (4) 투여 결정을 취소한다고 해서 개인은 제50조에 의거한 투여 결정을 다시 선택하지 못한다는 뜻은 아니다.

52 자가 투여 - 허가

- (1) 본조는 개인이 자가 투여를 결정할 때 적용된다.
- (2) 개인의 조정의사는 사망을 야기하기에 충분한 용량의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을 개인에게 처방할 권한이 있다.
- (3) 제(2)항은 제59조(6)을 전제로 한다.
- (4) 개인의 처방전을 받은 승인된 공급자는 다음 행위를 이행할 권한이 있다.
 - (a) 제(c)호에 언급된 개인을 위해 조제하고 공급할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을 소지하는 행위
 - (b) 약물을 조제하는 행위
 - (c) 개인과 개인의 담당자 또는 개인의 대리인에게 약물을 공급하는 행위.
- (5) 개인은 다음 행위를 이행할 권한이 있다.
 - (a) 승인된 공급자, 개인의 담당자 또는 개인의 대리인으로부터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을 수령하는 행위
 - (b)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을 조제하고 자가 투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약물을 소지하는 행위
 - (c) 약물을 조제하는 행위
 - (d) 약물을 자가 투여하는 행위.
- (6) 개인의 대리인은 다음 행위를 이행할 권한이 있다.
 - (a) 승인된 공급자로부터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을 수령하는 행위
 - (b) 개인을 위해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약물을 소지하는 행위
 - (c) 개인에게 약물을 공급하는 행위.
- (7) 개인에게서 조력사망약물 조제 요청을 받은 자는 다음 행위를 이행할 권한이 있다.
 - (a)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을 조제하는 목적으로 약물을 소지하는 행위
 - (b) 약물을 조제하는 행위
 - (c) 개인에게 약물을 공급하는 행위.

주

자가 투여를 결정하는 경우 담당자 승인은 제61조를 참고한다.

53 의료인 투여 - 허가

- (1) 본조는 개인이 의료인 투여를 결정할 때 적용된다.
- (2) 개인의 조정의사는 사망을 야기하기에 충분한 용량의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을 개인에게 처방할 권한이 있다.
- (3) 제(2)항은 제59조(6)을 전제로 한다.
- (4) 개인의 처방전을 받은 승인된 공급자는 다음 행위를 이행할 권한이 있다.
 - (a)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을 조제하고 개인의 약물투여 의사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동 약물을 소지하는 행위
 - (b) 약물을 조제하는 행위
 - (c) 개인을 위해 약물투여 의사에게 약물을 공급하는 행위.
- (5) 개인의 약물투여 의사는 다음 행위를 이행할 권한이 있다.
 - (a) 승인된 공급자로부터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을 수령하는 행위
 - (b)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을 조제하고 개인에게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약물을 소지하는 행위
 - (c) 약물을 조제하는 행위.
- (6) 개인의 약물투여 의사는 1명의 적격한 목격자의 입회 하에 개인에게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을 투여할 권한이 있다. 단, 약물투여 의사는 투여 시 다음 사항을 확신해야 한다.
 - (a) 개인에게 자발적 조력사망과 관련해 의사결정능력이 있고,
 - (b) 개인이 자발적으로 어떠한 강압도 없이 행동한다.

54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의 투여 목격자

- (1) 18세 이상의 목격자(목격자)는 개인에게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을 투여하는 과정을 목격하기에 적격하다.
- (2) 목격자는 개인을 위해 의료인 투여 양식에서 다음 사항을 인증해야 한다.
 - (a) 개인이 자발적으로 어떠한 강압도 없이 행동하는 것으로 보였고,
 - (b) 개인의 약물투여 의사가 목격자의 입회 하에 개인에게 약물을 투여하였다.

55 자발적 조력사망약물 투여 이후 약물투여 의사의 증명

- (1) 개인의 약물투여 의사가 개인에게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을 투여하는 경우 본조가 적용된다.
- (2) 약물투여 의사는 서면으로 다음 사항을 인증해야 한다.

- (a) 개인이 의료인 투여를 결정하였고 결정을 취소하지 않았다.
 - (b) 개인에게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을 투여할 당시 약물투여 의사가 다음 사항을 확신한다.
 - (i) 개인에게 자발적 조력사망과 관련해 의사결정능력이 있었고,
 - (ii) 개인이 자발적으로 어떠한 강압도 없이 행동하였다.
 - (c) 규정에서 입증하도록 지시하는 기타 사안.
 - (3) 증명서는 승인된 양식(**의료인 투여 양식**)으로 작성되어야 하고, 제54조에 따라 요구되는 목격자 증명서도 포함해야 한다.
 - (4) 약물투여 의사는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을 투여하고 영업일 2일 이내에 작성한 의료인 투여 양식 사본을 위원회에 제공해야 한다.
- 최대 벌금 - 100 벌금 단위(penalty units).

56 약물투여 의사의 역할 이전

- (1) 본조는 다음 상황에서 적용된다.
 - (a) 개인이 투여 결정을 내렸고,
 - (b) 개인의 조정의사가 개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만큼 충분한 용량의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을 처방하며,
 - (c) 최초 의사가 개인의 조정의사이든 제(2)항에 따라 약물투여 의사 역할을 이전 받은 사람이든 상관없이 개인의 약물투여 의사(**최초 의사**)가 어떠한 사유로든 개인에게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을 투여할 수 없거나 투여할 의지가 없는 경우.
- (2) 최초 의사는 개인의 약물투여 의사 역할을 맡기에 적격하고 역할 이전을 수락하는 타인에게 약물투여 의사의 역할을 이전해야 한다.
- (3) 개인(**새로운 의사**)이 역할 이전을 수락하면 최초 의사는 다음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 (a) 자발적 조력사망 요청자에게 역할 이전과 새로운 의사의 연락처 정보를 개인에게 통지하고,
 - (b) 개인의 의료 기록에 역할 이전을 기록하고,
 - (c) 역할 이전을 수락하고 영업일 2일 이내에 승인된 양식으로 작성한 역할 이전 수락 기록 사본을 위원회에 제공한다.

제(c)호와 관련해 최대 벌금 - 100 벌금 단위(penalty units).
- (4) 역할이 이전되었을 때 최초 의사가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을 소지한 경우,
 - (a) 최초 의사는 새로운 의사에게 약물을 공급할 권한이 있고,
 - (b) 새로운 의사는 최초 의사로부터 약물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 (5) 자발적 조력사망 요청자의 조정의사는 제(2)항에 따라 약물투여 의사의 역할이 이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의사로 남는다.

제2절 담당자

57 본절의 적용

본조는 개인이 투여 결정을 내렸을 때 적용된다.

58 담당자 지명

- (1) 개인은 담당자를 지명해야 한다.
- (2) 18세 이상의 성인에 해당하는 개인은 담당자로 지명받기에 적격하다.
- (3) 개인이 지명에 동의하지 않는 한 담당자로 지명받을 수 없다.
- (4) 개인은 담당자 지명을 취소할 수 있다.
- (5) 개인이 담당자 지명을 취소할 경우,
 - (a) 개인은 담당자에게 취소를 통지하고,
 - (b) 담당자는 제(a)호에 따라 더 이상 개인에게 통지해야 하는 담당자가 아니며,
 - (c) 개인은 제(1)항에 따라 다른 사람을 담당자로 지명해야 한다.

59 담당자 지명 양식

- (1) 제58조(1)에 의거한 지명은 승인된 양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담당자 지명 양식).
- (2) 담당자 지명 양식은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a) 개인의 이름, 생년월일 및 연락처 정보
 - (b) 개인의 조정의사 이름과 연락처 정보
 - (c) 담당자의 이름, 생년월일 및 연락처 정보
 - (d) 담당자가 지명에 동의한다는 진술
 - (e) 담당자가 본 법률에 의거한 담당자의 역할을 이해한다는 진술(제63조에 따라 자발적 조력사망약물, 미사용 및 잔여 약물을 승인된 폐기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요건과 동 법률에 의거한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 포함).
 - (f) 지명할 당시 통역사가 개인을 지원하는 경우,
 - (i) 통역사의 이름, 연락처 정보 및 인증 정보
 - (ii) 통역사가 정보를 진실되고 정확하게 통역하였음을 인증하고 서명한 진술서

- (g) 담당자 서명과 양식 서명 날짜
- (h) 개인의 서명 또는 개인을 대신해 양식을 작성한 자의 서명, 양식 서명 날짜
- (3) 개인이 요청 시 타인(두 번째 사람)이 개인을 대신해 양식을 작성할 수 있다. 단,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a) 개인이 양식을 작성할 수 없고,
 - (b) 두 번째 사람이 18세 이상 성인이며,
 - (c) 두 번째 사람이 개인의 입회 하에 담당자 지명 양식에 서명하는 경우.
- (4) 개인 또는 개인의 담당자는 개인의 조정의사에게 담당자 지명 양식을 제공해야 한다.
- (5) 개인의 조정의사는 담당자 지명 양식을 받고 영업일 2일 이내에 그 사본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최대 벌금 - 100 벌금 단위(penalty units).
- (6) 개인의 조정의사는 담당자 지명 양식을 제공 받기 전에 개인을 위한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을 처방하지 아니한다.

60 위원회는 담당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 (1) 본조는 개인이 자가 투여를 결정하고 담당자를 지명할 경우에 적용된다.
- (2) 위원회는 담당자 지명 양식을 받고 영업일 2일 이내에 다음에 관한 담당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a) 제63조에 따라 자발적 조력사망약물 또는 미사용 및 잔여 약물을 승인된 폐기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요건,
 - (b) 담당자가 요건을 이행하는 데에 있어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

61 자가 투여 결정 시 담당자의 역할

- (1) 본조는 개인이 자가 투여를 결정할 때 적용된다.
- (2) 개인의 담당자는 다음 행위를 이행할 권한이 있다.
 - (a) 승인된 공급자로부터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을 수령하는 행위,
 - (b) 제(c)호 또는 제(d)호를 목적으로 약물을 소지하는 행위,
 - (c) 개인에게 약물을 공급하는 행위,
 - (d) 제63조에 따라 약물 또는 미사용 및 잔여 약물을 승인된 폐기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3) 개인의 담당자는 개인이 사망 시(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의 자가 투여로 인한 결과든 기타 사유든 상관없이) 사망 사실을 인지하고 영업일 2일 이내에 개인의 조정의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 (4) 위원회는 담당자에게 연락해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62 자가 투여 결정 시 담당자의 역할

- (1) 본조는 개인이 의료인 투여를 결정할 때 적용된다.
- (2) 개인의 담당자는 개인이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의 투여 외 사유로 사망할 경우 사망 사실을 인지하고 영업일 2일 이내에 개인의 조정의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 (3) 위원회는 담당자에게 연락해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63 담당자는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을 허가된 폐기자(authorized disposer)에게 제공해야 한다

- (1) 제(2)항은 허가된 폐기자가 개인을 위해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을 공급한 이후 개인이 자가 투여 결정을 취소할 경우에 적용된다.
- (2) 개인의 담당자는 결정을 취소한 날로부터 가능한 한 빨리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을 허가된 폐기자에게 제공해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그 기한은 14일을 넘기지 아니한다.

최대 벌금 - 100 벌금 단위(penalty units).

- (3) 제(4)항은 다음 사항의 경우에 적용된다.
 - (a) 개인이 자가 투여를 결정한 경우
 - (b) 승인된 공급자가 개인을 위해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을 공급한 후 개인이 사망한 경우
- (4) 개인의 담당자는 결정을 취소한 날로부터 가능한 한 빨리 미사용 및 잔여 약물을 허가된 폐기자에게 제공해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그 기한은 14일을 넘기지 아니한다.

최대 벌금 - 100 벌금 단위(penalty units).

64 담당자는 역할 수행을 지속하기를 거절할 수 있다

- (1) 개인의 담당자는 담당자로서 역할 수행을 지속하기를 거절할 수 있다
- (2) 담당자가 역할 수행을 지속하기를 거절하는 경우,
 - (a) 담당자는 개인에게 거절을 통지하고,
 - (b) 담당자는 제(a)호에 따라 더 이상 개인에게 통지해야 하는 담당자가 아니며,

(c) 개인은 제58조에 따라 다른 사람을 지명해야 한다.

제3절 자발적 조력사망약물 처방, 공급 및 폐기

65 자발적 조력사망약물 처방 전에 제공해야 할 정보

- (1) 자가 투여를 결정한 개인의 조정의사는 개인을 위해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을 처방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개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a) S4 약물 또는 S8조 약물, 또는 두 가지의 조합도 약물에 해당한다는 것
 - (b) 개인은 약물을 자가 투여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것
 - (c) 규정에서 지시하는 요건에 따라 약물을 보관해야 한다는 것
 - (d) 약물을 조제하고 자가 투여하는 방법
 - (e) 약물의 자가 투여로 예상되는 결과
 - (f) 약물을 자가 투여 후 개인이 사망에 이르는 시간
 - (g) 약물의 자가 투여로 인한 잠재적 위험성
 - (h) 개인이 약물을 자가 투여하지 않기로 결정할 경우, 개인의 담당자는 약물을 폐기하기 위해 허가된 폐기자에게 약물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
 - (i) 개인이 사망하면 담당자가 미사용 및 잔여 약물을 폐기하기 위해 허가된 폐기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것
 - (j)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을 공급하게 될 승인된 공급자의 이름
 - (k) 1명 이상의 등록 보건의 이름 또는 허가된 폐기자에 해당하는 등록 보건의 부류.
- (2) 의료인 투여를 결정한 개인의 조정의사는 개인을 위해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을 처방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개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a) S4 약물 또는 S8조 약물, 또는 두 가지의 조합도 약물에 해당한다는 것
 - (b) 개인은 약물을 투여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것
 - (c) 약물을 투여할 방법
 - (d) 약물 투여로 예상되는 결과
 - (e) 약물 투여 후 개인이 사망에 이르는 시간
 - (f) 약물 투여로 인한 잠재적 위험성
 - (g) 자가 투여 결정을 취소하고 나서 의료인 투여를 결정하는 경우, 개인의 담당자는 개인, 담당자 또는 담당자 대리인이 수령한 약물을 폐기하기 위해 허가된 폐기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 (h) 자가 투여 결정을 취소하고 나서 의료인 투여를 결정하는 경우, 1명 이상의 등록 보건의 이름 또는 허가된 폐기자에 해당하는 등록 보건의 부류.

66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의 처방

- (1) 본조는 개인의 조정의사가 개인에게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을 처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2) 조정의사가 발급한 처방전은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a)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임을 분명하게 표시하는 설명서
 - (b) 다음과 같은 설명서
 - (i) 본 법률에 따라 개인을 대상으로 요청 및 평가 과정이 완료되었음을 인증하고,
 - (ii) 개인이 투여 결정을 내렸음을 인증하고, 자가 투여와 의료인 투여 중 어떤 것을 선택했는지 명시한다.
 - (c) 처방전에서 허가하는 약물의 세부 정보와 최대량
 - (d) 개인의 이름과 전화번호.
- (3) 처방전은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을 1회 이상 제공하지 아니한다.
- (4) 조정의사는 승인된 공급자에게 직접 처방전을 제공해야 한다.

67 기타 처방 요건

규정에서는 조정의사가 자발적 조력사망약물 처방과 관련해 준수해야 하는 기타 요건을 지시할 수 있다.

68 조정의사는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의 투여 결정과 처방에 대해 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개인의 조정의사는 개인을 위해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을 처방하고 영업일 2일 이내에 승인된 양식으로 다음 사항을 기록한 후 위원회에 그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 (a) 개인의 투여 결정,
 - (b) 의사가 개인을 위해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을 처방하였다는 것.
- 최대 벌금 - 100 벌금 단위(penalty units).

69 승인된 공급자가 처방을 입증해야 한다

자발적 조력사망약물 처방을 제공 받은 승인된 공급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지 않는 한 처방전에 따라 약물을 공급하는 것이 금지된다.

- (a) 처방전의 진위성,
- (b) 처방전을 발급한 자의 신원,
- (c) 약물을 제공받게 될 개인의 신원.

70 자발적 조력사망약물 공급 시 제공해야 할 정보

- (1) 본조는 개인이 자가 투여를 결정한 후에 승인된 공급자가 개인, 개인의 담당자 또는 개인의 대리인에게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을 공급할 경우 적용된다.
- (2) 승인된 공급자는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을 공급할 때 수령인에게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a) 개인은 약물을 자가 투여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것
 - (b) S4 약물 또는 S8조 약물, 또는 두 가지의 조합도 약물에 해당한다는 것
 - (c) 약물을 조제하고 자가 투여하는 방법
 - (d) 규정에서 지시하는 요건에 따라 약물을 보관해야 한다는 것
 - (e) 약물의 자가 투여로 예상되는 결과
 - (f) 약물을 자가 투여 후 개인이 사망에 이르는 시간
 - (g) 약물의 자가 투여로 인한 잠재적 위험성
 - (h) 개인이 약물을 자가 투여하지 않기로 결정할 경우, 개인의 담당자는 약물을 폐기하기 위해 허가된 폐기자에게 약물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
 - (i) 개인이 사망하면 담당자가 미사용 및 잔여 약물을 폐기하기 위해 허가된 폐기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것.

71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에 대한 라벨링 요건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을 공급하는 승인된 공급자는 규정에서 지시하는 라벨링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72 승인된 공급자는 공급을 기록하고 통지해야 한다

- (1)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을 공급하는 승인된 공급자는 승인된 양식으로 공급 기록을 작성해야 한다(**허가된 공급 양식**).
- (2) 허가된 공급 양식은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a) 개인의 이름, 생년월일 및 연락처 정보
 - (b) 승인된 공급자의 이름과 연락처 정보
 - (c)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이 공급되었다는 진술
 - (d) 제69조, 제70조, 제71조에 따른 요건을 준수하였다는 진술

- (3) 승인된 공급자는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을 공급하고 영업일 2일 이내에 작성한 허가된 공급 양식 사본을 위원회에 제공해야 한다.

최대 벌금 - 100 벌금 단위(penalty units).

73 기타 공급 요건

규정에서는 승인된 공급자가 자발적 조력사망약물 공급과 관련해 준수해야 하는 기타 요건을 지시할 수 있다.

74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의 보관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을 수령하는 자는 규정에서 지시하는 요건에 따라 약물을 보관해야 한다.

75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의 폐기

- (1) 본조는 개인의 담당자가 자발적 조력사망약물 또는 미사용 및 잔여 약물을 허가된 폐기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2) 허가된 폐기자는 다음 행위를 이행할 권한이 있다.
 - (a) 자발적 조력사망약물 또는 미사용 및 잔여 약물을 폐기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 (b) 약물을 폐기하는 행위.
- (3) 허가된 폐기자는 자발적 조력사망약물 또는 미사용 및 잔여 약물을 수령하는 즉시 최대한 빨리 폐기해야 한다.

76 허가된 폐기자는 폐기를 기록하고 통지해야 한다

- (1) 자발적 조력사망약물 또는 미사용 및 잔여 약물을 폐기하는 허가된 폐기자는 승인된 양식으로 폐기 기록을 작성해야 한다(*허가된 폐기 양식*).
 - (2) 허가된 폐기자는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을 폐기하고 영업일 2일 이내에 작성한 허가된 폐기 양식 사본을 위원회에 제공해야 한다.
- 최대 벌금 - 100 벌금 단위(penalty units).

77 약물투여 의사에 의한 자발적 조력사망약물 폐기

- (1) 제(2)항과 제(3)항은 다음 경우에 적용된다.
 - (a) 개인이 의료인 투여를 결정하였다가 취소하고,
 - (b) 결정이 취소되었을 때 개인의 약물투여 의사가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을 소지한 경우.

- (2) 약물투여 의사는 다음 행위를 이행할 권한이 있다.
 - (a)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을 폐기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 (b) 약물을 폐기하는 행위.
- (3) 약물투여 의사는 의료인 투여 결정이 취소되면 가능한 한 빨리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을 폐기해야 한다.
- (4) 제(5)항과 제(6)항은 다음 경우에 적용된다.
 - (a) 의료인 투여를 결정한 개인이 사망하고(자발적 조력사망약물 전후 여부와 상관없이),
 - (b) 개인의 약물투여 의사가 미사용 및 잔여 약물을 소지하는 경우.
- (5) 약물투여 의사는 다음 행위를 이행할 권한이 있다.
 - (a) 미사용 및 잔여 약물을 폐기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 (b) 미사용 및 잔여 약물을 폐기하는 행위.
- (6) 약물투여 의사는 개인이 사망하면 가능한 한 빨리 미사용 및 잔여 약물을 폐기해야 한다.

78 약물투여 의사는 폐기를 기록하고 통지해야 한다

- (1) 자발적 조력사망약물 또는 미사용 및 잔여 약물을 폐기하는 개인의 약물투여 의사는 승인된 양식으로 폐기 기록을 작성해야 한다(*의료인 폐기 양식*).
- (2) 약물투여 의사는 자발적 조력사망약물 또는 미사용 및 잔여 약물을 폐기하고 영업일 2일 이내에 작성한 의료인 폐기 양식 사본을 위원회에 제공해야 한다.
최대 벌금 - 100 벌금 단위(penalty units).

79 기타 폐기 요건

규정에서는 허가된 폐기자 또는 약물투여 의사가 자발적 조력사망약물 또는 미사용 및 잔여 약물의 폐기와 관련해 준수해야 하는 기타 요건을 지시할 수 있다.

제4절 기타 조항

80 사망 통지

- (1) 개인의 조정의사와 약물투여 의사는 개인이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의 투여 또는 자가 투여로 사망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개인의 사망을 인지하고 영업일 2일 이내에 승인된 양식으로 개인의 사망을 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최대 벌금 - 100 벌금 단위(penalty units).

- (2) 제(1)항은 개인의 약물투여 의사가 제55조에 의거한 개인과 관련해 의료인 투여 양식을 작성한 후 그 사본을 위원회에 제공할 경우에 적용된다.

81 사망 원인 증명서

- (1) 본조는 개인의 사망 원인 증명서를 제공해야 하는 의사가 본 법률에 따라 개인이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을 자가 투여하였는지 아니면 투여 받았는지 알고 있거나 합당하게 믿고 있을 경우에 적용된다.
- (2) 의사는 개인이 사망하였음을 인지하고 영업일 2일 이내에 승인된 양식으로 개인의 사망을 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단, 해당 의사는 개인의 조정의사 또는 약물투여 의사가 아니어야 한다.
- (3) 의사는,
- (a) 개인의 사망 원인 증명서에 개인이 고통 받던 제10조(1)에 언급된 질병, 질환 및 의학적 상태가 개인의 사망 원인임을 명시해야 하고,
 - (b) 개인의 사망 원인 증명서에는 자발적 조력사망에 대한 언급해선 아니된다.
- (4) 본조에서,
*사망 원인 증명서*는 2003 출생, 사망, 결혼 등록법 제30조(2)(a)를 참고한다.

제5장 보건인(health practitioners) 적격성 요건

82 조정의사 또는 상담의사로서의 적격성

- (1) 의사는 다음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자발적 조력사망을 요청하는 개인의 조정의사 또는 상담의사로 적격하다.
- (a) 의사가
- (i) 전문의 등록증(specialist registration)을 소지하고 전문의 등록증 소지자로서 최소 1년 이상 의료행위를 해왔거나,
 - (ii) 일반의 등록증(general registration)을 소지하고 일반의 등록증 소지자로서 최소 5년 이상 의료행위를 해왔거나,
 - (iii) 전문의 등록증을 소지하고 일반의 등록증 소지자로서 최소 5년 이상 의료행위를 해왔거나,
 - (iv) 제한 등록증(limited registration) 또는 임시 등록증(provisional registration)을 소지하고 있는 해외 전문의(overseas-trained specialist)이고,

- (b) 의사가 승인된 의사 요건을 충족하고,
- (c) 의사가 자발적 조력사망 요청자의 가족 구성원이 아니며,
- (d) 의사는 자신이 다음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있거나 믿고 있다.
 - (i) 자발적 조력사망 요청자의 유언장에 따른 수혜자, 또는
 - (ii) 개인의 조정의사 또는 상담의사로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령하는 적정 수수료 외에 자발적 조력사망 요청자의 사망으로 인해 재정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수혜를 보는 자.

(2) 본조에서,

일반의 등록증(*general registration*)이란 의료 직종에서 의료종사자규정 국내법(퀸즐랜드)에 규정된 일반의 등록증을 의미한다.

제한 등록증(*limited registration*)이란 의료 직종에서 의료종사자규정 국내법(퀸즐랜드)에 규정된 제한 등록증을 의미한다.

임시 등록증(*provisional registration*)이란 의료 직종에서 의료종사자규정 국내법(퀸즐랜드)에 규정된 임시 등록증을 의미한다.

전문의 등록증(*specialist registration*)이란 의료 직종에서 의료종사자규정 국내법(퀸즐랜드)에 규정된 전문의 등록증을 의미한다.

83 약물투여 의사로서의 적격성

개인은 다음 경우에 한해 자발적 조력사망 요청자의 약물투여 의사로 적격하다.

- (a) 개인이,
 - (i) 제82조(1)에 따라 자발적 조력사망 요청자의 조정의사로 적격한 의사이거나,
 - (ii) 승인된 전담 간호사 요건을 충족하는 전담 간호사이거나,
 - (iii) 최소 5년 이상 간호 직종에서 의료행위를 해왔고 승인된 간호사 요건을 충족하는 간호사이고,
- (b) 승인된 교육을 이수하였고,
- (c) 자발적 조력사망 요청자의 가족 구성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 (d) 자신이 다음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있거나 믿고 있는 경우.
 - (i) 자발적 조력사망 요청자의 유언장에 따른 수혜자, 또는
 - (ii) 개인의 약물투여 의사로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령하는 적정 수수료 외에 자발적 조력사망 요청자의 사망으로 인해 재정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수혜를 보는 자.

제6장 참여

제1절 양심적 거부

84 양심적 거부를 하는 등록 보건의

- (1) 자발적 조력사망에 양심적으로 반대하는 등록 보건의는 다음 사항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 (a) 자발적 조력사망에 대해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b) 요청 및 평가 과정에 참여하는 행위
 - (c) 투여 결정에 참여하는 행위
 - (d)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을 처방, 공급 및 투여하는 행위
 - (e) 자발적 조력사망약물 투여 또는 자가 투여 시 입회하는 행위
- (2) 양심적 거부로 인해 자발적 조력사망에 대한 정보 또는 지원을 찾는 개인에게 제(1)항에 언급한 행위를 거절하는 등록 보건의는 다음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 (a) 개인을 지원해줄 수 있는 다른 보건의, 의료 서비스 제공자 또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을 개인에게 통지한다.
 - (b) 개인에게 다음을 제공한다.
 - (i) 의사가 판단할 때 개인을 지원해줄 수 있는 보건의, 의료 서비스 제공자 또는 서비스에 관한 정보, 또는
 - (ii) 개인을 지원할 수 있는 보건의, 의료 서비스 제공자 또는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개인에게 제공해줄 수 있는 자발적 조력사망 공식 케어 네비게이터 서비스에 대한 상세 정보.(이름과 연락처 정보 포함)

85 양심적 거부를 하는 언어 치료사

- (1) 자발적 조력사망에 양심적으로 반대하는 언어 치료사는 다음 사항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 (a) 자발적 조력사망에 대해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b) 요청 및 평가 과정에 참여하는 행위
 - (c) 투여 결정에 참여하는 행위
 - (d) 자발적 조력사망약물 투여 또는 자가 투여 시 입회하는 행위
- (2) 양심적 거부로 인해 자발적 조력사망과 관련해 언어 치료 서비스를 요청한 고용인 또는 타인에게 제(1)항에 언급한 행위를 거절하는 언어 치료사는 다음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 (a) 언어 치료사의 양심적 거부를 고용인 또는 타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b) 요청 받은 언어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있어 언어 치료사가 생각할 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다른 언어 치료사 또는 언어 치료 서비스를 고용인 또는 타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c) 자발적 조력사망과 관련된 언어 치료 서비스에 개인이 접근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 (3) 제(4)항은 다음 사항의 경우에 적용된다.
 - (a)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언어 치료사를 고용하거나 별도로 관여하는 경우.
 - (b) 언어 치료사가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자발적 조력사망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이라고 알고 있거나 합리적으로 알아야 하는 경우.
- (4) 언어 치료사는 다음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 (a) 언어 치료사가 자발적 조력사망에 양심적 거부를 한다는 사실을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통지한다.
 - (b) 동료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거나 본 법률에 따라 개인의 자발적 조력사망 이용에 해를 끼치지 않고 자신의 신념에 따라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의논한다.
- (5) 본조에서,

언어 치료사(*speech pathologist*)란 호주 언어치료협회(The Speech Pathology Association of Australia Limited) ACN 008 393 440 회원 자격으로 의료행위에 적절한 자를 의미한다.

제2절 기관 참여

제1관 예비 조항

86 용어 정의

본절에서,

개인의 이동에 관해 결정하는 **판단 의사(deciding practitioner)**란 다음을 의미한다.

- (a) 개인의 조정의사, 또는
- (b) 개인이 다른 의사를 선택하였고 개인이 그러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시설에서 관련 서비스를 받는 관련 기관이 있다면 그 의사를 의미한다.

시설(facility)이란,

- (a) 개인병원, 또는
- (b) 호스피스, 또는
- (c) 공공병원, 또는
- (d) 요양원, 호텔, 또는 개인의 병약, 질병, 질환, 무능력 및 장애로 인해 간호나 개인 돌봄이 필요한 자에게 숙박, 간호 및 개인 돌봄을 제공하는 기타 시설, 또는
- (e) 장기요양시설.

영주권자(permanent resident)는 제89조를 참고한다.

관련 기관(relevant entity)은 제87조를 참고한다.

관련 서비스(relevant service)는 제88조를 참고한다.

장기요양(residential aged care)이란 개인 돌봄 또는 간호 또는 개인 돌봄과 간호를 모두 의미하며, 개인에게 숙박시설이 제공되는 주거시설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 (a) 개인의 간호와 개인 돌봄의 요구를 충족하는 직원,
- (b) 식사와 청소 서비스,
- (c) 돌봄과 숙박 제공에 필요한 비품, 가구 및 장비.

장기요양시설(residential aged care facility)이란 2018 어르신 돌봄의 질과 안전위원회법(Aged Care Quality and Safety Commission Act; 커먼웰스)에 따라 승인된 제공자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돌봄의 제공 여부와 상관없이 장기요양을 제공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주거시설(residential facility)에 다음 사항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a) 개인 주택, 또는
- (b) 병원 또는 정신 병동 시설, 또는
- (c) 노쇠한 노인이 아닌 자들을 위주로 돌봄을 제공하는 시설.

87 관련 기관의 의미

관련 기관(relevant entity)이란 개인 이외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88 관련 서비스의 의미

관련 서비스(relevant service)란 의료 서비스, 장기요양 또는 개인 돌봄 서비스를 의미한다.

89 영주권자의 의미

- (1) 개인이 정착하여 주기적으로 방문하거나 습관적으로 거주하는 일반적인 거주 장소가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은 **시설의 영주권자**에 해당한다.
- (2) 또한, 1997 노인복지법(커먼웰스) 또는 기타 근거로 시설에서 노동 및 고용 안전이 보장되는 개인은 **장기요양시설의 영주권자**이다.
- (3) 개인이 일시적으로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시설의 영주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음 사항은 **실례**에 해당한다.

- 병원 내원 환자
- 호스피스 거주자

제2관 자발적 조력사망에 관한 정보

90 자발적 조력사망에 관한 정보로의 접근성

- (1) 본조는 다음 상황에서 적용된다.
 - (a) 개인이 시설에서 관련 기관으로부터 관련 서비스를 받고 있고,
 - (b) 개인이 기관에 자발적 조력사망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고,
 - (c) 시설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 받는 개인이 요청한 정보를 기관이 제공하지 않는 경우.
- (2) 관련 기관을 비롯해 시설을 소유 및 사용하는 기타 기관은 다음을 이행해야 한다.
 - (a) 시설에서 자발적 조력사망에 관한 정보로의 접근을 저해해선 아니되고,
 - (b)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시설에서 개인에게 적절하게 접근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 (i) 등록 보건의 또는 자발적 조력사망 공식 케어 네비게이터 서비스의 회원 또는 피고용인이고,
 - (ii) 자발적 조력사망에 관해 개인이 요청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자.

제3관 자발적 조력사망 이용

91 본관의 적용

본관은 개인이 시설에서 관련 기관으로부터 관련 서비스를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92 1차 요청과 최종 요청

- (1) 본조는 다음 상황에서 적용된다.
 - (a) 개인 또는 그 대리인이 관련 기관에 개인이 1차 요청 또는 최종 요청을 하길 원한다는 사실을 알리고(각 *관련 요청*),
 - (b) 기관이 시설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에게 요청 및 평가 과정으로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 (2) 관련 기관을 비롯해 시설을 소유 및 사용하는 기타 기관은 의사가 시설에서 개인에게 적절하게 접근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단,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a) 개인이 그 의사의 입회를 요청하였고,
 - (b) 의사가
 - (i) 1차 요청 시 조정의사 역할에 적합한 자, 또는
 - (ii) 최종 요청 시 개인의 조정의사여야 한다.
- (3) 요청을 받은 의사가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관련 기관은 개인이 다음 대상에게 관련 요청을 할 수 있는 장소로부터 또는 그러한 장소로 개인을 이동시키는 데에 필요한 단계를 취해야 한다.
 - (a) 요청을 받은 의사, 또는
 - (b) 조정의사로 적격하고 그러한 역할을 맡을 의향이 있는 다른 의사.

93 2차 요청

- (1) 본조는 다음 상황에서 적용된다.
 - (a) 개인 또는 그 대리인이 관련 기관에 개인이 2차 요청을 하길 원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 (b) 기관이 시설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에게 요청 및 평가 과정으로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 (2) 관련 기관을 비롯해 시설을 소유 및 사용하는 기타 기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시설에서 개인에게 적절하게 접근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 (a) 개인의 조정의사,
 - (b) 개인의 2차 요청서 서명을 목격하기에 적합한 2명.
- (3) 조정의사가 참석할 수 없는 경우, 관련 기관은 조정 담당자의 참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 (a) 조정의사, 또는
 - (b) 조정의사로 적격하고 활동할 의향이 있는 다른 의료종사자에게 해당 개인의 두 번째 요청을 할 수 있는 장소로 해당 개인을 이송하는 것.

94 1차 평가

- (1) 본조는 다음 상황에서 적용된다.
 - (a) 개인이 1차 요청을 하였고,
 - (b) 개인 또는 그 대리인이 관련 기관에 개인이 1차 평가를 받길 원한다는 사실을 알렸으며,
 - (c) 기관이 시설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에게 요청 및 평가 과정으로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 (2) 개인이 시설의 영주권자인 경우,
 - (a) 관련 기관을 비롯해 시설을 소유 및 사용하는 기타 기관은 개인과 관련된 의사가 시설에서 개인에게 적절하게 접근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 (b) 관련된 의사가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관련 기관은 개인이 다음 대상에게 관련 요청을 할 수 있는 장소로부터 또는 그러한 장소로 개인을 이동시키는 데에 필요한 단계를 취해야 한다.
 - (i) 관련된 의사, 또는
 - (ii) 관련된 의사로 적격하고 그러한 역할을 맡을 의향이 있는 다른 의사.
- (3) 개인이 시설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 (a) 관련 기관은 개인과 관련된 의사가 개인의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장소로부터 또는 그러한 장소로 개인을 이동시키기에 필요한 단계를 취해야 한다. 또는
 - (b) 판단 의사 소견으로 제(a)호에 설명된 개인의 이동이 상황상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관을 비롯해 시설을 소유 및 사용하는 기타 기관은 개인과 관련된 의사가 시설에서 개인에게 적절하게 접근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 (4) 제(3)항(b)에 따른 결정을 내리는 데에 있어 판단 의사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a) 이동으로 개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것인지 여부,

심각한 피해라 함은 다음을 포함한다.

 - 상당한 통증
 - 상당한 상태 악화
 - (b) 이동으로 인해 개인의 자발적 조력사망 이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인지 여부

부정적 영향이란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이동으로 개인의 의사결정능력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이동을 위한 통증 완화 또는 약물로 개인의 의사결정능력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c) 이동으로 인해 자발적 조력사망 이용이 지나치게 지연되고 통증이 연장될 수 있는지 여부
- (d) 개인의 이동 목적지로 제안한 장소에서 개인을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
- (e) 이동으로 인해 개인에게 재정적 손실 또는 비용이 발생할 것인지 여부
- (5) 본조에서,
개인과 *관련된 의사(relevant practitioner)*란 다음을 의미한다.
 - (a) 개인의 조정의사, 또는
 - (b) 개인의 조정의사가 제21조에 따른 사안을 의뢰한 등록 보건의.

95 상담 평가

- (1) 본조는 다음 상황에서 적용된다.
 - (a) 개인이 1차 요청을 하였고,
 - (b) 개인 또는 그 대리인이 관련 기관에 개인이 상담 평가를 받길 원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 (c) 기관이 시설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에게 요청 및 평가 과정으로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 (2) 개인이 시설의 영주권자인 경우,
 - (a) 관련 기관을 비롯해 시설을 소유 및 사용하는 기타 기관은 개인과 관련된 의사가 시설에서 개인에게 적절하게 접근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 (b) 관련된 의사가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관련 기관은 개인이 다음 대상에게 관련 요청을 할 수 있는 장소로부터 또는 그러한 장소로 개인을 이동시키는 데에 필요한 단계를 취해야 한다.
 - (i) 관련된 의사, 또는
 - (ii) 관련된 의사로 적격하고 그러한 역할을 맡을 의향이 있는 다른 의사.
- (3) 개인이 시설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 (a) 관련 기관은 개인과 관련된 의사가 개인의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장소로부터 또는 그러한 장소로 개인을 이동시키기에 필요한 단계를 취해야 한다. 또는
 - (b) 판단 의사 소견으로 제(a)호에 설명된 개인의 이동이 상황상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관을 비롯해 시설을 소유 및 사용하는 기타 기관은 개인과 관련된 의사가 시설에서 개인에게 적절하게 접근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 (4) 제(3)항(b)에 따른 결정을 내리는 데에 있어 판단 의사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a) 이동으로 개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것인지 여부

심각한 피해라 함은 다음을 포함한다.

- 상당한 통증
- 상당한 상태 악화

(b) 이동으로 인해 개인의 자발적 조력사망 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 여부

부정적 영향이란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이동으로 개인의 의사결정능력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이동을 위한 통증 완화 또는 약물로 개인의 의사결정능력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c) 이동으로 인해 자발적 조력사망 이용이 지나치게 지연되고 통증이 연장될 수 있는지 여부

(d) 개인의 이동 목적지로 제안한 장소에서 개인을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

(e) 이동으로 인해 개인에게 재정적 손실 또는 비용이 발생할 것인지 여부

(5) 본조에서,

개인과 관련된 의사(*relevant practitioner*)란 다음을 의미한다.

(a) 개인의 상담의사, 또는

(b) 개인의 상담의사가 제32조에 따른 사안을 의뢰한 등록 보건의.

96 투여 결정

(1) 본조는 다음 상황에서 적용된다.

(a) 개인이 최종 요청을 하였고,

(b) 개인 또는 그 대리인이 관련 기관에 개인이 투여 결정을 원한다는 사실을 알렸으며,

(c) 기관이 시설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이 투여 결정을 내리는 데에 필요한 개인의 조정의사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2) 개인이 시설의 영주권자인 경우,

(a) 관련 기관을 비롯해 시설을 소유 및 사용하는 기타 기관은 개인의 조정의사가 시설에서 개인에게 적절하게 접근하여 투여 결정을 상담하고 조언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b) 조정의사가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관련 기관은 개인이 다음 대상과 상담 및 조언을 통해 투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장소로부터 또는 그러한 장소로 개인을 이동시키는 데에 필요한 단계를 취해야 한다.

- (i) 조정의사, 또는
 - (ii) 조정의사로 적격하고 그러한 역할을 맡을 의향이 있는 다른 의사.
- (3) 개인이 시설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 (a) 관련 기관은 개인의 조정의사와 상담 및 조언을 통해 투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장소로부터 또는 그러한 장소로 개인을 이동시키는 데에 필요한 단계를 취해야 한다. 또는,
 - (b) 판단 의사 소견으로 제(a)호에 설명된 개인의 이동이 상황상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관을 비롯해 시설을 소유 및 사용하는 기타 기관은 개인의 조정의사가 시설에서 개인에게 적절하게 접근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 (4) 제(3)항(b)에 따른 결정을 내리는 데에 있어 판단 의사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a) 이동으로 개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것인지 여부
심각한 피해라 함은 다음을 포함한다.
 - 상당한 통증
 - 상당한 상태 악화
 - (b) 이동으로 인해 개인의 자발적 조력사망 이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인지 여부
부정적 영향이란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이동으로 개인의 의사결정능력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이동을 위한 통증 완화 또는 약물로 개인의 의사결정능력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c) 이동으로 인해 자발적 조력사망 이용이 지나치게 지연되고 통증이 연장될 수 있는지 여부
 - (d) 개인의 이동 목적지로 제안한 장소에서 개인을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
 - (e) 이동으로 인해 개인에게 재정적 손실 또는 비용이 발생할 것인지 여부

97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의 투여

- (1) 본조는 다음 상황에서 적용된다.
- (a) 개인이 투여 결정을 내렸고,
 - (b) 개인 또는 그 대리인은 개인이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의 자가 투여를 원하는지 아니면 의료인 투여를 원하는지를 관련 기관에 알렸으며,
 - (c) 관련 기관이 시설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에게 시설에서 자발적 조력사망약물 투여를 못하게 하는 경우.
- (2) 개인이 시설의 영주권자인 경우, 관련 기관과 동 시설을 소유 및 사용하는 기타 기관은 다음을 이행해야 한다.

- (a) 개인이 의료인 투여를 결정하는 경우,
 - (i) 개인에게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을 투여하도록 개인의 약물투여 의사가 시설에서 개인에게 적절하게 접근하도록 허용하고,
 - (ii) 개인의 약물투여 의사의 자발적 조력사망약물 투여를 목격하는 적절한 목격자가 시설에서 개인에게 적절하게 접근하도록 허용한다.
- (b) 개인이 자가 투여를 선택하는 경우, 개인이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에 접근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 (3) 개인이 시설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 (a) 관련 기관은 개인이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을 투여받거나 자가 투여할 수 있는 장소로 개인을 이동시키는 데에 필요한 단계를 취해야 한다. 또는
 - (b) 판단 의사 소견으로 제(a)호에 설명된 개인의 이동이 상황상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개인이 시설의 영주권자인 것과 같이 제(2)항이 적용된다.
- (4) 제(3)항(b)에 따른 결정을 내리는 데에 있어 판단 의사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a) 이동으로 개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것인지 여부
심각한 피해라 함은 다음을 포함한다.
 - 상당한 통증
 - 상당한 상태 악화
 - (b) 이동으로 인해 개인의 자발적 조력사망 이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인지 여부
부정적 영향이란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이동으로 개인의 의사결정능력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이동을 위한 통증 완화 또는 약물로 개인의 의사결정능력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c) 개인의 이동 목적지로 제안한 장소에서 개인을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

제4관 자발적 조력사망의 이용 불가능성에 관한 정보

98 관련 기관에서 자발적 조력사망의 이용 불가능성을 공개해야 한다

- (1) 본조는 관련 기관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에서 조력사망약물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기관에 적용되며, 그러한 서비스로는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의 요청 및 평가과정 또는 약물 투여로의 접근성이 있다.
- (2) 관련 기관은 기관이 시설에서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 (3) 관련 기관은 개인이 시설에서 기관의 서비스를 받거나 향후 시설에서 기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개인이 정보를 인식하기 쉽게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정보 공개 방식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 관련 기관에 대한 책자에 정보 출력하기
- 관련 기관의 웹사이트에 정보 게시하기
- 시설에 간판으로 정보 표시하기

제7장 QCAT의 검토

제1절 예비 조항

99 검토 가능한 판단

다음 판단은 본 장에 따라 검토가 가능하다.

- (a) 자발적 조력사망 요청자의 1차 평가에서 다음 사항에 대한 조정의사의 판단
 - (i) 개인이 1차 요청을 하기 직전에 최소 3년 이상 호주에 거주해왔는지, 또는
 - (ii) 개인이 1차 요청을 하기 직전에 최소 12개월 이상 퀸즐랜드에 거주해왔는지, 또는
 - (iii) 개인에게 자발적 조력사망과 관련해 의사결정능력이 있는지, 또는
 - (iv) 개인이 자발적으로 어떠한 강압도 없이 행동하는지, 또는
- (b) 자발적 조력사망 요청자의 상담 평가에서 다음 사항에 대한 상담의사의 판단,
 - (i) 개인이 1차 요청을 하기 직전에 최소 3년 이상 호주에 거주해왔는지, 또는
 - (ii) 개인이 1차 요청을 하기 직전에 최소 12개월 이상 퀸즐랜드에 거주해왔는지, 또는
 - (iii) 개인에게 자발적 조력사망과 관련해 의사결정능력이 있는지, 또는
 - (iv) 개인이 자발적으로 어떠한 강압도 없이 행동하는지, 또는
- (c) 자발적 조력사망 요청자의 최종 검토에서 다음 사항에 대한 조정의사의 판단.
 - (i) 개인에게 자발적 조력사망과 관련해 의사결정능력이 있는지, 또는
 - (ii) 개인이 자발적으로 어떠한 강압도 없이 행동하는지.

100 적격한 자

검토 가능한 판단과 관련해 **적격한 자**란 다음을 의미한다.

- (a) 판단 대상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 (b) 제(a)호에 언급한 개인의 대리인, 또는

- (c) 자발적 조력사망과 관련해 제(a)호에서 언급하는 권리와 이익에 진심으로 충분한 관심을 가진 타인.

101 QCAT 법과의 관계

QCAT 법률의 다음 조항은 본장에 의거한 법적 절차와 관련해 적용되지 아니한다.

- (a) 제21조(2)와 (4)
- (b) 제22조와 제23조
- (c) 제33조(3)과 (4)
- (d) 제33조(3)과 (4)
- (e) 제3장.

제2절 신청과 검토

102 특정 판단을 검토할 권리

검토 가능한 판단에 적절한 자는 QCAT에 판단을 검토 신청할 수 있다.

103 신청하기

- (1) 신청은 검토 가능한 판단에 적절한 날 이후로 영업일 5일 이내에 해야 한다.
- (2) 본조에서,
 - 검토 가능한 판단에 *적절한 날(relevant day)*이란,
 - (a) 제99조(a)에 언급된 검토 가능한 판단의 경우, 다음 중 늦은 날을 의미한다.
 - (i) 자발적 조력사망 요청자에게 1차 평가 기록 양식을 제공한 날;
 - (ii) 적절한 자가 검토 가능한 판단을 인지하게 된 날,
 - (b) 제99조(a)에 언급된 검토 가능한 판단의 경우, 다음 중 늦은 날을 의미한다.
 - (i) 자발적 조력사망 요청자에게 상담 평가 기록 양식을 제공한 날,
 - (ii) 적절한 자가 검토 가능한 판단을 인지하게 된 날,
 - (c) 제99조(a)에 따라 검토 가능한 판단을 내린 경우, 다음 중 늦은 날을 의미한다.
 - (i) 자발적 조력사망 요청자에게 최종 검토를 제공한 날,
 - (ii) 적절한 자가 검토 가능한 판단을 인지하게 된 날.

104 신청 결과

신청할 때는,

- (a) 자발적 조력사망 신청자와 관련해 요청 및 평가 과정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 (i) 요청 및 평가과정이 중단되고,
 - (ii) 검토 신청이 마무리될 때까지 절차 중 추가 단계는 취하지 않는다. 또는,
- (b) 자발적 조력사망 신청자와 관련해 요청 및 평가 과정이 완료된 경우,
 - (i) 제4장에 따라 자발적 조력사망 이용 과정이 중단되고,
 - (ii) 검토 신청이 마무리될 때까지 개인과 관련해 제4장에 따른 추가 단계를 취하지 아니한다(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의 처방, 공급 및 투여 포함).

105 QCAT의 판단

검토 가능한 판단을 검토하는 법적 절차(proceeding)에서 QCAT는 다음 사항을 판단할 수 있다.

- (a) 개인의 호주 거주지에 관한 검토 신청일 경우,
 - (i) 1차 요청을 할 당시 개인이 최소 3년 이상 호주에 거주해왔는지 여부, 또는
 - (ii) 1차 요청을 할 당시 개인이 최소 3년 이상 호주에 거주하지 않았는지 여부, 또는
- (b) 검토 신청이 개인의 퀸즐랜드 거주지에 관한 것인 경우,
 - (i) 1차 요청을 할 당시 개인이 최소 12개월 이상 퀸즐랜드에 거주해왔는지 여부, 또는
 - (ii) 1차 요청을 할 당시 개인이 최소 12개월 이상 퀸즐랜드에 거주하지 않았는지 여부, 또는
- (c) 개인의 의사결정능력에 관한 검토 신청일 경우,
 - (i) 개인에게 자발적 조력사망과 관련해 의사결정능력이 있는지 여부, 또는
 - (ii) 개인에게 자발적 조력사망과 관련해 의사결정능력이 없는지 여부, 또는
- (d) 개인이 자발적으로 어떠한 강압 없이 행동하는지에 관한 신청일 경우,
 - (i) 개인이 자발적으로 어떠한 강압도 없이 행동하는지 여부, 또는
 - (ii) 개인이 자발적으로 어떠한 강압도 없이 행동하지 않는지 여부.

106 판단의 영향

- (1) QCAT에서 자발적 조력사망 요청자에 관한 검토 가능한 판단을 검토하면서 제105조(a)(i), (b)(i), (c)(i) 또는 (d)(i)에 언급한 판단을 할 경우,

- (a) 제104조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아니하고,
 - (b) 검토 가능한 판단이 제99조(a) 또는 (c)에 언급한 조정의사의 판단이고 QCAT의 판단에서 검토 가능한 판단을 제쳐두는 경우, QCAT의 판단을 조정의사의 판단으로 간주한다. 단, QCAT 법의 제2편 제8장에 따라 항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 (c) 검토 가능한 판단이 제99조 또는 (c)에 언급한 상담의사의 판단이고 QCAT의 판단에서 검토 가능한 판단을 제쳐두는 경우, QCAT의 판단을 상담의사의 판단으로 간주한다. 단, QCAT 법의 제2편 제8장에 따라 항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 (2) 제(1)항은 QCAT에서 제105조(a)(i), (b)(i), (c)(i) 또는 (d)(i)에 의거한 결정을 내릴 때를 비롯해 제105조(a)(ii), (b)(ii), (c)(ii) 또는 (d)(ii)에 의거해 동일한 행위로 판단하지 않을 때에 적용된다.
- (3) QCAT에서 자발적 조력사망 요청자에 관한 검토 가능한 판단을 검토하면서 제105조(a)(ii), (b)(ii), (c)(ii) 또는 (d)(ii)에 언급한 판단을 할 경우,
- (a) 개인은 자신과 관련된 요청 및 평가과정을 목적으로 하는 자발적 조력사망을 이용하기에 부적격한 것으로 간주된다.
 - (b) 검토를 신청할 당시 개인과 관련된 요청 및 평가과정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요청 및 평가과정이 종료된다.
 - (c) 검토를 신청할 당시 개인과 관련된 요청 및 평가과정이 완료된 경우,
 - (i) 제4장에 따라 자발적 조력사망 이용 과정이 종료되고,
 - (ii) 개인과 관련해 추가 단계를 취하지 아니한다(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의 처방, 공급 및 투여 포함).

제3절 절차적 조항

107 법적 절차 당사자

QCAT 법률 제40조(1)(e)의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모두 자발적 조력사망 요청자에 관한 검토 가능한 판단의 검토 당사자이다.

- (a) 개인이 신청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개인,
- (b) 검토 가능한 판단이 제99조(b)에 언급한 판단인 경우에는 개인의 조정의사.

108 법적 절차 통지

- (1) 본조는 자발적 조력사망 요청자에 관한 검토 가능한 판단의 검토 신청을 주 등록국(principal registrar)에서 수락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2) 주 등록국은 신청서를 수령하고 영업일 2일 이내에 신청서 사본을 다음 대상에게 제공해야 한다.
 - (a) 법적 절차의 각 당사자
 - (b) 개인의 상담의사가 있고 상담의사가 당사자가 아닌 경우 상담의사
 - (c) QCAT에서 신청서 사본을 제공하도록 지시한 자.

109 조정의사 또는 상담의사는 QCAT를 지원한다

- (1) 제(2)항은 주 등록국이 자발적 조력사망 요청자의 조정의사 또는 상담의사에게 개인에 관한 검토 가능한 판단에 대한 검토 신청서 사본을 제공할 경우에 적용된다.
- (2) 주 등록국은 조정의사 또는 상담의사에게 검토와 관련해 의사가 소지 또는 관리하는 문서를 QCAT에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통지서를 제공해야 한다.
제공해야 하는 문서는 다음과 같다.
 - 1차 평가 기록 양식과 첨부 서류
 - 상담 평가 기록 양식과 첨부 서류
 - 최종 검토 양식
- (3) 조정의사 또는 상담의사는 통지서를 수령하고 영업일 2일 이내에 통지서를 따라야 한다.

110 판단 통지

- (1) 본조는 다음 상황에서 적용된다.
 - (a) 자발적 조력사망 요청자의 상담의사가 있고,
 - (b) 상담의사가 개인에 대한 검토 가능한 판단의 검토 당사자가 아니며,
- (2) QCAT 법률 제121조(1)(b)의 목적상 QCAT는 개인에 관한 검토 가능한 판단을 검토하기 위한 법적 절차에서 최종 판단을 내리는 즉시 가능한 신속하게 개인의 상담의사에게 최종 판단을 제공해야 한다.

111 QCAT 구성원

- (1) 검토 가능한 판단을 검토하기 위해 QCAT는 법적으로 자격이 있는 구성원을 최소 1명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2) 본조에서,

법적으로 자격이 있는 구성원(*legally qualified member*)이란 QCAT 법률에 규정된 의미와 동일하게 사용된다.

구성원(*member*)이란 QCAT 법률에 규정된 의미와 동일하게 사용된다.

112 심리는 비공개로 소집되어야 한다

검토 가능한 판단의 검토를 위한 심리는 비공개로 소집해야 한다.

113 개인이 사망 시 신청은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1) 본조는 검토 가능한 판단의 검토 대상인 개인이 사망할 경우에 적용된다.

(2) 신청은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3) 주 등록국은 개인의 사망 사실을 인지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신청 취소 사실을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a) 신청서 사본을 수령한 자,

(b) QCAT의 지시로 통지 받은 자.

제4절 기타 조항

114 조정의사는 QCAT의 판단 사본을 위원회에 제공해야 한다.

(1) 본조는 자발적 조력사망 요청자의 조정의사가 개인에 관한 검토 가능한 판단의 검토를 위한 법적 절차에서 QCAT의 최종 판단을 받을 때에 적용된다.

(2) 조정의사는 최종 판단을 받고 영업일 2일 이내에 그 사본을 위원회에 제공해야 한다.

최대 벌금 - 100 벌금 단위(*penalty units*).

115 조정의사는 역할 수행을 지속하기를 거절할 수 있다

(1) 본조는 다음 상황에서 적용된다.

(a) QCAT의 판단이 제106조(1)(b)에 따라 자발적 조력사망 요청자의 조정의사의 판단을 대신할 때 적용된다.

(b) QCAT의 판단이 다음 사항에 관한 판단일 경우,

(i) 자발적 조력사망과 관련된 개인의 의사결정능력 유무, 또는

(ii) 개인이 자발적으로 어떠한 강압도 없이 행동하는지 여부.

- (2) 조정의사는 조정의사 역할 수행을 지속하기를 거절할 수 있다.
- (3) 역할의 지속을 거절하는 조정의사는 그 역할을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전시킬 수 있다.
 - (a) 개인의 상담의사가 있다면 상담의사, 또는
 - (b) 상담의사가 없다면 조정의사로 적절한 다른 의사.

제8장 자발적 조력사망 심사위원회

제1절 설립, 기능 및 권한

116 설립

자발적 조력사망 심사위원회가 설치되었다.

117 기능

- (1)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다.
 - (a) 본 법률의 시행을 검토한다.
 - (b) 자발적 조력사망 요청서를 작성한 개인마다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본 법률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 (i) 조정의사
 - (ii) 상담의사
 - (iii) 약물투여 의사
 - (iv) 승인된 공급자
 - (v) 허가된 폐기자
 - (vi) 담당자
 - (c) 위원회에서 자발적 조력사망과 관련해 다음 기관의 기능과 관련이 있다고 파악한 문제를 각 기관으로 회부한다.
 - (i) 경찰국장
 - (ii) 등록국 장관
 - (iii) 국가 검시관
 - (iv) 보건 옴부즈맨
 - (v) 최고 책임자

- (d) 자발적 조력사망 요청 및 제공에 관한 규정에서 지시하는 정보를 기록하고 보관한다.
 - (e) 본 법률에 따라 위원회에 제공하는 정보를 분석하고, 본 법률의 시행과 관련된 사안을 연구한다.
 - (f) 위원회가 자발적으로 또는 요청 하에 다음과 관련된 정보를 장관 또는 최고 책임자에게 제공, 보고 및 권고한다.
 - (i) 본 법률의 시행, 또는
 - (ii) 위원회의 기능, 또는
 - (iii) 자발적 조력사망 과정과 보호장치 개선,
 - (g) 본 법률을 준수하도록 도모한다. 여기에는 본 법률의 시행에 관한 정보를 등록 보건의 및 지역사회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 (h) 본 법률의 인도적이고 안전하며 실용적인 시행을 위해 지속적인 개선을 도모한다.
 - (i) 자발적 조력사망과 관련해 위원회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지역사회 및 기관에 자문을 제공하고 관계를 맺는다.
 - (j) 본 법률에 따라 위원회에 부여되는 기타 기능.
- (2) 제(1)항(b)에서, 개인의 자발적 조력사망 요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종료된다.
- (a) 개인이 사망 시, 또는
 - (b) 요청 중단 시.

118 권한

- (1) 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 필요하거나 편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2) 제(1)항을 제한함이 없이, 위원회는 본 법률에 따라 위원회로 제공된 정보를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집, 사용 및 공개할 수 있다.

119 위원회는 독자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행위해야 한다

- (1) 위원회는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독자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행위해야 한다.
- (2) 제(1)항을 제한함이 없이, 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하는 방법과 관련해 장관을 비롯해 누구든 지시를 받는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20 위원회를 위한 행정적 지원

최고 책임자는 위원회가 효과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그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타당하게 요구되는 행정적 지원 서비스를 갖추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2절 회원 자격

121 위원회 회원

위원회는 장관이 지명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회원으로 구성된다.

122 회장

- (1) 장관은 위원회 회원 중 한 명을 회장으로 지명해야 한다.
- (2) 회장은 위원회가 그 기능을 적절하게 수행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위원회 활동을 주도하고 총괄해야 할 책임이 있다.
- (3) 회장은 개인의 회장 임명장(instrument of appointment)에 명시된 기간 동안 직위를 맡는다.
- (4) 다음의 경우 회장직에 공석이 발생한다.
 - (a) 직위를 맡은 개인이 장관에게 서명한 통지서를 제공하여 회장직에서 사임하는 경우, 또는
 - (b) 직위를 맡은 개인이 더 이상 회원이 아닌 경우.
- (5) 개인은 회장으로 재지명될 수 있다.

123 부회장

- (1) 장관은 위원회 회원 중 한 명을 부회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
- (2) 부회장은 다음과 같은 경우 회장의 역할을 수행한다.
 - (a) 회장직이 공석이고,
 - (b) 임기 동안 회장이 부재 또는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 (3) 부회장은 개인의 부회장 임명장에 명시된 기간 동안 직위를 맡는다.
- (4) 다음의 경우 부회장직에 공석이 발생한다.
 - (a) 직위를 맡은 개인이 장관에게 서명한 통지서를 제공하여 회장직에서 사임하는 경우, 또는
 - (b) 직위를 맡은 개인이 더 이상 회원이 아닌 경우.
- (5) 개인은 부회장으로 재지명될 수 있다.

124 회원 지명

- (1) 장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해 개인을 회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 (a) 개인이 다음 분야에서 전문 지식을 겸비한 경우,

- (i) 의학, 또는
- (ii) 간호학, 또는
- (iii) 약제학, 또는
- (iv) 심리학, 또는
- (v) 사회복지학, 또는
- (vi) 윤리학, 또는
- (vii) 법학, 또는
- (viii) 장관이 위원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하는 기타 분야, 또는
- (b) 개인의 경험, 지식 또는 기술로 인해 위원회 업무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간주되는 분야.
- (2) 장관은 위원회의 회원 자격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보장해야 한다.
 - (a)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 지식 및 기술을 겸비한 자를 포함시키고,
 - (b) 퀸즐랜드 지역사회의 사회, 문화 및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고,
 - (c) 회원 중에 공공 서비스 직원(public service employee)에 해당하는 인원이 과반수를 넘지 아니한다.
- (3) 다음에 해당하는 개인은 회원으로 지명할 수 없다.
 - (a) 기업법(Corporations Act) 제9조에 따라 행정부 하에 파산한 자, 또는
 - (b) 형이 소멸된 경우를 제외하고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 또는
 - (c) 입법부 회원에 해당하는 자.
- (4) 본조에서,

형의 소멸(spent conviction)이란,

 - (a) 1986 형사법률법 (Criminal Law Act 1986)(범죄자 교화)에 따른 교화 기간이 동 법률에 따라 만료된 유죄 판결,
 - (b) 동 법률 제11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뒤집지 못하는 유죄 판결을 의미한다.

125 지명 조건

- (1) 회원은 장관이 결정한 보수(remuneration)와 수당(allowances)을 지급 받는다.
- (2) 본 법률에서 다루지 않는 사안의 경우, 회원은 장관이 결정한 기간과 조건으로 직위를 맡는다.

126 재임 기간

- (1) 회원은 각자 임명장에 명시된 바와 같이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직위를 맡도록 지명된다.
- (2) 회원은 재지명될 수 있다.

127 공석

- (1) 다음의 경우 회원직에 공석이 발생한다.
 - (a) 회원이
 - (i) 임기를 마치고 재지명되지 않는 경우, 또는
 - (ii) 직위를 맡은 개인이 장관에게 서명한 통지서를 제공하여 사임하는 경우, 또는
 - (iii) 제124조(3)에 의거해 회원으로 지명 받기에 부적격한 경우, 또는
 - (b) 장관이 제(2)항에 의거해 회원직 지명을 종료하는 경우.
- (2) 장관은 회원이 그 기능을 만족스럽게 수행하지 못한다고 확신하는 경우, 회원에게 서명한 통지서를 전달함으로써 회원직을 종료할 수 있다.

제3절 법적 절차**128 회의 진행**

- (1) 본절을 전제로 하여, 위원회는 회의를 비롯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2) 위원회는 회의 참여자들 간에 동시적이고 지속적인 소통을 허용하는 기술을 이용해 회의를 소집하거나 회원들이 회의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 (3) 제(2)항에 따라 회의에 참여하는 회원은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 (4) 회의에서 제기된 질문은 회의에 참석한 회원들이 투표하여 과반수로 결정한다.
- (5) 투표 수가 같을 경우 사회자가 결정권을 가진다.
- (6) 결의안이 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음 조건을 충족할 경우 유효한 결의안에 해당한다.
 - (a) 절반 이상의 회원이 결의안에 서면 동의를 제공한 경우,
 - (b) 위원회에서 승인한 절차에 따라 결의안 통지를 제공한 경우.

129 회의록 및 기타 기록

위원회는 다음을 보관해야 한다.

- (a) 회의록
- (b) 결정과 결의안 기록.

130 정족수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기 위한 정족수는 위원회 회원 수의 절반 이상으로 한다.

131 회의 사회

- (1) 회장이 참석한 회의는 회장이 주재한다.
- (2) 회장이 불참한 회의는 부회장이 주재한다.
- (3) 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불참한 회의는 참석한 회원들이 선정한 위원회 회원이 주재한다.

132 전담위원회

위원회는(board)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해줄 전담위원회(committee)를 설치할 수 있다.

133 이해관계 공개

- (1) 본조는 다음 상황에서 적용된다.
 - (a) 회원이 현재 회의에서 고려 중이거나 고려할 사안과 관련해 직간접적 이해관계가 있고,
 - (b) 그러한 이해관계가 본 사안의 숙고와 관련해 회원의 적절한 직무 수행과 상충될 수 있는 경우.
- (2) 회원은 관련된 사실을 알게 되면 최대한 빨리 회의에서 이해관계의 특성을 공개해야 한다.
- (3) 상세한 공개 내용은 위원회가 해당 목적으로 보관하는 이해관계 기록부(register of interests)에 기록해야 한다.
- (4) 위원회에서 달리 지시하지 않는 한, 회원은,
 - (a) 위원회가 사안을 고려할 때 참석할 수 없고,
 - (b) 사안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 (5) 위원회가 제(4)항에 따라 지시할 것인지 고려하는 동안 회원은 참석할 수 없다.

- (6) 본조에 위배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위원회의 결정을 무효화하지 아니한다.
- (7) 다만,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인지하게 되는 경우, 사안에 대해 내린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
 - (a) 위원회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위원회의 동 사안의 고려와 관련해 회원이 제(4)항(a)을 위반하였다는 사실, 또는
 - (b) 회원이 결정과 관련해 제(4)항(b)를 위반하였다는 사실.

제4절 보고

134 연례 보고서

- (1) 위원회는 회계 연도가 종료되고 3개월 이내에 각 회계연도 동안 위원회의 기능 수행에 대한 보고서(연례 보고서)를 장관에게 제공해야 한다.
- (2) 연례 보고서는 다음 항목을 포함해야 한다.
 - (a) 위원회가 제117조(1)(b)에 따라 검토한 자발적 조력사망 요청서 수,
 - (b) 위원회가 제117조(1)(c)에 따라 기타 기관으로 회부한 횟수,
 - (c) 자발적 조력사망의 전반적인 문제 또는 자발적 조력사망의 개선을 위한 권고사항을 포함하여 위원회의 기능 수행에 대한 위원회의 권고사항,
 - (d) 제117조(1)(d)에 의거해 위원회가 기록하고 보관하도록 요구되는 정보의 식명화된 요약.
- (3) 장관은 보고서를 수신하고 14 회기일(sitting days) 이내에 입법부에 보고서 사본을 상정해야 한다.

135 위원회 기능에 대해 장관 또는 최고 책임자에게 보고

- (1) 위원회는 장관 또는 최고 책임자에게 위원회 기능에 관한 보고서를 제공할 수 있고, 요청 시에는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 (2) 제(1)항은 제119조(2)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적용된다.
- (3) 본조에 따라 제공되는 보고서 사본을 수령한 장관은 14 회기일 이내에 입법부에 상정해야 한다.

136 보고서에는 개인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다

제135조에 따른 연례 보고서 또는 보고서에는 개인에 관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선 아니된다. 단, 공개를 목적으로 위원회로 제공된 정보는 제외된다.

제5절 기타 조항

137 위원회에 대한 지원

- (1) 위원회는 최고 책임자의 승인 하에 위원회가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하기에 적절한 자격과 경험을 갖춘 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
- (2) 명예직 또는 보수를 받고 업무를 볼 수 있다.
- (3) 위원회에서 본조에 따라 관여시키는 개인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위원회의 속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으나 회의에서 투표권은 갖지 아니한다.

138 위원회의 정보 요청

위원회는 기능의 수행을 돕기 위해 다른 기관에 자문을 구하거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139 정보 제공에 대한 면책

- (1) 본조는 개인이 제138조에 따라 진실되게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 적용된다.
- (2) 개인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해 민사 및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행정절차에서 면책된다.
- (3) 또한, 개인이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실만으로,
 - (a) 개인이 전문가적 예의 또는 윤리 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 (b) 허용되는 전문가적 행동 기준에서 벗어난 것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 (4) 제(2)항과 제(3)항을 제한함이 없이,
 - (a) 명예훼손 소송에서 개인은 정보 공개에 대한 절대적 특권이라는 방어 수단을 가진다.
 - (b) 개인이 법률, 서약, 또는 법의 지배나 관행에 따라 정보의 기밀성을 유지하도록 요구되는 경우,
 - (i) 개인이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법률, 서약, 또는 법의 지배나 관행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 (ii) 정보를 제공한 것에 대한 징계 조치에 법적 책임이 없다.

제9장 위법 행위

140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의 승인되지 않은 투여

- (1) 개인은 제53조(6)에 의거해 승인되지 않는 한 타인에게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을 투여할 수 없다.

최대 형벌 - 징역 14년.

- (2) 개인이 2019 의약품 및 독극물법에 의거해 타인에게 약물을 투여하는 경우, 제(1)항의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3)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는 범죄이다.

- (4) 본조에서,

*의약품(medicine)*은 2019 의약품 및 독극물법 제11조를 참고한다.

141 개인이 자발적 조력사망을 요청하거나 요청을 취소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 (1) 개인은 타인이 부정직하게 또는 강압적으로 자발적 조력사망을 이용하도록 또는 요청을 취소하도록 유도해서는 안 된다.

최대 형벌 - 징역 7년.

- (2)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는 경범죄이다.

- (3) 본조에서,

자발적 조력사망 이용 요청이란,

(a) 1차 요청, 또는

(b) 2차 요청, 또는

(c) 최종 요청, 또는

(d) 약물 투여 결정을 의미한다.

142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의 자가 투여를 유도하는 행위

- (1) 개인은 타인에게 부정직하게 또는 강압적으로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을 자가 투여하도록 유도해서는 안 된다.

최대 형벌 - 징역 7년.

- (2)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는 경범죄이다.

143 위원회에 잘못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1) 개인은 본 법률의 집행과 관련해 특별 사항에 개인이 사실이 아니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고의로 위원회에 제공해서는 안 된다.

최대 형벌 - 징역 5년.

- (2)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는 경범죄이다.
- (3) 제(1)항은 문서에 정보를 제공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개인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a) 문서가 어떻게 거짓인지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지 개인이 최대한 상세히 위원회에 설명하고,
 - (b) 개인이 올바른 정보를 갖고 있거나 취득할 수 있을 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144 잘못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을 하는 행위

- (1) 개인은 특별 사항에서 잘못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음을 알고 있는 내용을 본 법률에 의거해 작성하도록 요구되는 양식 또는 기타 문서로 진술해선 안 된다.
최대 형벌 - 징역 5년.
- (2)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는 경범죄이다.

145 문서 위조

- (1) 개인은 본 법률에 의거해 작성하도록 요구되는 양식 또는 기타 문서를 위조해선 안 된다.
최대 형벌 - 징역 5년.
- (2)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는 경범죄이다.

146 기록 또는 공개해선 안 되는 개인정보

- (1) 본조는 본 법률에 따른 기능 또는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이나 그 결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자에게 적용된다.
- (2) 개인은,
 - (a) 개인정보를 기록해서는 안 되고,
 - (b)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공개해서도 안 된다. 최대 벌금 - 100 벌금 단위(penalty units).
- (3) 다만, 다음을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기록하거나 공개 시에는 제(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a) 본 법률에 의거한 목적을 위해, 또는
 - (b) 개인 정보 대상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 또는

- (c) 법원 또는 재판소로 문서 생성을 요하거나 증거 제출을 요하는 합법적인 과정을 준수한 경우, 또는
- (d) 법률에서 요하거나 승인하는 경우.

제10장 면책

147 자발적 조력사망을 지원하는 자 또는 의약품 투여 시 입회한 자에 대한 보호

- (1) 다음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개인에게 형사상 책임을 귀속하지 아니한다.
 - (a) 타인이 본 법률에 따라 자발적 조력사망을 요청하거나 이용하고 있다고 타당한 근거를 기반으로 판단한 개인이 타인을 돕고자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위 및 부작위를 행하는 경우, 또는
 - (b) 타인이 본 법률에 의거해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을 자가 투여하거나 투여 받을 때 입회하는 경우.
- (2) 분명히 규명하기 위해, 제(1)항(a) 또는 (b)에 언급된 작위 및 부작위를 행한 개인에게는 형사법 제300조,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06조, 제307조, 제309조, 제310조 또는 제311조에 대한 위법 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함을 선언한다.
- (3) 제(1)항(a)에서 개인에게 귀속되는 작위 및 부작위의 법적 책임의 면책 여부와 관련해 법적 절차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개인이 제(1)항(a)에 언급된 상황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위 및 부작위를 행하지 않았다고 입증해야 할 책임은 제(1)항(a)가 개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막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다.

148 본 법률에 따라 행위하는 자에 대한 보호

- (1) 본 법률에 따라 또는 본 법률의 목적을 위해 진실되고 과실 없이 이루어진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는 개인에게 어떠한 민사 또는 형사적 책임도 귀속되지 아니한다.
- (2) 분명히 규명하기 위해, 제(1)항에 언급된 작위 및 부작위를 행한 개인에게는 형사법 제300조,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06조, 제307조, 제309조, 제310조 또는 제311조에 대한 위법 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함을 선언한다.

- (3) 제(1)항에서 개인에게 귀속되는 작위 및 부작위의 법적 책임의 면책 여부와 관련해 법적 절차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개인이 제(1)항에 언급된 상황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위 및 부작위를 행하지 않았다고 입증해야 할 책임은 제(1)항이 개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막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다.

149 보건과의 구급대원에 대한 보호

- (1) 본조는 보호 대상자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타인에게 생명유지 의료(life sustaining treatment)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 (a) 타인이 생명유지 의료 이행을 요청하지 않았고,
 - (b) 보호 대상자가 타당한 근거를 기반으로 타인이 본 법률에 따라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을 자가 투여하거나 투여 받은 이후로 사망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 (2) 보호 대상자에게는 생명유지 의료를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어떠한 민사 또는 형사적 책임도 귀속되지 아니한다.
- (3) 분명히 규명하기 위해, 제(1)항에 언급된 작위 및 부작위를 행한 개인에게는 형사법 제300조,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06조, 제307조, 제309조, 제310조 또는 제311조에 대한 위법 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함을 선언한다.
- (4) 제(1)항에서 개인에게 귀속되는 작위 및 부작위의 법적 책임의 면책 여부와 관련해 법적 절차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개인이 제(1)항에 언급된 상황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위 및 부작위를 행하지 않았다고 입증해야 할 책임은 제(1)항이 개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막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다.
- (5) 본조에서,
구급대원(ambulance officer)은 1991 구급서비스법(Ambulance Service Act 1991) 별지 1을 참고한다.
보호 대상자(protected person)란,
 (a) 등록 보건의, 또는
 (b) 의료종사자규정국내법(퀵랜드)에 의거한 학생, 또는
 (c) 구급대원을 의미한다.

150 어떠한 조항도 징계 절차(disciplinary proceedings), 민원 제기 및 의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본장의 어떠한 내용도 다음 사항을 금하지 아니한다.

- (a) 의료종사자규정국내법(퀸즐랜드)에 의거해 개인에 대해 의무적 통지 또는 자발적 통지를 하는 행위, 또는
- (b) 2013 보건 옴부즈맨법(Health Ombudsman Act 2013)에 의거해 개인에 대한 보건 서비스 불만을 제기하는 행위;
- (c) 제117조(1)(c)(iv)에 의거해 보건 옴부즈맨에 문제를 의뢰하는 행위.

제11장 기타 조항

151 조사관의 기능과 권한

- (1) 2019 의약품 및 독극물법(Medicines and Poisons Act 2019) 제130조에 의거한 조사관의 기능에는 본 법률의 준수를 조사하고 집행하는 것도 포함된다(추가 기능).
- (2) 추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조사관은,
 - (a) 적용된 2019 의약품 및 독극물법 조항에 의거해 조사관으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 (b) 제(a)호에 의거한 권한의 행사 또는 진술된 행사와 관련해 제5편 제5장 제1절 및 제2절이 적용된다.
 - (c) 동 법률의 적용 조항에서 동 법률의 위반에 대한 언급은 본 법률의 위반에 대한 언급으로 간주한다.
- (3) 본조에서,

적용 조항(*applied provisions*)이란 2019 의약품 및 독극물법의 다음 조항을 의미한다.

 - (a) 제140조(1)(a), (b), (c), 제140조(3) 내지 (6);
 - (b) 제5편제3장제2절
 - (c) 제5편제3장제4절과 제4장.

조사관(*inspector*)이란 2019 의약품 및 독극물법 제5편제2장에 따라 조사관의 직위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

152 전문가적 행동 또는 이행과 관련해 본 법률의 준수

- (1) 관계자의 전문가적인 행위 또는 이행과 관련해 본 법률에 따른 사안을 고려할 때는 개인이 본 법률의 조항에 위배되는지 고려해야 한다.
- (2) 제(1)항이 적용되는 사안은 다음에서 발생하는 사안을 포함한다.

- (a) 의료종사자규정국내법(퀵랜드)에 의거한 통지, 또는
 - (b) 2013 보건 옴부즈맨법에 따른 민원 제기, 또는
 - (c) 의료종사자규정국내법(퀵랜드)에 의거해 언급된 사안.
- (3) 본조에서,
- 관계자(relevant person)*란,
- (a) 등록 보건의, 또는
 - (b) 의료 서비스 제공자를 의미한다.

153 위원회 기능을 지원하는 회원 및 개인의 면책

- (1)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돕는 위원회 회원 및 개인은 다음에 대해 민사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본 법률에 따라 진실되고 과실 없이 이루어진 작위 또는 부작위.

- (2) 제(1)항에서 위원회 회원 또는 타인에게 민사 책임의 귀속을 금지하는 경우, 책임은 국가로 대신 귀속된다.

- (3) 제(1)항은 위원회 회원 또는 공무원에 해당하는 타인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주

공무원과 관련해 민사 책임으로부터 보호는 2008 공공서비스법(Public Service Act 2008) 제26C조를 참고한다.

- (4) 본조에서,
- 공무원(*State employee*)이란 2008 공공서비스법 제26B조(4)에 규정된 의미와 동일하게 사용된다.

154 법률 검토

- (1) 장관은 법률 시행으로부터 3년이 끝나면 최대한 빠르게 본 법률의 실효성을 검토해야 한다.
- (2) 검토 시에는 적격성 기준에 대한 검토도 포함시켜야 한다.
- (3) 검토가 완료되면 장관은 최대한 빠르게 입법부(Legislative Assembly)로 그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상정해야 한다.

155 기술적 오류는 과정을 무효화시키지 않는다

- (1) 요청 및 평가과정 또는 투여 과정의 유효성은 다음 사항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a) 제3장 또는 제4장에 의거해 작성하도록 요구되는 양식에 나타나는 사소한 또는 기술적 오류, 또는

- (b) 개인이 제3장 또는 제4장에 의거해 작성하도록 요구되는 양식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 (c) 의사가 본 법률의 제3장 또는 제4장에 의거해 기한 내에 요구되는 행위를 하지 못하는 경우.
- (2) 본조에서,
- 투여 과정(administration process)**이란 다음 단계로 구성된 과정을 의미한다.
- (a) 투여 결정,
 - (b)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의 투여 또는 자가 투여.
- (3) 본조는 1954 법률 해석법(Acts Interpretation Act 1954) 제48A조를 제한함이 없이 별도로 추가되는 내용이다.

156 자발적 조력사망 공식 케어 네비게이터 서비스

- (1) 최고 책임자는 서비스가 본 법률상 자발적 조력사망 공식 케어 네비게이터 서비스가 되도록 승인할 수 있다.
- (2) 자발적 조력사망 공식 케어 네비게이터 서비스의 목적은 자발적 조력사망과 관련해 지지, 지원 및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있다.
- (3) 최고 책임자는 제(1)항에 의거한 승인을 부서 웹사이트에 공시해야 한다.

157 통역사

- (1) 자발적 조력사망 요청자의 통역사는,
 - (a)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 (i) 최고 책임자가 승인된 기관에서 공인된 자, 또는
 - (ii) 제(2)항에 따라 최고 책임자가 면제권을 부여한 자.
 - (b) 또한 다음에 해당해선 안 된다.
 - (i) 개인의 가족 구성원, 또는
 - (ii) 유연장에 따른 수혜자 또는 통역사로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령하는 적정 수수료 외에 개인의 사망으로 인해 재정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수혜를 보는 것으로 알고 있거나 믿고 있는 자, 또는
 - (iii) 개인이 치료를 받거나 거주하고 있는 보건시설의 소유주 또는 경영자, 또는
 - (iv) 개인에게 보건 서비스 또는 개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직접 관여하는 자.

(2) 최고 책임자는 다음 사항을 충족 시 통역사에게 제(1)항(a)(i)의 승인 요건의 면제권을 부여할 수 있다.

- (a) 특정 사례에서 공인 통역사를 이용할 수 없고,
- (b) 면제권을 부여할만한 이례적인 사유가 있다.

158 승인된 공급자

- (1) 최고 책임자는 적절한 등록 보건의 또는 등록 보건의 부류에 있는 자에게 본 법률에 의거해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을 공급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 (2) 최고 책임자는 개인이 요청 시 조정의사 역할을 하는 자에게 1명 이상의 허가된 등록 보건의 이름 또는 제(1)항에 따라 허가된 등록 보건의 부류(class)를 제공할 수 있다.

159 허가된 폐기자

- (1) 최고 책임자는 자격을 갖춘 등록 보건의 또는 등록 보건의 부류에 있는 자에게 본 법률에 의거해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을 폐기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 (2) 최고 책임자는 개인이 요청 시 조정의사 역할을 하는 자에게 1명 이상의 허가된 등록 보건의 이름 또는 제(1)항에 따라 허가된 등록 보건의 부류를 제공할 수 있다.

160 자발적 조력사망약물

최고 책임자는 개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본 법률에 의거해 S4 약물 또는 S8 약물 또는 동 약물들을 조합하여 사용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161 승인된 의사 요건

- (1) 최고 책임자는 제82조(1)(b)의 목적을 위해 의사 요건을 승인해야 한다.
- (2) 최고 승인된 의사 요건을 부서 웹사이트에 공시해야 한다.

162 승인된 전담 간호사 요건

- (1) 최고 책임자는 제83조(a)(ii)의 목적을 위해 전담 간호사 요건을 승인해야 한다.
- (2) 최고 책임자는 승인된 전담 간호사 요건을 부서 웹사이트에 공시해야 한다.

163 승인된 간호사 요건

- (1) 최고 책임자는 제83조(a)(iii)의 목적을 위해 간호사 요건을 승인해야 한다.
- (2) 최고 책임자는 승인된 간호사 요건을 부서 웹사이트에 공시해야 한다.

164 승인된 정보

- (1) 최고 책임자는 제16조(3)의 목적을 위해 정보를 승인해야 한다.
- (2) 최고 책임자는 승인된 정보를 부서 웹사이트에 공시해야 한다.

165 승인된 교육

- (1) 최고 책임자는 제20조, 제31조, 제83조(b)의 목적을 위해 교육을 승인해야 한다.
- (2) 승인된 교육은 다음 사안에 대해 대비할 수 있다.
 - (a) 조정의사, 상담의사, 약물투여 의사의 기능을 포함하여 의사, 전담 간호사 및 간호사와 관련해 본 법률의 시행
 - (b) 개인이 적격성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평가
 - (c) 학대 또는 강압에 대한 위험 요인의 파악과 평가
 - (d) 본 법률의 시행과 관련된 기타 사안.
- (3) 최고 책임자는 승인 사항을 웹사이트에 공시해야 한다.

166 승인된 양식

최고 책임자는 본 법률에 의거한 사용 양식을 승인할 수 있다.

167 규정 정립 권한

- (1) 위원회 운영 위원(Governor)은 본 법률에 따라 규정을 정립할 수 있다.
- (2) 규정은 본 법률에 의거해 승인된 양식에 포함시켜야 하는 사안을 규정할 수 있다.

제12장 개정법

제1절 본 법률의 개정

168 개정된 법률

본절은 본 법률을 개정한다.

169 표제 개정

표제 ‘and to amend’를
생략한다.

제2절 2003 검시관법 개정

170 개정된 법률

본절은 2003 검시관법을 개정한다.

171 제8조 개정 (보고 가능한 사망 정의됨)

(1) 제8조—

다음 내용을 삽입한다

(4A) 제(1)항 내지 제(3)항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2021 자발적 조력사망법에 의거하여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을 자가 투여하거나 투여 받은 개인의 사망은 보고 가능한 사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제8조(4A) 및 (5)—

제8조(5)와 (6)으로 번호 수정.

제3절 2000 후견 및 행정법 개정

172 개정된 법률

본절은 2000 후견 및 행정법을 개정한다.

173 제250C 조를 새로 삽입

제11편 제4A장

다음 내용을 삽입한다

250C 자발적 조력사망

2021 자발적 조력사망법에 의거한 자발적 조력사망은 본 법률이 적용되는 사안이 아니다.

제4절 2019 의약품 및 독극물법 개정

174 개정된 법률

본절은 2019 의약품 및 독극물법을 개정한다.

175 제50조 개정 (기타 법률에서 허가된 자)

- (1) 제50조(1), ‘This section’은,
생략하고, 다음을 삽입한다.
제(2)항

- (2) 제50조

다음 내용을 삽입한다

- (4) 또한, 개인은 2021 자발적 조력사망법에 의거하여 개인의 허가를 받고 행동하는 경우, 본 법률의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5절 1998 위임장법 개정

176 개정된 법률

본절은 1998 위임장법을 개정한다.

177 제159조를 새로 삽입

제8편,

다음 내용을 삽입한다.

159 자발적 조력사망

2021 자발적 조력사망법에 의거한 자발적 조력사망은 본 법률이 적용되는 사안이 아니다.

별지 1 사전

제6조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을 **투여하다(administer)**란 어떤 수단을 이용하든 인체로 약물을 주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의 **약물투여 의사(administering practitioner)**란 다음을 의미한다.

- (a) 개인의 조정의사, 또는
- (b) 제56조에 따라 약물투여 의사의 역할을 이전 받은 사람.

투여 결정(administration decision)이란 자가 투여 결정이나 의료인 투여 결정을 의미한다.

연례 보고서(annual report)는 제134조를 참고한다.

승인된 정보(approved information)는 제164조에 따라 승인된 정보를 의미한다.

승인된 의료인 요건(approved medical practitioner requirements)이란 제161조에 의거해 승인된 요건을 의미한다.

승인된 전담 간호사 요건(approved nurse practitioner requirements)이란 제162조에 의거해 승인된 요건을 의미한다.

승인된 간호사 요건(approved nurse requirements)이란 제163조에 의거해 승인된 요건을 의미한다.

승인된 교육(approved training)이란 제165조에 따라 승인된 교육을 의미한다.

호주 거주 면제(Queensland residency exemption)는 제12조(1)(a)를 참고한다.

허가된 폐기자(authorised disposer)란 등록 보건의 또는 제159조에 따라 최고 책임자가 허가한 등록 보건의 부류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

승인된 공급자(authorised supplier)란 등록 보건의 또는 제158조에 따라 최고 책임자가 허가한 등록 보건의 부류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

위원회(board)란 제116조에 따라 설립된 자발적 조력사망 심사위원회(Voluntary Assisted Dying Review Board)를 의미한다.

강압(coercion)은 신뢰 또는 영향력의 입지를 부적절하게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협박, 위협 또는 약속도 해당된다.

상담 평가(consulting assessment)는 제30조(2)를 참고한다.

상담 평가 기록 양식(consulting assessment record form)은 제35조(2)를 참고한다.

상담의사(consulting practitioner)란 개인에 대한 상담 평가 의뢰를 수락한 등록 의사를 의미한다.

개인과 관련된 연락처 정보(contact details)란 개인의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를 포함한다.

자발적 조력사망 이동을 요청하는 **개인의 담당자(contact person)**란 개인을 위해 제58조(1)에 따라 지명된 사람을 의미한다.

담당자 지명 양식(contact person appointment form)은 제59조(1)을 참고한다.

개인의 조정의사(coordinating practitioner)란 개인의 1차 요청을 수락한 의사를 의미한다.

제6장 제2절의 **판단 의사(deciding practitioner)**는 제86조를 참고한다.

자발적 조력사망과 관련된 **의사결정능력(decision-making capacity)**은 제11조를 참고한다.

장애(disability)에 대한 내용은 2006 장애 서비스법(Disability Services Act 2006)을 참고한다.

적격성 기준(eligibility criteria)이란 제10조(1)에 규정된 기준을 의미한다.

검토 가능한 판단에 **적격한 사람(eligible person)**은 제100조를 참고한다.

2차 요청에 **적격한 목격자(eligible witness)**란,

- (a) 제38조(1)에 따라 요청을 목격하기에 적격한 사람, 또는
- (b) 자발적 조력사망약물 투여를 목격하기에 적격한 사람이란 제54조에 따라 약물 투여를 목격하기에 적격한 사람을 의미한다.

제6장 제2절의 **시설(facility)**은 제86조를 참고한다.

개인의 가족 구성원(family member)이란 다음을 의미한다.

- (a) 개인의 배우자, 또는
- (b) 개인의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자녀 또는 손주, 또는
- (c) 원주민 전통 또는 토레스 해협 섬 관습에 따라 제(b)에 언급된 자로 간주되는 사람.

최종 요청(final request)은 제42조(1)을 참고한다.

최종 검토(final review)란 조정의사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46조에 따라 실시하는 검토를 의미한다.

최종 검토 양식(final review form)은 제46조(1)(b)를 참고한다.

1차 평가(first assessment)는 제19조(2)를 참고한다.

1차 평가 기록 양식(first assessment record form)은 제24조(2)를 참고한다.

1차 요청(first request)은 제42조(1)을 참고한다.

보건 옴부즈맨(health ombudsman)이란 2013 보건 옴부즈맨법(Health Ombudsman Act 2013)에 따른 보건 옴부즈맨을 의미한다.

보건 서비스(health service)는 2013 보건 옴부즈맨법 제7조를 참고한다.

의료 서비스 제공자(health service provider)는 2013 보건 옴부즈맨법 제8조를 참고한다.

회원(member)이란 위원회 회원을 의미한다.

간호사(nurse)란 의료종사자규정국내법(퀵랜드)에 의거해,

- (a) 학생을 제외하고 간호 직종에서 의료행위를 하도록 등록된 자,
- (b) 간호 직종에서 등록된 간호사 부서에서 의료행위를 하도록 등록된 자를 의미한다.

전담 간호사(nurse practitioner)란 의료종사자규정국내법(퀵랜드)에 의거해 간호 직종에서 의료 행위를 하도록 등록된 자로, 동법에 따른 등록 시 전담 간호사로 인증된다.

자발적 조력사망 공식 케어 네비게이터 서비스(official voluntary assisted dying care navigator service) 제156조에 따라 승인된 서비스를 의미한다.

완화의료와 치료(palliative care and treatment)란 다음에 해당하는 의료와 치료를 의미한다.

- (a) 수명을 제한하는 진행성의 질병, 질환 및 의학적 상태를 진단 받은 개인에게 제공되는 의료와 치료.
- (b) 평안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개인의 통증, 불편함 또는 고통을 예방, 식별, 평가, 완화 및 치료하는 것을 목표로 한 의료와 치료.

제6장 제2절의 영주권자(permanent resident)는 제86조를 참고한다.

개인 돌봄 서비스(personal care services)란 고용계약 또는 서비스 계약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되는 원조 및 지원을 의미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a) 목욕, 샤워, 개인 위생, 배변, 착탈의 또는 식사 지원
- (b) 이동에 문제가 있는 자에 대한 지원
- (c) 이동이 가능하나 어느 정도의 지도나 지원이 필요한 자를 위한 지원
- (d) 의약품 복용과 관련된 지원 또는 지도
- (e) 상당한 정서적 지원 제공.

개인 정보(personal information)란,

(a) 정보 및 의견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리고 물질적 형태로 기록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신분이 분명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정보 및 견해나 그로부터 쉽게 알아낼 수 있는 정보 및 견해도 포함된다.

(b)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보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독극물 표준(Poisons Standard)이란 1989 치료제법(Therapeutic Goods Act 1989)(커먼웰스) 제51A조(1)에 규정된 의미에서 현행 독극물 표준을 의미한다.

의료인 투여 결정(practitioner administration decision)은 제50조(1)(b)를 참고한다.

의료인 투여 양식(practitioner administration form)은 제55조(3)을 참고한다.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을 조제하다(prepare)란 약물을 투여하기에 적절한 형태가 되도록 보장하고 약물을 이동, 희석, 용해, 재구성, 색이나 향을 첨가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을 처방하다(prescribe)란 약물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처방전(prescription)이란 다음과 같은 문서를 의미한다.

- (a) 서면 또는 전자 작성된 문서
- (b) 문서에 적힌 개인에게 투여하거나 자가 투여하게 될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의 규격을 규정하는 문서
- (c) 제(b)호에 언급된 목적을 위해 공급할 약물을 승인하기 위해 발행되는 문서
- (d) 본 법률에 따라 처방전과 관련해 규정에서 지시하는 요건을 준수하는 문서.

주 등록국(principal registrar)은 QCAT 법률에 규정된 의미와 동일하게 사용된다.

개인 병원(private hospital)은 1999 민간보건시설법(Private Health Facilities Act 1999)의 제9조를 참고한다.

공공부문병원(public sector hospital)은 2011 병원과 보건위원회법(Hospital and Health Boards Act 2011)의 별지 2를 참고한다.

퀸즐랜드 거주 면제(Queensland residency exemption)는 제12조(1)(b)를 참고한다.

등록 보건의(registered health practitioner)란 보건 직종에 종사하도록 의료종사자규정국내법(퀸즐랜드)에 의거해 등록된 자를 의미하나, 단, 학생은 제외된다.

등록국 장관(registrar-general)이란 2003 출생, 사망, 결혼 등록법에 의거한 등록국을 의미한다.

제6장 제2절의 *관련 기관(relevant entity)*은 제86조를 참고한다.

제6장 제2절의 *관련 서비스(relevant service)*는 제86조를 참고한다.

*요청 및 평가 과정(request and assessment process)*이란 다음 단계로 구성된 과정을 의미한다.

- (a) 1차 요청
- (b) 1차 평가
- (c) 상담 평가
- (d) 2차 요청
- (e) 최종 요청
- (f) 최종 검토.

제6장 제2절의 *장기요양(residential aged care)*은 제86조를 참고한다.

제6장 제2절의 *장기요양시설(residential aged care facility)*은 제86조를 참고한다.

제6장 제2절의 *거주시설(residential facility)*은 제86조를 참고한다.

*검토 가능한 판단(reviewable decision)*이란 제99조에 규정된 판단을 의미한다.

*S4 약물(S4 substance)*이란 별지 4, 독극물 표준에 열거된 약물을 의미한다.

*S8 약물(S8 substance)*이란 별지 8, 독극물 표준에 열거된 약물을 의미한다.

*2차 요청(second request)*은 제37조(2)를 참고한다.

*자가 투여 결정(self-administration decision)*은 제50조(1)(a)를 참고한다.

*미사용 및 잔여 약물(unused or remaining substance)*이란 개인에게 공급된 자발적 조력사망약물 중에 개인의 사망 후 미사용 또는 잔여 약물을 의미한다.

*자발적 조력사망(voluntary assisted dying)*이란 자발적 조력사망약물 투여를 의미하고, 그러한 투여와 합리적으로 관련된 단계를 포함한다.

*자발적 조력사망약물(voluntary assisted dying substance)*이란 제160조에 따라 최고 책임자가 승인한 약물을 의미한다.

뉴질랜드

End of Life Choice Act 2019

2024.12.1. 기준 법령을 번역함

2019 임종선택법

End of Life Choice Act 2019

뉴질랜드 의회는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1 표제

본 법률은 2019 임종선택법이라 칭한다.

2 개시

- (1) 국민 투표에서 유권자 중 과반수가 본 법률을 뒷받침하는 제(2)항의 질문에 응답하는 경우, 본 법안은 국민 투표의 공식 결과를 선언한 날로부터 12개월 이후에 시행된다.
- (2) 제(1)항의 목적상 국민 투표에서 유권자들에게 묻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2019 임종선택법 시행을 지지하나요?”
- (3) 유권자들이 해당 질문에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답은 다음과 같다—
“네, 저는 2019 임종선택법 시행을 지지합니다.”
“아니요, 저는 2019 임종선택법 시행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 (4) 제정된 기타 법률에서 국민 투표에 사용된 질문이나 선택지 용어에 제(2)항과 (3)항의 용어를 명시한 경우, 본조의 조항이 어떠한 법률보다 우선한다.
- (5) 본 법률이 국왕의 재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1)항에 따라 발효되지 않는 경우, 본 법률은 폐지된다.
- (6) 본 조에서 **국민 투표**란,
 - (a) 유권자들에게 본 법률이 시행되어야 하는지 결정할 기회를 제공하는 국민 투표를 의미한다.
 - (b) 고등법원에 제출된 진정서에서 제(a)항에 따라 국민 투표를 무효화로 선언하는 경우 소집해야 하는 새로운 국민 투표를 포함한다.

제2조(1): 본 법률은 2021년 11월 6일자로 발효되며, 2020 임종선택 국민 투표 공식 결과 선언을 참고한다 (Gazette 2020-au5132).

제1장 예비 조항

3 법률의 목적

본 법률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a) 말기질환을 앓고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자에게 생명을 종결시킬 수 있는 의료 지원을 합법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하고,
- (b) 그러한 선택권을 행사하는 적절한 환자를 지원하도록 합법적인 절차를 확립한다.

4 해석

본 법률에서 맥락상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승인된 양식(approved form)이란 제40조에 따라 승인되어 발행된 양식을 의미한다

환자와 관련해 **조력사망(assisted dying)**이란 다음을 의미한다.

- (a) 담당의사 또는 전담 간호사가 사망을 앞당겨 환자의 고통을 완화시키는 약물을 환자에게 투여하는 행위, 또는
- (b) 사망을 앞당겨 고통을 완화시키는 약물을 환자가 자가투여하는 행위

환자와 관련해 **담당의사**란 환자의 치료를 담당하는 의사를 의미한다

전담 간호사란 담당의사(또는 대체 의사)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간호사를 의미한다

권한이란 2003보건역량보증법 제5조(1)에 따라 주어지는 권한을 의미한다

보건장애서비스 소비자권리법(Code of Health and Disability Services Consumers' Rights)이란 1994 보건장애위원회법(Health and Disability Commissioner Act 1994)의 제74조(1)에서 규정하는 보건장애서비스 소비자권리법을 의미한다

신중한 결정을 내릴 능력이 있다란, 제6조에 제공된 의미와 동일하게 사용된다

양심적 거부란 양심을 이유로 거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책임자(Director-General)란 보건부 책임자를 의미한다

적절한 환자란 제5조에 규정된 의미와 동일하게 사용된다

의료 종사자란 2003 보건역량보증법 제5조(1)에 규정된 의미와 동일하게 사용된다

독립적 의사란 다음을 충족하는 의사를 의미한다

- (a) 조력사망 선택권을 행사하기로 요청한 환자와 관련해 환자 및 환자의 담당의사(그리고 대체 의사)와 독립된 자,
- (b) 등록 의사의 등록 또는 면허를 책임지는 감독 당국으로부터 의료행위 자격증이나 이와 동등한 자격증을 5년 이상 소지해온 자,

의사(medical practitioner)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의료 종사자를 의미한다.

- (a) 2003 보건역량보증법 제114조(1)(a)에 따라 의료 전문 실무자로서 뉴질랜드 의료위원회(Medical Council of New Zealand)에 등록되었거나 등록된 것으로 간주되고,
- (b) 현재 의료행위 자격증을 소지한 자,

약물이란 조력사망과 관련해 약물의 치사량을 의미한다

장관(Minister)이란, 본 법안의 집행을 책임지는 정부 장관(Minister of the Crown)을 의미한다

- (a) 위임장의 권한에 따라, 또는
- (b) 총리(Prime Minister)의 권한에 따라,

부처(Ministry)란 보건부(Ministry of Health)를 의미한다

간호사(nurse practitioner)란 의료 종사자로, 다음을 충족한 자를 의미한다

- (a) 2003 보건역량보증법 제114조(1)(a)에 따라 간호 전문 실무자이자 실무 범위에서 전담 간호사 기능 수행을 허가하는 자로, 뉴질랜드 간호위원회(Nursing Council of New Zealand)로 등록되었거나 등록된 것으로 간주되는 자,
- (b) 현재 의료행위 자격증을 소지한 자,

조력사망에 적격한 자란 제5조에 규정된 의미와 동일하게 사용된다

약사(pharmacist)란 의료 종사자로, 다음을 충족한 자를 의미한다

- (a) 2003 보건역량보증법 제114조(5)에 따라 설립된 약학위원회(Pharmacy Council)에 약학 전문 실무자로 등록되었거나 등록된 것으로 간주되는 자,
- (b) 현재 의료행위 자격증을 소지한 자,

정신과 의사란 실무 범위에 정신과가 포함된 의사를 의미한다

등록 담당자(Registrar)란 제27조에 따라 지명된 (조력사망) 등록 담당자를 의미한다

심의위원회(Review Committee)란 제26조에 따라 지명된 위원회를 의미한다
SCENZ란 뉴질랜드에서 임종 지원 및 자문을 의미한다
SCENZ 그룹이란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의미한다.

5 조력사망 자격 또는 적절한 환자의 의미

- (1) 본 법률에서 조력사망에 적절한 환자 또는 적절한 환자란 다음 사항을 충족한 자를 의미한다.
 - (a) 18세 이상의 성인
 - (b) 다음 조건을 충족한 자
 - (i) 1977 시민권법(Citizenship Act)에서 제공하는 바와 같이 뉴질랜드 시민권을 보유한 자
 - (ii) 2009 이민법 제4조에 정의된 영주권 취득자,
 - (c) 6개월 이내에 사망에 이를 것으로 판단되는 말기질환으로 고통 받는 자,
 - (d) 신체적 능력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저하된 상태에 있는 자,
 - (e) 환자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완화될 수 없는 고통을 경험하는 자,
 - (f) 조력사망에 대해 신중한 결정을 내릴 능력이 있는 자.
- (2) 다음 사유만으로는 조력사망에 적절한 환자가 되지 아니한다—
 - (a) 정신장애 또는 정신질환을 앓는 자, 또는
 - (b) 다른 장애가 있는 자, 또는
 - (c) 고령에 해당하는 자.

6 조력사망에 대해 신중한 결정을 내리는 능력의 의미

본 법률에서 환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할 수 있을 경우 **조력사망에 대해 신중한 결정을 내릴 능력이 있다고 판단한다**

- (a) 결정과 관련된 조력사망의 특성에 대한 정보를 이해할 수 있다.
- (b) 의사 결정에 필요한 범위까지 정보를 유지할 수 있다.
- (c) 의사결정과정의 일환으로 그러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따져볼 수 있다.
- (d) 어떤 방식으로든 결정을 전달할 수 있다.

7 법률은 정부에 영향을 미친다

본 법률은 정부에 영향을 미친다.

제2장 조력사망

8 양심적 거부

- (1) 의료 종사자가 환자에게 조력사망 지원을 제공하는 데에 양심적 거부를 하는 경우, 본 법률에 따라 조력사망을 희망하는 자를 지원해야 할 의무가 없다.
- (2) 제(1)항은,
 - (a) 법적 의무가 어떻게 발생하는지와 상관없이 의료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적 의무에도 불구하고 적용된다.
 - (b) 단, 제9조(2)에 따른 의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3) 고용인은 다음 행위를 금한다.
 - (a) 피고용인이 양심을 이유로 제(1)항에 언급한 지원을 제공하는 데에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용인에게 고용, 숙소, 재화, 서비스, 권리, 직위, 특권 및 혜택을 거부하는 행위, 또는
 - (b) 피고용인이 제(1)항에 언급한 지원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합의하는 조건으로 피고용인에게 고용, 숙소, 재화, 서비스, 권리, 직위, 특권 및 혜택을 제공 및 부여하는 행위.
- (4) 제(3)항을 위반한 이유로 손실을 경험하는 자는 그러한 위반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서 피해를 복구할 자격이 있다.
- (5) 제(3)항에서, **피고용인**은 채용 후보자도 포함한다.

9 담당의사의 양심적 거부가 미치는 영향

- (1) 본조는 다음 상황에서 적용된다.
 - (a) 환자가 제11조(1)에 따라 의사에게 조력사망 선택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의향을 담당의사에게 통지하고,
 - (b) 담당의사가 그러한 선택권을 환자에게 제공하는 데에 양심적 거부를 하는 경우.
- (2) 담당의사는 요청자에게 다음 사항을 알려야 한다.
 - (a) 자신의 양심적 거부 사실,
 - (b) SCENZ 그룹에 대체할 의사 성명과 연락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환자의 권리.

IX.6

- (3) 환자가 대체 의사를 선택하는 경우, 제11조(1)을 제외하고 본 법률에서 언급하는 모든 담당의사는 환자의 대체 의사를 말한다.

10 의료 종사자는 조력사망에 대해 먼저 언급해서는 안 된다.

- (1) 환자에게 보건 서비스(health service)를 제공하는 의료 종사자는 환자에게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한다.
- (a) 사실상 본 법률에 따라 조력사망에 대해 해당하는 의논을 시작하는 행위, 또는
 - (b) 환자에게 사실상 본 법률에 따라 조력사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도록 제안하는 행위.
- (2) 제(1)항은 의료 종사자로 하여금,
- (a) 환자가 요청 시 본 법률에 따른 조력사망에 대해 의논하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 (b) 환자가 요청 시 본 법률에 따른 조력사망에 대한 정보를 환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지 아니한다.
- (3) 제(1)항에 위배되는 의료 종사자는,
- (a) 제39조(1)에 따라 범죄를 저지를 것으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 (b) 단, 1994 보건장애위원회법에 따라 보건장애위원회에 의해 발각되거나, 적절한 법률 표준을 준수하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건장애서비스 소비자권리를 위반한 혐의로 인권 심사 재판소(Human Rights Review Tribunal)에서 소집할 수 있다.
 - (c) 2003 보건역량보증법에 따라 의료전문직 부정행위로 징계 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4) 본조에서 언급하는 **보건 서비스**란 2003 보건역량보증법 제5조(1)에 제공된 의미와 동일하게 사용된다.

11 요청

- (1) 조력사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길 원하는 자는 담당의사에게 그러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 (2) 담당의사는 다음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 (a) 환자에게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한다.

- (i) 말기질환의 예후
- (ii) 조력사망의 돌이킬 수 없는 특성
- (iii) 조력사망의 예상되는 결과
- (b) 환자의 말기질환 진행과정에 따라 결정한 간격으로 환자의 의향에 대해 어떠한 수단을 통해서든 개인적으로 전달한다 (예: 전화 또는 전자통신)
- (c) 환자가 조력사망의 대안을 이해하는지 확인한다
- (d) 환자가 의약품을 투여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의약품을 투여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음을 이해하는지 확인한다
- (e) 환자에게 가족, 친구, 상담사와 해당 사안을 의논하도록 장려한다
- (f) 환자가 누구와도 해당 사안을 의논해야 할 의무는 없음을 이해하는지 확인한다
- (g) 환자가 선택한 자와 해당 사안을 의논할 기회를 갖도록 보장한다
- (h) 다음 방법을 통해 환자가 타인으로부터 어떠한 외압도 없이 자발적으로 의향을 표현하는지 확실히 확인한다
 - (i) 환자와 주기적으로 만나는 다른 의료 종사자와 의논하는 방법
 - (ii) 환자가 허락한 가족 구성원과 의논하는 방법
- (i) 조력사망의 권리를 요청하는 승인된 양식의 1부에서 단락 (a) 내지 (h)를 준수하여 이행한 행위를 기록한다.

12 요청 확인

- (1) 본조는 담당의사가 제11조를 준수한 후에 적용된다.
- (2) 조력사망 선택권을 행사하길 요청한 환자(이하 A로 칭함)가 진행을 원하는 경우, 담당의사는 제11조(2)(i)에서 언급한 승인된 양식을 A에게 제공해야 한다.
- (3) A는 다음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 (a) 양식의 제2장에 서명하고 날짜를 기입한다. 또는
 - (b) 제(4)항에 설명된 바와 같이 양식의 제2장에 서명하고 날짜를 기입할 때 입회해야 한다.
- (4) 양식의 제2장은 다음 상황에서 제3자(B)가 서명하고 날짜를 기입할 수 있다.
 - (a) A가 어떠한 사유로 작성하지 못하는 경우,
 - (b) A가 B에게 서명과 날짜 기재를 요청한 경우,

- (c) B가 A의 입회 하에 양식의 제2장에 서명하였음을 양식에 기록하는 경우,
- (d) B가 다음 사항을 양식에 확인하는 경우.
 - (i) B가 A를 진료하는 의료 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ii) A의 사망으로 인해 B에게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 (iii) B는 18세 이상의 성인이다.
 - (iv) B는 정신적 장애를 앓고 있지 않다.
- (5) 담당의사는 다음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 (a)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입회한다.
 - (i) 제(3)(a)항을 준수하는 경우, 또는
 - (ii) 제(3)(b)항과 (4)항을 준수하는 경우
 - (b) 양식을 수집한다.
 - (c) 작성한 양식을 등록 담당자에게 송부한다.

13. 담당의사가 제공해야 하는 1차 소견

- (1) 본조는 담당의사가 제12조(5)(c)를 준수한 후에 적용된다.
- (2) 담당의사는 다음 사항을 판단해야 한다.
 - (a) 조력사망 선택권을 요청하는 자가 조력사망에 적절한 자인지, 또는
 - (b) 조력사망 선택권을 요청하는 자가 조력사망에 적절한 자가 아닌지, 또는
 - (c) 제15조에 따라 환자가 조력사망에 대해 신중한 결정을 내릴 능력이 있다고 확인되는 경우, 조력사망을 요청하는 자가 조력사망에 적절한 대상인지.
- (3) 담당의사는 다음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 (a) 소견을 기록한 승인된 양식을 작성한다.
 - (b) 작성한 양식을 등록 담당자에게 송부한다.

14. 독립된 의사가 제공해야 하는 2차 소견

- (1) 본조는 담당의사가 제13조(2)(a) 또는 (c)에 설명된 내용을 판단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2) 담당의사는 다음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 (a) SCENZ 그룹에 독립된 의사 성명과 연락처 정보를 요청한다
 - (b) 독립된 의사에게 조력사망을 요청하는 환자가 조력사망에 적합한 자인지에 대한 소견을 요청한다.

- (3) 독립된 의사는 다음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 (a) 환자의 의료 파일을 읽는다.
 - (b) 환자를 진료한다
 - (c) 다음 사항을 판단한다.
 - (i) 환자가 조력사망에 적합한 자인지, 또는
 - (ii) 환자가 조력사망에 적합한 자가 아닌지, 또는
 - (iii) 제15조에 따라 환자가 조력사망에 대해 신중한 결정을 내릴 능력이 있다고 확인되는 경우, 조력사망에 적합한 자인지.
- (4) 독립된 의사는 다음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 (a) 소견을 기록한 승인된 양식을 작성한다.
 - (b) 작성한 양식을 등록 담당자에게 송부한다.
 - (c) 작성한 양식 사본을 담당의사에게 송부한다.

15 환자의 능력이 의사 1명 또는 2명의 의사가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닌 경우, 정신과 의사로부터 소견을 받아야 한다

- (1) 본조는 다음 상황에서 적용된다.
 - (a) 다음과 같은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 (i) 의사가 제13조(2)(a)에 설명된 바와 같이 판단하는 경우,
 - (ii) 독립된 의사가 제14조(3)(c)(iii)에 설명된 바와 같이 판단하는 경우, 또는
 - (b) 다음과 같은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 (i) 담당의사가 제13조(2)(C)에 설명된 바와 같이 판단하고,
 - (ii) 독립된 의사가 제14조(3)(c)(iii)에 설명된 바와 같이 판단하는 경우,
 - (c) 다음과 같은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 (i) 담당의사가 제13조(2)(C)에 설명된 바와 같이 판단하고,
 - (ii) 독립된 의사가 제14조(3)(c)(iii)에 설명된 바와 같이 판단하는 경우.
- (2) 의사는 다음과 같이 공동으로 이행해야 한다.
 - (a) SCENZ 그룹에 정신과 의사 성명과 연락처 정보를 요청한다.
 - (b) 정신과 의사에게 조력사망을 요청하는 환자가 조력사망에 대해 신중한 결정을 내릴 능력이 있는 자인지에 대한 견해를 요청한다.

IX.10

- (3) 정신과 의사는 다음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 (a) 환자의 의료 파일을 읽는다.
 - (b) 환자를 진료한다
 - (c) 다음 사항을 판단한다.
 - (i) 환자가 조력사망에 대해 신중한 결정을 내릴 능력이 있는지.
 - (ii) 환자가 조력사망에 대해 신중한 결정을 내릴 능력이 없는지.
- (4) 정신과 의사는 다음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 (a) 소견을 기록한 승인된 양식을 작성한다.
 - (b) 작성한 양식을 등록 담당자에게 송부한다.
 - (c) 작성한 양식 사본을 다음 대상에게 송부한다.
 - (i) 담당의사
 - (ii) 독립된 의사

16. 환자가 조력사망에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

- (1) 제(2)항은 담당의사가 제13조(2)(b)에 설명된 내용을 판단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2) 담당의사는 조력사망 선택권을 요청한 자에게 자신의 소견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 (3) 제(4)항은 다음 사항의 경우에 적용된다.
 - (a) 독립된 의사가 제14조(3)(c)(ii)에 설명된 바와 같이 판단하는 경우, 또는
 - (b) 다음과 같은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 (i) 정신과 의사에게 제15조(2)(b)에 따라 의견을 요청한 경우,
 - (ii) 정신과 의사가 제15조(3)(c)(ii)에 설명된 바와 같이 판단하는 경우.
- (4) 독립된 의사 또는 정신과 의사는 조력사망 선택권을 요청한 자와 담당의사에게 자신의 소견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 (5) 담당의사는 다음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 (a) 제(2)항 또는 제(4)항을 준수하여 이행한 조치를 기록한 승인된 양식을 작성한다.
 - (b) 작성한 양식을 등록 담당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17. 환자가 조력사망에 적합한 대상으로 판단되었다

- (1) 본조는 다음 상황에서 적용된다.
 - (a) 다음과 같은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 (i) 의사가 제13조(2)(a)에 설명된 내용을 판단하고,
 - (ii) 독립된 의사가 제14조(3)(c)(i)에 설명된 바와 같이 판단하는 경우, 또는
 - (b) 다음과 같은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 (i) 정신과 의사에게 제15조(2)(b)에 따라 의견을 요청하고,
 - (ii) 정신과 의사가 제15조(3)(c)(i)에 설명된 바와 같이 판단하는 경우.
- (2) 담당의사는 다음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 (a) 조력사망 선택권을 요청하는 자가 조력사망에 적절한 대상자임을 알린다.
 - (b) 환자와 말기질환 경과에 대해 의논한다.
 - (c) 환자와 의약품 투여 시간을 의논한다.
 - (d) 의약품 투여 날짜와 시간을 선택하여 환자가 작성해야 하는 승인된 양식을 제공한다.
 - (e) 제(d)호에서 언급하는 승인된 양식을 작성한 후에 언제든지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음을 환자에게 알린다.
 - (i) 의약품을 수령하지 않는 것, 또는
 - (ii) 의약품을 투여하기로 최초 선택한 날로부터 6개월 기간 중 늦은 시점에 의약품을 수령하는 것.
- (3) 담당의사는 다음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 (a) 제(4)항을 준수하여 이행한 조치를 기록한 승인된 양식을 작성한다.
 - (b) 작성한 양식을 등록 담당자에게 송부한다.

18. 의약품 투여 날짜와 시간을 선택하는 적절한 환자

- (1) 적절한 환자가 조력사망을 희망하는 경우, 환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 (a) 제17조(2)(d)에 언급된 승인된 양식을 작성한다
 - (b) 작성한 양식 사본을 담당의사에게 송부한다.
- (2) 작성한 양식을 수령한 담당의사는 양식을 등록 담당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IX.12

- (3) 적절한 환자가 제17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최초 선택하고 제17조(2)(d)에서 언급하는 승인된 양식에 명시된 투여일보다 늦게 의약품을 수령하기로 결정할 때마다,
 - (a) 적절한 환자는 최초 작성한 양식 또는 제17조(2)(d)(**대체 양식**)에 따라 가장 최근에 작성한 양식을 대체하도록 새로 승인된 양식을 작성해야 하고,
 - (b) 제19조와 제20조에서 언급한 선택 날짜 및 시간은 대체 양식에서 선택한 날짜와 시간을 가리킨다.

19 의약품 투여를 위한 일시적 조율

- (1) 본조는 담당의사가 제18조(2)를 준수한 후에 적용된다.
- (2) 의약품 투여에 적절한 환자가 선택한 날짜 전에 담당의사는 다음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 (a) 환자에게 다음과 같은 의약품 투여 방법을 알린다.
 - (i) 본인이 직접 섭취
 - (ii) 본인이 직접 이행하는 정맥 투여
 - (iii) 담당의사 또는 전담 간호사에 의한 튜브를 통한 섭취
 - (iv) 담당의사 또는 전담 간호사가 주입
 - (b) 환자에게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요청한다
 - (c) 환자가 의약품 투여하기 전에 언제든지 의약품 투여하기로 최초 선택한 날로부터 6개월 기간 중 늦은 시점에 의약품 수령하기로 또는 수령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음을 이해한다.
 - (d) 의약품 투여를 위해 선택한 날짜와 시간을 일시적으로 합의한다.
- (3) 의약품 투여를 위해 선택한 시간을 기준으로 최소 48시간 전에 담당의사 또는 전담 간호사는 다음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 (a) 적절한 환자에게 적절한 처방전을 쓴다.
 - (b) 등록 담당자에게 의약품 투여 방법과 투여 날짜 및 시간을 알린다.
- (4) 등록 담당자는 제11조 내지 제18조에 설명된 절차를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 (5) 등록 담당자는 제11조 내지 제18조의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만족하는 경우, 담당의사는 그에 따라 통지해야 한다.

20 의약품 투여

- (1) 본조는 담당의사가 등록 담당자로부터 제19조(5)에 따른 통지를 수신한 후에 적용된다.
- (2) 의약품 투여를 위해 선택한 시간에 담당의사 또는 전담 간호사는 적절한 환자에게 다음 사항을 질문해야 한다.
 - (a) 당시 의약품을 수령하기로 결정했는지 여부, 또는
 - (b) 당시 의약품을 수령하지 않기로 선택하였으나 의약품을 투여하기로 최초 선택한 날로부터 6개월 기간 중 늦은 시점에 의약품을 수령하기로 결정하였는지 여부, 또는
 - (c) 당시 의약품을 수령하지 않기로 선택하였고, 조력사망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요청을 철회할 것인지 여부.
- (3) 적절한 환자가 선택한 시간에 의약품을 수령하지 않기로 선택한 경우, 담당의사 또는 전담 간호사는 다음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 (a) 적절한 환자에게서 즉시 의약품을 회수한다.
 - (b) 제(a)호를 준수하여 이행한 조치를 기록한 승인된 양식을 작성한다.
 - (c) 작성한 양식을 등록 담당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 (4) 적절한 환자가 의약품을 수령하기로 선택한 경우, 담당의사 또는 전담 간호사는 다음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 (a) 제19조(2)(a)(i)와 (ii)에 설명된 방식 중 하나를 이용해 투여할 의약품을 환자에게 제공한다. 또는
 - (b) 제19조(2)(a)(iii)과 (iv)에 설명된 방식 중 하나를 이용해 의약품을 투여한다.
- (5) 담당의사 또는 전담 간호사는 다음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 (a) 적절한 환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락할 수 있어야 한다. 또는
 - (b) 적절한 환자가 사망할 때까지 다른 의사 또는 전담 간호사에게 연락하도록 마련해야 한다.
- (6) 제(5)항의 목적상 의사 또는 전담 간호사가 다음에 해당할 경우 적절한 환자는 담당의사 또는 전담 간호사에게 **연락할 수 있어야 한다**.
 - (a) 환자와 같은 방이나 공간에 있는 경우, 또는
 - (b) 환자와 같은 방이나 공간에 있지는 않지만 가까이에 위치한 경우.

21 사망 보고

- (1) 제20조에 따라 의약품을 투여한 결과로 환자가 사망하고 14일 이내에 담당의사 또는 담당의사 지시로 의약품을 제공하거나 투여한 전담 간호사는 제(2)항에 설명된 정보를 포함한 승인된 양식으로 작성한 보고서를 등록 담당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 (2) 정보는 다음을 포함한다.
 - (a) 담당의사 또는 전담 간호사 성명
 - (b) 환자의 성명
 - (c) 환자의 마지막 주소지
 - (d) 환자가 사망한 사실
 - (e) 제19조(2)(a)에 설명된 방식 중에 사용한 방식
 - (f) 의약품 투여에 대한 설명
 - (g) 의약품 투여 시 문제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발생한 경우 어떻게 다루었는지
 - (h) 환자가 사망한 장소
 - (i) 환자가 사망한 날짜와 시간
 - (j) 환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락하던 의사 또는 간호사 성명
 - (k) 환자가 사망할 때 입회한 제3의 의료 종사자 성명.
- (3) 등록 담당자는 심의위원회에 보고서를 송부해야 한다.

22 처방전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 처방전의 파기

- (1) 제(2)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된다.
 - (a) 담당의사 또는 전담 간호사가 제19조(3)(a)에 따라 작성된 처방전을 소지하고 있고,
 - (b) 약물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
- (2) 담당의사 또는 전담 간호사는 다음을 이행해야 한다.
 - (a) 즉시 처방전을 파기하고,
 - (b) 제(a)호를 준수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기록하는 승인된 양식을 작성하고,
 - (c) 완성된 양식을 등록 담당자에게 송부한다.

23 개인이 조력사망 요청을 철회할 경우 취해야 할 조치는 없다

- (1) 본조는 언제든지 적격한 개인이 조력사망 요청을 철회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2) 담당의사 또는 전담 간호사는 다음을 이행해야 한다.

- (a) 개인이 요청을 취소하였음을 기록한 승인된 양식을 작성하고,
 - (b) 작성한 양식을 등록 담당자에게 송부하고,
 - (c) 개인의 요청에 대해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다(해당 시 제22조에 따른 조치는 제외).
- (3) 이후에 개인이 조력사망을 희망하는 경우, 제11조에 의거해 새로 요청할 수 있다.

24 외압이 의심될 경우 취해야 할 조치는 없다

담당의사 또는 전담 간호사는 조력사망 요청자가 타인, 의사 또는 간호사의 외압 없이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 언제든지 다음과 같이 이행해야 한다.

- (a) 본 법률에 따라 조력사망 선택권을 행사하길 원하는 환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다.
- (b) 본 법률에 의거하여 환자가 조력사망 선택권을 행사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가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음을 환자에게 알린다.
- (c) 다음 사항을 기록한 승인된 양식을 작성한다.
 - (i) 조력사망 선택권을 행사하는 환자를 지원하는 데에 있어 본 법률에 따라 추가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
 - (ii) 제(b)호를 준수하기 위해 취한 조치
- (d) 제(c)호에 따라 작성한 양식을 등록 담당자에게 송부한다.

제3장 책임

25 SCENZ 그룹

- (1) 책임자(Director-General)는 본인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수만큼 구성원을 지명하여 SCENZ 그룹을 수립해야 한다.
- (2) 책임자는 SCENZ 그룹의 기능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전체적으로 지식과 이해를 겸비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구성원을 지명해야 한다.
- (3) SCENZ 그룹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a) 본 법률의 목적을 위해 행위하고자 하는 의사 명단을 작성하고 유지한다.
 - (i) 대체 의사
 - (ii) 독립된 의사

- (b) 담당의사가 대체 의사 또는 독립된 의사를 선택하지 않도록 본 법률에서 대체 의사 또는 독립된 의사를 사용하도록 요할 경우, 제(a)호에 따라 유지되는 명단에서 성명과 연락처 정보를 제공한다.
- (c) 본 법률의 목적을 위해 정신과 의사로서 행위하고자 하는 의료 종사자 명단을 작성하고 유지한다.
- (d) 본 법률에서 정신과 의사의 사용을 요하지만 담당의사와 독립된 의사가 모두 정신과 의사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 제(c)호에 따라 유지되는 명단에서 성명과 연락처 정보를 제공한다.
- (e) 제 20조의 목적을 위해 의약품을 조제할 의지가 있는 약사 명단을 작성하고 유지한다.
- (f) 제20조가 적용될 경우 제(e)호에 따라 유지한 명단에서 성명과 연락처 정보를 제공한다.
- (g) 제20조에 따라 의약품 투여와 관련해,
 - (i) 간호 표준을 준비한다.
 - (ii) 필요한 의학적 및 법적 절차에 대해 알린다.
 - (iii) 조력을 요청하는 경우 실용적인 조력을 제공한다.
- (4) 보건부는 SCENZ 그룹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5) 제(3)항(g)(i)에 따른 표준은 후속 법령이다(발행 요건은 2019 후속 법령 제3장을 참고한다).

본조에 따른 후속 법령에 대한 2019 제정법 요건

발행	발행이 요구되지 않음.	LA19 s 73(2)
제출	2019 제정법 별지 1에 따라 전환 제외(transitional exemption)가 적용되어 하원으로 제출하도록 요구되지 않음.	LA19 s 114, Sch 1 cl 32(1)(a)
불허	하원에서 불허할 수 있음..	LA19 ss 115, 116

본 주는 법률에 포함되지 않음

제25조(5): 2021 후속 법령 제3조에 의해 2021년 10월 28일에 삽입됨(2021 No 7).

26 심의위원회

- (1) 장관은 다음으로 구성된 조력사망심의위원회를 지명해야 한다.
 - (a) 의료 윤리학자(medical ethicist),

- (b) 2명의 의료 종사자, 그 중 1명은 임종 간호 분야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 종사자여야 함.
- (2) 심의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다.
 - (a) 제21조(3)에 따라 심의위원회로 송달된 보고서를 고려하는 기능(**조력사망 보고서**).
 - (b) 조력사망보고서에 포함된 정보가 본 법률의 요건을 바람직하게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하는지에 대해 등록 담당자에게 보고하는 기능.
 - (c) 심의위원회에서 본 법안의 요건을 바람직하게 준수하지 않는다고 고려하는 조력사망보고서에 포함된 정보를 추적하도록 등록 담당자에게 지시하는 기능.

27 등록 담당자(조력사망)

- (1) 책임자(Director-General)는 부처 직원을 등록 담당자(조력사망)로 지명해야 한다.
- (2) 등록 담당자는 다음과 같이 기록부를 정립하고 유지해야 한다.
 - (a) 등록 담당자가 승인한 양식
 - (b) 등록 담당자에게 제출한 심의위원회의 보고서
 - (c) 장관에게 제출한 등록 담당자의 보고서
- (3) 등록 담당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Privacy Commissioner)와 상담해야 한다.
 - (a) 등록 담당자를 지정하기 전에
 - (b) 등록 담당자를 유지하는 동안 주기적으로
- (4) 등록 담당자가 본 법률에 따라 의료 종사자 행위의 적절성에 대해 불만사항을 접수하였는데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관할구역 내에 해당하는 사안과 관련이 있다고 간주하는 경우, 등록 담당자는 불만을 제기한 자를 해당하는 인물에게 회부해야 한다.
 - (a) 민원인이 의료 종사자의 행위가 보건장애서비스 소비자 권리법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는 경우 보건장애위원회로 회부하거나,
 - (b) 민원인이 의료 종사자의 역량, 의료 행위의 적합성 및 행위와 관련해 불만을 제기한 경우, 적절한 당국으로 회부하거나,
 - (c) 뉴질랜드 경찰에 회부한다.

IX.18

- (5) 등록 담당자가 제(4)항에 따라 불만사항을 조사하지 않는 경우, 등록 담당자는 민원인에게 해당 사실과 더불어 회부하지 않는 이유를 통지해야 한다.
- (6) 등록 담당자는 제26조(2)(c)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지시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7) 등록 담당자는 당해 다음 사안에 대해 매년 6월 30일까지 부처로 보고해야 한다.
 - (a) 제20조에 따라 발생한 총 사망 수
 - (b) 제19조(2)(a)에 설명된 각 방법을 통해 발생한 사망 수
 - (c) 본 법률의 위반과 관련해 불만사항이 접수된 횟수
 - (d) 불만사항을 해결한 방법
 - (e) 본 법률의 시행과 관련해 등록 담당자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사안.
- (8) 등록 담당자는 본 법률에서 등록 담당자에게 이행을 요구하는 기타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28 등록 담당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할 사람

- (1) 본조는 다음 사람에게 적용된다.
 - (a) 보건장애위원회
 - (b) 당국
 - (c) 뉴질랜드 경찰
- (2) 본조가 적용되는 자는 등록 담당자가 제27조(7)(c)와 (d)에 언급된 사안에 대해 장관에게 보고하기 위해 요구할 수 있는 정보를 매년 등록 담당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 (3) 등록 담당자가 명시한 시간과 방법대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상황에서 합리적이어야 한다).

29 장관은 제27조에 따라 보고서 사본을 하원에 제출해야 한다.

제27조(7)에 따라 보고서를 수령한 후 최대한 빨리 장관은 보고서 사본을 하원에 제출해야 한다.

30 법률 시행 검토

- (1) 장관은 본 법률을 시행하고 3년 이내에, 이후로는 5년 이하의 주기로 다음을 이행해야 한다.
 - (a) 본 법률의 시행을 검토한다.

- (b) 본 법률의 개정 또는 기타 제정이 필요하거나 바람직한지 고려한다.
- (c) 장관에게 결과를 보고한다.
- (2) 장관은 제(1)항(c)에 따라 보고서를 수령한 후 최대한 빨리 보고서 사본을 하원에 제출해야 한다.

제4장 관련 사안

31 규정

- (1) 책임자는 위원회 명령에 따라 본 법률의 시행 및 발효에 필요한 것으로 본 법률에서 고려하는 사안을 다루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 (2) 본조에 의거한 규정은 후속 법령이다(출판 요건은 2019 제정법 제3장을 참조한다).

본조에 따른 후속 법령에 대한 2019 제정법 요건

발행	PCO는 법령 웹사이트에 게재하고 자체 관보에 통지해야 함.	LA19 s 69(1)(c)
제출	장관은 하원에 제출해야 함.	LA19 s 114, Sch 1 cl
불허	하원에서 불허할 수 있음.	32(1)(a) LA19 ss 115, 116

본 주는 법률에 포함되지 않음

제31조(2): 2021 후속 법령 제3조에 의해 2021년 10월 28일에 삽입됨(2021 No 7).

32 영향을 받지 않는 기타 권리와 의무

- (1) 본 법률의 어떠한 내용도 다음과 같은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a) 환자가 영양분 섭취를 거부할 권리
 - (b) 환자가 수분 섭취를 거부할 권리
 - (c) 환자가 생명연장치료를 받기를 거부할 권리.
- (2) 본 법률의 어떠한 내용도 의사가 표준의료관행에 따라 통증을 완화해야 할 의사로서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3 조력사망에 사전 지시서(Advanced directive) 등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 (1) 본 법률에 따라 조력사망 권한을 행사하도록 요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12조(3)에서 언급한 승인된 양식에 서명하고 날짜를 기입해야 하며(요청 양식), 환자가 사전 서면 또는 구두 지시서, 유서, 계약서 및 기타 문서에 그러한 의향을 표현하는 조항을 포함시킨 경우 그러한 조항은 무효하다.

IX.20

- (2) 요청 양식에 서명하고 날짜를 기입한 후 해당하는 자가 본 법률에 의거해 조력사망을 선택할 권한을 행사한다는 요청서를 철회하는 경우, 해당 의사를 담당의사 또는 전담 간호사에게 구두, 서면(철회 문서), 또는 몸짓으로 전달해야 하고, 환자가 사전 서면 또는 구두 지시서, 유서, 계약서 및 기타 문서(철회 문서 외)에 그러한 바램을 표현하는 조항을 포함시킨 경우 그러한 조항은 무효하다.
- (3) 본 법률에 따라 조력사망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구두 또는 서면 요청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형태의 설명이 요구되지 아니한다.

34 복지 후견인(welfare guardian)은 본 법률에 따라 결정을 하거나 행동을 취할 권한이 없다

1988 인적권리 및 재산권 보호법에 따라 지명된 복지 후견인은 본 법률에 따라 해당하는 자를 위한 결정을 내리거나 조치를 취할 권한이나 자격이 없다.

35 본 법률에 따라 사망 계약서에 미치는 영향

조력사망으로 사망하는 자는 생명보험계약 또는 기타 계약을 목적으로 하여,

- (a) 조력사망이 없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고,
- (b) 그들에게 고통을 야기하던 제5조(1)(c)에 언급한 만성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다.

36 조력사망 정보의 공개에 대한 제약

- (1) 본조는 본 법률에 따른 조력사망의 결과이거나 결과로 보이는 사망과 관련해 적용된다.
- (2) 본조가 적용되는 사망과 관련해 누구도 다음 사항을 공개할 수 없다.
 - (a) 사망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한 방법
 - (b) 사망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한 장소
 - (c) 사망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한 사람의 이름 또는 투여자의 고용주 이름.
- (3) 본조의 조항을 위반하는 자는 범죄에 해당하며 다음과 같은 처벌 대상이 된다.
 - (a) 법인의 경우 \$20,000 이하의 벌금형
 - (b) 기타 경우 \$5,000 이하의 벌금형
- (4) 본조의 어떠한 내용도 법원 또는 재판소 소송과 관련해 적용되거나 이러한 소송의 보고 및 공개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 (5) 본조에서 **공개**라 함은 다음 수단을 통한 공개를 의미한다.

- (a) 방송(1989 방송법의 의미에 따른) 또는
- (b) 신문(1992 명예훼손법) 또는
- (c) 서적, 저널, 잡지, 뉴스레터, 기타 유사한 문서, 또는
- (d) 음성 및 시각 기록물, 또는
- (e)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또는 기타 유사한 전자 수단.

37 형사 책임으로부터 면책

- (1) 다음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는 의료 종사자는 1961 형법 제179조 또는 기타 법률에 따라 형사 책임으로부터 면제된다.
 - (a) 당사자의 요청 시 본 법률 제10조와 제11조에 따라, 본 법률에 의거한 조력사망에 대해 당사자와 의논하는 행위,
 - (b) 당사자의 요청 시 본 법률 제10조와 제11조에 따라, 본 법률에 의거한 조력사망에 관한 정보를 당사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c) 본 법률의 제12조(2)에 따라 동법 제12조(5)를 준수하여 동법 제11조(2)(i)에 언급한 승인된 양식을 당사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d) 본 법률에서 본 법률에 따른 조력사망에 대해 의논을 요청하거나 정보를 요청하거나 권한을 행사하도록 요청하고, 본 법률에 의거하여 해당하는 환자가 조력사망에 적격한지에 대해 통지 받지 못한 환자에 대해 본 법률에서 승인 또는 요구하는 사항 이외의 조치를 취하는 행위.
- (2) 본조의 나머지 내용은 당사자(A)가 본 법률에 따라 조력사망 권리를 행사하거나 그러한 권리를 행사하도록 요청하기에 적절한 경우에 적용된다.
- (3) A는 본 법률에 따라 조력사망 권한을 행사하도록 요청할 권리가 있고 해당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어떠한 법률상으로도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4) 다른 사람(B)이 A가 본 법률에 따라 조력사망 권한을 행사하도록 요청하였음을 알거나 그렇게 믿을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B의 다음 행위는 정당한 사유로 성립되지 아니한다.
 - (a) A가 해당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1961 형사법 제41조에 명시된 무력을 사용하는 행위, 또는
 - (b) A와 관련해 취한 조치, 그리고 법률에서 A에게 조치를 취하도록 인가 또는 요구하는 조치로부터 A를 보호하기 위해 1961 형사법 제48조에 명시된 무력을 사용하는 행위.

IX.22

- (5) A가 본 법률에 따라 조력사망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길 희망하고 있다는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선의로 다음을 행하는 경우, B 또는 제3자는 형사 책임으로부터 면제된다.
 - (a) 본 법률의 요건에 따라 A의 사망을 야기, 지원 또는 촉진시킨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령 제20조(4)(a)에 따라 담당의사가 본 법률의 요건에 따라 A에게 의약품 투여한 경우, A의 사망에 대해 1961 형사법에 의한 법적 책임으로부터 면제된다), 또는
 - (b) 본 법률의 요건에 따른 조치가 실패하고 실패로 인해 A의 사망을 야기, 지원 또는 촉진시킨 경우(가령 제20조(5)(a)에 따라 전담 간호사가 A와 함께 하였는데 A를 소생시키기 위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A의 사망에 대해 1961 형사법에 의한 법적 책임으로부터 면제된다).
- (6) 제(5)항은 다음 사항의 경우에 적용된다.
 - (a) 그러한 조치를 취하거나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적용되나, 제(5)항에 대해서는 어느 법률에 의거하든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b) 1961 형사법 제63조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적용된다.

38 민사 책임으로부터 면책

- (1) 어떠한 사람(A)이 다른 사람(B)이 조력사망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길 희망하고 있다는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선의로 다음을 행하는 경우, A는 민사 책임으로부터 면제된다.
 - (a) 본 법률의 요건에 따라 B의 사망을 지원 또는 촉진시킨 조치를 취하는 경우, 또는
 - (b) 본 법률의 요건에 따라 B의 사망을 지원 또는 촉진시킨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
- (2) 본조의 어떠한 조항도 환자의 다음과 같은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a) 2003 보건역량보증법에 따라 의료 종사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권리, 또는
 - (b) 1994 보건장애위원회법 제50조 또는 제51조에 따라 소를 제기할 권리, 또는
 - (c) 위헌 법률 심사권을 신청할 권리.

39 범죄

- (1) 의사, 간호사 또는 정신과 의사가 고의로 본 법률의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범죄를 저지른 것과 같다.
- (2) 합법적인 사유가 없이 다음을 이행하는 자는 범죄를 저지른 것과 같다.
 - (a)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을 위해 승인된 양식을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작성하는 경우, 또는
 - (b) 양식을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작성한 자의 동의 없이 전체 또는 부분 작성된 승인된 양식을 수정하거나 파괴하는 경우.
- (3) 본조에 따라 범죄를 저지른 자는 다음 항목 중 하나 이상의 처벌을 받는다.
 - (a) 최대 3개월 징역형,
 - (b) 최대 \$10,000의 벌금형.

40 책임자는 양식을 승인할 수 있다

책임자는 본 법률의 목적을 위해 양식을 승인하고 발행할 수 있다.

41 기타 법률 개정

별지에 명시된 법률은 해당 별지에 규정된 바와 같이 개정한다.

별지 기타 법률 개정

제1장 법률 개정

제41조

1964 매장 및 화장법 (1964 No 75)

제2조(1)에서, 사망원인증명서의 정의에서 “or 46C”를 “, 46C, or 46CA”로 대체한다.

제46C조 뒤에 다음 내용을 삽입한다.

46CA 조력사망과 관련된 사망원인증명서

- (1) 본조는 환자가 2019 임종선택법에 의거하여 조력사망의 결과로 사망한 경우에 적용된다.
- (2) 환자가 사망할 당시 같이 있던 의사 또는 간호사는 환자의 사망 즉시 사망원인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 (3) 하지만 검시관이 2006 검시관법 제3장에 의거하여 사망을 조사하기로 결정할 경우, 본 조에 따른 사망원인증명서를 제공해선 안 된다.

제46D조에서, “or 46C”를 “46C, or 46CA”로 대체한다.

2006 검시관법 (2006 No 38)

제13조(2) 뒤에 다음 내용을 삽입한다.

- (2A) 단, 2019 임종선택법에 따른 조력사망의 결과로 사망이 발생한 경우, 제(1)항과 제(2)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60조(1)(a)에서 “자초한(self-inflicted)” 뒤에 “2019 임종선택법에 따른 조력사망의 결과인 경우는 제외(other than as a result of assisted dying under the End of Life Choice Act 2019)”를 삽입한다.

- (4) 본조에서 사망과 관련해 “자초한(self-inflicted)”이란 2019 임종선택법에 따라 조력사망의 결과로 발생한 사망을 포함하지 아니한다(조력사망의 세부 사항 공개를 제약하는 동법 제36조를 참고한다).

1961 형법 (1961 No 43)

제41조에 다음 내용을 제(2)항으로 삽입한다.

(2) 본조는 2019 임종선택법 제37조의 영향을 받는다.

제48조에 다음 내용을 제(2)항으로 삽입한다.

(2) 본조는 2019 임종선택법 제37조의 영향을 받는다.

제179조(3) 뒤에 다음을 삽입한다.

(4) 본조는 2019 임종선택법 제37조의 영향을 받는다.

1956 보건법 (1956 No 65)

제112B조에서 건강 정보의 정의를 다음으로 대체한다.

건강 정보는 제22B조에 해당 용어의 정의 제(a)호와 제(c)호에 규정된 의미로 사용되나, 2019 임종선택법에 따라 제공되는 조력사망에 관한 정보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1994 보건장애위원회법 (1994 No 88)

제2조(1)에서 보건 서비스의 정의에서 제(a)호(vii)를 다음으로 대체한다.

(vii) 진단 서비스,
(viii) 2019 임종선택법에 의거하여 조력사망을 요청한 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2000 뉴질랜드 공중보건장애법 (2000 No 91)

제6조(1)에서 서비스의 정의를 다음으로 대체한다.

서비스는 다음 사항을 의미한다.
(a) 보건 서비스
(b) 장애 지원 서비스
(c) 2019 임종선택법에 의거하여 조력사망을 요청한 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1988 인적권리 및 재산권 보호법 (1988 No 4)

제18조(1)(f) 이후에 다음 사항을 삽입한다.

- (g) 환자를 대신해 2019 임종선택법에 의거해 조력사망에 대한 권한을 요청하는 것.

제2장 입법 문서 개정

1995 출생, 사망, 결혼, 관계 등록 규정 (규정된 정보) (SR 1995/183) 규정 7(1)(a)(xiii)을 다음 사항으로 대체한다.

- (xiii) 제(xiiia)호의 대상이 되는 환자의 사망 사유
- (xiiia) 2019 임종선택법에 따라 조력사망의 결과로 사망한 환자를 조력사망 대상자로 만든 만성질환:
- (xiiib) 2019 임종선택법에 따라 조력사망의 결과로 사망한 환자와 관련해 환자가 동 법률에 따른 조력사망의 결과로 사망하였다는 사실:
- (xiic) 제(xiiid)호의 대상이 되는 각 사망 사유와 관련해 사망 사유의 발병부터 사망까지 시간 간격:
- (xiiid) 2019 임종선택법에 따라 조력사망의 결과로 사망한 환자를 조력사망 대상자로 만든 만성질환의 발병부터 조력사망에 의한 사망까지 시간 간격:

1973 화장에 대한 규정 (SR 1973/154)

제7조(1)(a)에서 “or 46C(1)”를 “, 46C, or 46CA”로 대체한다

별지 1, 양식 B에서 “or 46C(1)”를 “, 46C, or 46CA”로 대체한다

별지1, 양식B에서 항목 6과 7을 다음으로 대체한다.

- 6 고인의 사망 전에 진료를 하였는가?
만일 그렇다면, 얼마나 오래 진료하였는가? [주, 개월, 연도 수를 명시한다]
- 7 고인의 사망 전에 진료를 했다면, 고인의 생전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는 언제인가? [사망 전 시간 또는 일수를 명시한다]

별지 1, 양식 B에서 항목 9(a)를 다음으로 대체한다.

- (a) 사망 또는 조력사망을 야기한 직접적인 원인(질병, 부상 또는 합병증)은 무엇인가? [명시한다]

별지 1, 양식 B에서 항목 10을 다음으로 대체한다.

- 10 조력사망 외에 사망 방법은 무엇인가? [명시한다]

별지 1, 양식 B에서 항목 14를 다음으로 대체한다.

- 14 고인의 습관과 체질을 인지하는 관점에서 볼 때 고인의 사망 사유가 의심되는가? [명시한다]

별지 1, 양식 B에서 항목 17 바로 다음 호를 다음으로 대체한다.

본인이 아는 한 상기 제공된 답이 틀림이 없는 사실이고, 본인이 아는 한 명시된 사망 원인 이외에 사망을 야기한 부분적 또는 전체적인 원인이 있어 시신을 화장해선 안 된다는 의혹을 야기할 만한 상황이 일체 없음을 인정하는 바이다.

보건장애위원회 (보건장애서비스 소비자권리법) 1996 규정 (SR 1996/78)

별지에서 5 조항 이후에 다음을 추가한다,

2019 임종선택법

- (1) 본 조항은 본 법률이 2019 임종선택법 (EOLC 법)과 어떻게 작용하는지 규정한다.
- (2) 본 규정의 권리 4(2)에 대해, EOLC 법률의 제10조(1)를 위반 시 적절한 법적 표준을 준수하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발견되거나 평가될 수 있다.
- (3) 본 규정의 권리 6(1)(b)와 (2)는 EOLC 법 제10조에 의해 무효화된다(의료 종사자는 조력사망에 대해 먼저 언급해서는 안 된다).
- (4) 본 규정의 권리 7(2) 내지 (5)는 EOLC 법률 제6조에 의해 무효화된다(조력사망에 대한 신중한 결정을 내릴 능력이 있다는 의미).
- (5) 본 규정의 조항 5에 따라 (그리고 해당 조항을 제한함이 없이) 본 규정의 어떠한 내용도 제공자로 하여금 EOLA 법률에서 부과하는 의무 및 책임을 위반하거나 EOLA 법률에서 허가한 행동을 저해하도록 허가하지 아니한다.

주

1 일반

이는 명시된 날짜부로 법률을 표시하도록 법규에 대한 개정판을 포함하는 2019 임종선택법의 통합이다.

2 법적 지위

통합은 제정되거나 통합된 제정법 및 개정판에 의해 만들어진 법률을 명시된 날짜에 정확하게 명시하도록 취한다. 이러한 추정은 반대되는 내용이 표시되지 않는 한 적용된다.

2019 제정법 제78조는 전자 버전으로 발행된 이러한 통합이 공식 버전이라고 규정한다. 공식 전자 버전에서 직접 생성된 인쇄 버전의 제정법도 공식 버전에 속한다.

3 편집 및 양식 변경 사항

연방의회사무처는 2019 제정법 제3장의 subpart 2에 의거한 권한을 이용해 이번 통합을 편집하고 양식을 변경하였다. PCO 통합판 편집 관례를 참고한다.

4 이번 통합판에 추가한 개정 내용

2021 후속 법령(2021 No 7): 제3조

뉴질랜드 웰링턴:

뉴질랜드 정부 권한으로 발행 - 2021

네덜란드

Wet toetsing levensbeëindiging op verzoek en hulp bij zelfdoding

2024.12.1. 기준 법령을 번역함

요청에 의한 안락사 및 조력자살 심의에 관한 법률

2021년 10월 1일부터 현재까지 유효.

원제 및 서문

제1장. 정의

제1조

이 법의 목적상, 다음의 정의가 적용된다.

- a. 장관: 법무부 장관, 보건복지체육부 장관
- b. 조력자살: 형법 제294조 제2항 제2호에 명시된 바에 따라 다른 사람의 자살을 고의로 돕거나 자살할 수단을 제공하는 행위
- c. 담당의사: 신고에 따라서 요청에 의한 안락사 또는 조력자살을 제공한 의사;
- d. 자문의사: 요청에 의한 안락사 또는 조력자살에 대하여 담당의사가 자문을 구하는 의사;
- e. 의료 서비스 제공자: 민법 제7장 제446조 제1항에 정의된 의료 서비스 제공자
- f. 위원회: 이하 제3조에 명시된 지역심의위원회

제2장. 주의 의무 요건

제2조

- 1 형법 제293조 제2항에 명시된 바에 따라, 담당 의사는 다음의 주의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X.2

- a. 환자의 요청이 자발적이고 충분히 숙고한 요청이었음을 확신하고;
 - b. 환자가 치료할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신하고;
 - c. 환자의 상태 및 예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 d. 환자가 자신의 상황에 비춰 합리적인 대안이 없다는 확신에 이르러야 하고;
 - e. 환자를 검진하고 a.~d.에 명시된 주의의무 요건에 대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최소한 한 명 이상의 다른 독립된 의사와 협의해야 하고;
 - f. 의학적 조치를 통해 안락사 또는 조력자살을 제공해야 한다.
- 2 만 16세 이상의 환자가 더 이상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에 되었으나, 현재 상태에 도달하기 전에 자신의 이해(利害)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안락사 요청을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의사는 이 요청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항에 명시된 정당한 주의의무 요건이 준용된다.
- 3 환자가 만16세에서 만18세 사이의 미성년자이고 자신의 이해(利害)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간주되는 경우, 의사는 환자의 안락사 또는 조력자살 요청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다만, 환자의 부 또는 모, 친권자인 부모 또는 후견인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 4 환자가 만 12세에서 만 16세 사이의 미성년자이고 자신의 이익에 대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간주될 때, 의사는 환자의 안락사 또는 조력자살 요청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다만 환자의 부 또는 모, 친권자인 부모 또는 후견인이 안락사 또는 조력자살에 동의하여야 한다. 제2항이 준용된다.

제3장. 요청에 의한 안락사 및 조력자살에 관한 지역심의위원회

제1절: 설립, 구성 및 임명

제3조

- 1 형법 제293조제2항 및 제29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안락사 및 조력자살에 관하여 보고된 사안들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역위원회를 설립한다.
- 2 위원회는 최소한 위원장을 겸하는 위원인 법률전문가 1인, 의사 1인, 윤리 또는 철학영역의 전문가 1인이 포함된 홀수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앞에서 열거한 각 분야의 대체위원도 포함해야 한다.

제4조

- 1 위원장, 위원 및 대체위원의 임기는 4년이고 장관이 임명한다. 4년의 임기동안 한번 연임할 수 있다.
- 2 위원회는 장관이 임명한 사무국장 및 1인 이상의 사무차장을 두며, 모두 법학자로 장관이 임명한다. 사무국장은 위원회 회의에서 자문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사무국장 및 사무차장의 직무 수행을 더 이상 수행하지 않는 시점에 임기는 자동적으로 종료된다.
- 3 사무국장은 위원회 사무에 관하여 위원회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진다.

제2절: 해임

제5조

위원장, 위원 및 대체 위원은 상기 장관들의 요청에 따라 언제든지 해임될 수 있다.

제6조

상기 장관들은 무능력, 자격 미달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장, 위원 및 대체 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제3절: 보수

제7조

- 1 상기 제4조~제6조를 침해하지 않고, 보수에 관한 규칙을 포함하여, 위원장의 법적 지위에 관한 규정은 일반 행정명령에 의해 또는 그에 따라 정한다.
- 2 상기 규정은 각각의 위원장이 수행해야 하는 업무의 성격과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제4절: 의무 및 권한

제8조

- 1 위원회는 장례법(Wet op de lijkbezorging) 제7조제2항에 관한 보고에 근거하여 담당의사가 제2조의 주의의무요건에 따라서 요청에 의한 안락사 및 조력자살을 행하였는지 평가한다.

X.4

- 2 위원회는 담당의사의 행위의 적절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담당의사에게 그의 보고를 구두 또는 서면으로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3 위원회는 담당의사의 행위의 적절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시의 검시관, 자문의사 및 관련 의료진에게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 1 위원회는 제8조제1항의 보고를 받은 후 6주 내로 그 심의한 결정을 담당의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 2 위원회는 그 결정이 다음 각 호와 같을 때 이를 검찰과 의료 및 청소년 감찰관(Inspectie Gezondheidszorg en Jeugd)에게 보고한다.
 - a. 담당의사는 제2조에 규정된 주의의무요건을 지키지 않았다고 위원회가 결정한 경우
 - b. 장례법 제12조 후문의 규정에 관련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위원회는 이를 담당의사에게도 통지한다.
- 3 제1항의 기한은 최대 6주까지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를 담당의사에게 통지한다.
- 4 위원회는 담당의사에게 판단 내용을 구두로 설명할 권한이 있다. 구두설명은 위원회 또는 담당의사의 요청에 의해 제공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는 검사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요청이 있으면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 1°. 제9조 제2항에 관한 사안에서 담당의사의 행위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 또는
- 2°. 범죄수사 목적

위원회는 검사에게 제공된 정보에 관하여 담당의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6절: 심의절차

제11조

위원회는 모든 요청에 의한 안락사 및 조력자살의 보고된 사안에 관하여 기록을 남길 책임이 있다. 이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주무장관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

- 1 위원회는 결정을 단순 다수결로 채택한다.
- 2 상기 제3조제2항 첫 문장에 언급된 전문 분야 중 하나를 대표하는 3명의 위원이 결정한다.

제13조

지역심의위원회의 위원장들은 위원회의 절차 및 기능에 관하여 논의하기 위해 최소 연 2회 이상 회합한다. 각 전문 분야의 다른 위원들을 대표하여 의사와 생명윤리 전문가를 회의에 참여하게 한다.

제7절: 비밀유지 및 면제

제14조

관련 법령에서 공개를 요구하거나 직무 수행을 위해 공개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의 위원과 대체 위원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제15조

판단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사실이나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에 사건을 처리하는 위원은 이를 회피해야 하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16조

위원, 대체 위원 및 위원회 간사는 안락사 및 조력자살을 제공하려는 의사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서는 안된다.

X.6

제8절: 보고

제17조

- 1 매년 4월 1일까지 위원회는 주무장관에게 위원회의 전년도 활동에 관한 연차 보고서를 제출한다. 주무장관은 시행규칙으로 보고서의 형식을 정한다.
- 2 제1항의 연차보고서는 최소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담고 있어야 한다.:
 - a. 위원회가 보고받고 평가한 요청에 의한 안락사 및 조력자살 사건의 수;
 - b. 각 사건의 특징;
 - c. 결정과 심의된 사항

제18조

주무장관은 예산을 제출할 때마다 제17조 제1항에 명시된 연차보고서를 근거로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 보고한다.

제19조

- 1 주무장관의 추천에 따라 일반 행정명령으로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정한다.
 - a. 위원 및 각각의 권한
 - b. 위치.
- 2 일반 행정 명령에 의해, 주무장관은 위원회에 관한 추가 규정을 정할 수 있다.
 - a. 위원회의 규모 및 구성;
 - b. 업무절차 및 보고
 - c. 검찰청 대표 및 의료 및 청소년 감찰관 대표와의 협의

제3a장. Bonaire, Sint Eustatius 및 Saba

제19a조

이 법은 이 장의 규정에 따라 Bonaire, Sint Eustatius 및 Saba의 공공 기관에도 적용된다.

제19b조

1 다음의 목적을 위해:

- 제1조 b항을 수정하여 “형법 제294조 제2항 제2호”를 “BES 형법 제307조 제2항 제2호”로 대체한다.
- 제1조 f항을 수정하여 “제3조에 명시된 지역심의위원회”를 “제19c조에 명시된 위원회”로 대체한다.
- 제2조 제1항 서문을 수정하여 “형법 제293조 제2항”을 “BES 형법 제306조 제2항”으로 대체한다.
- 제8조 제1항을 수정하여 “장례법 제7조 제2항”을 “BES 사망신고법 제1조 제3항”으로 대체한다.
- 제8조 제 3항을 폐지한다: “또는 관련 의료 서비스 제공자.”
- 제9조 제2항 서문을 수정하여 “검찰총장”을 “검찰”로 대체한다.

2 제1조 e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c조

제3조 제1항과 별도로, 상기 장관들이 지정하는 위원회는 BES 형법 제306조 제2항 및 제307조 제2항 제2호에 명시된 바에 따라 요청에 의한 안락사 및 조력자살에 관한 보고서를 검토할 권한이 있다.

제19d조

제13조에 명시된 협의에는 제19c조에 명시된 위원회의 위원장이 참여한다.

제4장. 기타 법률 개정

제20조

[Ed.: 형법 개정.]

제21조

[Ed.: 장례법 개정.]

X.8

제22조

[Ed.: 일반 행정법 개정.]

제5장 최종 조항

제23조

이 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4조

이 법은 다음과 같이 인용된다: 요청에 의한 안락사 및 조력자살 심의에 관한 법률.

벨기에

Loi relative à l'euthanasie

2024.12.1. 기준 법령을 번역함

2002년 5월 28일 - 안락사에 관한 법률

(참고: 2002년 6월 22일부터의 이전 버전 및 2024년 3월 29일까지의 업데이트 포함)

전문

제1조. 본 법은 헌법 제78조에 규정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장 - 일반규정.

제2조. 본 법에서 안락사란 제3자가 본인의 요청에 따라 고의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종료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제3장 - 조건 및 절차.

제3조. §1. 안락사를 수행하는 의사는 다음을 확인한 경우 위법행위를 범한 것이 아니다:

- [¹ 환자가 성년 또는 친권이 해제되었거나, 능력이 있거나 사리 분별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이며 요청 당시 의식이 있는 경우] ¹

- 요청이 자발적이며, 심사숙고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외부 압력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

- 환자 [¹ 성년 또는 친권이 해제된 미성년자] ¹가 절망적인 의료 상황에 처해 있고, 완화할 수 없는 지속적이고 견딜 수 없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이는 심각하고 치료 불가능한 사고 또는 병리적 상태의 결과인 경우

[¹ 사리 분별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인 환자가 완화할 수 없는 지속적이고 견딜 수 없는 신체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가까운 시기에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절망적인 의료 상황에 처해 있고, 이는 심각하고 치료 불가능한 사고 또는 병리적 상태의 결과인 경우] ¹

그리고 본 법에서 규정하는 조건과 절차를 준수하는 경우

§2. 의사가 자신의 처치에 부과되는 추가 조건을 침해하지 않고, 모든 경우에 다음을 사전에 수행해야 한다:

1° 환자에게 건강 상태와 기대 수명을 알리고, 안락사 요청에 대해 환자와 상의하며, 환자와 함께 아직 가능한 치료 가능성과 완화의료 가능성 및 그 결과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환자와 함께 환자의 상황에서 다른 합리적인 해결책이 없으며 환자의 요청이 전적으로 자발적인 것임을 확신해야 한다.

2° 환자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이 지속적이고 환자의 의사가 반복적으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한다. 이를 위해 환자의 상태의 진행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시간 간격을 두고 환자와 여러 차례 면담을 실시한다.

3° 진료 사유를 명시해서 질환의 심각하고 치료 불가능성에 대해 다른 의사와 상담한다. 자문의사는 의료 파일을 확인하고 환자를 진찰한 후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이 지속적이고 견딜 수 없는 상태인지 확인한다. 그는 자신의 진찰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한다.

자문의사는 환자와 주치의사 모두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하며 해당 병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주치의사는 이 상담 결과를 환자에게 알려야 한다.

4° 환자와 정기적으로 접촉하는 의료팀이 있는 경우, 해당 의료팀 또는 그 구성원들은 환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논의한다.

5° 환자가 원할 경우 환자가 지정한 가까운 친인척과 환자의 요청에 대해 논의한다.

6° 환자가 만나고 싶은 사람과 자신의 요청에 대해 논의할 기회를 가졌는지 확인한다.

[¹ 7° 또한, 환자가 친권이 해제되지 않은 미성년자인 경우, 상담 이유를 명시하여 아동정신과 의사 또는 심리학자와 상담한다.

자문의사는 의료 파일을 확인하고, 환자를 진찰해서, 미성년자가 사리 분별 능력이 있는지 확인한 후 이에 대한 서면 증명서를 작성한다.

주치의사는 이 진료 상담 결과를 환자와 법정대리인에게 통보한다.

주치의사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과 면담하여 §2, 1°에 규정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요청에 동의하는지 확인한다] ¹.

§3. 의사가 [¹성년 또는 친권이 해제된 미성년 환자의] ¹ 사망이 가까운 시기에 발생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의사는 추가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상담 이유를 명시하여 정신과 의사 또는 관련 병리학 전문 두 번째 의사와 상담한다. 자문의사는 의료 파일을 확인하고 환자를 진찰해서,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이 지속적이고 견딜 수 없으며 참을 수 없는지, 요청이 자발적이며, 심사숙고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한다. 의사는 진료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한다. 자문의사는 환자와 주치의사 모두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 주치의사는 이 상담 결과를 환자에게 알려야 한다.

2° 환자의 서면 요청과 안락사 사이에 최소 1개월이 경과해야 한다.

§4. [1° 환자의 요청과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1° 환자가 직접 문서를 작성해서 날짜를 기재한 후 서명날인해야 한다. 환자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 환자의 사망과 실질적 이해관계가 없는 환자가 선택한 성년이 환자의 요청을 서면으로 작성한다.

이 사람은 환자가 서면으로 요청을 공식화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그 이유를 명시한다. 이 경우 의사의 입회 하에 요청은 서면으로 작성하며, 해당 사람은 문서에 이 의사의 이름을 언급한다. 이 문서는 환자의 의료 파일에 보관해야 한다.

환자는 언제든지 요청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문서는 의료 파일에서 삭제되어 환자에게 반환된다.

[1° §4/1. 의사가 환자의 요청을 처리하면, 관련자에 대한 심리적 지원이 가능하다.] 1°

§5 환자의 모든 요청과 주치의사가 취한 조치 및 그 결과 (자문의사(들)의 보고서 포함)는 환자의 의료 파일에 정기적으로 기록된다.

(1) <법 L 2014-02-28/03, 제2조, 003, 시행일: 2014-03-22>

제3-2조. <법 L 2005-11-10/68, 제2조에 의하여 삽입, 시행일: 2005-12-23> 안락사 물질을 조제하는 약사는 의사가 본 법에 따른 것임을 명시적으로 명시한 처방전에 근거하여 조제하는 경우에는 위법행위를 범한 것이 아니다.

약사는 처방에 따라 안락사 약물을 의사에게 직접 공급한다. 국왕은 안락사 물질로 사용되는 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에 필요한 신중성의 기준과 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국왕은 일반인에게 대중 서비스를 하는 약국을 포함하여 안락사 물질의 사용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3조. [1° 제3조, §2, 3° 및 7°, §3, 1° 또는 제4조, §2, 2항, 1°의 적용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한 의사 또는 심리학자는 이 행위만으로 제13/3조에 규정된 범죄의 가해자

또는 가담자로서 처벌받지 아니한다.]¹

(¹) <법 L 2024-03-27/02, 제134조, 008에 의해 삽입, 시행일: 2024-04-08>

제III장 - 사전선언서

제4조. §1. 성년 또는 친권이 해제된 미성년자가 더 이상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경우, 의사가 다음과 같이 판단하는 경우 의사에게 안락사를 시행하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선언서에 서면으로 기록할 수 있다:

- 환자가 심각하고 치료 불가능한 병리학적 혹은 사고에 의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 상태인 경우
- 의식이 없는 경우
- 현재 과학 수준에서 이 상황을 되돌릴 수 없는 경우

선언서에 환자의 의사를 주치의의사에게 알릴 신뢰할 수 있는 성년인 조력인 한 명 이상을 우선순위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각 신뢰할 수 있는 조력인은 거부, 장애사유, 불가항력 또는 사망 시 선언서에서 앞선 조력인을 대신한다. 환자의 주치의사, 자문의사, 의료진의 구성원은 신뢰할 수 있는 조력인으로 지정될 수 없다.

언제든지 사전선언을 할 수 있다. 선언인이 반드시 적어도 한 명은 선언인의 사망과 물질적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는 성년인 증인 2명이 입회 하에 서면으로 선언서를 작성해서 증인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조력인(들)과 함께 서명 날인한다.

사전선언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사전선언서를 작성하고 서명할 수 없는 경우, 사전선언인의 사망과 물질적 이해관계가 없는 그 선언인이 선택한 성년인 증인 2인의 입회 하에 사전선언서를 작성해서 서명하며, 최소한 증인 2인 중 1인은 선언인의 사망과 물질적 이해관계가 없어야 한다. 선언서에 신고자가 작성 및 서명을 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그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선언서에 선언을 서면으로 작성한 당사자, 증인 및 해당되는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해야 한다.

선언서에는 영구적으로 신체적 불능을 증명하는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¹ 선언서는 무기한 유효하다]¹

선언서는 언제든지 철회되거나 수정될 수 있다.

국왕은 국가 호적부서를 통해 담당 의사에게 선언서의 제시, 보존, 확인, 철회 및 제출과 관련된 절차를 정한다.

§2. §1에 규정된 사전선언서에 따라 안락사를 시행한 의사는 환자에 대한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위법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 심각하고 치료 불가능한 사고 또는 병적 상태를 앓고 있는 경우
- 의식이 없는 경우
- 현재 과학 수준에서 이 상황을 되돌릴 수 없는 경우

그리고 본 법에서 규정하는 조건과 절차를 준수하는 경우

[¹ 의사는 의사 자신이 자신의 처치에 부여하고자 하는 추가 조건을 침해하지 않고, 유일한 또는 마지막으로 지명된 신뢰할 수 있는 조력인이 §1, 2항, 2호에 규정된 네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의사는 다음 사항을 먼저 수행해야 한다.]¹

1° 상담의 이유를 알리면서 환자의 의학적 상황의 회복 불가능성에 대해 다른 의사와 상담한다. 자문의사는 의료 파일을 확인하고 환자를 진찰해야 한다. 의사는 진료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한다. 의사 선언서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 주치의사는 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상담 결과를 알려야 한다.

자문의사는 환자와 주치의사 모두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하며 해당 병리 전문의사여야 한다.

2° 환자와 정기적으로 접촉하는 의료진이 있는 경우, 의료진 또는 그 구성원과 사전선언서 내용에 대하여 논의한다.

3° 사전선언서에 신뢰할 수 있는 조력인을 지정한 경우, 이 조력인과 환자의 의사를 논의한다.

4° 사전선언서에 신뢰할 수 있는 조력인을 지정한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조력인과 환자가 지명하는 친지와 환자의 사전선언서 내용에 대해 논의한다.

사전선언서 및 주치의사가 취한 모든 조치와 그 결과 (자문의사의 보고서 포함)는 환자의 의료 파일에 정기적으로 기록한다.

(¹)<법 L 2020-03-15/02, 제2조, 005, 시행일: 2020-04-02>

제IV장 – 선언서.

제5조. 안락사를 시행한 의사는 영업일 4일 이내에 제7조에 규정된 등록 서류를 정식으로 작성하여 본 법 제6조에 규정된 ‘연방 감독 및 평가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V장 – 연방 감독 및 평가 위원회.

제6조. §1. 본 법의 적용을 위한 ‘연방 감독 및 평가 위원회’ (이하 “위원회”)를 설립한다.

§2. 위원회는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임명된 1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그 중 8명의 위원은 의학박사이며, [2³ 이 중 최소 2명] 3은 벨기에 대학의 강사, 교수 또는 명예교수] 2이다.

[2 4명의 위원은 벨기에 대학의 법학 강사, 교수 또는 명예 교수] 2 또는 변호사이다. 4명의 위원은 치료될 수 없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의 문제를 다루는 분야 출신이다.

위원회의 위원은 입법부의 의원, 연방정부 또는 지역정부(언어공동체정부) 또는 지역자치단체의 위원은 될 수 없다.

위원회의 위원은 언어적 형평성 (-각 언어 그룹에 성별 후보가 3명 이상 포함-)과 다자적 대표성을 고려하여 국무회의에서 심의된 왕령에 따라 [1 하원] 1이 제시한 이중 명단에서 갱신 가능한 4년의 임기로 임명된다.

임기는 위원회 위원 자격을 상실하면 적법하게 종료된다. 정회원으로 임명되지 않은 후보자는 대체 위원으로 임명되며, 대체 위원으로 임명되는 순서는 대체 명단에 따라 결정된다. 위원회는 프랑스어권 위원장과 네덜란드어권 위원장이 의장을 맡는다. 의장들은 해당 언어 그룹에 속한 위원회 위원들이 선출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출석한 경우에만 유효하게 심의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내부 절차 규정을 작성해야 한다.

(1)〈법 L 2014-01-06/63, 제21조, 002, 시행일: 2014-05-25〉

(2)〈법 L 2016-06-16/09, 제2조, 004, 시행일: 2016-07-10〉

(3)〈법 L 2023-06-19/05, 제2조, 007, 시행일: 2023-10-09〉

제7조. [1 §1. 위원회는 안락사를 실시할 때마다 의사가 작성해야 하는 등록 문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문서에는 다음 데이터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안락사를 시행하고 선언한 의사의 성, 이름, ‘국가 건강 및 장애 보험 공단’(INAMI) 등록 번호, 주소 및 연락 정보

2° 환자의 성, 이름, 주소, 환자의 성별, 언어, 생년월일 및 출생지, 미성년 환자의

경우 친권 해제 여부

3° 환자의 사망 날짜, 장소 및 시간

4° 미성년자의 안락사에 동의한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의 성, 이름, 주소 및 법정대리인 자격

5° 자문의사(들) 및 해당되는 경우 심리학자(들)의 성, 이름, 자격, '국가 건강 및 장애 보험 공단' (INAMI) 등록 번호, 의사(들) 및 해당되는 경우 심리학자(들)이 작성한 의견서 및 상담 날짜

6° 안락사를 시행하고 선언한 의사가 상담한 모든 사람의 성, 이름, 자격 및 주소와 기관의 명칭, 자격 및 주소 그리고 상담 날짜

7° 한 명 이상의 신뢰할 수 있는 조력인을 지정하는 사전선언서가 있는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조력인의 성과 이름;

8° 안락사가 사전선언서에 근거하여 수행된 경우, 안락사 당시 환자 의식의 존재 여부

9° 제품을 조제한 약사의 성, 이름, '국가 건강 및 장애 보험 공단' (INAMI) 등록 번호 및 주소, 조제된 제품의 이름과 수량, 해당되는 경우 약사에게 반환된 초과분량

10° 안락사가 수행된 방식과 사용된 수단

11° 환자가 앓고 있던 심각하고 치료 불가능한 사고 또는 병적 상태에 대한 언급

12° 지속적이고 견딜 수 없는 신체적 및/또는 정신적 고통의 특성

13° 해당 고통이 완화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된 이유

14° 예상 사망 시간

15° 외부 압력 없이 요청이 자발적이고 신중하며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들

16° 제 4 조에 규정된 사전선언서의 존재 여부, 작성 날짜, 작성자가 환자 또는 제3자인지 여부, 또는 제 3 조, §4에 규정된 서면 요청서의 존재 여부, 작성 날짜, 작성자가 환자 또는 제3자인지 여부

17° 의사가 따른 절차

§2. 제8조, 3항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호에 규정된 등록 문서는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배치된 행정직원에게만 전달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이나 단체에 전달할 수 없다.

§3. 1호에 규정된 등록 문서에 포함된 데이터는 해당 등록 문서의 당사자가 사망한 후 20년의 기간이 만료된 후 폐기된다. 법적 절차가 개시된 경우 이 기간은 해당 법적

절차에 대한 구속력이 있는 판결이 있을 때까지 연장된다.] ¹

(¹)<법 L 2024-03-27/02, 제135조, 008, 시행일: 2024-04-08>

제8조. [¹ 위원회는 안락사를 수행한 의사가 정식으로 작성해서 제출한 등록 서류를 검토한다. 위원회는 등록 서류를 근거로 안락사가 이 법에 규정된 조건과 절차에 따라 수행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위원회는 안락사를 수행한 의사에게 안락사와 관련된 의료 파일의 모든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2개월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위원회는 3분의 2 이상의 다수결로 본 법에 규정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환자가 사망한 장소의 검사장에게 해당 서류를 보낸다.

등록 서류 심사 결과 위원회 위원의 판단의 독립성 또는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 또는 정황이 드러나는 경우 해당 위원은 해당 사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¹

(¹)<법 L 2024-03-27/02, 제136조, 008, 시행일: 2024-04-08>

제9조. 위원회는 본 법의 발효 후 처음에는 2년 이내, 그리고 그 후 2년마다 다음 사항을 준비해서 입법부에 제출한다 :

a) [¹ 제7조에 따라 접수된 등록 서류에 포함된 익명 처리된 데이터에 기초한 통계 보고서] ¹

b) 본 법의 적용에 대한 설명과 평가가 포함된 보고서

c) 적절한 경우, 본 법의 시행에 관한 입법 발의 및/또는 기타 조치로 이어질 수 있는 권고 사항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는 다양한 당국 및 기관으로부터 모든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¹ 위원회는 수집한 정보를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전달할 수 없다] ¹

이러한 문서에 제8조에 규정된 감독의 일환으로 위원회에 제출된 파일에 포함된 개인의 신원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위원회는 합당한 요청을 한 대학 연구팀에 개인정보를 제외한 통계 및 순수한 기술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¹)<법 L 2024-03-27/02, 제137조, 008, 시행일: 2024-04-08>

제10조. 국왕은 위원회가 법적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위원회 행정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행정 직원의 수와 그들의 언어 영역은 공중보건부 장관 및 법무부 장관의 제안에 따라 각료 회의에서 심의한 왕령에 의해 정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비, 인건비 및 위원들의 보수는 법무부 및 공중보건부의 예산에서 절반씩 부담한다.

[¹ 공중보건, 식품안전 및 환경 담당 연방 공공 서비스는 데이터 보호규정에 대한 제 2016/679 호 총칙 제4.7조 의미에서 제7조에 규정된 대로 접수된 등록 문서에 포함된 데이터의 처리 책임 기관이다. 이 데이터 처리 목적은 한편으로는 제8조에 규정된 안락사의 적법성을 감독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제9조에 규정된 보고서 및 권장 사항을 작성하는 것이다.] ¹

(¹)<법 L 2024-03-27/02, 제138조, 008, 시행일: 2024-04-08>

제12조. 본 법의 적용에 있어 그 자격이 무엇이든지 직무 수행을 하는 자는 직무수행에 있어 그에게 위임된 데이터 및 그 직무 수행과 관련된 데이터의 기밀을 존중해야 한다. 여기에 형법 제458조를 준용한다.

제13조. [¹ 해당되는 경우 제9조에 규정된 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첫 번째 보고서 제출 6개월 이내에 하원은 해당 사안에 대한 토론을 개최해야 한다. 이 6개월의 기간은 하원이 해산 및/또는 하원의 신임을 얻은 정부가 없는 기간 동안 정지된다.] ¹

(¹)<법 L 2014-01-06/63, 제22조, 002, 시행일: 2014-05-25>

제V/1장 [¹ - 재정규정.] ¹

(¹)<법 L 2022-05-18/08, 제148조, 006에 의해 삽입; 시행일: 2022-06-09>

XI.10

제13/1조. [1 국왕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명령으로 안락사를 시행하는 의사에 대한 보상을 정할 수 있다.

국왕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명령으로 그 보상의 금액, 조건 및 지급에 관한 규칙을 정할 수 있다.] 1

(1)<법 L 2022-05-18/08, 제148조, 006에 의해 삽입, 시행일: 2022-06-09>

제13/2조. [1 급여 비용은 ‘국가 건강 및 장애 보험 공단’ (INAMI)의 전체 의료 보험 연간 예산에 포함된다.] 1

(1)<법 L 2024-03-27/02, 제148조, 006에 의해 삽입; 시행일: 2022-06-09>

제V/2장 [1 - 형사규정.] 1

(1)<법 L 2024-03-27/02, 제139조, 008에 의해 삽입; 시행일: 2024-04-08>

제13/3조. [1 §1. 안락사를 시행한 의사가 제3조, §1, 3, 4, 또는 제4조, §2, 1항, 1에서 3에 규정된 기본 조건 중 하나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10년 내지 15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2. 안락사를 시행한 의사가 제3조, §2, 3°, 7°, 그리고 §3, 1°, 또는 제4조, §2, 2항, 1°에 규정된 절차적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8일에서 3년의 징역 및 26에서 1,000유로의 벌금형으로 처벌되거나 이 중 하나의 형벌로 처벌될 수 있다.

정상 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 징역형, 노역형, 자율보호관찰형은 각각 8일, 45시간, 12개월, 벌금은 26유로 미만으로 감경될 수 있지만 경범죄 형량보다 낮을 수는 없다. 판사는 이러한 벌금 중 하나를 별도로 적용할 수도 있다.

§3. 형법 제I권, 특히 제VII장 및 제85조의 규정은 본 조에 의해 도입된 형사 처벌에 적용된다.] 1

(1)<법 L 2024-03-27/02, 제140조, 008로 삽입, 시행일: 2024-04-08>

제VI장 - 특별규정.

제14조. 본 법 제3조 및 제4조에 규정된 요청 및 의사 사전선언서는 구속력이 없다.

의사는 안락사를 시행할 의무가 없다.

다른 사람은 안락사에 참여할 의무가 없다.

[¹ 어떠한 서면 또는 비문서 조항도 의사가 법이 정한 조건 하에서 안락사를 수행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¹

[¹ 자문의사가 양심의 자유에 근거하여 안락사 수행을 거부하는 경우, 요청이 처음 이루어진 후 7일 이내에 적절한 시기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 해당 의사는 환자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조력인에게 알려야 하며, 환자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조력인이 지정하는 다른 의사에게 의뢰해야 한다.

자문의사가 의학적 사유로 안락사 시행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환자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조력인에게 적절한 시일 내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의학적 사유는 환자의 의료 파일에 기록한다.] ¹

[¹ 안락사 요청을 거부하는 의사는 모든 경우에 환자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조력인에게 안락사 전문 센터 또는 협회의 연락처를 알려야 하며, 환자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조력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4일 이내에 환자의 의무기록을 환자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조력인이 지정하는 의사에게 전달할 의무가 있다.] ¹

(¹)〈법 L 2020-03-15/02, 제2조, 005, 시행일: 2020-04-02〉

제15조. 본 법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안락사의 결과로 사망한 사람은 그가 당사자였던 계약, 특히 보험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자연사로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다.

민법 제909조의 규정은 제3조에 규정된 의료팀의 구성원에게 적용된다.

제16조. 본 법은 관보에 공표된 후 3개월 이내에 발효한다.

룩셈부르크

Loi du 16 mars 2009 sur l'euthanasie et l'assistance au suicide

2024.12.1. 기준 법령을 번역함

안락사 및 조력자살에 관한 2009년 03월 16일 법

양리, 룩셈부르크 대공, 나소 (Nassau) 공작은,
국사원의 의견을 듣고,
의회의 동의를 얻어,
2008년 12월 18일의 의회의 결정과 2008년 12월 19일의 국사원의 결정에 따라 재의결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음을 명령하고 제정한다:

제장 - 일반 조항

제1조. 법의 목적상 의사에 의해 행해지는 안락사는 명백하고 자발적인 요청에 따라
의도적으로 사람의 삶을 종료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조력자살은 의사가 명백하고 자발적인 요청에 따라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의 자살을
돕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 II 장 - 안락사 또는 조력자살의 요청, 조건 및 절차

제2조. 1. 안락사 또는 조력자살 요청에 응한 의사는 아래의 조건이 충족될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1) 환자가 성년이며, 요청 당시 의식이 있어야 한다.
- 2) 요청은 자발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많은 숙고 끝에, 외부의
압력에서 비롯되지 않아야 한다.
- 3) 환자는 가망이 없는 의학적 상태에 있으며, 사고 혹은 병리학적 질병으로 인한
견딜 수 없고 지속적인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가진 상태이다.
- 4) 안락사나 조력자살에 대한 환자의 요구가 서면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XII.2

2. 모든 경우에 안락사 또는 조력자살을 시행하기 전에 의사는 다음과 같은 형식적 및 절차적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 1) 안락사 또는 조력자살에 대한 요청에 대해 환자와 상담하며, 환자에게 건강 상태와 기대수명에 대해 알려야 한다. 또한, 가능한 치료와 완화의료 제공 가능성, 치료 결과에 대해 말한다. 환자의 요구가 자발적이며, 환자 스스로 자신의 상황에서 다른 수용 가능한 대안이 없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상담 내용은 의무기록에 기록되어야 하며, 제공된 정보의 증거로 간주된다.
- 2) 환자의 정신적, 신체적 고통의 지속과 반복된 의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의사는 환자의 상태 변화를 고려하여 합리적 시간 간격을 두고 환자와 여러 번 상담해야 한다.
- 3) 환자가 가진 병의 심각성과 치료할 수 없는 상태에 대해 다른 의사에게 자문하고, 자문의 사유를 분명하게 한다. 자문의사는 환자의 의무기록을 검토하고, 환자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이 개선될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상태임을 확인해야 한다. 자문의사는 진찰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자문의사는 환자와 주치의 모두에게 공정해야 하며, 관련 병리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주치의는 상담 결과를 환자에게 알려야 한다.
- 4) 환자가 반대하지 않는 한, 정기적으로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 또는 그 구성원과 환자의 요청에 대해 논의한다.
- 5) 환자가 반대하지 않는 한, 환자가 임종지시서, 안락사 또는 조력자살 요청 시 환자가 지정한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그의 요청 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 6) 환자가 만나고 싶은 사람과 자신의 요청에 대해 논의할 기회를 가졌는지 확인한다.
- 7) 환자의 임종기 조치 내용이 등록되어 있다면 이를 국가감독평가위원회에 알린다.

환자의 요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서류는 환자 본인이 직접 작성, 날짜 기재, 서명해야 한다. 환자가 요청사항을 작성 및 서명하는데 신체적으로 영구적인 불가능한 상황에 있다면, 환자가 지정한 사람(성년)에 의해 작성될 수 있다.

지정된 자는 환자가 직접 서면으로 요청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그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은 서면으로 기록되고, 요청서는 주치의의 입회하에 환자 또는 환자가 지정하여 요청한 사람이 작성 및 서명하여야 한다. 입회한 주치의의 성명 또한 포함되어야 한다. 해당 문서는 의무기록에 첨부되어야 한다.

환자는 언제든지 요청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문서는 의무기록에서 삭제되고 환자에게 반환된다.

환자가 제시한 모든 요청과 주치의의 수행 절차, 자문의사 보고서를 포함한 상담 결과는 환자의 의무기록에 정기적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제3조. 주치의는 필요한 경우에, 본인이 선택한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문 내용 및 개입에 관한 증명 서류를 환자 의무기록에 첨부한다. 의학적 평가인 경우 해당 의견서 또는 증명서를 환자의 파일에 기록한다.

제III장 - 임종지시서

제4조. 1. 법적 권한이 있는 성인인 환자가 더 이상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의사가 다음과 같이 판단하는 경우 안락사를 원하는 상황과 조건을 임종지시서에 서면으로 명시할 수 있다:

- 심각하고, 치유할 수 없는, 사고로 인한 혹은 병리학적 상태에 있고,
- 의식이 없으며,
- 현재 과학 수준으로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

임종지시서에는 요청하는 자가 장례 방법 및 장례를 위해 준비할 사항 등에 대한 특별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임종지시서에서, 요청하는 사람은 신뢰할 수 있는 성년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 조력인은 주치의에게 요청하는 사람에 대한 자발적 의사를 알린다.

임종지시서는 언제든지 작성할 수 있으며, 반드시 서면으로 기록하고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해야 한다.

2. 임종지시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자가 작성 및 서명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인 경우, 임종지시는 요청자가 지정한 성년에 의해 서면으로 작성될 수 있다. 임종지시서는 성년인 증인 2명이 참석한 가운데 작성되어야 한다. 임종지시서에 요청자가 작성 및 서명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그 이유를 언급해야 한다. 임종지시서에는 서면으로 작성한 사람, 증인 및 필요한 경우 요청자가 신뢰하는 사람이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해야 한다.

영구적인 신체적 불가능성을 증명하는 의학적 서류가 함께 첨부되어야 한다.

임종지시서는 임종지시서를 체계적으로 등록하는 국가감독평가위원회 공식 시스템에 등록된다. 임종지시서는 언제든지 반복, 철회 또는 수정될 수 있다.

국가감독평가위원회는 등록 신청일로부터 5년에 한 번, 요청자에게 내용 변경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요청자의 모든 변경사항은 국가감독평가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단, 다음 제4조3.에 따른 조치 결과로, 요청자가 안락사에 대한 자신의 요청을 철회하고자 하는 것을 의사가 알게 된 경우, 의사는 안락사를 시행할 수 없다.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또는 절망적인 의료 상황에 처한 환자를 치료하는 모든 의사는 환자를 대신하여 임종지시서를 등록한 경우에는, 이를 국가감독평가위원회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임종지시서의 등록 및 임종 과정에 있는 사람의 주치의의 임종지시서 열람과 그 관련 절차는 대공 규정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이 규정은 요청인이 사용할 수 있는 임종지시서 양식을 제안할 수 있다.

3. 제4조1. 및 2.에 규정된 임종지시서에 따라 안락사를 시행하고, 아래 사항을 확인한 의사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며, 의사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심각하고, 치유할 수 없는, 사고로 인한 혹은 병리학적 상태에 있고,
- 의식이 없으며,
- 현재 과학 수준으로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

의사는 안락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모든 경우에 다음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1) 다른 의사에게 상담의 이유를 분명히 하고, 환자가 가진 병의 심각성과 치료할 수 없는 상태에 대해 자문한다. 자문의사는 환자의 의무기록을 검토하고, 환자를 진찰한다. 자문의사는 자신의 의견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주치의는 환자가 지정한 신뢰하는 사람에게 자문 결과를 알린다. 자문의사는 환자와 주치의 모두에게 공정해야 하며, 관련 병리에 대해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 2) 환자를 정기적으로 돌보는 의료진이 있는 경우, 의료진 또는 구성원과 임종지시서에 대해 논의한다.
- 3) 임종지시서에 환자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한 경우, 환자의 요청에 대해 논의하여야 한다.
- 4) 임종지시서에 환자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한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지정한 환자의 친인척과 환자의 요청에 대해 논의하여야 한다.

주치의가 수행한 모든 절차와 자문의사 보고서를 포함한 그 결과는 환자의 의무기록에 기록되어야 한다.

제IV장 – 공식 선언

제5조. 안락사 또는 조력자살을 시행한 의사는 이 법 제7조에 언급된 등록 서류를 작성하여 8일 이내에 제6조에 규정된 국가감독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V장 – 국가감독평가위원회

제6조. 1. 이 법의 적용을 위하여, 국가감독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2. 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회의 권한에 해당하는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구성된다.

위원 중 3명은 의학 박사여야 한다. 한명의 위원은 의사회(Collège médical)에서 추천한다. 가장 대표적인 의사 및 치과의사 조직에서 2명의 위원을 추천하고, 이 중 한 명은 통증 관리에 대한 자격과 경험이 있어야 한다.

세 명의 위원은 법률가이며, 변호사 협회가 추천한 변호사, 대법원(Cour supérieure de Justice)이 추천한 판사 및 룩셈부르크 대학교 법학교수이다.

한 명의 위원은 보건 전문가이며, 보건 전문 관련 최고 위원회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두 명의 위원은 환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단체의 대표여야 한다.

위원은 대공(Grand-Duc)에 의해 3년의 임기로 임명되며, 3회 연임할 수 있다.

앞의 각 위원에 대하여 각 호의 조건 및 실제 위원을 지정하는 규정에 따라 대체위원 1명을 지정한다. <2021년 개정>

위원회의 위원 자격은 국회의원 직무 또는 정부, 국무위원의 위원 자격과 양립할 수 없다. 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 최소 7명 이상이 출석해야만 심의가 유효하다. 위원회는 단순 다수결로 결정을 내린다.

3. 위원회는 내규를 제정한다.

제7조. 위원회는 안락사가 시행될 때마다 의사가 작성해야 하는 문서를 확립해야 한다.

해당 문서는 두 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부분은 의사가 날인해야 한다. 작성 내용은 다음과 같다:

XII.6

- 환자 성명, 주소
- 주치의 성명, 의사 번호, 주소
- 안락사 및 조력자살 요청과 관련하여 상담을 수행한 자문의사(들)의 성명, 의사 번호, 주소
- 주치의가 상담한 모든 사람의 성명, 주소, 직업 및 상담일
- 만약 임종지시서가 있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였다면, 관련하여 개입된 사람의 성명

첫 번째 부분은 기밀사항이며, 의사가 위원회에 전달한다. 이 서류는 다음 항에 언급된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진 후에 열람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평가를 위한 자료로 사용될 수 없다.

두 번째 부분 역시 기밀이며,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한다:

- 임종지시서, 안락사, 조력자살 요청 확인
- 환자의 나이 및 성별
- 환자의 심각하고 치료할 수 없는 병적 상태에 대한 언급
- 지속적이고 견딜 수 없는 고통에 대한 언급
- 고통이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받아들여진 이유
- 외부의 압력 없이 자발적 결정이며, 충분히 숙고하였으며, 반복적으로 요청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는 요소 언급
- 의사가 수행한 절차
- 자문의사의 자격, 자문일 및 자문내용
- 주치의가 상담한 사람의 신분, 상담일 및 상담내용
- 주치의가 안락사 및 조력자살을 수행한 구체적 상황 및 수단

제8조. 위원회는 의사가 보고한 문서를 검토해야 한다. 위원회는 문서의 두 번째 부분에 근거하여 의사가 법에 규정된 조건과 절차를 따랐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에 의문이 있는 경우, 최소한 7명으로 구성된 위원들이 단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익명성 해제를 결정할 수 있으며, 첫 번째 부분의 서류를 열람·검토할 수 있다. 위원회는 주치의에게 안락사와 관련된 환자 의무기록의 모든 부분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두 달 이내 결정을 내려야한다.

위원회는 최소한 7명의 위원 중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 법 제2조2.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 그 사유를 주치의에게 통보하고, 사유서 및 결정 서류 사본을 룩셈부르크(Luxembourg) 의사회(Collège médical)에 보내야한다. 이 경우, 의사회는 한 달 이내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의사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는 이 법 제2조1.에 규정된 조건 중 하나라도 준수되지 않았을 경우 검찰에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회는 본 법의 발효 후 2 년 이내에 처음, 그리고 그 후 2 년마다 의회를 위해서 다음을 작성해야 한다:

- a) 의사가 제 8 조에 따라 작성한 등록 서류의 두 번째 부분에서 수집한 정보를 기반으로 한 통계 보고서
- b) 본 법의 적용에 대한 설명 및 평가가 포함된 보고서
- c) 필요한 경우, 본 법의 시행에 관한 입법 발의 및/또는 기타 조치로 이어질 수 있는 권고 사항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는 다양한 당국 및 기관으로부터 모든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위원회가 수집한 정보는 기밀로 유지된다.

제8조에 규정된 감독의 일환으로 위원회에 제출된 어떤 문서에도 개인의 신원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위원회는 이유 있는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팀에게 개인정보를 제외한 통계 및 단순 기술 정보를 전달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정부 행정부서에 행정 직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국가감독평가위원회의 운영 비용은 국가 예산으로 부담한다.

제12조. 본 법의 적용에 있어서 그 자격이 무엇이든 이를 보조하는 자는 그 임무 수행에 있어서 위탁 받은 자료 및 그 직무수행과 관련된 자료의 기밀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3조. 첫 번째 보고서 및 해당되는 경우 제 9 조에 언급된 위원회의 권고가 제출된 후 6개월 이내에 의회는 해당 사안에 대한 심의를 해야 한다. 이 6개월의 기간은 의회 해산 기간 및/또는 의회의 신임을 받은 정부가 부재하는 기간 동안에는 유예된다.

제VI장 - 개정된 조항

제14조. 형법에 다음 조항 397-1이 새롭게 도입된다:

《형법 제397-1조. 의사가 2009년 3월 16일 안락사 및 조력자살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에 따라 안락사 또는 조력자살 요청에 응한 경우, 이 조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VII장 - 특별 조항

제15조. 1. 의사는 안락사나 조력자살을 수행할 의무가 없다. 다른 어떤 사람도 안락사 또는 조력자살에 참여하도록 강요받을 수 없다. 만약, 의사가 환자의 안락사 또는 조력자살을 거부하면 24시간 이내 이를 환자 및/또는 환자가 지정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안락사 또는 조력자살을 거부한 의사는 환자의 의무기록을 환자 또는 환자가 지정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요청에 따라, 그들이 지정한 의사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2.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안락사 또는 조력자살의 결과로 사망한 사람은 그가 당사자였던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자연사로 사망한 것으로 본다. <2021년 개정>

제VIII장 - 경과 규정

제16조. 보건부 장관은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에 따라 본 법의 적용을 위해 예산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2명의 직원을 고용할 수 있다.

본 법을 관보에 공포하고 모든 관계자에게 이행하고 준수할 것을 요청하고 명령한다.

스페인

Ley Orgánica 3/2021, de 24 de
marzo, de regulación de la eutanasia

2024.12.1. 기준 법령을 번역함

I. 일반 조항

국가 원수

4628 안락사 규제에 관한 3월 24일자 기본법 3/2021

펠리페 6세

스페인 국왕

본 문서를 보는 모든 이들에게.
의회에서 승인하였으며, 나는 다음과 같은 기본법을 승인함을 알립니다:

전문

I

본 법은 안락사와 같은 오늘날 사회의 지속적인 요구에 대하여 합법적이고 체계적이며 균형적이고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수호하는 응답을 제공하고자 한다.

안락사는 어원적으로 ‘안락한 죽음’을 의미하며 고통을 피하기 위해 개인 자신의 명백한 의지에 따라 의도적으로 생명을 끝내는 고의적인 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 오늘날 우리의 생명윤리적 및 형법적 교리에서는 ‘안락사’라는 용어의 사용을 적극적이고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안락사로 제한하는 데에 폭넓은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따라서 소극적 안락사 (생명 연장을 목적으로 하는 치료를 채택하지 않고 임상 실무 지침에 따라 이미 확립된 치료법을 중단)로 명명되는 부작위 행위, 간접적인 적극적 안락사 (-완화의료- 환자의 죽음을 가속화하더라도 심리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경감시키는 약물 또는 치료 수단의 사용)로 간주될 수 있는 행위는 안락사의 생명윤리적 및 법적-형사법적 개념에서 제외되어 왔다.

생명윤리와 법률의 관점에서 안락사에 관한 논쟁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나라 및 주변 국가의 학계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확산되어 왔으며, 여론을 움직이는 개인적인 사건들로 인해 주기적으로 촉발되어져 왔다. 이러한 논쟁은 기대 수명의 연장, 그에 따른 신체적 및 정신적으로 심각한 악화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사망 연령의 지연; 치료 또는 삶의 질의 상당한 개선을 이루지 못한 채 오랫동안 사람들의 생명을 장기간 유지할 수 있는 기술적 수단의 증가; 그 외에도 보건 분야에서의 개인의 자율성 인정과 같은 다양한 원인이 함께 결합된 논쟁이다. 사회의 요구와 가치에 주의를

XIII.2

기울이고, 그 권리를 보호하고 존중하며, 이를 위해 우리의 공존을 질서화하고 조직하는 규범을 적용하는 것이 바로 입법자의 의무이다.

안락사의 비범죄화 및 규제는 국민 권리의 기초가 되며, 스페인 헌법에 포함된 필수 원칙의 양립성에 기초한다. 이는 한편으로는 생명, 신체적 및 도덕적 완전성에 대한 기본권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존엄성, 자유, 의지의 자율성과 같이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선의이다.

이러한 헌법적 권리와 원칙을 양립하게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가능한 일이며, 이를 위해서는 이 모두를 존중하는 입법이 필요하다. 다른 사람의 명시적인 희망에 따라 발생하였더라도 그러한 사람의 죽음에 어떠한 형태로든 도움을 주는 행위를 단순히 비범죄화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그러한 법적 수정은 우리의 헌법 체계가 보호하여야 하는 생명권을 사람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로 만들게 될 것이다. 그 대신, 심각하고 만성적인 장애가 되는 질병이나 중병, 난치병에 걸려 호전되지 않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의 삶을 끝내려는 자율성과 의지를 존중하는 입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우리는 이를 안락사의 맥락으로 명명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본 법은 어떠한 종류의 외부 압력도 배제하면서, 결정이라는 절대적인 자유의 보장과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는 특정한 전제에서의 안락사를 규제 및 비범죄화한다.

우리 주변 국가의 전개 상황에서 우리는 안락사에 대한 규제적 처리의 두 가지 모델을 근본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한편으로, 안락사를 수행하는 사람이 이기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이에 따라 동정적인 이유가 있다고 간주될 때 안락사 행위를 비범죄화하는 국가에서 필요한 보장을 제공하지 않는 불확실한 법적 공간이 생성되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 국가는 특정 요건과 보장이 준수되는 한, 안락사가 법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라는 전제로 규제한다.

이 두 가지 법적 대안을 분석하는 데 있어 유럽 인권 재판소의 원칙이 관련 있으며, 그 2013년 5월 14일자 판결문 (그로스 대 스위스 사건)에서는 안락사 행위를 비범죄화하는 국가가 구체적인 법적 제도를 개발 및 공포하여 안락사 행위의 실행 양식을 명시하지 않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간주하였다.

본 법은 두 번째 입법 모델에 포함되고자 하며, 안락사가 형법적 비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전제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질서 있는 규제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이 법은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안락사 행위, 즉 적극적 안락사와 환자 자신이 자신의 삶을 끝내는 안락사(조력자살)를 구별한다. 이를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지식을 갖추고, 환자가 약을 투여할 수 있도록 의약품의 필수 물질 및 복용량, 처방 또는

심지어 그 공급에 대한 조언을 포함하여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는 보건 전문가의 협력이 필요하다. 한편, 적극적 안락사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주는 심각하고 만성적이며 장애를 초래하는 고통 또는 심각하고 치료할 수 없는 질병으로 인한 안락사의 맥락에서 발생하는 경우로, 보건 전문가가 환자의 요청에 따라 고의적으로 환자의 생명을 종료하는 행위이다.

다른 사람의 죽음에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안락사의 맥락은 그러한 사람의 신체적 상황과 그에 따라서 해당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 그 고통을 완화하기 위한 개입 가능성 및 개인의 존엄성과 양립할 수 없다고 간주되는 상황에서 생명 보존에 대하여 사람의 도덕적 신념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조건에 따라 제한되어야 한다. 또한, 삶을 끝내는 결정이 절대적인 자유, 자율성, 지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보장이 수립되어야 하며, 불리한 사회적, 경제적, 가족 환경이나 심지어 성급한 결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종류의 압력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제한된 안락사의 문맥에서는 안락사 행위 전후에 요청자와 실행자를 대상으로 자격을 갖춘 외부 평가가 필요하다. 동시에, 조력사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법에 내포된 의학 용어를 이해하고, 양심적 거부 가능성을 통해 법적 확실성과 죽음에 대한 의료적 도움 행위에 협력하도록 요청받은 의료진의 양심의 자유에 대한 존중이 보장되며, 이는 보건 인력이 자신의 능력 범위 내에서 죽음을 위해 필요한 도움을 요청하는 환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일련의 혜택과 지원을 포함하는 포괄적 의미로 이해된다.

결국, 본 법은 안락사와 같은 개인의 새로운 권리를 우리의 법률 시스템 내에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개인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고 명시적이고 반복적인 요청을 하여 즉각적인 고유의 원인-결과 관계를 통해 직접적이고 의도적으로 한 사람의 죽음을 초래하는 행위로, 다른 수단을 통해 완화될 수 없으며 사람이 용납할 수 없는 중병 또는 질병으로 인해 고통을 겪는 상황에서 발생된다. 이와 같이 정의된 안락사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생명과 같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와 연결되지만, 인간의 신체적 및 도덕적 완전성 (스페인 헌법 15조), 인간 존엄성 (스페인 헌법 10조), 자유의 우월한 가치 (스페인 헌법 1.1조), 이념적 자유와 양심 (스페인 헌법 16조) 또는 사생활 보호권 (스페인 헌법 18.1조)과 같이 헌법에서 동등하게 보호되는 다른 권리 및 '선(善)'과도 양립하여야 한다. 완전한 능력이 있고 자유로운 사람이 앞에서 설명한 안락사의 맥락에서 정의된 존엄성, 사생활 및 완전성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중요한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생명권 소유자의 의지에 반하여 생명을 강요하거나 보호하여야 할 헌법적 의무가 없으므로, 생명의 '선'은 고려하여야 할 다른 '선' 및 권리를 위해 저하될 수 있다. 같은 이유로, 국가는 필요한 보장과 법적 보장을 수립하는 법적 제도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II

본 법은 5개 장, 7개 추가 조항, 1개 임시 조항, 1개 폐지 조항, 4개 최종 조항으로 구성된다.

제I장은 적용 대상과 범위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규제 본문에 필요한 기본 정의를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

제II장은 사람이 조력사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요건과 그 실행 조건을 수립한다. 법적 성인으로 행동 및 결정을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갖춘 사람은 누구나 그러한 도움을 요청하고 받을 수 있으며, 단 이 때에는 자율적으로, 의식적으로,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심각하고 만성적인 장애가 되는 질병 또는 견딜 수 없도록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는 심각한 중병을 앓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우리의 법률 시스템에 이미 존재하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사전 지시 문서 또는 이와 동등한 문서를 통해 이러한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도 명시되어 있다.

제III장은 조력사를 제공하기 위해 따라야 하는 절차와 해당 제공을 적용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하는 보장을 규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분야에서는 법률 및 법이 정한 절차에 대하여 사전에 검증하고 사후에 통제하여야 하는 보증평가위원회의 신설이 강조된다.

제IV장은 모든 시민이 조력사 제공에 대하여 동등성의 조건에서 접근하도록 보장하는 요소를 수립하여, 이를 국가보건시스템의 일반 서비스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키고, 공공 자금 조달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민간 센터 또는 심지어 주거지에서 그러한 서비스의 제공을 보장한다. 이러한 제공은 보건 인력의 양심적 거부 가능성을 침해하지 않고 보장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제V장은 본 법의 목적을 위해 모든 자치 단체, 세우타(Ceuta) 시 및 멜리야(Melilla) 시에 설립되어야 하는 보증평가위원회를 규제한다.

추가 조항은 본 법에 따라 조력사를 요청한 사람이 자연사로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도록 보장하고, 장애인을 위한 자원 및 지원 수단을 보장하며, 보건 전문가와 시민 사이에 본 법을 최대한 전파하고 조력사와 승인 제도에 대한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수립한다.

최종 조항에서는 본 법을 통해 도입된 새로운 법률 시스템에 따라, 본 법에 명시된 전제 및 조건에서의 안락사 행위를 비범죄화할 목적으로, 1995년 11월 25일 형법 기본법 10/1995의 개정을 진행한다.

제장 일반 조항

1조. 목적.

본 법의 목적은 죽음을 위해 필요한 도움을 요청하고 받을 수 있는 필수 조건을 충족한 모든 사람의 권리, 따라야 하는 절차 및 준수하여야 하는 보장을 규제하는 것이다.

또한, 본 법은 그러한 사람들을 대응하는 보건 인력의 의무를 결정하여, 행동의 틀을 정의하고, 본 법에서 인정되는 권리의 올바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관련 기관 및 행정 기관의 의무를 규제한다.

2조. 적용 범위.

본 법은 스페인 영토에서 활동하거나 소재하는 모든 공공 또는 민간의 자연인이나 법인에 적용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스페인 영토에 등록된 사무소, 경영 본부, 지사, 대리점 또는 모든 종류의 시설물을 가지고 있는 경우 법인이 스페인 영토에 위치한 것으로 이해된다.

3조. 정의.

본 법에 규정된 목적을 위해, 다음으로 이해한다:

a) «사전 동의»: 환자의 요청에 따라 g) 항목에 설명된 행위 중 하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적절한 정보를 수신한 후, 자신의 권한을 완전하게 활용하여 표명하는 환자의 자유롭고, 자발적이며, 의식적인 동의.

b) «심각하고 만성적인 장애가 되는 질병»: 신체적 자율성과 일상 생활 활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한 사항에 의해 영향을 받는 자에게 언급하는 상황으로, 자기 자신을 돌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표현 및 관계 능력도 없으며, 지속적으로 참을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연관되어 있고, 그러한 제한 사항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거나 치료나 상당한 개선 가능성이 없는 경우, 때로는 (의학)기술에 대한 절대적 의존적인 상황을 가정할 수 있다.

c) «심각하고 치료할 수 없는 질병»: 점진적 취약성의 맥락에서, 그 성격상 제한된 삶의 예후를 가지며 개인이 상당하다고 간주하는 완화의 가능성이 없이 지속적이고 견딜 수 없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질병.

d) «담당의사»: 모든 정보와 환자의 건강 관리를 조정하는 일을 담당하는

XIII.6

의료진으로서, 치료 활동에 참여하는 다른 전문가의 의무를 침해하지 않으며, 치료 과정에서 환자의 치료 및 정보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환자의 주요 담당자의 성격을 갖는다.

e) «상담의사»: 환자가 겪는 병리학 분야에 대한 교육을 받았으며 담당의사와 동일한 팀에 속하지 않는 의료진.

f) «양심적 거부»: 자신의 신념과 양립할 수 없어 본 법에 규정된 보전 조치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보전 전문가의 개인적 권리.

g) «조력사의 제공»: 본 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며, 죽고자 하는 자신의 희망을 표현한 자에게 필요한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파생되는 행위. 이러한 제공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1.a) 자격이 있는 보전 전문가에 의해 환자에게 물질의 직접 투여.

2.a) 환자가 스스로 투여하여 자신의 죽음을 유발하게 할 수 있도록 보전 전문가가 환자에게 물질을 처방하거나 공급.

h) «사실상 불능 상태»: 환자가 자신의 법적 능력을 행사하기 위한 지원 조치가 존재하는지 또는 채택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환자 스스로 자율적이며 완전하고 실질적으로 행사하기에 충분한 이해와 의지가 부족한 상황.

제III장

조력사 제공을 요청할 인간의 권리 및 그 행사 요건

4조. 조력사 제공을 요청할 권리.

1. 본 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사람은 조력사의 제공을 요청하고 받을 권리가 인정된다.

2. 조력사의 제공을 요청하는 결정은 자율적인 결정이어야 하며, 담당 보전팀으로부터 적절한 정보를 받은 후 그 의료 프로세스에 대한 지식에 근거한 것으로 간주된다. 의무기록에는 환자가 정보를 수신하고 이해하였다는 내용이 기록되어야 한다.

3. 본 법에 규정된 절차에서는 정보를 수신할 조력사 제공의 요청인이 자신의 의지를 형성 및 표명하여 그에 동의하고 주변 환경과 자유롭게 소통 및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보편적 접근 방법, 설계 및 합리적 조정을 포함한 물질적, 인적 수단, 지원 수단 및 자원이 보장된다.

특히, 장애인이 법률 체계에서 인정하는 권리 행사를 위해 필요할 수 있는 지원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적절한 조치가 채택되게 된다.

5조. 조력사를 받기 위한 자격요건

1. 조력사를 제공받기 위해서 아래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a) 스페인 국적 또는 스페인 내 합법적 거주지 또는 스페인 영토에서 12개월 이상 체류 기간을 증명하는 거주 등록 증명 서류가 있어야 하며, 성년으로 신청 시 법적 능력과 의식이 있어야 한다.

b) 완화의료에 대한 접근 및 의존성 치료 규정에 따라, 환자가 받을 수 있는(자격이 있는) 서비스 및 혜택, 의학적 절차, 다양한 대안 및 조치 가능성 등에 대한 정보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

c) 외부 압력의 결과가 아닌 자발적 요청으로 두 번의 서면요청이(또는 기록을 남길 수 있는 다른 수단으로) 있어야 하고 두 요청 사이에 최소 15일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

담당의사가 신청인의 동의서 작성 능력 상실이 임박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최소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 의사는 반드시 이 사항을 의무기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d) 심각하고 치유할 수 없는 질병을 가진 환자 혹은 이 법에 명시된 조건과 같이 만성적인 장애가 있는 상태의 환자여야 하며, 의사가 이를 인정해야 한다.

e) 조력사를 제공받기 전에 사전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동의 내용은 환자의 의무기록에 통합된다.

2. 환자가 자신의 능력을 완전하게 사용할 수 없으며, 요청에 있어 자발적이며 의식있는 동의를 할 수 없음을 담당의사가 인증하고, 1. d)에서 규정된 바를 준수하며, 이전에 사전지시서, 유언장, 동의 문서 또는 법적으로 동등하게 인정되는 문서에 서명한 경우에는, 이전 단락의 b), c), e)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문서의 규정에 따라 조력사가 제공될 수 있다. 해당 문서에 대리인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 대리인이 담당의사와 유효한 대담자가 된다.

담당의사에 의한 환자의 무능력 상태평가는 국가보건시스템 지역간 협의회가 결정하는 행동(조치) 강령에 따라 수행된다.

6조. 조력사 요청 요건

1. 5.1.(c)에 언급된 조력사 요청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문서에 이를 요청하는 날짜를 기재하고 환자가 서명하거나, 또는 요청하는 자와 요청하는 순간의 명백한 의지를 기록할 수 있는 기타 수단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환자의 개인 상황이나 건강 상태로 인해 문서에 직접 서명할 수 없는 경우, 기록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을 사용하거나, 법정 연령에 도달하고 서명과 날짜를 대신 기입해 줄 능력을 가진 사람이 환자의 입회하에 서명(및 날짜 기입)할 수 있다. 위 사람은 조력사를 요청한 사람이 서류에 서명하고 사유를 표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언급하여야 한다.

2. 문서는 보건 전문가의 입회하에 서명되어야 한다. 만약 입회한 전문가가 담당의사가 아니라면, 이 문서를 담당의사에게 전달해야 한다. 이 문서는 환자 의무기록에 기록되어야 한다.

3. 조력사를 신청한 자는 자신의 결정을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으며, 철회 사항에 대해서도 의무기록에 기록되어야 한다. 또한, 환자는 조력사 시행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4. 5.2조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환자가 이전에 서명한 사전지시서, 유언장, 사전 동의 문서, 또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동등한 문서를 첨부하여, 법적 성인이며 완전한 능력을 갖춘 다른 사람에 의해 조력사 제공 요청서가 담당의사에게 제출될 수 있다. 환자를 대신하여 요청서를 제출할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를 치료하는 의사가 안락사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사전지시서 기록처 및 자동화된 개인 데이터 파일을 규제하는 2007년 2월 2일자 왕실령 제124/2007호의 4조 1항의 d) 항목에 따라, 해당 치료 의사는 해당 자치 단체의 보건 기관, 또는 보건부가 지정한 사람을 통해 사전지시서, 사전 동의 문서 또는 그와 동등한 문서를 요청하고 그에 대한 접근권을 얻을 수 있다.

7조. 조력사 제공의 거부.

1. 조력사 제공의 거부는 항상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담당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한다.

2. 해당 거부에 대하여, 요청서를 제출하였던 자는 최대 15일의 기간 내에 관할 보증평가위원회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요청을 거부한 담당의사는 이러한 가능성을 알릴 의무가 있다.

3. 관할 보증평가위원회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조력사 제공 요청을 거부한 담당의사는 사례 평가와 관련한 임상 데이터 및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포함하여 두 번째 문서를 수정하고, 거부가 통지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12조에 명시된 두 가지 서류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III장 조력사 제공 이행 절차

8조. 조력사 제공 요청 시 담당의사 이행 절차

1. 5.1.c)조에 언급된 조력사 제공의 첫 번째 요청서가 접수된 후, 담당의사는 5.1. a), c), d)조에 규정된 요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한 후 환자가 제공된 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진단, 치료 가능성, 예상 결과 및 가능한 완화의료에 대하여 최대 2일의 기간 내에 환자에게 알리고 해당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언급한 정보가 담당의사에 의해 환자에게 직접 설명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침해하지 않고, 최대 5일의 기간 내에 서면으로도 동일하게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5.1.c)에 규정된 기간이 경과하고, 두 번째 요청이 접수되면 담당의사는 2일 이내 요청한 환자와 함께 심의 절차를 재개해야 한다. 첫 번째 요청 후 환자에게 제공된 정보에 따라 환자가 제기한 의문 또는 추가 정보 사항을 최대 5일 이내 처리해야 한다.

2. 담당의사는 이전 단락에서 언급한 심의절차의 완료 24시간이 경과하면, 요청한 환자에게 조력사 요청의 계속 혹은 철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환자가 조력사 수행 절차를 계속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담당의사는 이 상황을 의료진, 간호 전문가 및 환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가족 또는 지정자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 환자로부터 사전 동의서 서명을 받아야 한다.

환자가 해당 결정을 철회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도, 담당의사는 이 사실을 의료진에 알려야 한다.

3. 담당의사는 환자의 의무기록을 검토하고, 환자를 진료한 후, 상담의사(consultant physician)에게 두 번째 요청일로부터 최대 10일 이내 5.1조 또는 5.2조(해당되는 경우)에 명시된 조건의 준수사항을 입증하여야 한다. 이는 환자의 의무기록에 추가되어야 한다. 보고의 결과는 최대 24시간 이내에 환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4. 5.1조에 규정된 요건 준수에 대해 상담의사가 부정적인 의견을 제출한 경우, 환자는 7.2조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보증평가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5. 위의 조항에 규정된 바가 충족되면, 담당의사는 조력사 제공 전 10조에 규정된 사전심사(검증)을 수행할 목적으로 최대 3일 이내에 보증평가위원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9조. 사실상 불능 상태가 존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따라야 할 절차.

5.2조에 규정된 경우, 담당의사는 사전지시서 또는 이와 동등한 문서에 규정된 바를 적용할 의무가 있다.

10조. 보증평가위원회 사전 검증.

1. 8.5조에 언급된 의료통신문을 전달받은 보증평가위원장은 최대 2일 이내, 의료인과 변호사로 구성된 위원회의 위원 2명을 지정하여, 조력사의 요청 및 받을 권리의 올바른 행사를 위해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확인해야 한다.

2.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이전 단락에 언급된 2명의 위원은 의무기록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보건 전문가, 의료 팀, 그리고 요청자와 인터뷰할 수 있다.

3. 최대 7일 이내에, 제12조의(b)에서 요청하는 문서에 언급된 요구사항을 포함한 보고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환자에게)유리한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 발행된 보고서는 조력사 수행 목적의 결의안 역할을 한다. 결정이 청구에 불리한 경우, 제18조(a)에 따라 이의 신청의 가능성은 열려있다. 본 조1항의 2명의 위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보증평가위원회 전체 회의에 확인서를 제출하여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게 된다.

4. 최종 결정은 요청을 올린 담당의사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당 기관의 장에게 우선적으로 통지되어야 한다. 이 모든 과정은 최대 2일 이내 이루어져야 한다.

5. 조력사 제공 요청에 대하여 불의한 통보를 받을 경우, 이 결정을 분쟁행정 관할에 이의제기 할 수 있다.

11조. 조력사 제공의 이행.

1. 긍정적 결의안이 접수되면, 조력사 제공은 조력사 수행 시간, 방식 등의 기준이 포함된 규약(protocol)을 이행하여, 전문가의 최대의 주의와 전문성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한다. 환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 환자는 제공받고자 하는 조력사 방식에 대해 담당의사에게 알려야 한다.

2. 조력사 제공이 제3조의g.1.a)에 서술된 방법을 따르는 경우, 담당의사 및 보건 전문가는 환자의 사망 순간까지 환자를 지원해야 한다.

3. 제3조의g.2.ª)를 따르는 경우, 담당의사 및 보건 전문가는 약물을 처방한 후 환자가 스스로 투여 할 때까지 환자를 관찰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유지해야 한다.

12조. 조력사 제공 후 보증평가위원회 보고.

조력사 제공 후 최대 5일 이내에 담당의사는 등록(기록)번호로 식별되는 다음 두 가지 서류 각각을 자치단체 또는 자치 시의 보증평가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a) 담당의사가 서명한 첫 번째 서류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º) 조력사 요청 환자 성명, 주소, 해당 되는 경우 환자를 돕기 위해 지정된 자의 성명 및 주소

2.º) 담당의사의 성명, 주소 및 전문가 식별 번호

3.º) 의견을 구한 고문 의사의 성명, 주소, 전문가 식별 번호

4.º) 환자의 사전 요청 서류 또는 이에 상응하는 서류를 가지고 있고, 대리인이 지정되어 있다면 해당 서류에 동일하게 대리인의 성명이 들어가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작성이 불가능한 환자를 대신하여 요청문서를 작성한 사람의 성명이 들어가야 한다.

b) 두 번째 서류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º) 조력사를 요청한 사람의 성별 및 연령

2.º) 사망날짜 및 장소

3.º) 최초 및 마지막 요청부터, 사망때까지 경과한 시간

4.º) 요청환자가 겪는 질병(심각하고, 만성적이며, 회복 불가능한 질병)에 대한 설명

5.º) 지속적이고 견딜수 없는 고통의 특성 및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이유

6.º) 조력사 요청의 자발성 및 요청의 반복, 심사숙고 및 외부 압력의 부재에 관한 정보

7.º) 사전 요청 문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문서가 있는 경우, 그 사본

8.º) 조력사 이행을 위해 담당의사와 보건 전문가 팀이 수행한 절차

9.º) 상담의사의 자격 및 상담 일자

제Ⅳ장 조력사 제공에 대한 접근 보장

13조. 조력사 제공에 대한 접근 보장.

1. 조력사 제공은 국립 보건 시스템의 일반 서비스 포트폴리오에 포함되게 되며, 공공 재정으로 지원되게 된다
2. 공중 보건 서비스는 각각의 권한 범위 내에서 본 법에 명시된 요건 및 전제에 따른 조력사 제공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용하여야 한다.

14조. 보건 서비스를 통한 조력사의 제공.

조력사의 제공은 공공, 민간의 또는 공적 보조금을 받는 의료 센터 및 주거지에서 이행되며, 양심적 거부 의 행사에 의해 또는 이행되는 장소에 따라 제공 서비스의 접근방법이나 질이 저하되지 않아야 한다. 이해 관계의 충돌을 초래하는 자나 안락사의 실행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이익을 얻는 자는 어떠한 전문가 팀에도 개입할 수 없다.

15조. 사생활 보호 및 기밀성.

1. 조력사의 제공을 수행하는 보건 센터는 그러한 제공을 요청한 자의 사생활 보호와 개인적 성격의 데이터 처리에 대한 기밀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또한, 언급한 센터는 환자의 의무기록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데이터 처리에 있어서 개인적 성격의 데이터 보호에 관하여 현행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높은 수준의 보안 조치를 구현하여야 하며, 이러한 데이터 처리가 2016년 4월 27일자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 (EU) 제2016/679호의 9조에 규정된 특별 범주의 데이터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16조. 보건 전문가의 양심적 거부.

1. 조력사 제공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보건 전문가는 양심적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양심상의 이유로 언급한 제공을 수행하기를 거부하거나 거절하는 것은 그 수행에 직접 관여하는 보건 전문가의 개별적 결정이다. 이는 사전에 서면으로 표명되어야 한다.

2. 보건 행정 기관은 조력사를 수행하는 것에 대한 양심적 거부자인 보건 전문가의 등록부를 생성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그 수행에 대한 양심적 거부 선언이 기록되고, 이는 조력사 제공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건 행정 기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을 갖는다. 등록부는 엄격한 기밀 유지 원칙 및 개인적 성격의 데이터 보호 규정이 적용된다.

제V장 보증평가위원회

17조. 설립 및 구성.

1. 세우타 시 및 멜리야 시에서 뿐만 아니라 각 자치 단체에서도 보증평가위원회가 존재한다. 위원회 각각의 구성은 여러 분야에 걸쳐 이루어지며, 의료인 및 법률가를 포함하여 최소 7명의 구성원을 갖추어야 한다.

2. 단체의 경우, 행정 기관의 성격을 갖게 될 이러한 위원회는 각 자치 정부에 의해 설립되고 법적 체제가 결정되게 된다. 세우타 시 및 멜리야 시의 경우, 각 시에 위원회를 설립하는 보건부가 그 법적 체제를 결정한다.

3. 각 보증평가위원회는 본 조항의 발효일로부터 3개월의 기간 내에 설립 및 구성되어야 한다.

4. 각 보증평가위원회는 내부 규정을 갖추어야 하며, 이는 앞서 언급한 위원회가 작성하고, 자치 행정 기관에 속한 관할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세우타 시 및 멜리야 시의 경우 언급한 승인은 보건부에 속한다.

5. 보건부와 자치 단체의 보증평가위원회의 장은 정부 부처의 조정 하에 매년 회의를 개최하여, 국가보건시스템의 안락사 제공 개발에 관한 기준을 표준화하고 우수 사례를 교환한다.

18조. 기능.

보증평가위원회 기능은 다음과 같다:

a) 담당의사가 조력사 제공 요청을 거부한 사람들에 대하여 최대 20일의 기간 내에 이의 신청을 해결하고, 14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이해 관계 상충을 해결한다.

또한 요청 요건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최초로 지정된 두 명의 구성원이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10조 3번째 단락에 언급된 이의 신청을 20일의 기간 이내에 해결한다.

마찬가지로, 지정된 구성원 간의 기준 차이로 인해 우호적 또는 비우호적 보고서의 작성이 어려운 이유로 검토 대기 중인 상태로 위원회 전체로 상부 전달된 요청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간 내에 해결하여야 한다.

조력사 제공 요청에 대하여 결의안이 우호적인 경우, 관할 보증평가위원회는 요청이 최대 7일의 기간 내에 다른 센터의 의사 또는 다른 외부 보건 전문가 팀을 통해 제공되도록 센터의 경영진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결의안이 발행되지 않은 채로 20일의 기간이 경과하면, 요청자에게 자신의 조력사 제공 요청이 거부된 것으로 이해할 권리를 부여하고, 분쟁 행정 관할권에 이의제기 할 수 있다.

b) 보증평가위원회는 최대 2개월 이내에 조력사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력사 절차가 진행되었는지 평가하여야 한다.

해당 심의는 두 번째 문서의 데이터를 기초로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나, 수행 절차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익명성을 해제하고 첫 번째 문서를 열람할 수 있으며 담당의사에게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만약, 익명성이 해제된 후, 위원회 중 한 사람이라도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건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탈퇴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한 검증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단순 다수결로 담당 의사에게 환자의 의무기록에 포함된 조력사 제공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c) 본 법에 규정된 의무를 준수함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감지하고, 해당하는 경우 우수 관리 사례 매뉴얼 및 조치강령에 이를 통합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 사항을 제안한다.

d) 특정 영토 지역에서 자문 기관의 역할을 하여, 법을 적용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의문 사항이나 문제를 해결한다.

e) 해당 법의 적용에 대한 연간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공개해야 한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관할지역에서의 법 적용에 관한 내용을 다루어야 하며, 이를 보건 관련 주무부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f) 자치 정부에 의해, 세우타 시와 펠리야 시의 경우 보건부에 귀속될 수 있는 기타 사항

19조. *비밀의 의무.*

보증평가위원회의 구성원은 심의 내용과 관련하여 비밀을 유지하고, 보건 전문가, 환자, 가족 및 지인에 대하여 위원회 구성원의 자격으로 알고 있을 수 있는 개인적 데이터의 기밀성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첫 번째 추가 조항. *사망의 법적 고려.*

조력사의 제공으로 인한 사망은 그에 대하여 수행된 체계와 관계없이, 모든 목적에서 법적으로 자연사로 간주한다.

두 번째 추가 조항. *제재 조치.*

본 법에 규정된 바의 위반은 가능한 민사적 또는 형사적 책임과 이에 해당할 수 있는 전문적 또는 법적 책임을 침해하지 않고, 일반 보건법 14/1986의 제I부 VI장에 명시된 제재 조치의 적용을 받는다.

세 번째 추가 조항. *연간 보고.*

자치단체는 제18조의e)에 의하여 보고받은 보고서를 보건부에 전달하여야 한다. 세우타 시와 멜리야 시의 경우, 보건부는 국립 보건 연구원을 통하여 해당 보고서를 수집하여야 한다. 자치단체와 자치시의 데이터는 보건부가 공개 및 발표한다.

네 번째 추가 조항. *장애인.*

청각 및 시청각장애인은 스페인어 수화를 인정하며, 청각장애인 및 시청각장애인의 구두 의사소통 지원 수단을 규제하는 2007년 10월 23일자 법률 27/2007에 명시된 권리, 자원 및 지원 수단을 보장받는다.

다섯 번째 추가 조항. *관할권 이의제기.*

10.5 및 18.a) 조항에 언급된 이의제기는 분쟁 행정 관할권을 규제하는 1998년 7월 13일자 법률 29/1998에 규정된 개인의 기본 권리 보호를 위해 제공된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여섯 번째 추가 조항. *의료 서비스를 통해 조력사 제공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조력사 제공에 있어서 평등 및 진료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보건시스템의 지역 간 협의회는 법이 발효된 후 3개월의 기간 내에 본 법의 올바른

시행을 안내하는 우수 관리 매뉴얼을 준비하여야 한다.

또한, 동일한 기간 내에 5.2조에 언급된 조치강령을 준비하여야 한다.

일곱 번째 추가 조항. *교육*.

관할 보건 행정부는 보건 전문가와 일반 대중 사이에 본 법을 최대한 전파하고 그들 사이에서 사전 지침 문서의 작성을 수행할 수 있는 적절한 메커니즘을 활성화한다.

또한, 보건 인력 간에 정확하고 전반적인 지식을 위해, 또한 해당하는 경우 전문가의 양심적 거부 권리 행사를 촉진하기 위해 그에 포함된 전제 조건을 전파하게 된다.

국가보건시스템의 인적 자원 위원회에 속한 보건 전문가의 지속적인 교육 위원회는 법적 및 기술적 측면 모두를 고려하여야 하는 조력사에 대한 지속적인 특정 교육 제공의 조정, 어려운 의사소통 및 정서적 지원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게 된다.

단독 임시 조항. *보증평가위원회의 법적 제도*.

자체 내부 규정이 없는 한, 보증평가위원회 운영은 2015년 10월 1일자 공공 부문 법적 제도에 관한 법률 40/2015의 서문 II장 3.^a번 섹션에 명시된 규칙을 따른다.

단독 폐지 조항. *규제의 폐지*.

본 법에 명시된 바에 모순되거나 반대되는 모든 동급 또는 하위 조항은 폐지된다.

첫 번째 최종 조항. *1995년 11월 23일자 형법의 기본법 10/1995의 수정*.

형법 1995년 11월 23일자 형법 기본법 10/1995의 143조의 4번 단락을 수정하며, 5번 단락을 추가한다:

«4. 명시적이며 확실하고 철회 불가능한 요청을 통해 심각하고 만성적이며 장애를 일으키는 중병, 또는 지속적이고 견딜 수 없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수반하는 심각한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을 겪고 있는 사람의 사망에 필요한 직접적 행위를 유발하거나 이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자는 2번 단락 및 3번 단락에 명시된 1급 또는 2급의 낮은 처벌을 받는다.

5. 이전 단락에 규정된 바에도 불구하고, 안락사를 규제하는 기본법에 명시된 바를 준수하여 타인의 죽음을 유발하거나 이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자는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두 번째 최종 조항. *권한 자격*.

본 법은 권리의 행사 및 헌법상의 의무 준수, 무엇보다도 건강의 기본 사항 및 일반적 조정에 있어 모든 스페인 국민의 평등을 보장하는 기본 조건을 규제할 권한을

국가에게 부여하는 스페인 헌법 제149.1조 1.^a항 및 16.^a항에 따라 공포된다.

단, 제149.1조 6.^a항이 형사 입법에 대하여 국가에 부여하는 권한을 보장하는 첫 번째 최종 조항은 제외한다.

세 번째 최종 조항. *특정 조항의 일반적 성격.*

본 법률은 일반법의 성격을 지니는 12, 16.1, 17, 18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추가 조항, 및 단독 임시 조항을 제외하고, 기본법의 성격을 갖는다.

네 번째 최종 조항. *발효.*

본 법은 «국가 관보»에 게시된 날로부터 3개월 후 발효되며, 단, 17조는 ‘국가 관보’에 게시된 날 익일 발효된다.

이에,

나는 모든 스페인인, 개인 및 기관에게 본 기본법을 지키고 보장할 것을 명령한다.

마드리드, 2021년 3월 24일.

국왕 펠리페

정부 대통령

페드로 산체스 페레스 - 카스테욐

오스트리아

242. Bundesgesetz: Sterbeverfügungsgesetz sowie Änderung des Suchtmittelgesetzes und des Strafgesetzbuches

2024.12.1. 기준 법령을 번역함

오스트리아 공화국 연방 법률 관보

2021년도 2021.12.31 발행 제1부

242. 연방 법률: 조력자살 관련 법, 마약류 관련법 및 형법전 개정

(NR: GP XXVII RV 1177 AB 1255 137쪽. BR: 10806 AB 10837 936쪽)

242. 조력자살 관련 법 제정 및 마약류 관련 법, 형법 개정 연방법

국회는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조항 1

조력자살 지시서 작성에 관한 연방 법률 (조력자살법 – StVfG)

1절.

일반사항

적용범위, 목적

§1. (1) 본 연방 법률은 지속적이고 자유로우며 자기결정에 의한 사망을 입증하기 위한 조력자살 요청의 조건과 효력을 규제한다.

(2) 조력자살 지시서는 조력자살(또는 사망)을 원하는 사람의 거주지가 오스트리아이거나, 오스트리아 국적을 가진 사람에게만 유효하다.

(3) 조력자살의 판결, 효력 및 종결은 오스트리아 법에 따른다.

조력의 자발성, 불이익 금지

§2. (1) 어떠한 자연인 또는 법인도 약사를 통한 약물 제공(§3.9.) 등의 조력 의무(§3.4.), 의사를 통한 설명(§7) 및 조력자살 지시서에 대해 협력할 의무가 없다. 이에 관한 계약상 성과이행 합의는 재판상 효력이 없다.

(2) 어떠한 자연인 또는 법인도 이러한 조력, 의사를 통한 설명 또는 조력자살 지시서 작성에 대한 조력 또는 조력에 대한 거절, 의료 정보 제공의 거절, 조력자살 지시서 작성 협력에 대한 거절로 인하여 어떠한 형태로든 불이익을 당하여서는 안 된다.

개념정의

§3. 본 연방 법률의 개념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조력자살 지시서“: 요청자가 스스로의 목숨을 끊겠다는 지속적이고 자유로우며 자기결정에 의한 의사의 표명;
2. „요청자“: 자신의 삶을 종료하고자 하는 사람;
3. „조력자“: 요청자의 생명 종료 조치를 지원할 수 있는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성인;
4. „조력“: 생명종료 조치 수행 시 요청자에 대한 물리적 지원; 의사를 통한 설명 또는 조력자살 지시서 작성 지원은 조력에 해당하지 않음;
5. „의료인“: 독립적으로 직업을 수행하는 의사;
6. „기록인“: 조력자살 지시서를 집행하는 공증인 또는 환자를 대리하는 자(기관)의 법에 정통한 직원 (병원 및 요양원에 관한 법률 § 11e);
7. „보관책임자“: 지시서를 기록한 공증인 또는 환자대리의 법적 지식을 보유한 직원 (병원 및 요양원에 관한 법률 § 11e);
8. „말기 단계“: 의학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6개월 이내에 사망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질병 단계;
9. „약물“: 요청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용량의 펜토바르티탈나트륨 또는 §11.6.의 처방에 따라 확정된, 특정 용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제제;
10. „신원확인자료“: 성, 이름, 생년월일, 성별, 국적; 신원확인자료는 의료분야에 특정된 개인식별표시로 처리됨.

전속성

§4. 조력자살 지시서는 본인만 작성할 수 있다.

2절.

조력자살 지시서

내용

§5. (1) 조력자살 지시서에는 삶을 마감하려는 자의 결정을 기록한다. 아울러 본 결정이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자유롭고 자기결정에 의하여 내려졌다는 명백한 진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조력자살 지시서에는 한 명 이상의 조력자(Hilfe leistende Person, §3.3. 요청자의 생명 종료 조치를 지원할 수 있는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성인)를 지정할 수 있다. 요청자의 요청에 따라 기록인(§3.6. 기록인: 조력자살 지시서를 집행하는 공증인 또는 환자를 대리하는 자(기관)의 법에 정통한 직원)은 지시서 기록 이후에도 조력자를 추가로 기록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전제

§6. (1) 조력자살을 원하는 사람은 설명시점(§7) 및 조력자살 지시서 작성(§8) 시점에 성년으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 의사결정 능력은 분명해야 한다.

(2) 자신의 삶을 마감하려는 자의 결정은 자유롭고, 자기결정에 의한 것 이어야 하며, 특히 실수, 사기, 신체적 또는 정신적 강압, 그리고 제3자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3) 조력자살 지시서는 다음의 경우에만 작성할 수 있다.

1. 치료가 불가능한, 사망에 이르는 질병(ASVG § 120 Z 1) 또는
2. 만성적인 증상을 수반하며, 요청자의 삶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는 심각하고 영구적인 질병(ASVG § 120 Z 1);

질병이 요청자에게 피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경우

(4) 조력자는 설명(§ 7)을 하는 자 또는 조력자살 지시서를 기록하는 자(§ 8)와 동일인이어서는 안 된다.

설명

§7. (1) 조력자살 지시서 작성 전 두 명의 의료인을 통한 설명이 진행되어야 하고, 그중 한 명은 완화의료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 두 명의 의료인 각각 요청자가 결정 능력이 있으며 §6(2)에 따른 자유롭고 자기결정에 의한 결정을 내렸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설명은 최소한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특히 호스피스 돌봄 및 완화의료 조치를 포함한 구체적인 사례에서 적용 가능한 치료 또는 행동 대안 및 특히 사전 위임 및 사전 대화를 포함한 환자 지시서 작성 또는 기타 사전준비 가능성에 대한 언급(ABGB 제239조제2항, JGS 946/1811번, 연방 법률 BGBl. I 59/2017번)

2. 약물의 투여량(§ 3.9.) 및 약물을 (환자가) 받아들이는 데 필요한 병행약물 (처방)
3. 약물 복용 방법(§ 3.9.), 약물 복용의 영향, 가능한 합병증 및 지시서를 통해 생명연장 치료를 거절할 수 있다는 내용
4. 심리치료를 위한 구체적인 제안 및 자살 예방 상담에 대한 언급
5. 특정 상황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상담에 대한 제안

(3) 의료인은 본인이 설명한 주요 내용이 담긴 문서를 작성해야 하고, 그 과정에 모든 의료인이 (2)의 모든 내용을 설명할 필요는 없으며,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1)에 따르는 확인을 하여야 한다. 가능한 치료 및 대안을 설명((2). 1.)하는 의료인은 §6.(3).1. 또는 2.에 따른 질병의 존재 및 다른 방법으로 피할 수 없는 고통의 상태에 관하여 신뢰할 수 있는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의료인은 정확한 용량을 처방하여야 한다. 문서는 요청자의 성명, 생년월일, 의료인의 성명, 주소 및 설명 날짜를 포함하여야 하고, 요청자에게 교부되어야 한다. 문서는 조력자살 지시서 등록을 위한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통해서도 가능하며, 이는 코드를 통해 권한이 없는 접근으로부터 보호되기 때문에 요청자가 코드를 제공한 자만 접근이 가능하다. 입력된 정보는 최대 30년간 보관할 수 있다. 의무기록과 관련된 법정 규정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4) 의사를 통한 설명 과정에서 요청자가 질병으로 인정되는 정신적 장애를 앓고 있고, 이로 인하여 조력자살 요청이 나타날 수 있는 징후가 발견되는 경우, (1)를 수행하기 전, 정신과 및 정신치료의학 전문의 또는 임상 심리학자를 통한 상담을 포함하여 해당 장애에 대한 설명을 명확히 해야한다.

작성

§8. (1) 조력자살 지시서는 의사를 통한 최초 설명 후, 최소 12주 후에 유효하게 작성할 수 있다. 요청자가 치료 불가능한, 사망에 이르는 질병을 앓고 있고, 말기 단계(§3.8. 의학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6개월 이내에 사망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질병 단계)에 이르렀음을 의사가 확인한 경우에는 2주 후 작성이 허용된다. 의사를 통한 두 번째 설명 후, 조력자살 지시서를 1년 이내에 작성하지 않을 경우, 요청자는 §7.1.(3)에 따른 의료인의 확인을 새로이 받아야 하고, 이는 1년간 유효하다.

(2) 조력자살 지시서는 기록인이 의사를 통한 설명에 관한 기록(§7.1.(3))을 반환한 후, 조력자살 지시서 작성, 사전 위임, 조력자살의 형법상 한계 및 기타 법적 측면에 대한 고지 후, 기록인 앞에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 기록인은 작성 전, 조력자살 지시서 등록부 열람을 통하여 기존 요청자의 지시서가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전에 지시서가 아직 유효할 경우, 새로운 지시서 작성 전에 철회해야 한다.

(3) 기록인은 성명, 주소, 작성날짜 외 조력자살 지시서에 다음 항목을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1. 조력자살 요청자의 성명, 생년월일, 국적, 거주 주소 및 요청자가 §6.2에 따라 자유롭게 자기결정에 의한 결정을 분명히 내렸다는 사실
2. 요청자의 의사결정 능력이 의사를 통해 확인되었으며, 작성 시점에 능력의 제약이 없었다는 사실
3. (1)의 시간적(기간) 조건에 부합하는 설명이 §7.(2)에 따라 필요한 모든 내용과 함께 제공되었다는 사실

문서에는 처방 용량에 관한 내용도 반영되어야 한다. 요청자의 의사결정이 의심되는 경우 작성을 거절하여야 한다.

(4) 요청자는 기록인 앞에서 약물이 분실되거나, 도난 당할 경우 유효한 지시서 또는 새로이 작성된 지시서에 의해 새로이 약물이 지급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기록인은 요청자의 신뢰성에 의심이 없는 경우 본 사항을 기재하여 조력자살 지시서 등록부(§9.(2))에 신고해야 한다.

문서 작성 및 조력자살 지시서 등록부

§9. (1) 기록인은 요청자의 조력자살 지시서의 원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보관책임자(§3.7. 지시서를 기록한 공증인 또는 환자대리의 법적 지식을 보유한 직원)는 조력자살 지시서 사본을 §10.(3). 및 (4)에 규정된 기간 동안 보관하고 요청자의 생명에 관한 불법 행위를 수사하는 보안 당국 또는 법 집행기관에 지시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2) 연방 보건부 장관은 개인식별번호를 활용하여 전자 조력자살 지시서 등록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장관은 (3), (4) 및 §7.(3), §8.(4), §11.(1)에 신고된 정보를 본 연방법률이 분명히 준수됨을 보장하기 위해, 특히 동일한 요청자를 통한 약물의 부적절한 중복 수령을 방지하고, 개인과 관련된 결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통계 및 학술 목적의 분석과 연구를 위해 처리할 수 있다.

(3) 기록인은 조력자살 지시서 작성 후 지체없이 다음 정보를 조력자살 지시서 등록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요청자의 신원 확인 자료
2. 조력자살 지시서에 지정된 조력자의 신원 확인 자료
3. 설명을 위한 상담 날짜 및 조력자살 지시서 작성 날짜

XIV.6

4. 설명한 의료인의 신원 확인 자료
5. §7.(4)에 따른 설명 시, 정신과 및 정신치료의학 전문의 또는 임상 심리학자의 신원 확인 자료
6. 용량 처방(용량 지시)
7. 말기 단계의 여부
8. 기록인의 신원 확인 자료

(4) 사망이 처방받은 약물 복용과 직접적, 간접적 인과관계가 있다는 징후가 존재하는 경우, 사망진단 의사는 (2)에 따른 등록부 책임자에게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다음의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1. 사망자의 신원 확인 자료
2. 사망 날짜 및 장소
3. 조력자살 지시서 작성 여부 및 작성이 확인 된 경우, 작성 날짜
4. 시신 부검 또는 부검 명령 여부
5. 보고하는 사망 진단 의사의 정보
6. 보고 날짜(신고일)

무효, 철회가능성

§10. (1) 본 연방 법률에 명시된 효력 전제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 외에도, 조력자살 지시서는 내용이 형법에 반하면 무효이다.

(2) 조력자살 지시서는 요청자가 철회하거나 무효 의사를 표시할 경우, 작성 후 1년이 경과하면 효력을 잃는다.

(3) 보관책임자는 다음의 경우에 조력자살 지시서의 사본을 파기해야 한다.

1. 조제약(§11)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기한(2) 도과 5년 후; 보관책임자는 본 사실을 조력자살 지시서 등록부 열람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2. 그렇지 않은 경우, 작성 10년 후

(4) 보관책임자는 요청자가 요청할 경우, 조력자살 지시서 사본을 철회 또는 기한 도과시 다음 경우에만 파기한다.

1. 아직 조제약을 수령하지 않거나, 수령된 약물을 분명히 반납한 경우(보관책임자가 조력자살 지시서 등록부 열람을 통해 확인) 및
2. 조력자살 지시서 원본이 분명히 파기되거나 효력이 상실된 경우

(5) 보관책임자는 조력자살 지시서 사본의 파기를 §9.(2)에 따른 등록부 책임자에게 철회 날짜 정보를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고, 등록부 책임자는 이와 관련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약물

§11. (1) 약물(§3.9. 약물: 요청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용량의 펜토바르비탈 나트륨 또는 §11.(6)의 처방에 따라 확정된 특정 용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제제)은 공공약국에 유효한 조력자살 지시서를 제시한 후, 지시서에 명시된 용량 및 필요한 병용 약물과 함께 요청자 또는 지시서에 지정된 조력자에게만 제공될 수 있다. 제공과 반납은 조력자살 지시서 등록부에 날짜, 제공 약국 및 수령인의 신원확인자료를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2) 약사는 제공 전 다음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통한 약물 수령자의 신원
2. 제시된 조력자살 지시서 또는 기존의 지시서에 따라 요청자에게 이미 약물이 제공되었는지의 여부(조력자살 지시서 등록부 열람)

(3) 지시서를 근거로 요청자에게 이미 약물이 제공된 경우, 추가 약물 제공은 최초 제공된 약물을 반납하거나, 지시서에 §8.4.에 따른 내용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8.4.의 기재사항에 따라 새로이 약물을 제공받은 경우, 회수된 약물은 약국에 반납하여야 한다. 약사는 반납된 약물을 폐기해야 한다.

(4) 약물을 제공받은 요청자 및 조력자는 약물을 각각 상황에 부합하는 적절한 조치를 통해 권한 없는 사용으로부터 지켜야 한다. 조력자살을 포기할 경우, 요청자는 약물을 약국에 반납하여야 한다. 약사는 반납된 약물을 폐기해야 한다.

(5) 요청자가 사망하고 물품에 약물이 존재하는 경우, 약물을 발견한 자는 지체없이 지역 관할 보건당국에 신고하여야 한다.

(6) 연방 보건부 장관은 다음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해당 약물이 현 의학 수준으로 환자에게 부담이 되는 수반 현상을 최소화하거나 펜토바르비탈 나트륨의 사용 가능성이 제약되거나, 더 이상 구할 수 없는 경우에, 펜토바르비탈 나트륨 외 기타 약물을 신뢰할 수 있는 약물로 지정
2. 약물의 적용 형태와 용량
3. 의학적으로 약물의 적용에 필요한 병용 약물의 규정

XIV.8

(7) 오스트리아 약사회는 기록인의 요청에 따라 요청자가 약물을 제공받을 수 있는 인근의 약국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아울러, 오스트리아 약사회는 연방 보건부장관에게 매년 6월 30일까지 약물 제공 가능 약국을 보고하여야 한다.

광고 금지 및 경제적 이익 금지

§12. (1) 조력의 광고는 금지된다. 광고 금지는 자신 또는 타인의 조력, 자살에 적합한 도구, 물건 또는 절차의 적합성을 언급하며 제공하거나 알리거나 홍보하는 광고를 포괄한다.

(2) 요청자에게 본 연방 법률에 따른 조력자살 지시서 작성 가능성을 알리는 것은 허용된다. 다음 사항의 안내는 허용된다.

1. 의료인 또는 오스트리아 의사회에서 §7조에 따른 설명을 제공한다는 사실 또는 설명이 제공되는 장소 안내;
2. 기록인, 오스트리아 공증인회 및 환자단체에서 조력자살 지시서 작성을 한다는 사실 또는 조력자살 지시서 작성이 가능한 장소 안내 또는
3. 약국 또는 오스트리아 약사회에서 §11조의 조건에 따라 약물을 제공한다는 사실 또는 약물 제공 약국에 관한 안내.

(3)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입증된 비용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약속하거나 수령하는 경우, 요청자에게 조력을 제안하거나 수행하는 것은 금지된다.

행정처벌 규정

§13. §12.(1) 또는 (3)에 따른 금지사항을 위반하는 자는 행정 위반에 해당하여 최대 3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고, 재범일 경우 최대 6만 유로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 §12.(1). 따른 위반 시 시도도 처벌된다.

제3절 종결규정

발효

§14. 본 연방법률은 2022.1.1. 발효된다.

집행

§15. §9.(2)에서 (4)까지, §11의 집행은 연방 사회, 보건, 요양, 소비자보호부 장관이 관장하고, 본 연방 법률의 기타 규정은 연방사법부 장관과 연방 사회, 보건, 요양, 소비자보호부 장관이 협의하여 집행한다.

조항2. 중독물질법 개정

연방 법률 BGBl. I 105/2021번으로 최근 개정된 중독물질법 BGBl. I 112/1997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7조제1항에 제1a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a) 약국은 BGBl. I 242//2021번 조력자살법(StVfG) 제3조 Z9에 따른 약물을 StVfG 제11조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
2. 제7조제2항 중 „제1항에 따라“를 „제1항 및 제1a항에 따라“로 한다.
3. 제47조제2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연방 법률 BGBl. I 242/2021번 제7조제1a항 및 제2항 및 제50조제1항 Z 5, Z6은 2022.1.1.에 발효된다.“
4. 제50조제1항 Z 5에 마침표를 쉼표로 하고 Z 6을 다음과 같이 삽입한다.
„6. 제7조제1a항에 따라 연방사법부 장관과 협의한다.“

조항 3. 형법전 개정

연방 법률 BGBl. I 201/2021번으로 최근 개정된 BGBl. 60/1974번 형법전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목을 포함한 제7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자살에 대한 조력
제78조
(1) 타인의 자살을 유도하는 자는 6개월에서 최대 5년까지의 자유형으로 처벌된다.
(2) 다음의 경우에도 처벌된다.

XIV.10

1. 미성년자,
2. 비난 받을 만한 동기를 지닌 자 또는
3. BGBI. I 242/2021번 조력자살법 (StVfG) §6.(3)에 따른 질병을 앓고 있지 않은 자 또는 StVfG §7에 따른 의사의 설명을 듣지 않은 자에게 자살을 위한 물리적인 지원을 하는 자.“

조항 4. 발효

제3조. BGBI. I 242/2021번 연방 법률은 2022.1.1. 발효된다.

해외 의사조력자살 관련
법령 번역집

2024. 12.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BIOETHICS POLICY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KoNIBP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BIOETHICS POLICY

(04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 별관 2층 국가생명윤리정책원(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TEL. 02-737-8970 FAX. 02-737-6006

www.nibp.kr